

2019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안내

2018. 12.



2019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안내

Contents

I.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개요	1
1. 사업 개요	1
2. 추진 체계	6
3. 추진 절차(기술개발사업 기준)	8
II. 산업기술혁신사업의 평가 및 관리	14
1. 사업 수요의 발굴 및 시행계획 공고	14
2. 사업의 신청 및 선정	15
3. 사업비의 산정	16
4. 협약 체결 및 사업비의 관리·사용	26
5. 사업 결과의 평가 및 사업비의 정산	29
6. 사업의 사후관리 및 성과활용	31
7. 관련 법령 및 규정	34
III. 사업별 지원계획	35
<KEIT(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담당사업>	
1. AI 기반 자율주행 컴퓨팅 모듈 개발 및 서비스 실증사업	35
2. CDM기반 정밀의료데이터 통합 플랫폼 기술개발사업	39
3. i-Ceramic 제조혁신 플랫폼사업	42
4. IoT가전 기반 스마트홈 실증형 기술개발사업	45
5. 국가표준기술개발 및 보급	47
6. 국민안전감시및대응무인항공기융합시스템구축및운용사업	50
7. 국민안전증진기술개발사업	52
8. 기계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55
9. 나노융합2020사업	58
10. 나노융합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63
11. 돌봄로봇공통제품기술개발사업	67

2019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안내

12. 드론 활용서비스 시장창출 지원사업	70
13. 디자인혁신역량강화사업	73
14. 로봇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76
15. 바이오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80
16. 산업소재핵심기술개발사업	84
17. 산업융임베디드시스템기술개발사업	87
18. 산업현장핵심기술수시개발사업	89
19. 생산시스템산업전문기술개발	91
20. 섬유의류혁신역량강화사업	94
21. 센서산업고도화전문기술개발사업	97
22. 소재부품글로벌투자연계기술개발사업	99
23.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101
24. 소재부품산업미래성장동력	105
25. 소재부품산업전문기술개발사업	108
26. 소형무장헬기연계민수헬기핵심기술개발사업	111
27. 수송분야 비배기관 미세먼지 저감사업	114
28. 스마트공장용 중소기업 보급형 로봇개발지원사업	117
29. 스마트공장제조핵심기술개발사업	120
30. 스마트공장협업패키지기술개발사업	122
31. 시스템산업미래성장동력사업	124
32. 안전보호융복합섬유산업육성사업	127
33. 안전인증역량강화사업	130
34. 엔지니어링핵심기술개발사업	133
35. 우수기술연구센터(ATC)사업	136
36. 인공지능바이오로봇의료융합기술개발사업	140
37. 자동차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143
38. 자율비행 개인항공기 기술개발사업	147
39. 전자부품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150
40. 전자시스템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153
41. 전자시스템전문기술개발사업	156
42. 제조분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공정맞춤형 실용화 기술 개발 사업 ..	159
43. 조선해양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162
44. 중견조선소혁신성장개발사업	165
45.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전기자동차 개방형 공용 플랫폼사업	168

2019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안내

46. 지식서비스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171
47. 차세대하이드리드PCB기술개발	174
48. 창의산업미래성장동력사업	176
49. 창의산업전문기술개발사업	179
50. 첨단의료복합단지미래의료산업원스톱지원사업	182
51. 청정생산기반 산업공생 기술개발사업	186
52. 초절전LED융합기술개발사업	189
53. 친환경수소연료선박R&D플랫폼구축	191
54. 탄소산업기반조성사업	194
55. 포스트게놈다부처융전체사업	196
56. 표준안전기반구축사업	199
57.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	202
58.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	205
59. 현장수요 반영의료기기고도화기술개발사업	207

<KIAT(한국산업기술진흥원) 담당사업>

60. 3D프린팅 의료기기 산업기술 실증사업(R&D)	210
61. 광역협력권산업육성(R&D)	213
62. 광역협력권산업육성(R&D)(세종)	216
63. 권역별신산업육성사업	217
64. 글로벌중견기업육성프로젝트지원(R&D)	220
65. 기술성과활용촉진	223
66.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	226
67. 산업기술국제협력(R&D)	229
68. 산업기술혁신기반구축	232
69. 산업위기지역미래자동차종합안전시험장	235
70. 산업위기지역미래자동차핵심부품개발	237
71. 산업위기지역미래형전기차부품개발	239
72. 산업위기지역친환경고기능상용차특장차	241
73. 산업융합기반구축	243
74. 산업융합기술진흥사업	246
75.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R&D)	249
76. 산학융합지구조성(R&D)	251
77. 소재부품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R&D)	253
78. 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사업(R&D)	257

2019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안내

79. 시스템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R&D)	259
80. 시스템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R&D)	262
81. 안전산업경쟁력강화	266
82. 자동차부품기업활력제고사업	268
83. 중견기업 상생혁신 R&D 사업(R&D)	270
84. 중견기업 핵심연구인력 성장지원사업(R&D)	272
85. 중형선박설계경쟁력강화(R&D)	274
86. 지역대표중견기업육성사업(R&D)	276
87.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R&D)	279
88.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R&D)(세종)	282
89. 창의산업거점기관지원	284
90. 창의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R&D)	289
91. 청정제조기반구축	293
92. 해외 수주연계 항공부품산업 공정기술개발(R&D)	296
93. 혁신성장 글로벌인재양성(R&D)	299
94. 혁신조달연계형신기술사업화R&D	302

<KETEP(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담당사업>

95. 3D/4D 물리탐사연구선 건조사업	304
96. ESS기술개발사업	307
97. LNG발전용 가스터빈 고온부품 혁신기술개발사업	310
98. 고효율 바이오가스 생산 기반 지역 분산 발전 시스템 구축사업	313
99. 농어촌 대상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시스템 개발 및 실증사업	316
100. 멀티터미널직류송배전시스템개발사업	319
101. 미래형스마트그리드실증연구	322
102. 방사성폐기물관리기술개발사업	325
103. 석탄발전 미세먼지 저감 친환경설비 혁신기술개발사업	328
104. 수소융복합단지실증	331
105. 스마트그리드핵심기술개발사업	334
106. 스마트시티 에너지 통합관제 핵심 기술개발 사업	337
107. 신재생에너지 연계 신송전 70kV급 핵심기술개발사업	339
108.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사업	342
109. 신재생전원 확대와 전력계통 안정화를 위한 RMS 기술개발사업	345
110.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예특, 기금)	348
111. 에너지기술 수용성 제고 및 사업화 촉진 사업	351

2019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안내

112. 에너지기술정책수립사업	353
113.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사업	355
114. 에너지신기술표준화 및 인증지원사업	358
115. 에너지신산업 글로벌 인재양성	361
116. 에너지안전관리핵심기술개발사업	363
117. 에너지안전기술개발사업	366
118. 에너지인력양성사업(예특)	369
119. 에너지인력양성사업(전력기금)	371
120. 에너지자원순환기술개발	373
121. 원자력핵심기술개발사업	376
122. 원전 중대사고 방지 안전 강화 기술개발사업	379
123. 원전해체방폐물안전관리기술개발	381
124. 자원개발기술개발사업	384
125. 재생에너지 장주기 저장 및 전환을 위한 Power to gas 기술개발사업	387
126. 전력정보화 및 정책지원사업	390
127. 전력표준화 및 인증지원사업	393
128. 정부-공기업에너지R&D협력사업(R&D)	396
129. 지능형 LVDC(저압직류) 핵심기술개발사업	400
130. 첨단제품 전·후방산업의 순환자원 이용기술개발	403
131. 청정화력핵심기술개발사업	406

<기타 전문기관 담당사업>

132. 국제핵융합실험로공동개발사업	409
133. 공간정보 기반의 실감형 콘텐츠 융복합 및 혼합현실 제공 기술 개발	411
134. 공공혁신조달 연계 무인이동체 및 SW플랫폼 개발사업	413
135. 스마트 도로조명 플랫폼 개발 및 실증 연구	416
136. 민군기술협력사업	418
137.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	421
138. 중소중견기업 기술경쟁력강화 파트너십사업	423
139.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426
140. 다목적실용위성기술개발사업	429
141. 탄소자원화 범부처 프로젝트	431
142. 수상형태양광중합평가센터구축	433
143. 초소형전기차산업및서비스육성실증지원사업	435

I.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개요

1. 사업 개요

□ 산업, 에너지·자원 분야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 및 기술혁신주체 등이 참여하여 추진하는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함

1. 「법」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을 위한 사업,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자금 사업 등
2.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 「법」에 따른 민·군겸용기술사업
3.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법」에 따른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등
4.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산업발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에 따른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등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에 따른 산업집적경쟁력강화사업
6.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법」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조성사업(테크노파크사업)
7. 「전자거래기본법」, 「법」에 따른 전자상거래지원센터사업
8.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에 따른 부품·소재 기술개발사업 등
9.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국가정보화기본법」, 「법」에 따른 산학협력확산사업
10.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및 「에너지법」, 「법」에 따른 자원순환 및 산업에너지기술개발보급사업
11.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법」에 따른 기술이전·사업화촉진사업 등
12.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법」에 따른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
13. 「산업디자인진흥법」, 「법」에 따른 산업디자인기술개발사업
14.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법」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진흥사업
15. 「전기사업법」, 「법」에 따른 전력산업 관련 기술개발사업
16. 「에너지법」, 「법」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17.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법」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련 연구개발사업
1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
19. 그 밖에 장관이 산업, 에너지·자원, 정보통신 분야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관련 용어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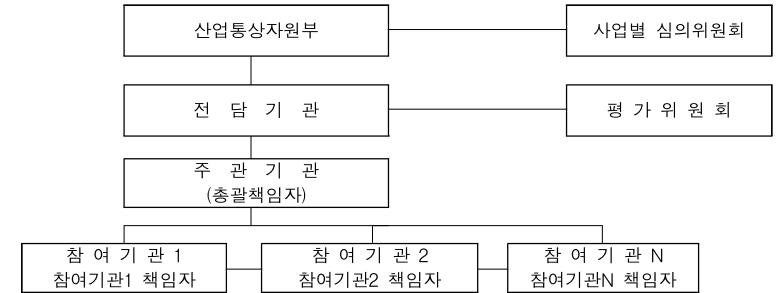
용 어	해 설
산업기술	「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산업,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와 관련한 산업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산업의 발전에 관련된 기술
산업기술혁신사업	산업, 에너지·자원 분야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 및 기술혁신주체 등이 참여하여 추진하는 사업(이하 “사업”)
기술혁신주체	산업기술혁신을 수행하는 기업·대학 및 연구기관 등
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의료기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함. 단, 그 개설자가 의료법 제3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전담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
장비관리전문기관	장관이 산업기술개발장비의 효과적인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법 제21조 제4항에 따라 지정한 기관
주관기관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총괄주관기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과제의 관리를 수행하는 주관기관
세부주관기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세부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기관
참여기관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참여기업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하며,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 ①“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 ②“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의 기업 ③“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수행기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수행과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장관이 지정하거나 선정하는 과제
총괄과제	총괄주관기관이 사업의 총괄 목표 달성을 위해 세부과제를 관리하는 과제
세부과제	총괄과제의 하부단위로 구성되어 세부주관기관이 수행하는 개별과제
총 수행기간	사업 시작일로부터 사업 종료일까지의 과제 수행 전체기간
수행기간	연도별로 협약을 체결하는 과제는 협약기간을 말하고, 여러 해를 묶어서 협약을

용 어	해 설
	체결하는 과제는 각 해당년도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간
사업비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출연금 및 민간부담금으로 구성되며, “총사업비”는 총수행기간 동안 소요되는 출연금과 민간부담금의 합계
출연금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수행기관에게 지급하는 소요경비
민간부담금	사업비 중 출연금을 제외한 비용으로 수행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현금과 현물로 부담하는 비용
산업기술개발장비	사업을 통해 도입되는 비소모적 자산을 말함. 다만, 사업수행의 성과물로서 제작되는 시작품 및 클린룸(Clean room)과 같은 공간 개념의 시설은 제외
장비통합관리	장비의 전략적 구축 및 활용 극대화를 위하여 장비전문기관이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구입비용이 소요되는 장비(모듈화된 장비는 실제 사용모듈 전체의 구입비용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기획부터 처분까지 전주기에 걸쳐 기획·평가·관리 등을 실시하는 것
정책지정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행과제와 그 수행기관을 장관이 지정하여 선정하는 방식
품목지정	장관이 품목을 지정하되 제시된 품목내에서 자유공모 방식으로 과제 및 수행기관을 선정하는 방식
지정공모	수행과제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관이 과제를 지정하되, 그 수행기관은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
자유공모	수행기관에 대하여 수행과제의 자유로운 신청을 허용하는 선정 방식
계속과제	총 수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제 중 연차·단계평가 등을 통해 계속 수행하기로 확정된 과제
문제과제	평가 결과가 중단 또는 불성실수행인 과제, 규정 위반 또는 협약 위배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과제
실시	사업수행결과를 사용(수행결과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대여 또는 수출하는 것
기술료	사업의 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실시권자가 국가, 전담기관 또는 사업수행결과와 소유권자에게 현금 또는 유가증권 등으로 지급하는 금액
정액기술료	협약 또는 실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부 출연금의 일정 비율로 계산한 기술료
경상기술료	협약 또는 실시계약에서 정한 착수기본료 및 매년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계산한 기술료
지식재산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에 관하여 법률로 정한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관계된 권리
기술실시계약	사업수행결과를 소유한 자와 사업수행결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
성과활용	사업 수행으로 발생하는 유·무형적 결과물을 실시하거나 활용하여 기술적·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연구부정행위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을 할 때에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 가. 수행자 자신의 사업수행 자료 또는 결과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부당한

용 어	해 설
	논문저자 표시를 하는 경우 나. 수행자 자신의 사업수행 자료 또는 결과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자료 또는 결과 등을 표절하는 행위 다.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수행을 하는 행위
산업기술R&D종합정보시스템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과제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전담기관 또는 수행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정보공동활용 및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구축·운영되는 통합정보시스템
실시간통합연구관리시스템	사업비의 투명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수행기관이 직접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을 통하여 사업비를 집행, 정산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
산업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 (또는 e-Tube)	장비의 기획, 도입심사, 구매, 등록, 이용, 관리, 처분 등 전주기를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장비전문기관이 구축·운영하는 시스템
국가기술은행 (NTB)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운영되는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 정보 등에 관한 정보관리시스템
비영리기관	대학, 연구기관 및 사업자등록번호의 법인 구분 코드가 '82'와 '83'인 경우와 설립근거 법률에 의거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을 정관에 명기한 법인(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의 경우는 영리기관으로 간주)
성과활용기간	과제종료 후 일정 기간 동안 완료과제의 수행결과 활용현황, 과금효과 등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는 기간(별도의 협약은 하지 않음)
사업기간	총수행기간에 성과활용기간을 합한 기간(단, 중단 등 과제 수행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못한 경우는 성과활용기간을 제외)
기초연구단계	특수한 응용 또는 사업을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아니하고, 현상 및 관찰 가능한 사실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단계
응용연구단계	기초연구단계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주로 실용적인 목적으로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독창적인 연구단계
개발연구단계	기초연구단계, 응용연구단계 및 실제 경험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 장치 및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이미 생산되거나 설치된 것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체계적 연구단계
그랜트형 과제	창의적 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발 목표 및 수행에 관하여 연구자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는 소형과제로서, 구체적인 수행 절차 및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함
원천기술형	제품에 적용 가능한 독창적·창의적인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혁신제품형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사전지원제외	신규과제 선정평가를 위한 사전검토 단계에서 중복과제 여부, 참여제한 여부, 신청자격 등에 대한 검토시 결격 사유가 있어 평가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수입금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 금액
수익금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 중 관련 소요비용을 제외한 순수입 금액
바우처제도	중소·중견기업의 오픈이노베이션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주관기관이 협약에서 지정하는 참여기관의 기술개발 진척상황이나 결과를 점검

용 어	해 설
	하고 이상 유무에 따라 바우처를 활용하여 해당 참여기관에 사업비가 지급되도록 하거나 지급을 유예시킬 수 있는 제도
비목	사업비 구성항목으로 직접비, 간접비(수행기관이 해당 과제를 수행하는 데에 공통적으로 들지만 개별 수행과제에서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 이하 같다)
세목	비목의 세부항목으로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간접비
현물	민간부담금 중 인건비,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등을 현금가치로 환산한 금액
참여율	참여연구원이 수행하고자 하는 과제에 참여하는 비율
사업비관리시스템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이하 "RCMS"라 한다) 또는 사업비종합관리시스템('사업비종합관리시스템'이라 함은 RCMS에 적용받지 않는 사업에 대해 사업비카드와 연계하여 사업비를 관리하는 시스템)
RCMS 운영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기술혁신사업에 관한 사업비의 통합 관리와 RCMS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지정한 기관
사업비카드	사업비관리시스템과 연계된 신용카드(전담기관에서 발급하는 연구비카드 또는 소속기관 법인카드)
지출원인행위	사업비 집행 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이월금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비 중 전담기관의 승인을 받아 불가피하게 차기년도로 이월하고자 하는 해당연도 사업비
정산	협약기간 동안 사용한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하여 관련요령 및 지침에 따른 적정성 여부 등에 관한 일체의 회계감사 행위
연차정산	협약기간 1년 단위 기준으로 연차별로 실시하는 정산
일괄정산	협약이 최종적으로 종료되는 시점에서 실시하는 정산
단계정산	단계협약 과제에 대하여 해당기간 또는 단계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실시하는 정산
위탁정산	전담기관이 지정한 외부전문기관(이하 "위탁정산기관"이라 한다)을 통해 실시하는 정산
집행잔액	연차별로 출연금과 민간부담금의 현금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
정산금	사업비 집행잔액과 이자, 정산결과 불인정금액의 합 중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금	문제과제에 대한 제재 및 환수기준에 따라 수행기관으로부터 환수하는 금액
전문위원회	산업기술혁신평가단을 활용하여 문제과제의 제재·환수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심의하는 위원회
전담연구인력	학사이상 졸업 후 대학에 소속된 자(4대보험과 재직증명서 발급 가능자)로서 연구를 전담하는 계약직 연구인력
연구지원전문가	중소·중견기업에서 기존인력 또는 신규 채용을 통해 연구비 관리·정산, 지적재산권 관리, 보고서 작성, 물품·기자재 구매 및 관리, 데이터 관리 등을 담당하는 R&D 지원 인력으로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완료한 자

2. 추진 체계



* 사업별 공모마다 추진체계는 상이할 수 있음

기 관	권한과 책임
전담기관	1. 사업 계획수립 지원 및 관련 정책연구 2. 기술수요조사 및 조사결과와 종합분석 3. 기술예측조사, 기술수준조사, 기술경쟁력분석 등 사전조사 4. 기술청사진, 기술로드맵 수립, 특허, 표준화 및 디자인 동향조사, 경제적 타당성 분석 및 수행과제 발굴 5. 신청계획서 검토·조정, 수행결과보고서 검토, 과제의 신규평가 및 수행결과의 평가 등 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업수행 실태점검, 사업비 지급 및 정산 등 사업의 수행관리에 관한 사항 7. 출연금의 환수 및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8. 사업의 성과분석, 성과의 관리·활용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9. 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사업의 보안 및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11. 사업 종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2. 기타 사업의 기획·평가·관리 등에 관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주관기관 및 주관기관의 장	1. 사업계획서 등 신청 서류 제출 2. 과제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2-1. 전담기관, 세부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간의 협약체결, 과제 수행에 대한 총괄관리 및 종합적인 관리(총괄주관기관의 경우) 3. 민간부담을 의무화 하는 사업의 경우 주관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의 부담 4. 과제 수행에 필요한 참여인력, 시설의 확보 및 행정지원 5. 사업비의 관리 및 사업비 사용실적의 보고 6. (연차·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의 제출 6-1. 총괄주관기관에 연차·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제출(세부주관기관의 경우) 7. 과제수행결과의 활용 및 성과활용현황보고서 등 제출 8. 기술료의 징수·사용·납부 및 그 실적의 보고 9.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자료 제출 10. 수행과제의 보안관리 11. 연구윤리 준수 12. 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 자료의 제공 13. 과제의 부정행위 등 문제 발생 시 전담기관에 통보 14. 성과활용기간 내에 성과 전시회 및 완료과제 발표회 참가 15. 연구노트의 관리
참여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	1. 수행과제의 공동 참여 및 협력 2. 과제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관리

기 관	권한과 책임
	3. 민간부담을 의무화 하는 사업의 경우 참여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의 부담 4. 과제 수행에 필요한 참여인력, 시설의 확보 및 행정지원 5. 사업비의 관리 및 주관기관의 사업비 사용실적의 보고 협조 6. 주관기관의 연차·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작성 지원 7. 과제수행결과의 활용 및 주관기관의 성과활용현황보고서 작성 등 협조 8. 기술료의 징수·사용·납부 및 그 실적의 보고 9. 주관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자료 작성 협조 10. 수행과제의 보안관리 11. 연구윤리 준수 12. 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자료의 제공 13. 과제의 부정행위 등 문제 발생 시 전담기관에 통보 14. 연구노트의 관리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	1. 사업계획서의 작성 2. 사업비의 사용 발의, 관리 및 집행 3. 과제 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 4. 수행과제의 연차·단계 결과보고서 및 최종 결과보고서, 성과활용현황보고서의 작성 및 결과 보고 5. 과제수행결과의 실시 등 성과활용 6. 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자료의 제공 7. 성과전시회 및 완료과제 발표회 참가 8. 세부과제별 추진상황의 점검 및 조정(총괄주관책임자의 경우) 9. 종합적인 기술개발 조정 및 감독 등(총괄주관책임자의 경우) 10.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산업기술혁신평가단 신청

3. 추진 절차(기술개발사업 기준)

가. 지정공모 사업의 경우

① 단기과제의 경우



※ 각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 자격, 정부출연금 지원 조건, 추진 방법 및 절차가 상이할 수 있음

1) : 연차별 정산과제의 경우에 해당

2) : 사업 공고시 기술료 징수 대상과제에 한함

② 중장기과제의 경우

해당 연도 추진방향 설정	산업통상자원부(전략기획단)
기술수요조사	전담기관
기획대상과제 도출	MD/기획위원회/PD
과제기획 수행 (기술/시장 및 특허·표준분석)	MD/기획위원회/PD
기획과제의 목표 검토	기획위원회/과제기획검증단
신규지원대상과제 및 예산(안) 심의·확정	사업별 심의위원회
신규 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사업계획서 접수	주관기관 → 전담기관
사전검토	전담기관
사전 서면검토	전담기관(평가위원회)
신청과제 평가	전담기관(평가위원회)
지원대상과제 및 사업자 확정	전담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선정과제 협약 체결	전담기관↔주관기관(참여기관)
연구발표회 또는 연차 평가	주관기관→전담기관→산업통상자원부
사업비 정산 ¹⁾	주관기관→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단계 평가 ²⁾	주관기관→전담기관→산업통상자원부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차기 단계 협약 체결 ³⁾	전담기관↔주관기관(참여기관)
최종 평가	주관기관→전담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기술료 징수 ⁴⁾	주관기관→전담기관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사후관리	주관기관→전담기관

※ 각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 자격, 정부출연금 지원 조건, 추진 방법 및 절차가 상이할 수 있음

1) : 연차별 정산과제의 경우에 해당 2), 3) : 단계협약과제의 경우에만 해당

4) : 사업 공고시 기술료 징수 대상과제에 한함

③ 대형선도과제의 경우

해당 연도 추진방향 설정	산업통상자원부(전략기획단)
대형선도과제 후보 도출	산업통상자원부(MD, PD)
대형선도과제 후보 확정	전략기획투자협의회
과제 기획 수행(기술, 시장, 특허, 표준 분석)	산업통상자원부(MD, PD)
대형선도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전략기획단)
신규사업공고	산업통상자원부
1단계 사업계획서 접수	주관기관 → 전담기관
1단계 사업수행자 선정	전담기관(평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부
1단계 협약 및 과제기획수행	전담기관↔주관기관(참여기관)
1단계 결과평가 및 2단계 사업수행자 선정	주관기관→전담기관→산업통상자원부
2단계 협약 및 사업수행	전담기관↔주관기관(참여기관)
연구발표회 또는 연차 평가	주관기관→전담기관→산업통상자원부
2단계 결과평가 및 3단계 사업수행자 선정	주관기관→전담기관→산업통상자원부
3단계 협약 및 사업수행	전담기관↔주관기관(참여기관)
연구발표회 또는 연차 평가	주관기관→전담기관→산업통상자원부
최종평가	주관기관→전담기관→산업통상자원부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기술료 징수 ¹⁾	주관기관 → 전담기관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사후관리	주관기관 → 전담기관

※ 각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 자격, 정부출연금 지원 조건, 추진 방법 및 절차가 상이할 수 있음

1) : 사업 공고 시 기술료 징수 대상과제에 한함

나. 자유공모 사업의 경우

신규 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개념평가	전담기관(평가위원회)
사업계획서 접수	주관기관 → 전담기관
사전검토	전담기관
사전 서면검토	전담기관(평가위원회)
신청과제 평가	전담기관(평가위원회)
지원대상과제 및 사업자 확정	전담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선정과제 협약 체결	전담기관↔주관기관(참여기관)
연구발표회 또는 연차 평가	주관기관→전담기관→산업통상자원부
사업비 정산 ¹⁾	주관기관→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단계 평가 ²⁾	주관기관→전담기관→산업통상자원부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차기 단계 협약 체결 ³⁾	전담기관↔주관기관(참여기관)
최종 평가	주관기관→전담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기술료 징수 ⁴⁾	주관기관→전담기관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사후관리	주관기관→전담기관

※ 각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 자격, 정부출연금 지원 조건, 추진 방법 및 절차가 상이할 수 있음

1) : 연차정산과제의 경우에 해당

2), 3) : 단계협약과제의 경우에만 해당

4) : 사업 공고 시 기술료 징수 대상과제에 한함

다. 품목지정 공모 사업의 경우

해당 연도 추진방향 설정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수요조사	전담기관
후보품목 발굴	MD/기획위원회/PD
후보품목에 대한 의견수렴 (인터넷 공시 등)	전담기관
지원 품목 및 예산(안) 심의·확정	사업별 심의위원회
신규 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개념평가	전담기관
사업계획서 접수	주관기관 → 전담기관
사전검토	전담기관
사전 서면검토	전담기관(평가위원회)
신청과제 평가	전담기관(평가위원회)
지원대상과제 및 사업자 확정	전담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선정과제 협약 체결	전담기관↔주관기관(참여기관)
연구발표회 또는 연차 평가	주관기관→전담기관→산업통상자원부
사업비 정산 ¹⁾	주관기관→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단계 평가 ²⁾	주관기관→전담기관→산업통상자원부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차기 단계 협약 체결 ³⁾	전담기관↔주관기관(참여기관)
최종 평가	주관기관→전담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기술료 징수 ⁴⁾	주관기관→전담기관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사후관리	주관기관→전담기관

※ 각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 자격, 정부출연금 지원 조건, 추진 방법 및 절차가 상이할 수 있음

1) : 연차정산과제의 경우에 해당 2), 3) : 단계협약과제의 경우에만 해당

4) : 사업 공고 시 기술료 징수 대상과제에 한함

라. 투자심사가 있는 사업의 경우



※ 각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 자격, 정부출연금 지원 조건, 추진 방법 및 절차가 상이할 수 있음

II. 산업기술혁신사업의 평가 및 관리

1. 사업 수요의 발굴 및 시행계획 공고

- 산업정책 및 기술동향 등을 고려한 사업별 지원분야 발굴을 위해 아래 사항을 실시
 1.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기술동향을 분석하고 전망하기 위한 기술예측조사
 2. 국내·외 기술 분야별 기술수준조사 및 기술경쟁력분석
 3. 중장기적으로 확보가 필요한 핵심기술을 도출하기 위한 중장기 기술로드맵의 수립
 4. 지원 과제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 등
 5. 기타 장관이 지원분야의 발굴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 공고 구분(공모 방식)
 - 각 사업에 따라 지정공모, 자유공모, 품목지정 등으로 지원과제 공고
 - 지정공모 : 기술수요조사 등을 통해 지원대상 분야를 발굴하여 공고
 - 자유공모 : 주관기관이 개발희망과제를 자유롭게 도출하여 신청
 - 품목지정 : 장관이 품목을 지정하되 제시된 품목 내에서 자유공모 방식으로 과제 및 수행기관을 선정
 - 정책지정 : 장관이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수행과제 및 수행자 지정
- 공고 내용
 1. 사업목적, 지원대상분야,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2. 사업 추진체계
 3. 사업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 기준
 4. 지원분야, 신청자격, 지원제외 처리기준
 5. 평가 절차 및 기준(우대 및 감점기준 포함)
 6. 근거법령 및 규정
 7. 신청 방법 및 기한
 8. 제출 서류 사항
 9. 사업의 전담기관(전담기관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는 기관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
 10. 과제의 보안등급(「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이하 “보안관리요령”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분류 기준 적용) 관련 사항
 11. 국외 소재 기업·대학·연구소 또는 단체 등(이하 “국외기관”이라 한다)의 사업 참여 여부 등 사업별 특성에 관한 내용
 12. 기타 사업계획서 심의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 공고 방법
 - 매년 초 시행계획을 통합 공고 후 각 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정보포털(itech.keit.re.kr), 산업기술R&D종합정보시스템(www.ernd.go.kr), 또는 각 해당사업의 전담기관 홈페이지, 해당 사업별 관리기관 홈페이지(문의처 참고), 언론매체 등에 공고
 - 공고시 접수방법, 접수기간, 접수처, 문의처, 기타 사업별 특성상 안내 사항 등에 대하여 제시

2. 사업의 신청 및 선정

○ 신청 자격

- ‘Ⅲ. 사업별 지원계획’의 각 사업별 신청 자격 참고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이 다르므로 반드시 개별 사업별 공고 참조

○ 신청기관 제출 서류

- 신청자격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별 공고시 정하는 서류 제출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이 다르므로 반드시 개별 사업별 공고 참조

○ 사업계획서 접수

- 사업별로 공고시 정하는 접수 방법(인터넷, 서류 접수 등)으로 과제를 접수

○ 사업계획서 평가 항목

- 사업계획서의 구비요건, 중복과제 여부, 참여제한 여부, 기타 신청자격 조건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평가대상 여부를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실태조사, 면담조사 등을 할 수 있음. 이때, 사업을 신청한 자는 자격조건의 사전검토 등을 위해 전담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협조하여야 함

1. 수행과제의 필요성, 목표, 내용 및 수행방법, 예상성과
2. 수행과제의 수행능력(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의 연구 능력 및 수행기관의 관리·지원능력, 연구윤리 수준 등 포함)
3. 수행과제의 추진방법·전략·체계 및 수행기관의 역할 분담
4. 과제 수행을 위한 시설 확보 정도 및 장비 구축 타당성
5. 사업비의 적정성 및 수행하는 기간의 타당성
6.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중복성(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같은 과제를 복수의 주관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및 계속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성실수행과제는 예외)
7. 사업 결과의 활용 가능성
8. 보안등급 분류의 타당성(「보안관리요령」 제9조제1항에 따른 분류 기준 적용 적정성 검토)
9. 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 이행계획의 적정성
10. 공지된 기술 및 지식재산권 존재 유무

※ 사업별 특성에 따라 평가 항목 및 지표가 상이하므로 개별 사업 공고 참조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선정 평가 방법 및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 공고를 반드시 참조 요망

3. 사업비의 산정

○ 사업비의 세목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 기준

세목	구분	내용														
인건비	사용 용도	○ 해당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내부인건비 : 수행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해당기관 소속 4대 보험 직장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외부인건비 : 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해당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 과제에 참여하는 타 기관 소속 연구원으로서 4대 보험 직장 가입자, 대학이 수행하는 과제에 참여하는 타교 학생 또는 프리랜서														
	산정 기준	○ 인건비 산정 기준 : (급여총액) × (해당 과제 참여율(%)) ○ 급여총액 기준 - 급여총액 : 해당기관의 인사규정과 취업규칙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해당기관 소속의 연구원이 근로기준법, 해당기관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의해 받는 1년 동안의 임금 총액으로써 4대 보험과 퇴직급여 총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을 포함 <급여총액 산정 기준>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구 분</th><th>급여총액 기준</th></tr> </thead> <tbody> <tr> <td rowspan="4">수행 기관에 소속된 자</td><td>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참여연구원</td><td>· 급여총액 중 동 요령 별표 2 또는 별표 3의 직접비 중 연구수당, 간접비 중 연구개발능력성과급,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한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은 제외</td></tr> <tr> <td>개인사업자인 수 행기관의 대표자</td><td>·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기준으로 하되, 소득이 없거나 상용근로자 월 평균급여(고용노동부 상용근로자 월평균 임금총액 기준, 통계청 국가지표체계(www.index.go.kr)에서 확인 가능) 이하인 경우는 상용근로자 월 평균급여에 따라 산정</td></tr> <tr> <td>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참여연구원</td><td>· 수행기관이 해당 연구원에 대해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급여(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제외)에 따라 산정</td></tr> <tr> <td>기타</td><td>· 전담연구인력 인건비 산정 기준은 학생연구원 산정 기준 이상으로 하되, 학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산정</td></tr> <tr> <td colspan="2">수행기관이 아닌 외부기관 에 소속된 자</td><td> · 원 소속기관이 있는 경우 : 원 소속기관의 장이 과제에 참여함을 확인하는 확인서(서식 제1호)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원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라 산정 (중복 지급 불가) · 원 소속기관이 없는 경우(프리랜서) : 수행기관과 체결한 계약서에 명시된 인건비 지급 기준에 따름 </td></tr> </tbody> </table> ○ 참여율 기준 - 원칙 : 참여율은 해당 참여연구원이 해당과제에 실제 투입되는 비율 기준으로 산정하며, 수행 중인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함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경우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은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경우 기본사업(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	구 분		급여총액 기준	수행 기관에 소속된 자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참여연구원	· 급여총액 중 동 요령 별표 2 또는 별표 3의 직접비 중 연구수당, 간접비 중 연구개발능력성과급,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한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은 제외	개인사업자인 수 행기관의 대표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기준으로 하되, 소득이 없거나 상용근로자 월 평균급여(고용노동부 상용근로자 월평균 임금총액 기준, 통계청 국가지표체계(www.index.go.kr)에서 확인 가능) 이하인 경우는 상용근로자 월 평균급여에 따라 산정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참여연구원	· 수행기관이 해당 연구원에 대해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급여(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제외)에 따라 산정	기타	· 전담연구인력 인건비 산정 기준은 학생연구원 산정 기준 이상으로 하되, 학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산정	수행기관이 아닌 외부기관 에 소속된 자	
구 분		급여총액 기준														
수행 기관에 소속된 자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참여연구원	· 급여총액 중 동 요령 별표 2 또는 별표 3의 직접비 중 연구수당, 간접비 중 연구개발능력성과급,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한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은 제외														
	개인사업자인 수 행기관의 대표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기준으로 하되, 소득이 없거나 상용근로자 월 평균급여(고용노동부 상용근로자 월평균 임금총액 기준, 통계청 국가지표체계(www.index.go.kr)에서 확인 가능) 이하인 경우는 상용근로자 월 평균급여에 따라 산정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참여연구원	· 수행기관이 해당 연구원에 대해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급여(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제외)에 따라 산정														
	기타	· 전담연구인력 인건비 산정 기준은 학생연구원 산정 기준 이상으로 하되, 학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산정														
수행기관이 아닌 외부기관 에 소속된 자		· 원 소속기관이 있는 경우 : 원 소속기관의 장이 과제에 참여함을 확인하는 확인서(서식 제1호)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원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라 산정 (중복 지급 불가) · 원 소속기관이 없는 경우(프리랜서) : 수행기관과 체결한 계약서에 명시된 인건비 지급 기준에 따름														

세목	구분	내용					
현금/ 현물 계상 기준		술연구소 등이 정관에 따라 그 설립목적에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함(해당기관은 총 소요 인건비의 100%를 초과하지 않도록 인건비 지급 총액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 관련 용도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해당 금액과 사용계획, 사용 후 집행내역을 다음해 4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 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사업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의 참여연구원이 신규과제로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참여율 100% 초과 가능함. 이 경우 수행과제와 중복되는 기간은 인건비를 중복 산정하지 아니함 · 인건비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정책지정 과제의 참여연구원 참여율을 포함한 경우 참여율 100% 초과 가능함 · 출연연에서 파견 등의 사유로 외부기관에 소속되어 그 기관의 과제를 수행하는 참여연구원(기술인재 지원사업의 기업지원 연구직)의 참여율을 포함한 경우 참여율 100% 초과 가능함					
		○ 원칙 :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100% 지원받는 참여연구원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계상이 원칙 - 기업소속의 참여연구원 -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 -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파견 등의 사유로 외부기관에 소속되어 그 기관의 과제를 수행하는 참여연구원(기술인재지원사업의 기업지원 연구직) ○ 단, 다음의 경우는 인건비 현금 계상이 가능함 - 수행기관(연구기관 및 대학) 소속 참여연구원 :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100% 지원받지 못하는 아래에 해당 하는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소속의 참여연구원 -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 - 수행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참여연구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춘 경우(외부인건비 중 현금 인정 가능)					
		<table><tr><th>구 분</th><th>현금 계상 조건</th></tr><tr><td>원 소속기관이 있는 경우</td><td> · 원 소속기관이 비영리기관이고, 소속 기관장이 해당 연구원의 과제 참여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서식 제1호)를 제출하는 경우 · 국외기관에 소속된 사람이 해당과제의 외부연구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td></tr><tr><td>원 소속기관이 없는 경우</td><td> · 프리랜서 : 개인사업자 등록여부 또는 수입여부와 관계없이 수행기관과 체결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td></tr></table> - 수행기관(기업) 소속 참여연구원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협약시점에 산정하거나 또는 해당연도 수행기간 시작 시 미리 산정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금 계상이 가능함. 단, 현금 계상 요건이 유지되는 기간 내에서만 현금 집행 가능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사업공고일 전 6개월부터 각 과제종료 시점 사이에 채용한 연구원은 총 수행기간에 걸쳐 신규인력으로 간주)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이때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서식 제2호)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 중소·중견기업이 공통운영요령 제26조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기본채용 청년인력 및 제25조제6항에 따라 추가로 신규채용한 청년인력(미리 계획하지 않은 인원에 대해 당해연도 수행기간부터 현금 집행 가능)의 인건비. 타 용도로 변경(전용) 불가 ·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 소속 기존인력의 인건비 ·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로 신청하여 평가위원회에서 인정된 경우 해당과제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이 경우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범위는 별표 제1호에 따름 · 기술력 제고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대학부설연구소(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	구 분	현금 계상 조건	원 소속기관이 있는 경우	· 원 소속기관이 비영리기관이고, 소속 기관장이 해당 연구원의 과제 참여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서식 제1호)를 제출하는 경우 · 국외기관에 소속된 사람이 해당과제의 외부연구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원 소속기관이 없는 경우
구 분	현금 계상 조건						
원 소속기관이 있는 경우	· 원 소속기관이 비영리기관이고, 소속 기관장이 해당 연구원의 과제 참여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서식 제1호)를 제출하는 경우 · 국외기관에 소속된 사람이 해당과제의 외부연구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원 소속기관이 없는 경우	· 프리랜서 : 개인사업자 등록여부 또는 수입여부와 관계없이 수행기관과 체결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세목	구분	내용				
연구인건비		호중 또는 대학의 직제규정에 있는 연구소만 해당)에 파견되어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협약시 또는 해당연도 수행기간 시작 시 연구개발서비스신고증을 제출한 경우)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두뇌전문기업으로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해당 두뇌산업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화사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 <u>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중견 기업의 경우 정부출연금의 50% 이내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u> · 기타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분야. 이 경우 지급범위와 지급기준은 해당사업을 공고하는 때에 별도 지정함 - 수행기관(기타 비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기술 분야의 비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금 계상 가능 - 그밖에 장관이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내 과제 수행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금 계상이 가능함				
	사용용도	○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 소속 기관의 학생연구원(전문학사·학사·석사·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수료 후 연구생으로 등록한 경우 포함)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을 포함 - 대학과의 협약을 통해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에서 학점 등을 인정해주는 학연협동 과정으로 석사·박사과정을 수행중인 학생연구원에 지급되는 인건비 포함 - 대학(원)에 소속되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6개월 이상의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과제를 수행하는 학생연구원에 지급되는 인건비 포함				
	산정기준	○ 학생인건비 산정 기준 : (학생인건비 지급기준 금액) × (참여기간(월)) × (참여율(%)) ○ 학생인건비 지급기준 금액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금액 이상으로 해당기관에서 정한 금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고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산정 <학생인건비 세부 산정 예시> <table><tr><th>구분</th><th>세부 산정 예시</th></tr><tr><td>학생 연구원</td><td> - 박사후과정 : 소속 기관의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름 - 박사과정 : 2,500천원/월 - 석사과정 : 1,800천원/월 - 학사이하 : 1,000천원/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금액이 변동되었을 경우에는 차년도 수행기간부터 적용 </td></tr></table> - 해당 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man-month)을 기준으로 산정 ※ man-month 총액 : 한 사람의 1개월 작업량을 기준으로, 과제수행을 위해 한 사람을 온전히 투입해야 하는 기간에 따른 소요비용 총액	구분	세부 산정 예시	학생 연구원	- 박사후과정 : 소속 기관의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름 - 박사과정 : 2,500천원/월 - 석사과정 : 1,800천원/월 - 학사이하 : 1,000천원/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금액이 변동되었을 경우에는 차년도 수행기간부터 적용
	구분	세부 산정 예시				
학생 연구원	- 박사후과정 : 소속 기관의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름 - 박사과정 : 2,500천원/월 - 석사과정 : 1,800천원/월 - 학사이하 : 1,000천원/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금액이 변동되었을 경우에는 차년도 수행기간부터 적용					
현금/현물 계상 기준	○ 원칙 : 대학의 학생인건비는 현금으로 계상. ○ 단, 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 등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 받는 자가 '학생연구원'으로 과제에 참여할 경우에는 인건비의 계상없이 학생연구원으로서 과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학생연구원의 타 기관(기업) 취업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연구시설·장비 및	사용용	○ 해당과제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				

세목	구분	내용
재료비	도	- 대 경비 등 - 해당 과제의 최종연도(단계협약의 경우 단계협약 최종연도 포함) 종료 2개월 전까지 납품이 완료되어 해당과제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해당 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범용성 장비는 제외) - 기술기반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조성비 등 포함 - 시약 및 재료의 구입비, 전산처리·관리비 -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 경비
	계상/산정 기준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 수행기관이 보유 또는 생산·판매하는 장비·시약·재료비에 한하여 현물 계상 - 수행기관이 보유 또는 생산·판매하지 않는 장비·시약·재료의 구입비는 현금 계상 ○ 연구장비 및 연구시설은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구입의 경우 현금 산정, 사업별 별도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장비는 구입계획서 작성 필수 - 외부임차의 경우 임차기관의 임차료 기준을 기준으로 현금 산정(수행기관 간 임차(사용)의 경우의 임차료(사용료)와 수행기관 자체 임차(사용)의 경우의 임차료(사용료)는 현물로 계상) - 현물의 경우 해당연도 수행기간 시작일 기준으로 구입한지 5년 이내에 한해 구입가의 20%이내로 산정하며, 내용연수 만료일이 해당연도 수행기간 종료일 이후여야 함 - 단, 중소기업이 참여연구원으로 신규인력을 채용한 경우에는 30%까지 현물 산정 가능 (다수 과제에 투입된 동일 장비 및 시설은 현물 산정 총액이 구입가의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상기에도 불구하고, 기반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토지, 건물, 건축조성비 및 해당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해 기획·설계·건설·완공 후 운영 등 추진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자문 또는 관리를 수행하는 종합사업관리 관련 비용 등을 산정할 수 있음. 단, 토지, 건물, 건축조성비 및 종합사업관리 관련 비용과 관련된 사항은 아래를 적용함 ※ 토지, 건물, 건축조성비 및 종합사업관리 관련 비용은 기반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에 한 산정하며 출연금으로 산정이 불가능함 ○ 구입의 경우 민간부담금 현금으로 산정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협약 시 필수적으로 제출 ○ 임차 또는 기보유한 경우 민간부담금 현물로 산정하며, 토지 및 건물의 공인감정가격 20% 이내로 매년 편성 가능함 ○ 시약 및 재료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구입의 경우 실 소요금액으로 현금 산정 - 수행기관이 보유 또는 생산·판매하는 시약 및 재료 투입은 현물로 산정. 이때 현물가액은 수행기관의 구입한 금액 또는 생산·판매가로 책정된 금액으로 산정 ○ 전산처리 및 관리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현금 산정하되, 과제 이외 기관전체 전산처리 및 관리비 산정 불가 ○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를 자체 제작할 경우 동 항목에 계상이 불가하며, 필요한 내역은 인건비와 재료비 등에 반영해야 함. 단, 수행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이 제작할 경우 현금 계상이 가능하며 제작기관의 견적서, 용역계획 등을 근거로 산정 - 수행기관 보유 시제품·시작품은 자산으로 등재된 경우 현물로 산정 가능하며 기준단가는 자산등록 가격으로 계상 ○ 수행기관 내부보유 및 수행기관 간 장비·시설·공간에 대한 사용료·임차료는 현금 산정 불가(수행기관 간 사용료와 임차료의 현금 지급 금지) ○ SW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필요한 SW구입비 현금 산정 가능(과제 성격 및 업종별 특성에 따라 평가위원회에서 인정 여부 심의) ○ 범용성 장비(PC,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기기)는 영리기관의 경우 협약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경우에 한해 인정 가능하며, 비영리기관은 협약시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자체 규정의 구매

세목	구분	내용
연구활동비		- 절차를 통한 집행 인정 ○ 범용성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는 협약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경우에 한해 인정 (과제 성격 및 업종별 특성에 따라 평가위원회에서 인정 여부 심의) ○ 과제수행과 관련 없는 사무기기, 장비 및 시설의 유지보수비는 현금 산정 불가 ○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국외 여비
	사용 용도	○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비, 공공요금(전기료, 수도료, 전화료에 한함), <u>우편요금</u>, <u>택배비</u>,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 훈련비, 도서 등 문헌 구입비, 회의 및 세미나 장소 사용료,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논문게재료 등 ○ 과제에 직접 활용되는 기술의 도입을 위해서 실제 지급한 기술도입비 ○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 및 표준 정보조사비, 정보DB 및 네트워크 사용료, 창의 활동비, 사업화전략 및 엔지니어링 컨설팅 비용, 디자인 정보조사·개발 및 컨설팅 비용(디자인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소프트웨어 품질검증비, 품질컨설팅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 세부(단위)과제가 있는 경우 해당 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해외 체재비
	계상/산정 기준	○ 국외 여비는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며,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 적용 -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 항공료, 체재비, 여권/비자 발급 수수료, 여행자 보험 등을 포함하여 실제 필요한 경비 산정 -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국외 출장여비 기준에 따라 산정 불가 - 과제수행과 관련 없는 국외여비는 산정 불가 ○ 인쇄, 복사, 공공요금 및 제세, 수수료(한전, 통관 등)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공공요금은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을 포함하여 산정 - 신문 공고료 등의 수수료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위탁정산 수수료는 별도 기준을 참고하여 산정하며, 주관기관 사업비에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단, 주관기관이 제16조제3항 각 호의 기관인 경우 참여기관 사업비에 반영) ○ 전문가 활용비는 수행기관 자체 기준에 따라 산정하며 참여연구원이 아니며 수행기관 소속이 아닌 전문가에게 현금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자문의 경우 수행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 전문가에게 지급되는 비용으로 여비를 포함하여 현금 산정 가능 - 위원회 운영의 경우에는 수행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위원회를 운영할 경우에 현금 산정 가능하며, 수당, 여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 가능 - 중소기업인 주관기관은 사업시작일로부터 2년 내에 특허대용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특허 전문가 활용비를 계상하여야 하며, 특허 전문가 활용비는 다른 항목으로 전용(변경) 불가함. 단, 주관기관이 자체 특허분석 조직을 보유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 국내외 훈련비, 문헌 구입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정보 DB 및 네트워크 사용료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학회·세미나 참가비, 학회활동비는 과제수행과 관련한 범위로 한정하며, 중신성 및 개인성 학회비 산정, 기관 전체 사용목적 등을 확대집행 불가 - 정보 DB 및 네트워크 사용료는 수행기간 동안 과제관련 정보 DB 및 네트워크 사용에 대한 비용 산정

세목	구분	내용
		- 회의 및 교육·세미나 개최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되, 강사료, 등 일부 항목에 대해 수행기관 자체 기준이 마련된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산정 -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동비, 회의관련 인쇄비 등에 한해서만 산정 (회의 관련 식대, 다과비는 연구과제추진비에서 산정) - 세미나 개최비는 과제수행 관련 세미나 개최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산정하며, 강사수당 (여비포함), 세미나 개최와 관련되는 인쇄비, 장소임차비(숙박이 있을 경우 숙박비 포함) 등을 포함하여 산정(세미나 관련 식대, 다과비는 연구과제추진비에서 산정) - 수행기관 소속 강사의 경우 강사료 현금 산정 및 집행 불가 -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는 수행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게 의뢰하여 수행할 경우에 한하며, 외부기관의 기준단가 또는 계약단가 등을 적용하여 산정 -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한하여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을 제외한 소속기관 인력에 지급하는 강의료, 원고료 등은 협약시 정한 예산범위 내에서 산정 가능 - 기술도입비는 평가위원회에서 해당 과제의 수행에 직접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술의 도입에 한하여 산정이 가능하며, 협약시 현물과 현금 산정은 아래 기준을 적용해 산정 - 현물산정시 : 기술별 실제 지급한 도입비의 50% 이내 (사업신청 마감일 전 2년 이내 인정) - 기술매매 : 기술도입 기지급 실소요 금액, M&A시에는 해당 기술만의 가치평가 비용 - 기술 라이선싱(전용/통상 실시 포함) : 기지급된 금액으로 과제수행기간 종료 전까지 사용되는 기술의 라이선싱 비용 (계약금, 착수료, 경상기술료 등 실지급액) - 현금계상시 : 해당 과제 목표 달성을 위해 과제 수행기간 중 도입할 기술의 실지급 비용 - 창의활동비 - 참여연구원의 창의적 아이디어 도출을 위한 이중학문간 지식교류 및 융합을 위한 활동비로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 공고 시 인정한 경우에 한해서 산정 - 사업화전략 및 컨설팅 비용 - 표준연계 과제의 경우 표준화 활동에 소요되는 예산(1억원 이내)을 계상하여야 하며, 다른 항목으로 전용(변경) 불가함 -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 중 디자인 개발 등과 같은 창작과 관련되는 분야에 한정하여 산정하며, 수행과정 전 단계에 걸친 창작관리 및 전략수립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산정 - 과제수행 결과물에 대한 사업화 전략 및 제품개발 등에 따른 기획·생산·영업·판매 등을 위한 컨설팅 등을 협약기간내 추진하는 경우에 산정하며, 외부기관과의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 연구인력 활용비 - 연구인력 활용 및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인턴십, 장학금, 멘토링 지원비, 기술인력 공급 등의 비용으로 산정 - 과제 수행과 관련된 시험·분석·검사(시험평가방법 개발 및 자문 포함),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 및 표준 정보조사·분석·확보전략 수립 등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는 수행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 한해 기준단가 또는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현금 산정 - 수행기관 간 현금 거래(타 부서 또는 타 수행기관 소속 전문가 등) 집행은 불가 - 수행기관 중 비영리연구기관에 한하여 기관 자체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 결과서를 발행하는 시험분석료는 자체 사업비에서 현금 책정 가능 - 해외 기술정보 수집을 위한 비용은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과제 신청시(협약기간 이전)에 소요된 선행특허조사 또는 특허동향조사 비용은 선정된 과제에 한하여 사업비로 지급 가능 - 사업관리비는 별도의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과제 또는 공동수행과제가 있는 경우 사업의 조정 및 관리의 명목으로 산정 - 소프트웨어 품질검증비, 품질컨설팅비 - 소프트웨어 품질검증, 소프트웨어 품질의 확보 및 관리 등을 위한 컨설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산

세목	구분	내용
		정하며, 외부기관과의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 연구활동비 사용 시 기준 및 범위는 수행기관 자체 기준에서 정한 규정을 인정한다. - 해외 체재비는 국제공동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해외 파견시 발생하는 주택보존비, 국외이전비(항공료 포함), 의료보험료를 포함하며 수행기관 자체 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기준 단가를 적용하고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되 참여율을 적용(해외체재비=체재비 산정내역(자체기준 단가 또는 실소요 금액) X 참여율) - 일비, 식비는 포함하지 않음 - 참여 연구원의 가족은 포함하지 않음
	사용용도	- 참여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 - 회의비 (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동비는 제외) - 과제 수행과 관련된 초과 근무 시 식대(평일 점심식대는 제외) -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연구과제추진비	- 사업계획서에 사용용도별 세부내역을 기재하여 직접비(현금 및 현물)의 10% 이하로 산정 하되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 총괄과제는 본 제한 규정의 적용을 예외로 함. 사업별 시행계획 또는 장관이 인정한 경우 그에 따라 산정할 수 있음 - 국내 여비는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며,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을 적용함 -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등을 포함하여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되, 운임은 대중교통 수단의 범위를 초과하여 산정할 수 없음 -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국내 출장여비 기준에 따라 산정 불가 - 과제수행과 관련 없는 국내 여비 산정 불가 -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을 의미하며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함 - 세미나 개최비 중 식비와 다과비는 실 소요비용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목적, 일시, 장소, 내용 등이 기재된 관련서류(내부품의서 또는 회의록)를 갖추어야함 - 연구과제추진비 사용 시 기준 및 범위는 수행기관 자체 기준에서 정한 규정을 인정
	연구수당	- 사용용도 - 해당과제 수행과 관련된 총괄책임자(참여기관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 계상/산정기준 - 연구수당은 과제수행과 관련된 총괄책임자(참여기관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한 비용으로 인건비(현물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20% 범위에서 산정하되, 아래 기준에 따라 산정 - 기술개발 사업 : 20% 이내 - 기술개발 이외의 사업은 10%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기술개발의 성격이 있는 과제에 대해서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술개발사업 수준의 연구수당을 지급 가능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협약시 산정한 인건비(연차협약이 아닌 경우 해당연도 수행기간 시작시점에 산정한 인건비도 그에 해당)의 10% 이상을 연구수당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타 용도로 변경하여

세목	구분	내용													
		사용할 수 없고 잔액 발생시 반납하여야 함													
		○ 개인별 연구수당의 최고액은 해당 과제에서 해당 연구원이 지급받은 인건비 총액의 50% 이내로 하며, 해당 수행기관 연구수당 지급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단, 참여연구원이 2인 이하는 예외로 하며,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경우 학생인건비를 지급받는 참여연구원에겐 '해당 과제에서 해당 연구원이 지급받은 인건비 총액의 50% 이내' 적용은 예외로 함) ○ 상기 기준에도 불구하고 아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연구수당 산정이 불가능함 - 총괄-세부과제 형태의 사업에서 과제의 총괄관리를 수행하는 총괄주관기관인 경우 - 장관이 산업기술혁신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에 위탁한 사업 ○ 수행기관은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사업의 특성, 참여율 및 연구성과 기여도 등을 반영해서 연구수당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하여 과제 참여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단, 협약예산(연차협약이 아닌 경우 해당연도 수행기간 시작시점에 산정한 예산도 그에 해당)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음. 단, 협약예산에서 10% 미만으로 연구수당을 산정한 중소·중견기업이 최소 비율(10%)을 준수하기 위한 경우에는 예외 함 - 기술개발사업은 실질행 인건비(현물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20% 이하 - 기술개발사업 이외의 사업 : 실질행인건비(현물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10% 이하로 하되, 평가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 각 평가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감액 또는 미지급													
		<table><tr><th>구분</th><th>평가결과</th><th>연구수당</th></tr><tr><td rowspan="2">연차 또는 단계평가</td><td>중단(성실수행) 조기종료(성실수행)</td><td>협약 금액에서 50% 감액</td></tr><tr><td>중단(불성실)</td><td>미지급</td></tr><tr><td rowspan="2">최종평가</td><td>성실수행</td><td>협약 금액에서 50% 감액</td></tr><tr><td>불성실수행</td><td>미지급</td></tr></table>	구분	평가결과	연구수당	연차 또는 단계평가	중단(성실수행) 조기종료(성실수행)	협약 금액에서 50% 감액	중단(불성실)	미지급	최종평가	성실수행	협약 금액에서 50% 감액	불성실수행	미지급
구분	평가결과	연구수당													
연차 또는 단계평가	중단(성실수행) 조기종료(성실수행)	협약 금액에서 50% 감액													
	중단(불성실)	미지급													
최종평가	성실수행	협약 금액에서 50% 감액													
	불성실수행	미지급													

※ 신청기관은 사업계획서의 비목별 상세 내역 작성시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참조 요망

○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출연금의 지원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 공고 참조 요망

수행기관 ¹⁾ 유형	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²⁾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중견기업 ³⁾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중소기업 ⁴⁾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그 외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 2)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의 기업임
-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업별 심의위원회 심의 또는 사업별 시행계획을 공고할 때 지원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정책적으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공고할 때 사업별 또는 과제별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정부출연금 배분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아래 제5호의 경우에는 상기의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을 80% 이하로 할 수 있다.

1.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2.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을 위한 사업
3.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4. 그 밖에 원천기술형 또는 혁신제품형으로 과제유형이 분류되지 않는 사업 또는 과제
5.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 중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과제

- 여러 개의 세부과제가 하나의 과제를 구성하는 경우, 세부과제 단위로 출연금 지원 기준을 적용
- 총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은 변경될 수 있음

○ 민간부담금 현금부담 기준

- 사업별 특성에 따라 민간부담현금의 부담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 공고를 참조
- 수행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현금이나 현물로 부담함. 이 경우 연차협약 과제는 해당년도 협약할 때에 부담하며, 일괄 협약 또는 단계별 협약의 경우에는 수행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정부출연금 지급을 요청하기 전에 부담함. 수행기관은 사업비의 일부를 출연금으로 지원 받을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비율은 아래표를 따름. 다만, 사업별 심의위원회 심의 또는 사업별 시행계획 공고시 부담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음.

수행기관 유형	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4. 협약 체결 및 사업비의 관리·사용

-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전담기관의 장이 주관기관의 장 및 참여기관의 장과 협약 체결
 1. 과제명, 협약 기간 및 성과활용기간
 2. 총괄책임자 및 수행기관에 관한 사항
 3. 사업비의 지급, 사용,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4. 과제수행결과와 보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6. 연구장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
 7. 기술료에 관한 사항
 8. 성과물의 귀속(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의 직무발명에 대한 승계를 포함한다)·활용 및 이전에 관한 사항
 9. 협약 위반시의 제재·환수에 관한 사항
 10. 성과의 등록·기탁에 관한 사항
 11. 연구윤리 준수 및 연구부정행위 방지에 관한 사항
 12.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13. 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 성과 및 참여인력 등 사업 관련 정보의 수집·활용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14.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5. 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 이행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협약은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적용하여 체결할 수 있으며,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연장하여 적용할 수 있음
 1. 연차별 협약 : 수행기간을 1년 이하의 단위로 체결하는 협약
 2. 일괄 협약 : 총 수행기간(1년 초과) 전체에 대해 일괄로 체결하는 협약
 3. 단계별 협약 : 총 수행기간을 2~4년 단위의 여러 개 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로 체결하는 협약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시 신규과제 또는 계속과제의 협약체결을 중지할 수 있음
 1. 협약 체결 전 과제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2. 평가결과를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3. 민간부담금 현금을 입금하지 않는 경우
 4. 협약기한 이내에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해당 과제의 신청자격 또는 수행자격을 결격이 있는 경우
 6. 투자심사대상사업의 투자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 협약 변경의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함

1. 승인사항

- 주관기관의 변경
- 최종 목표의 변경
- 총괄책임자의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의 변경
- 참여기관의 변경(추가, 수행포기 등 포함)
-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건당 단가금액이 3,000만원 이상인 장비 또는 연구시설을 원래 계획 없이 새로 집행하거나 원래 계획과 다른 장비 또는 연구시설로 변경(원래 계획된 장비 또는 연구시설을 구입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
- 수행기간 또는 협약기간 변경
- 협약한 사업비 대비 수행기관별 사업비 총액의 변경
- 연차별 정산의 경우 사업비 이월
- 기반조성사업으로 구축된 장비를 당초 협약서에 명시된 전용공간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 하고자 하는 경우
- 에너지기술 실증사업의 실증설비를 당초 협약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전용공간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 하고자 하는 경우

2. 통보사항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주소(연락처), 대표자, 명칭의 변경
- 참여연구원 및 참여율의 변경(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학생연구원은 제외하며, 참여연구원 참여율 10% 이상 요건 등 관련 규정상 요구조건을 만족하여야 함)
- 총수행기간 종료 후 사업기간 내의 총괄책임자 변경
- 영리기관의 간접비 증액(해당 영리기관 직접비(현물제외)의 10% 이내)
- 사업비 계좌의 변경

○ 협약 해약의 사유

1. 기 수행 되었거나 진행 중인 다른 과제와 내용이 중복되게 수행하는 경우
2. 민간부담금의 미부담, 보고서 미제출 등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사업비를 횡령·편취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유용한 경우
4. 사업 수행이 지연되거나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6. 연차·단계·최종평가 결과 중단 또는 불성실 수행 평가를 받은 경우 그밖에 문제과제로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7.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등에서 부도·법정관리·폐업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

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사업계획서 또는 제출 서류가 허위로 확인된 경우
9. 과제의 평가에 응하지 않는 경우
10.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 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11.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된 경우
12.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장비 등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13. 보안관리가 허술하여 중요 연구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과제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4. 민간투자유치를 의무화하는 사업에서 투자계약이 변경·무효화·양도된 경우
15. 제4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16. 총괄책임자가 다른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에서 제44조에 따라 사업비의 용도 외 사용 등의 사유로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

○ 출연금의 지급

- 장관은 출연금을 사업의 규모, 착수시기, 정부의 재정사정 등을 감안한 사업비 집행계획에 따라 매년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함
- 그 밖에 출연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을 따름

○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 사업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통장 및 계정에 관리하여야 하며, 국가 연구개발사업 과제를 10개 이상 수행하는 비영리 연구기관은 하나의 통장을 사용할 수 있으나, 각 과제별로 계정을 두어 관리하여야 함
- 수행기관의 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사업비를 관리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시 수행기관은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을 따름
-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을 이용한 사업비 사용 및 관리 가능

5. 사업 결과의 평가 및 사업비의 정산

○ 평가의 유형 및 기본원칙

- 수행 사업의 평가를 위한 평가 유형은 연차평가, 단계평가, 최종평가, 특별평가임
- 평가를 시행한 결과 “문제과제에 대한 참여제한 및 환수”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주관기관의 장은 평가결과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평가대상 과제의 규모 등 사업별 특성에 따라 절대평가, 상대평가 또는 이들을 혼합한 혼합평가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하거나 하위 등급 과제의 경우 중단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수행기관의 장은 과제를 수행하면서 국가공동관리규정 제29조제1항에 따른 「연구노트지침」에 따라 연구노트를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현장실태조사시 제시하여야 함. 이때, 기술개발사업 이외 사업의 경우 교육일지·장비일지 등 사업별 특성을 반영한 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음
- 일괄 협약, 단계별 협약을 체결한 과제는 연차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장관은 평가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과제별,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진도점검

-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에 표시된 진도점검 시점 또는 전담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 서식에 의한 진도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이때 외부환경 변화 등에 의한 목표 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목표 변경 등을 위한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음
- 전담기관의 장은 보고서를 제출 받아 면담조사 또는 현장실태조사 또는 연구발표회 등의 방법으로 과제의 진도점검을 실시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연차평가 또는 단계평가에 반영할 수 있음
- 전담기관의 장은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특별평가를 실시하여 과제의 중단 여부 등을 결정 할 수 있음

○ 연차평가

- 주관기관의 장은 해당연도 과제 종료일 1개월 전까지 별도 서식에 의한 연차보고서(전자 파일을 포함한다) 및 자체보안관리진단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이때 연차별 협약 과제에 대해서는 차년도 사업계획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전담기관의 장은 보고서를 점검하거나 현장실태조사 또는 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계속”, “중단(성실, 불성실)”, “조기종료(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로 판정함.

- 중단(성실) 판정은 수행기관에 대하여 해당 과제에 관한 참여제한 또는 정부출연금 환수 사유가 없는 경우만 적용함
- "중단(성실)" 또는 “중단(불성실)”으로 판정된 과제는 평가결과의 통보로써 협약이 해약된 것으로 봄

○ 단계평가

- 주관기관의 장은 단계 협약 종료일 1개월 전까지 별도 서식에 의한 해당 단계보고서 및 다음 단계 계획서(전자 파일을 포함한다), 자체보안관리진단표를 함께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단계보고서 및 다음단계 사업계획서 등에 대하여 현장 실태조사 및 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계속”, “중단(성실, 불성실)”, “조기종료(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로 판정함
- 전담기관의 장은 단계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해당 과제의 국내·외 특허동향, 기술동향 및 표준화·디자인 동향(표준화 또는 디자인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사업화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그 단계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음

○ 특별평가

- 전담기관의 장은 과제 수행 도중이라도 수행기관의 갑작스러운 경영악화, 수행 지연, 규정상의 협약 해약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의심되는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등에는 과제 중단 여부 또는 기타 추가적 조치를 취하기 위한 특별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전담기관의 장은 과제가 종료 된 후라도 종전 과제 평가 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사업비의 횡령, 편취 및 유용, 연구부정행위, 기타 규정상 협약 해약 사유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특별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 종료시까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비 사용정지 등 필요한 임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그밖에 특별평가 절차 및 기준에 관하여는 관련 규정을 준용

○ 최종평가

- 주관기관의 장은 과제가 종료된 때에는 과제 종료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별도 서식에 의한 최종보고서(전자 파일을 포함한다)와 자체보안관리진단표를 함께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전담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를 제출 받을 경우에 과제의 성격에 따라 국·공립기관, 정부출연·보조기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첨부하게 할 수 있음
- 전담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에 대하여 현장실태조사 또는 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 “불성실수행”으로 판정
-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등급 및 평가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음

- 전담기관의 장은 제4항과 관련하여 필요시 성과제고를 위해 기술성 평가와 사업화 평가로 분리하여 실시 할 수 있음

6. 사업의 사후관리 및 성과활용

○ 성과물의 귀속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함.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 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 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 다음의 경우에는 유무형적인 결과물에 대하여 국가 소유로 할 수 있음
 -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 사업수행결과를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연구개발 성과물을 소유하게 될 기관이 국외에 있는 경우
 - 수행기관 중 영리기관이 직접 실시하고자 하는 성과물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 기타 수행기관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

- 기술료율,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식에 대해서는 사업별 공고시 별도 안내됨
- 사업수행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공개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과제, 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과제에 대해서는 공고를 통해 기술료 비징수 과제로 지정할 수 있음
- 비영리기관은 실시기관의 장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기술료 징수율과 징수 방법 등에 관해서는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정할 수 있음
- 기술료 비징수 과제의 성과물을 소유한 수행기관은 해당성과물의 실시기관으로 부터 기술료를 징수하여서는 아니됨. 다만, 기술이전 등에 소요되는 실소요 경비는 예외로 함
 - ※ 수행기관은 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에 대해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을 참조하여야 함

○ 사업 종료 후 활용 보고 및 평가

- 주관기관의 장은 한국산업기술평화원의 장이 정한 별도 서식에 의한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해부터 5년간 매년 2월 말까지 전담기관에 제출해야 함. 다만, 장관은 사업별 특성 및 미래창조과학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조사, 분석 및 평가 일정에

따라 제출 마감일을 조정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 “중단” 및 “불성실수행”인 과제 등 성과 활용현황보고서 제출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음

○ 사업 보안

- 수행기관의 장은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결과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안조치
 - 과제수행관련 정보·연구시설 등에 대한 보안조치
 - 과제수행내용 및 수행결과의 대외발표시 보안조치
 - 과제 수행에 사용되는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조치
- ※ 수행기관 및 전담기관은 사업 보안에 대해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 요령」을 참조하여야 함

○ 연구윤리의 확보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및 단체, 연구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그 절차 및 방법 등이 연구윤리에 위배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 ※ 수행기관 및 전담기관은 연구윤리 확보 및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을 참조하여야 함

○ 문제과제에 대한 참여제한·환수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단체, 기업 또는 소속임직원에게 대하여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해당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신규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이때 해당과제가 각 호의 사항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을 5년까지 합산할 수 있으며, 둘 이상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던 중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로 인하여 참여제한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른 연구개발과제로 인하여 다시 참여제한을 하는 경우 그 기간의 기산일은 진행 중인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 날로 하여야 한다.
 - 과제 수행이 극히 불량 또는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미흡하여 평가에 따라 중단 또는 불성실수행으로 결정된 경우
 -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연구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 연구개발 자료 및 결과의 위조·변조·표절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수행성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수행기관 외에 임직원 또는 총괄책임자, 연구원, 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기관 또는 개인 명의로 출원·등록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지식재산권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수행성과물인 지식재산권 자료를 다중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협약이 해약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 정산금 또는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과제수행 결과보고서(진도실적·연차·단계·최종보고서), 원인보고서, 수행보고서, 사업비 사용실적

- 보고서 또는 성과활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 사업비를 횡령·편취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유용한 경우
-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수입금 또는 수익금을 협약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시설·장비 등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단, 성과 활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협약상 부담하기로 한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
- 민간투자유치를 의무화하는 사업에서의 투자계약이 변경·무효화·양도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과제를 수행한 경우
- 그 밖에 협약에 대한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7. 관련 법령 및 규정

- 법(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 에너지법
 - 소재·부품전문기업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기타 근거 법령
- 요령(고시)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평가관리지침(예규)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인력양성 평가관리지침
 - 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사업화 평가관리지침
 - 산업기술혁신사업 지역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 에너지기술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

Ⅲ. 사업별 지원계획

※ 지원규모 및 추진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별 공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AI 기반 자율주행 컴퓨팅 모듈 개발 및 서비스 실증사업

1. 개요

- 초연결 자율차 융합산업 육성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의 자율주행 기능 구현을 위한 컴퓨팅 모듈과 인지·통신·판단 솔루션 모듈 확보 및 기술 실증

2. 지원대상분야

- 자율주행차 표준 AI 컴퓨팅 모듈 개발, 자율주행 인지·통신·판단 솔루션 시스템 SW 개발, 자율주행차 AI 솔루션 차량 탑재 실증 및 자율주행차 AI 융합기술 표준화 활성화 등

3.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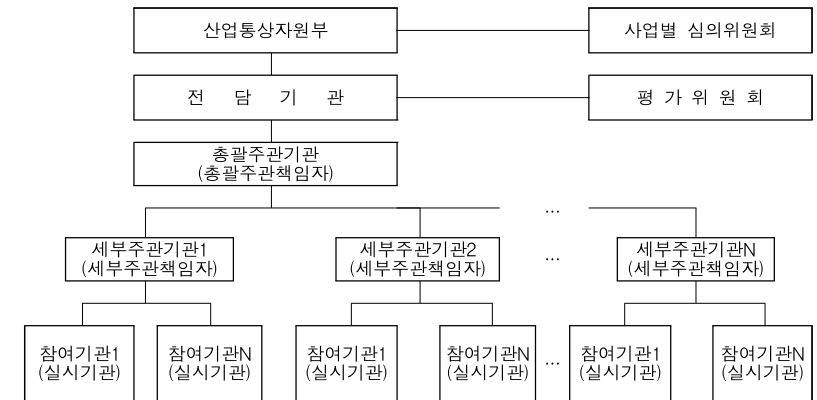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4.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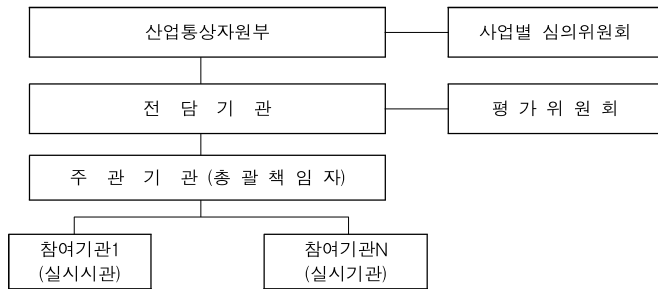
- RFP의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단독 또는 산, 학, 연 간의 공동개발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 형태로 지원
- 총 기술개발기간 3년 이내 지원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통합형, 병렬형 과제)



○ 추진체계(일반형 과제)



○ 추진절차

과제기획	PD	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IT)	사업계획서 접수
		신규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연구발표회·연차평가	전담기관(KEIT)	연구발표회(일괄협약 및 단계협약), 평가위원회
단계·최종평가	전담기관(KEIT)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담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담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8. 11월 ~ '18. 12월	'19. 1월 ~ '19. 2월	'19. 3월 ~ 4월	'19. 4월 ~ 5월

※ 상기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7. 지원규모 : 66.24억원 (신규 66.24억원)

8. 중점 추진사항

- 개방형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자율주행차 AI 컴퓨팅 모듈, 인지·통신·판단 솔루션 SW, AI 솔루션 실증, 표준화 등 4대 전략과제를 범부처 역할분담을 통해 추진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경쟁률	-	-	-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정부출연금	-	-	-

11.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 : ☎ 044-203-4321, pic0722@motie.go.kr (www.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수송플랫폼팀 : ☎ 053-718-8474, sjyoon@keit.re.kr (www.keit.re.kr)

2. CDM기반 정밀의료데이터 통합 플랫폼 기술개발사업

1. 개 요

- 공통데이터모델(CDM)의 국내 표준모델 제시, 호환 방안 및 규약개선 마련과 CDM 활용 연구를 통해 개인정보유출 우려가 없는 의료데이터 기반의 공공·산업적 연구 활성화

2. 지원대상분야

- CDM 표준모델 제시 및 규약개선
 - CDM 표준안 마련 및 국제 표준화, 국제화방안 등
- 민간 CDM 플랫폼 구축 및 산업계 활용 기술 개발
 - CDM 분산형 바이오옴스 통합 플랫폼 확장 및 고도화 및 확산 기술 등

3.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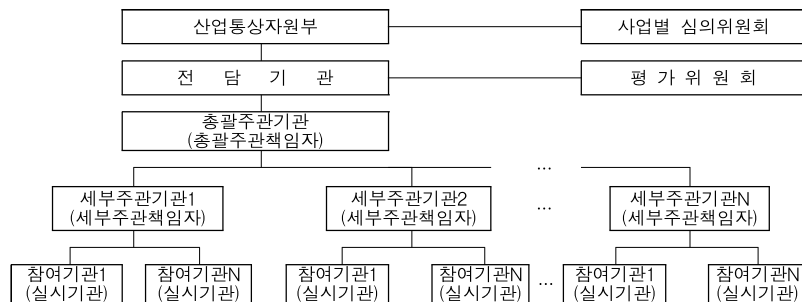
- 기업, 대학, 연구소, 병원 등

4.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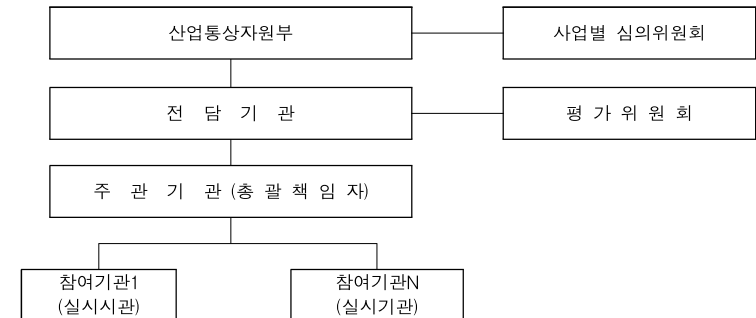
- CDM 민간영역에서의 활용을 위한 플랫폼 구축과 CDM에 대한 표준모델 연계, 등 효율적 지원을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 및 신산업 창출
 - CDM 국내 표준모델 제시, 국제 호환 방안 및 국제개선안 마련 등
 - 병원내 표준 데이터 모델 전환 및 구축, CDM기반 비즈니스 모델 실증 및 의료기관 CDM 구축과 바이오 빅데이터 활용 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통합형, 병렬형 과제)



- 추진체계(일반형 과제)



* 상체계는 내역사업별 다소 상이할 수 있음(구체적인 사항은 내역사업별 공고문 참조)

- 추진절차

사업기획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IT)	신규사업기획
과제기획	PD(KEIT)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검증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사업계획서 접수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IT)	신규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진도점검·연차평가	전담기관(KEIT)	평가위원회
단계·최종평가	전담기관(KEIT)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담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정책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담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 상체계는 내역사업별 다소 상이할 수 있음(구체적인 사항은 내역사업별 공고문 참조)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8. 9월 ~ '18. 12월	'19. 1월 ~ '19. 2월	19. 2월 ~ '19. 3월	'19. 4월

7. 지원규모 : 50.46억원 (신규 50.46억원)

8. 중점 추진사항

- 정밀의료데이터 CDM 구축과 CDM기반 다양한 서비스 개발을 통한 산업계 활용을 집중 지원

9.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나노과 : ☎ 044-203-4395, hgw0008@korea.kr (www.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바이오나노융합팀 : ☎ 053-718-8233, chy9577@keit.re.kr (www.keit.re.kr)

3. i-Ceramic 제조혁신 플랫폼사업

1. 개 요

- 지능정보기술 기반 세라믹 제조혁신 플랫폼 개발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세라믹 제조업간 협력 체계 구축으로 신산업 발굴 및 육성 지원

2. 지원대상분야

- 세라믹 유연·분산공정 빅데이터 기반 제조혁신 플랫폼 구축
- 세라믹산업 제조혁신을 위한 빅데이터 클라우드 플랫폼 개발

3.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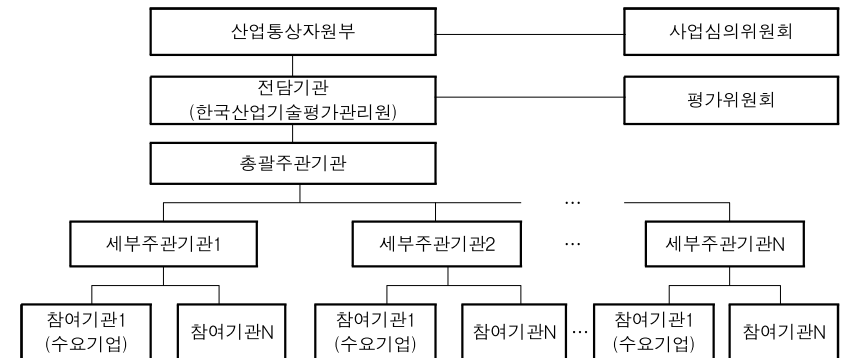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협회, 병원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 과제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은 상이할 수 있으며, 상세 내용은 해당 신규공고 시 안내 예정

4. 지원내용

- 공모방식 : 지정공모
- 지원기간 및 금액
 - 총 기술개발기간 3년 이내, 과제 특성에 따라 차등 지원 (신규공고 시 RFP 참조)
 - 출연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 형태로 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통합형



○ 추진절차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8. 9월 ~ '18. 11월	'18. 12월 ~ '19. 2월	'19. 2월 ~ '19. 3월	'19. 4월

7. 지원규모 : 37억원 (신규 37억원)

8. 중점 추진사항

- 세라믹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라믹공정 빅데이터 기반 제조혁신 플랫폼 구축 기술개발 지원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 신규사업으로 해당사항 없음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 신규사업으로 해당사항 없음

11.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섬유세라믹과 : ☎ 044-203-4295, oh8075@motie.go.kr (www.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섬유화학금속팀 : ☎ 053-718-8395, yangms@keit.re.kr (www.keit.re.kr)

4. IoT가전 기반 스마트홈 실증형 기술개발사업

1. 개요

- 국내 스마트홈 산업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스마트홈 핵심 서비스와 기술 개발 지원
 - 스마트홈 시장을 조기활성화 시키기 위한 킬러서비스 발굴·실증
 - 기축 주택에도 적용 가능한 보급형 스마트홈 모델 개발·실증
 - 사회적 약자 대상 사회복지형 스마트홈 서비스 발굴·실증

2. 지원대상분야

- IoT가전 기반 스마트홈 서비스와 기술 개발 및 실증 관련 분야
 - 이업종*간 협업으로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과 같이 체감효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홈 서비스를 개발하고 대규모 실증 추진
 - * 건설사(주거환경)+통신사(통신서비스)+홈넷사(홈 인프라)+가전사(스마트가전)
 - ** 공동주택 공용부 서비스(에너지절감, 보안), 기축·개별세대 서비스(상황인지)
 - IoT·AI 등 신기술을 생활복지서비스와 융합하여 고독사 방지, 건강관리 등 사회복지형 스마트홈 서비스를 개발하고 실증 추진

3.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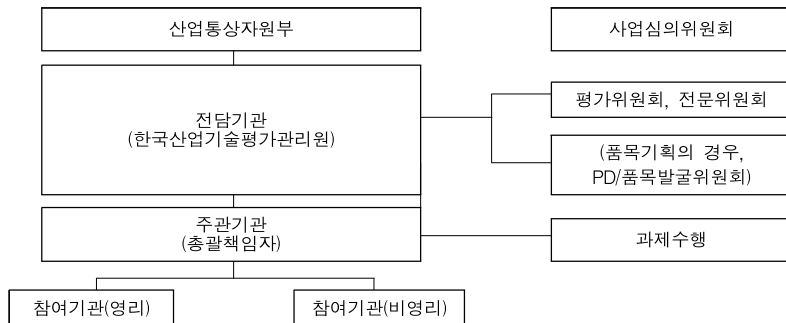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4. 지원내용

- 스마트홈 시장 활성화와 확대를 위해 필요한 국민체감형 핵심 서비스를 발굴하고, 서비스 구현을 위한 스마트홈 보급형 모델 개발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8. 7월 ~ '18. 12월	'18. 12월 ~ '19. 1월	'19. 2월 ~ 3월	'19. 4월

※ 세부사업 공고시 자세한 추진일정 등 참고(상기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7. 지원규모 : 32.9억원 (신규 32.9억원)

8. 중점 추진사항

- 스마트홈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핵심 서비스와 기술 개발 및 실증

9.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전자전기과 : ☎ 044-203-4345, kihong@motie.go.kr (www.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전자전기팀 : ☎ 053-718-8493, athome@keit.re.kr (www.keit.re.kr)

5. 국가표준기술개발 및 보급

1. 개 요

- 기술선도 및 융·복합기술 분야 등에 대한 국가·국제표준 개발과 표준화 기반구축 등을 통해 수출 시장 선점을 건인
- 산업기술 분야 참조표준의 체계적 개발과 보급·확산을 통해 기술개발 비용 및 기간 단축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

2. 지원대상분야

구 분	지원대상 분야
국가표준기술력향상	- 표준화연구개발 : 연구개발을 통해 표준을 개발하고, 국제표준화기구에 국제표준을 제안하여 DIS(CDV) 등록까지의 과제 수행을 지원 - 표준기반조성 : 우리 기술·제품의 선도적 국제표준화를 이끌기 위한 표준전략, 인력양성 등 기반조성을 지원
국가참조표준데이터개발·보급	- 참조표준데이터 개발 : 국내·외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생산한 데이터를 검증하여 공인 데이터화하는 과제 수행을 지원 - 참조표준 보급 : 참조표준을 연구·제품에 활용하기 용이하도록 가공하여 제공하고, 활용 컨설팅 등 사업화를 지원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협회, 조합), 의료기관, 학회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수행기관 등
- ※ 내역 사업별 지원대상은 공고 시 별도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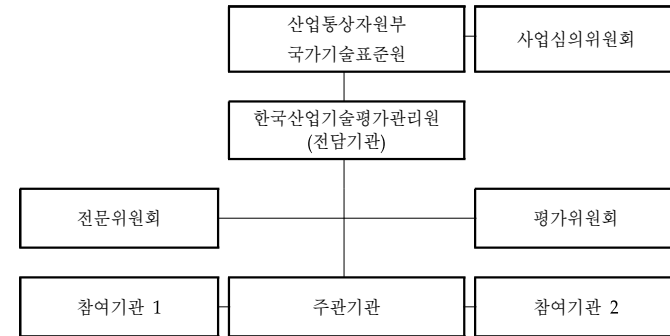
4. 지원내용

구 분	지원 내용
국가표준기술력향상	해당년도 사업비의 100%까지 정부출연금(무담보·무보증·무이자) 지원
국가참조표준데이터개발·보급	해당년도 사업비의 100%까지 정부출연금(무담보·무보증·무이자) 지원

※ 수행기관은 민간부담금(현금+현물) 매칭 관련 현금부담 의무 비율이 없으며, 자율적 책정 가능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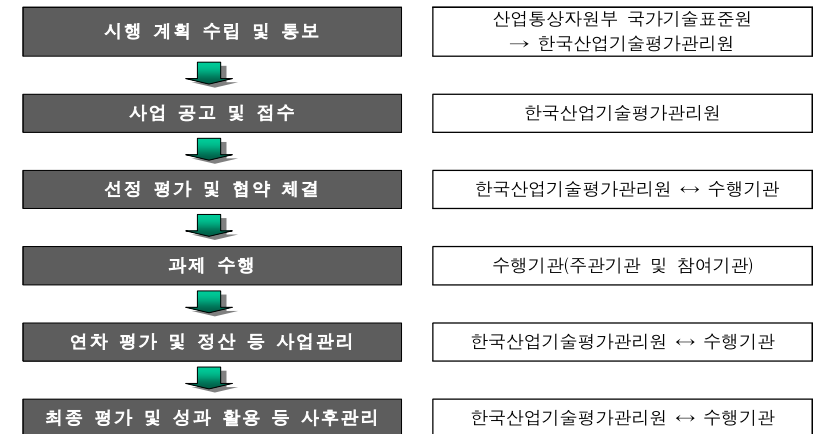


※ '주관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과제 선정 후 협약은 '전담기관-주관기관-참여기관' 간 함께 「RCMS 적용 전자협약」을 체결함

○ 추진절차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8. 12월 ~ '19. 1월	'19. 1월~2월	'19. 3월	'19. 4월

※ 내역 사업에 따라 추진일정은 공고 시 별도 안내

7. 지원규모 : 305.3억원 (신규 43.18억원, 계속 262.12억원)

(단위 : 억원)

구 분	신 규	계 속	합 계
국가표준기술력향상	21.92	252.12	274.04
국가참조표준데이터개발·보급	21.26	10.0	31.26
합 계	43.18	262.12	305.3

8. 중점 추진사항

-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제표준 개발·제안 및 표준강국 실현을 위한 표준화 활동, 표준의 이행확산, 전문가 양성 등 표준기반조성을 중점 추진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가 전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 참조표준 데이터 개발 및 보급, 국가참조표준 DB 구축 및 운영을 중점 추진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1.83 : 1	2.2 : 1	2.1 : 1
국가참조표준데이터개발·보급	-	-	2.2 : 1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구 분	2016년	2017	2018
국가표준기술력향상	186백만원	135백만원	121백만원
국가참조표준데이터개발·보급	2,400백만원	155백만원	542백만원

11. 문의처

사업명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043-870-내선번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053-718-내선번호)	
	소관과	연락처	담당팀	연락처
국가표준기술력향상	표준정책과	5345	표준인증평가팀	8254
국가참조표준데이터개발·보급	표준정책과	5345	표준인증평가팀	8251

6. 국민안전감시및대응무인항공기융합시스템구축및운용사업

1. 개 요

- 재난 현장에서 운용 가능한 재난·치안 임무용 무인기 기체 및 운용에 필요한 통신수단, 안전운항 핵심기술, 무인기 운용 및 관리 체계 개발

2. 지원대상분야

- 재난·치안용 무인기 공통플랫폼 기술개발

3.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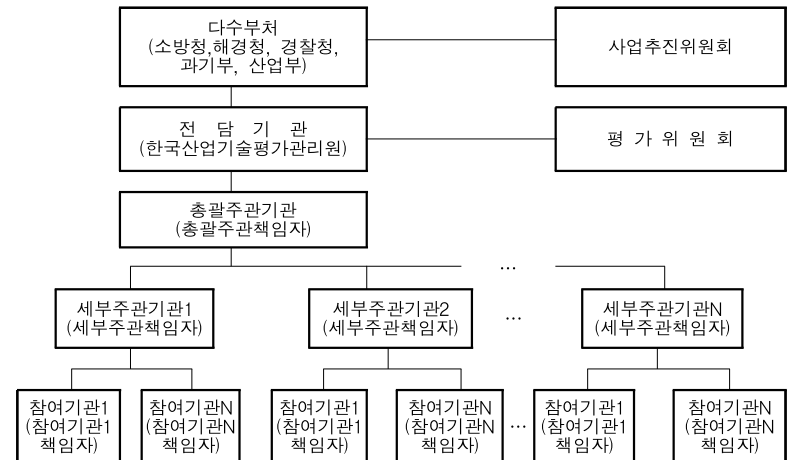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4.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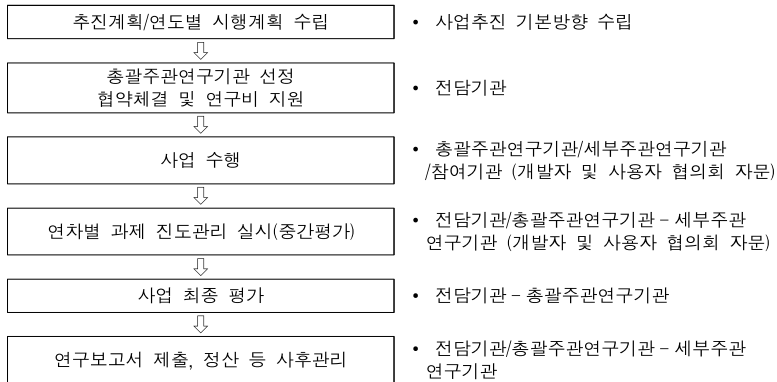
- 재난·치안용 무인기 공통플랫폼 기술개발 지원
- 총 기술개발기간 3년 이내 지원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통합형, 병렬형 과제)



○ 추진절차



6. 추진일정 : 신규지원 예정없음

7. 지원규모 : 38.39억원 (계속 38.39억원)

8. 중점 추진사항

- 재난·치안용 소형무인기 시스템(공동플랫폼 등) 상세설계 및 시제품 제작 지원
- 재난·치안용 소형무인기 시스템 통합, 지상/비행시험 및 통합시험평가 지원
- 재난·치안용 소형무인기 시스템 수요부처* 운용성평가 지원

* 수요부처 : 국민안전처 소방(소방청), 국민안전처 해경(해경청), 경찰청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경쟁률	-	3 : 1	-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정부출연금	-	687.8백만원	-

11.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 : ☎ 044-203-4326, www.twcom@motie.go.kr (www.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수송플랫폼팀 : ☎ 053-718-8478, choijs@keit.re.kr (www.keit.re.kr)

7. 국민안전증진기술개발사업

1. 개 요

- 국민전체가 체감할 수 있으며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안전제품 개발 및 국가 안전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국민안전을 확보하고, 관련 중소·중견기업 육성으로 안전산업의 활성화 추진

2. 지원대상분야

- (공공사회안전기술) 국민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보호해주는 안전 서비스를 고도화함으로써 국민안전을 직·간접적으로 확보
 - ①범죄예방기술, ②소방안전기술, ③해양안전 및 구조·조난기술
- (국민생활안전기술) 국민의 일상생활 또는 근접한 거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위험 및 위해요소들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
 - ①가정·학교 안전기술, ②산업현장 안전기술, ③레저 등 외부활동 안전기술

3.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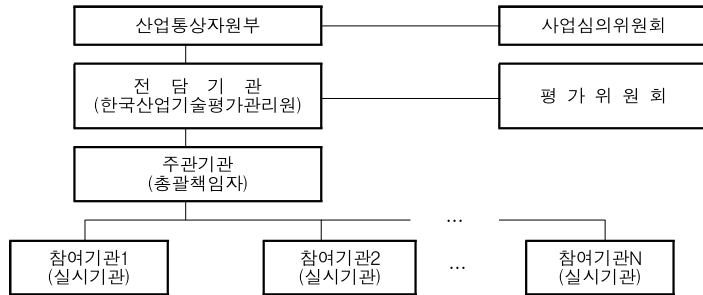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협회, 병원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의 실시기관으로 하며, 외국 소재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4. 지원내용

- 공모방식 : 품목/자유공모
- 지원형태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매칭
 - 수행기관은 총사업비에서 정부출연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민간부담금(현금+현물) 매칭 부담
- 지원기간 및 금액 : 3년 이내, 정부출연금 최대 4억원/년 이내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6. 추진일정 : 신규지원 예정없음

7. 지원규모 : 5.32억원 (계속 5.32억원)

○ 사회문제해결형 다부처공동사업 : 계속(5.32억원)

8. 중점 추진사항

- 국민안전 증대를 위한 핵심제품 개발로 안전기술혁신 지원 및 사업화 확대
 - 국민안전에 위한 핵심기술 개발성과의 양적, 질적 우수성 제고
 - 수요자 중심의 핵심기술/제품/서비스 개발을 통해 지속가능한 국민 안전 확보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경쟁률	22.9 : 1	21.3 : 1	188 : 1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정부출연금	346.7백만원	153.5백만원	238백만원

11.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엔지니어링디자인과 : ☎ 044-203-4233, mji84@motie.go.kr (www.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바이오나노융합팀 : ☎ 053-718-8242, immorter@keit.re.kr (www.keit.re.kr)
: ☎ 053-718-8227, jhjang@keit.re.kr

8. 기계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1. 개 요

-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수출 주력산업의 기반인 제조기반생산시스템(첨단장비, 첨단기계)과 산업 활용도 및 시장수요가 큰 연구장비의 국산화를 위한 핵심기술개발 지원

2. 지원대상분야

- 제조기반생산시스템
 - 정밀가공시스템, 나노·마이크로 생산시스템, 섬유기계 관련 전용 제조장비와 타 산업의 설비 및 장비를 제공하는 기반산업인 건설기계, 농기계, 승강기, 기계요소부품 분야
- 연구장비
 - 산업 활용도 및 시장수요, 기술적 파급효과 등이 큰 분석장비, 계측장비, 시험장비 등 분야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 세부과제별 지원대상은 공고 시 별도 안내

4. 지원내용

- 지원조건 : 과제당 연간 10억원 내외, 총 개발기간 3~5년
 -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일반형)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IT)	사업계획서 접수
		신규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진도점검·연구발표회	전담기관(KEIT)	평가위원회
단계·최종평가	전담기관(KEIT)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담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담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8. 9월 ~ '18. 11월	'18. 12월~'19년 2월	'19. 2월~3월	'19. 4월

※ 신규과제 지원 기준이며 추진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7. 지원규모 : 476.12억원 (신규 93.57억원, 계속 382.55억원)

구 분	신 규	계 속	합 계
제조기반생산시스템	93.57	382.55	476.12
연구장비	-	-	-

(단위 : 억원)

8. 중점 추진사항

- 기계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에서 '15년 이래 추진해온 ① 스마트 장비 시스템, ② 융복합 기계 시스템, ③ 친환경 산업기계 등 3대 전략기술 개발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 일단락하기 위해 조기 진행이 필수적인 핵심 신규 과제 지원
- ① (스마트 장비 시스템) 기존 과제를 통해 개발한 기초 기술을 통합·고도화하여, 시장 수요가 성숙한 분야를 중심으로 스마트 시스템 및 모듈 시장 진입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 ② (융복합 기계 시스템) 유연전자소자, 극초정밀 생산 기술, 융합 산업 기계 기술개발 완료를 통해 단계적으로 시장확대·경쟁력 확보가 가능하고 중국 등에 의해 시장잠식이 우려되는 핵심 생산장비, 특수목적기계 개발 지원
- ③ (친환경 산업기계) 유럽 StageV('19년 발효), 미국 Tier5('20년 발효) 및 CO2 규제 등 발효가 임박한 환경규제에 대비하여 기술의 적기 대응을 위한 교두보 기술개발 지원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경쟁률	1.95 : 1	-	1.6 : 1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정부출연금	717백만원	-	936백만원

11.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과 : ☎ 044-203-4311, ykkim08@motie.go.kr (www.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기계로봇팀 : ☎ 053-718-8460, jonghyuk@keit.re.kr (www.keit.re.kr)

9. 나노융합2020사업

1. 개 요

- 나노기술의 연구개발 성과와 기업의 제품 아이디어를 연계, 조기 사업화로 신시장·신산업을 창출 (과기정통부·산업부 공동지원사업)

2. 지원대상분야

- 우수 연구성과 사업화 지원 사업
 - 공공부문(대학 및 연구소)이 정부지원 연구사업을 통하여 획득한 나노기술(특허화된 기술)을 기업의 수요(신제품 개발 또는 생산성 향상 아이디어)로 연결하여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 현안해결 나노기술 매칭지원 사업
 - 나노기술 제품을 자체 개발 중에 있는 기업이 제품개발 현장에서 부딪히는 긴급한 기술현안에 대하여 최적의 전문가를 찾아 기술을 매칭함으로써 기술현안의 신속한 해결을 지원하는 사업

기술 분야	세부기술 영역	관련 기술
나노소자	- 나노소자 - 나노센서	- 나노소자/나노소자용 소재 및 공정(전자/광/자기 소자) - 나노센서/나노센서용 소재 및 공정
나노유연소자	- 잉크소재 및 관련 기술 - 기판(필름) 소재 및 관련 기술 - 응용시스템 및 공정 기술 - 기타 관련 나노기술	- 원료소재(나노분말 등), 분산공정(표면처리 등), 코팅공정 등 - 고전도성/고투명도/높은 표면경도 등 - 나노유연소자 기반의 응용시스템 관련 공정 및 장비 등
고효율 에너지변환	- 태양전지 관련 나노기술 - 에너지 절약/하베스팅 - 에너지 저장 - 기타 관련 나노기술	- 소재 및 공정 기술 - 시스템 기술 - 이외 고효율 에너지변환과 관련된 나노기술
고성능 물 환경/자원 처리	- 수처리용 소재/부품 기술 - 기타 환경친화 자원처리 기술	- 기능소재/부품 기술(흡착/여과/분리/분해 기능) - 이외 환경친화 자원처리와 관련된 나노기술
나노바이오 융합	- 의료진단기기/진단용 나노센서/의료영상진단 - 상처피복 치료제 - 나노바이오 소재 - 기능성 화장품/건강기능식품	세부기술 영역 등 나노바이오 융합 관련 기술
공통기반기술	- 나노소재기술 - 나노공정/측정/장비 기술 - 기타 나노기술 기반 융합기술	- 핵심적인 나노제품을 저비용, 고품질, 고속생산 및 양산화 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나노제조기반 기술 - 이외 나노기술 기반 융합기술

3.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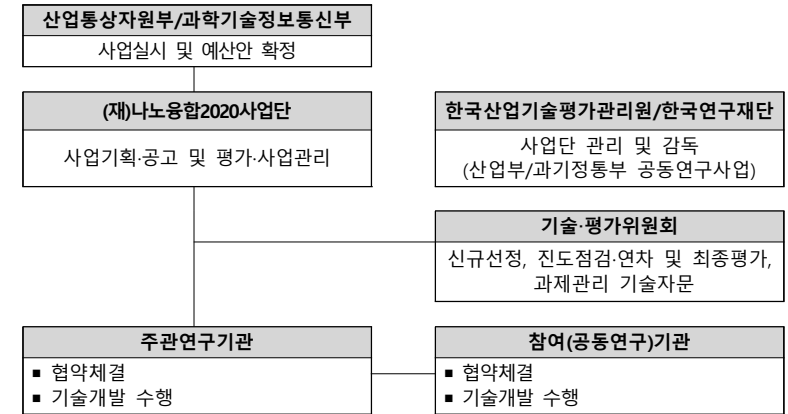
- 우수 연구성과 사업화 지원 사업
 - 특허화된 기술(선행 정부지원 연구사업의 성과)을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관(공동연구기관)과 이를 사업화할 구체적인 아이디어(대상 제품)를 갖고 있는 기업(주관연구기관)으로 구성되는 패키지형이며 특허화된 기술의 이전을 전제로 함.
- 현안해결 나노기술 매칭지원 사업
 - 자체적으로 나노기술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단독으로 신청
 - * 기업: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후 1년 이상 경과(법인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기준)한 법인사업자
 - * 연구기관: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4. 지원내용

구 분	우수 연구성과 사업화 지원 사업	현안해결 나노기술 매칭지원 사업
지원규모/지원기간	• 사업화 달성에 필요한 실제비용과 기간을 과제규모로 하며 일정한 범위로 한정하지 않음. - 상용화 개발에 필요한 기술보완 성격의 비용이 포함되며 (분석 및 기초)연구장비 구입 등 추가 연구를 위한 비용은 포함되지 않음. • 주관연구기관은 사업화 목표 설정, 2년 이내의 개발기간 및 소요비용을 스스로 결정 • 사업단은 사업화 성공가능성, 파급효과, 예산효율성(예산규모·투입기간) 등을 고려하여 과제별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함. • 단년도 협약 원칙 ※ 특기사항 - 지원대상 과제로 선정된 경우 과제 협약체결 이전에 선행 연구성과(특허화된 기술)에 대한 기술 이전계약이 완료되어야 함. - 사업화 수행 중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은 주관연구기관이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단이 인정하는 경우 공동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소유 가능 - 주관연구기관(기업)은 사업화 달성에 필요한 공동연구기관(들) 구성과 재원 배분의 자율성을 갖고 투입되는 전체 정부지원금에 대한 집행 및 기술료 납부의 책임을 짐.	• 전문가 자문형 - 기업이 당면한 구체적인 기술현안에 대해 식견이 있는 나노기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단기간 내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전문가(기술)를 매칭하고 기술자문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 기간은 3개월 이내 • 솔루션 제공 과제형 - 기술현안 해결을 위한 문제의 분석 및 매칭 기술의 완성도 제고가 필요한 경우 직접 관련이 있는 전문가를 매칭하여 현안을 분석하고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과제를 도출하고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함. - (기획단계) 현안분석 및 과제도출에 필요한 비용 지원(500만원 이내) - (과제화) 현안해결 과제수행에 필요한 실비 수준의 연구비 지원. 개발기간은 1년 이내 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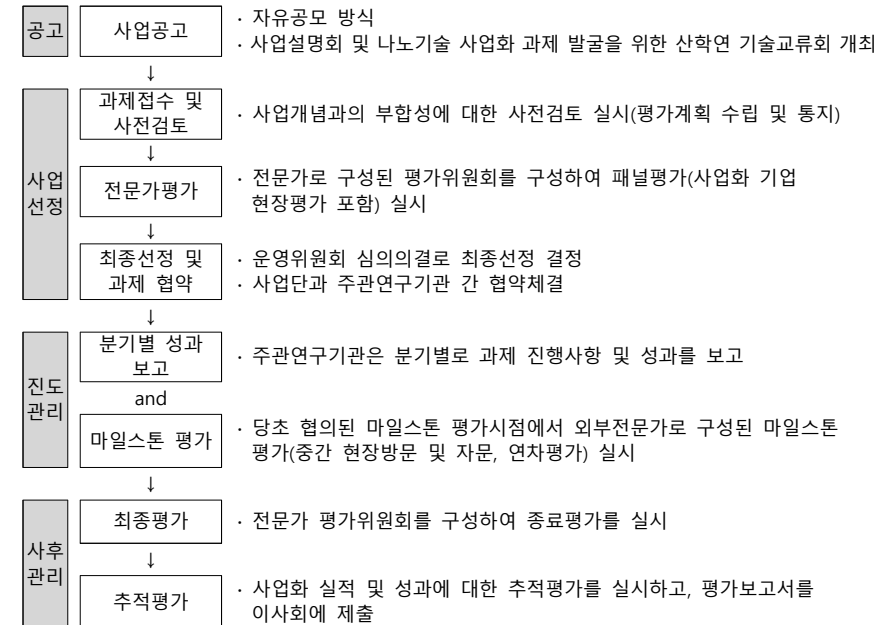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본 사업은 과기부·산업부 공동지원사업으로 별도의 나노융합2020사업 운영관리규정(각 부처 훈령) 및 나노융합2020사업 평가관리/사업비 지침에 따라 운영하고 있음.

- 추진절차



6. 추진일정

사업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8. 11월 ~ '18. 12월 중순	'19. 12월 중순 ~ '19. 2월 초	'19. 2월 말	'19. 3월 초

※ 세부사업 공고 시 자세한 추진일정 등 참고(상기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7. 지원규모: 63.27억원 (신규 18억원, 계속 45.27억원)

- 본 사업은 다부처 사업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19년도 지원 예산(54.5억원(신규 15억원 내외, 계속 39.5억원 내외)) 포함 시 총 117.77억원임.

8. 중점 추진사항

- 사업화 목표 유형별 지원관리: 최종 사업화 목표(우수 연구성과 사업화 지원 사업의 경우)는 기업, 산업, 시장 환경에 따라 다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반영하여 사업화 목표를 아래와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사업신청 시 주관연구기관(사업화 책임 기업)이 이중 하나를 스스로 선택하게 함.

유형	정의(과제 종료 시점 이내)
시장창출형	- 개발제품의 매출이 실제로 발생하거나 - 출시한 개발 (사)제품의 납품주문을 실제로 받은 경우
제품완성형	- 상업적 시제품*을 출시한 경우 * 상업적 시제품 : 시험평가 및 신뢰성이 검증되어 '실제 판매가 가능한 제품이며 이의 양산에 필요한 설비 구축을 완료한 단계
공정혁신형	나노공정 도입으로 10% 이상의 생산성 증가(경제적 효과로 환산 가능하여야 함)가 있는 경우

- 주관연구기관(사업화 책임 기업)에게 사업화에 대한 전권 부여
 - (과제구성 결정) 사업화에 필요한 공동연구기관 구성 및 연구비 배정
 - (기술료) 주관연구기관(사업화 책임 기업)이 해당 과제의 총 사업기간 전체 정부출연금 지원액에 대한 기술료를 납부함.
 - (IP 소유권) 사업화 추진의 성공률 제고를 위해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IP는 주관연구기관(사업화 책임 기업)의 소유를 원칙으로 함.
 - * 단, 개발에 대한 기여 및 성과물의 성격에 따라 합의에 의해 공동연구기관과의 공동소유 가능
- 전담지원 과제관리 및 책임평가제도 운영
- 현장중심 사업관리 강화
- 기술방어력 강화 지원(특허경쟁력 분석, 특허 포트폴리오 확보)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경쟁률	3.5 : 1	5.8 : 1	4.8 : 1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정부출연금	595백만원	570백만원	529백만원

11.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나노과 : ☎ 044-203-4393, poky5333@korea.kr (www.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바이오나노융합팀 : ☎ 053-718-8225, 8236 srpark@keit.re.kr (www.keit.re.kr)
- 제단법인 나노융합2020사업단 : ☎ 02-6000-7494, 7496, 7497 jej@nanotech2020.org (www.nanotech2020.org)

10. 나노융합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1. 개 요

- 국가 성장전략 기술 분야인 나노융합핵심기술 개발을 통해 주력기간산업의 산업경쟁력 제고 및 미래신산업을 육성하여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 확충

2. 지원대상분야

구 분	내 용
나노융합	● 5~10년후 대한민국을 선도할 신성장동력으로서 고부가가치 산업 발굴 및 집중 육성을 위한 전략적 기술개발과제 지원
그래핀소재부품 상용화기술개발	● 다양한 응용성 및 높은 미래 가치를 지닌 그래핀 소재를 소재에서 완제품까지 지원함으로써 글로벌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고 조기 상용화 및 사업화 지원
나노소재수요연계 제품화적용기술개발	● 現 나노분야에 가장 많이 출시되고 있는 탄소계, 금속계 소재 중 사업화 완성도가 높은 우수 나노제품을 대상으로 나노소재-수요기업 간 융합제품화 기술개발을 수행

3.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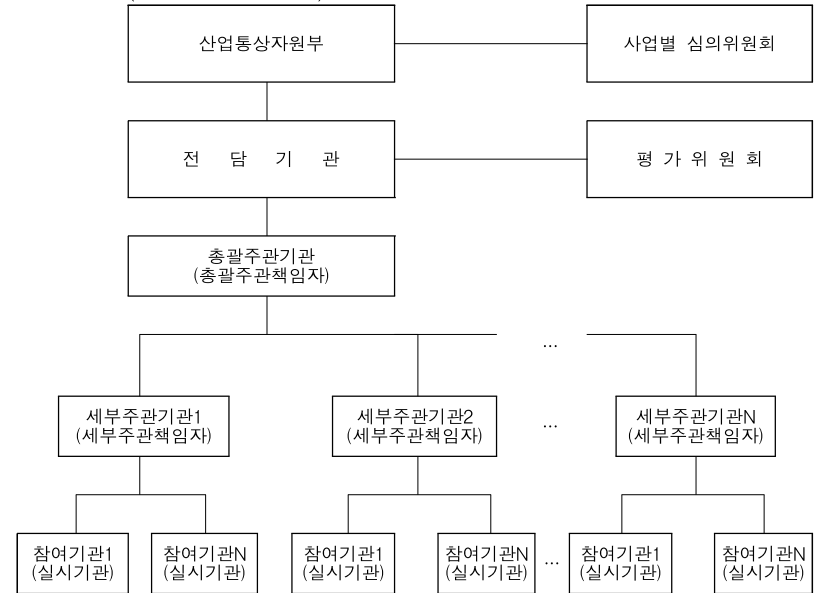
- 기업, 대학, 연구소, 사업자단체 등
 - 나노융합 : 기업, 대학, 연구소, 사업자단체 등
 - 그래핀소재부품상용화기술개발 : 기업, 대학, 연구소, 사업자단체 등
 - 나노소재수요연계제품화적용기술개발 : 기업만 참여 가능

4.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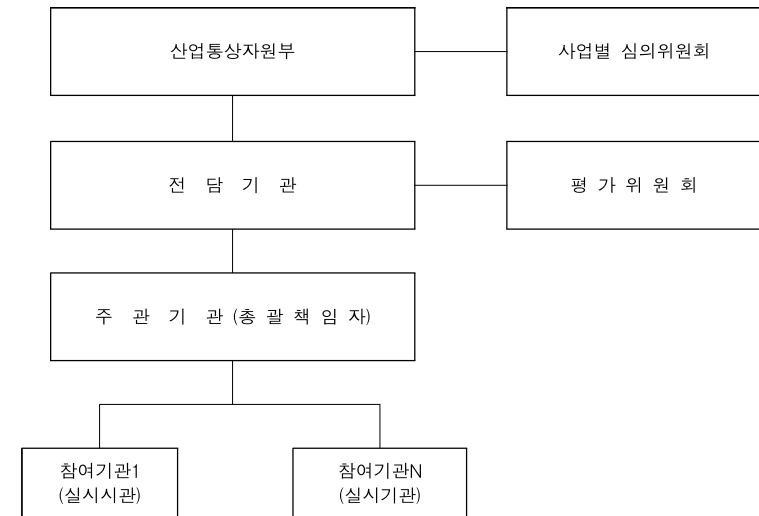
구 분	지원기간	내 용
나노융합	5년 이내	● (제4차 산업혁명 대응기술) 제4차 산업혁명시대, 가상-실제 간 초연결 사회를 견인하는 interactive connection 기술로서, 외부 자극에 스스로 반응하는 능동형 스마트 나노소재, 지능형 나노센서, 개인 맞춤형 웨어러블 헬스케어 기기 등 핵심 전략 기술 개발 ● (7대 산업화 전략기술) 3D 나노전자소자, 나노센서, 나노섬유, 탈귀금속/희유 나노소재 등 조기 산업화가 기대되는 7대 전략분야별 공백기술 확보를 통한 산업화 및 신시장 창출
그래핀 소재부품 상용화	6년	● 그래핀 2대 소재(CVD, 플레이크) 및 5대 응용제품(터치패널용 필름, OLED용 필름, 하이베리어필름, 전자파차폐 코팅제, 고내식 강판 코팅제) 개발
나노소재 수요연계 제품화적용	2년 이내	● 탄소계 소재 : 탄소를 기반으로 기존 제품과 융합제품화 기술개발(탄소나노튜브, 그래핀, 플러렌, 다이아몬드 등) ● 금속계 소재 : 금속을 기반으로 기존 제품과 융합제품화 기술개발(Cu(구리), Ag(은), Au(금), Ti(티타늄) 등) ● 복합 소재 : 산화물 나노소재, 금속간 화합물계, 탄화물계, 질화물계, 인화물계, 황화물계 등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통합형, 병렬형 과제)



○ 추진체계(일반형 과제)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IT)	사업계획서 접수
		신규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진도점검·연차평가	전담기관(KEIT)	평가위원회
단계·최종평가	전담기관(KEIT)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담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담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 나노융합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8. 8월 ~ '18. 12월	'18. 12월 ~ '19. 2월	'19. 3월 ~ '19. 5월	'19. 6월 ~ '19. 7월

○ 나노소재수요연계제품화적용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8. 9월 ~ '18. 12월	'18. 12월 ~ '19. 2월	'19. 3월	'19. 4월

* 그래핀소재부품상용화기술개발은 신규과제 없음

* 세부사업 공고 시 자세한 추진일정 등 참고(상기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7. 지원규모 : 230.92억원 (신규 17.8억원, 계속 213.12억원)

8. 중점 추진사항

- 향후 5년 이후 세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전략품목의 핵심 기술을 선정하여 집중 지원
-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강화
- 산업간 융합촉진을 위해 융합형 R&D 과제 발굴
- 나노소재수요연계제품화적용기술개발은 사업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며, 이에 부합하는 과제를 평가·선정할 계획임
- * 세부사항은 추후 공고문 참조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 나노융합

연 도	www.keit.re.kr	2016년	2017년	2018년
경쟁률		3.7 : 1	4.0 : 1	6.2 : 1

○ 나노소재수요연계제품화적용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경쟁률	2.7 : 1	3.0 : 1	5.5 : 1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 나노융합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정부출연금	519백만원	315백만원	277백만원

○ 나노소재수요연계제품화적용기술개발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정부출연금	342백만원	324백만원	350백만원

11.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나노과 : ☎ 044-203-4393, poky5333@korea.kr (www.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바이오나노융합팀 : ☎ 053-718-8225, 8236, 8243, spark@keit.re.kr (www.keit.re.kr)

11. 돌봄로봇공통제품기술개발사업

1. 개 요

- 노인·장애인의 신체활동과 간호·간병인의 공통적인 업무 지원 및 로봇 신시장 창출을 위한 돌봄로봇 제품을 개발

2. 지원대상분야

- 기술수요와 상용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가 높은 4종의 돌봄로봇 개발
- ※ 동 사업의 지원대상 분야는 사업공고시 확정 발표 예정

3.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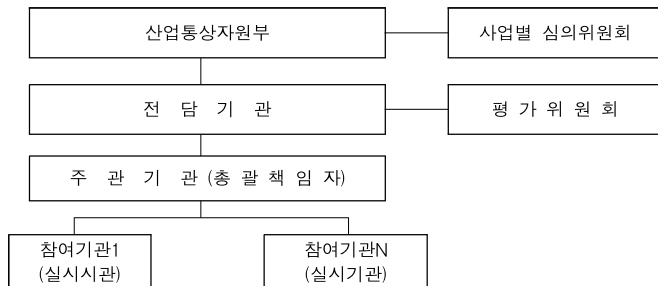
- 주관기관은 기업만 신청가능하며, 참여기관으로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협회, 병원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참여가능

4. 지원내용

- RFP의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단독 또는 산, 학, 연 간의 공동개발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형태로 지원
- 총 기술개발기간 33개월 이내로 지원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일반형 과제)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IT)	사업계획서 접수
		신규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진도점검·연차평가	전담기관(KEIT)	평가위원회
단계·최종평가	전담기관(KEIT)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담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담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8. 5월 ~ '18. 12월	'18. 12월 ~ '19. 1월	'19. 2월 ~ '19. 3월	'19. 3월 ~ '19. 4월

7. 지원규모 : 41.61억원 (신규 41.61억원)

8. 중점 추진사항

- 중증장애인 및 거동불편 노인 등에게 적용 가능한 돌봄로봇 4종 기술개발 추진
※ 동 사업의 지원대상 분야는 사업공고시 확정 발표 예정
- 동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돌봄로봇 중개연구 및 서비스모델 개발”사업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고시 세부 추진사항 안내 예정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경쟁률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정부출연금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과 : ☎ 044-203-4316, moon0320@motie.go.kr (www.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기계로봇팀 : ☎ 053-718-8416, daeyoung.kim@keit.re.kr (www.keit.re.kr)

12. 드론 활용서비스 시장창출 지원사업

1. 개 요

- 드론 활용서비스 시장창출을 위한 사업용(공공 및 산업용) 무인기 활용서비스 특화기술 개발 및 유망분야 무인기 활용서비스 패키지 구축 및 운용

2. 지원대상분야

- 활용서비스시장 진입 장애요소 해결형 기술개발, 미래 드론활용서비스 범용플랫폼 개발, 활용서비스 패키지 구축 및 운용, 산업생태계 조성 등

3.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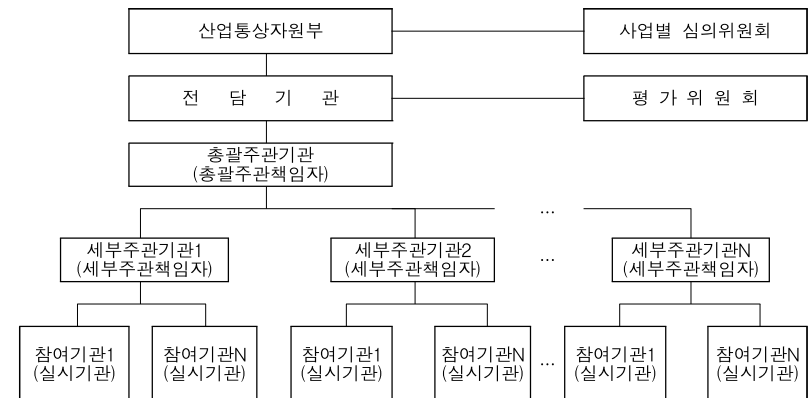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4.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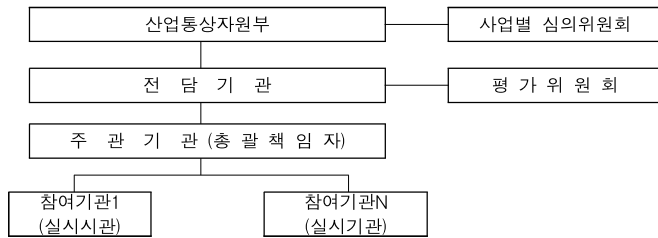
- RFP의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단독 또는 산, 학, 연 간의 공동개발형태로 수행되며, 출연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 형태로 지원
- 총 기술개발기간 4년 이내 지원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통합형, 병렬형 과제)



○ 추진체계(일반형 과제)



○ 추진절차

과제기획	기획위원회	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IT)	사업계획서 접수
		신규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연구발표회·연차평가	전담기관(KEIT)	연구발표회(일괄협약 및 단계협약), 평가위원회
단계·최종평가	전담기관(KEIT)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담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담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8. 11월 ~ '18. 12월	'19. 1월 ~ '19. 2월	'19. 3월 ~ 4월	'19. 4월 ~ 5월

※ 상기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7. 지원규모 : 20억원 (신규 20억원)

8. 중점 추진사항

- 상업용 무인기의 초기 서비스시장 구축 및 서비스제공자 육성 등 활용시장의 안정적인 성장 지원
-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강화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경쟁률	-	-	-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정부출연금	-	-	-

11.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 : ☎ 044-203-4326, www.twcom@motie.go.kr (www.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수송플랫폼팀 : ☎ 053-718-8428, dusgns@keit.re.kr (www.keit.re.kr)

13. 디자인혁신역량강화사업

1. 개 요

- 기술·디자인 혁신역량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의 디자인 핵심기술 및 역량개발을 통해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디자인생태계 고도화
 -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신시장 창출을 견인할 디자인기업의 역량개발과 중소·중견기업의 제품·서비스 디자인 개발 지원

2. 지원대상분야

- **(글로벌디자인전문기업육성)** 디자인 혁신을 견인할 수 있는 핵심역량을 보유한 글로벌 디자인 전문(활용)기업 육성
- **(디자인전문기술개발)** 중소·중견기업의 유망기술·제품 및 비즈니스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위한 디자인개발 지원
- **(차세대디자인핵심기술개발)** 차세대 핵심상품 디자인개발을 통한 디자인산업지원 기초 기술 연구개발을 지원(※ '18년 일몰로, '19년도 신규예산 없음)
- **(서비스디자인기반제조업신생태계구축)** 제품을 기반으로 서비스디자인 개발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을 발굴·지원 및 新비즈니스 창출로 국내 제조업 경쟁력 확보
- **(미래선행디자인기술개발)** 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선도기술을 기반으로 디자인 방법론을 적용한 새로운 컨셉의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 등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미래 대응능력 제고

3.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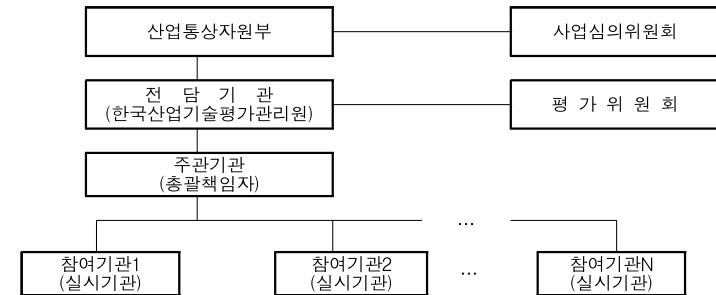
- 중소·중견기업, 대학, 연구소 등

4. 지원내용

- 공모방식 : 품목/자유공모
- 지원형태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매칭
 - 수행기관은 총사업비에서 정부출연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민간부담금(현금+현물) 매칭 부담
- 지원기간 및 금액 : 3년 이내, 정부출연금 3~9억원 내외/년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8. 8월 ~ '18. 12월	'18. 12월 ~ '19. 2월	'19. 3월	'19. 4월

7. 지원규모 : 421.23억원 (신규 81.19억원, 계속 340.04억원)

(단위 : 억원)

구 분	신 규	계 속	합 계
글로벌디자인전문기업육성	15.99	152.5	168.49
디자인전문기술개발	31.45	33.00	64.45
차세대디자인핵심기술개발	-	21.70	21.7
서비스디자인기반제조업신생태계구축	13.50	117.09	130.59
미래선행디자인기술개발	20.25	15.75	36
계	81.19	340.04	421.23

8. 중점 추진사항

- 중장기 산업기술 R&D전략 및 2019년 디자인융합 분야 산업기술 R&BD 전략수립에 따른 디자인융합형 품목(과제) 반영
 - 디자인·수송기기 융합, 디자인·바이오헬스 융합, 디자인·스마트전자 융합, 디자인·지능 정보서비스 융합
- 포트폴리오 중심의 디자인기업 실무역량 평가 강화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경쟁률	3.87 : 1	4.25 : 1	4.10 : 1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정부출연금	261백만원	361백만원	414백만원

11.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엔지니어링디자인과 : ☎ 044-203-4236, y10956@motie.go.kr (www.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혁신기업디자인팀 : ☎ 053-718-8223, 8238, neored@keit.re.kr (www.keit.re.kr)

14. 로봇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1. 개 요

- 로봇 분야 첨단융합제품·부품·원천기술 개발을 집중 지원하여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미래 신산업을 육성

2. 지원대상분야

- 인공지능 융합 로봇시스템기술
 - 인공지능 기술의 로봇 응용·융합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차세대 인공지능 융합 로봇시스템 개발
- 범부처 협력 로봇 제품기술
 - 다양한 로봇 응용분야의 수요와 연계하여 성장·유망분야 핵심 로봇 제품기술 개발
- 로봇 핵심 공통기반기술
 - HRI(Human-Robot Interaction), 부품 및 모듈, 로봇플랫폼 등 다양한 로봇 제품의 기반이 되는 원천 및 공통기술 개발

3.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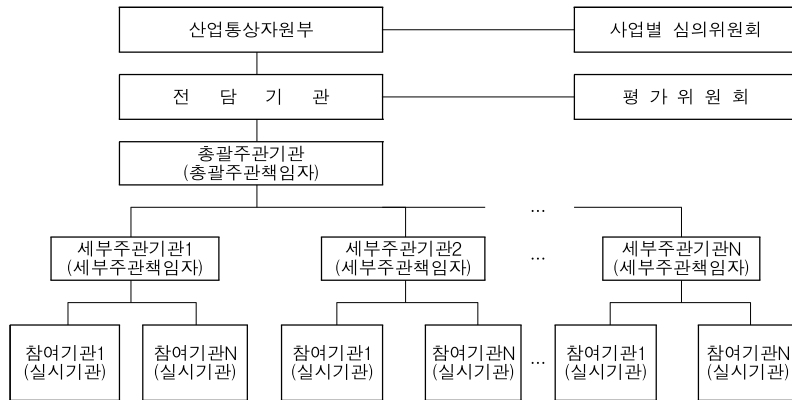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협회, 병원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4.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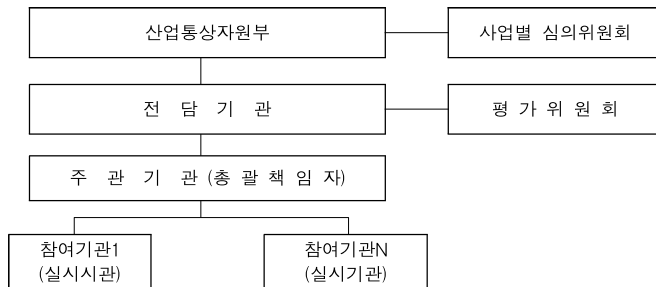
- RFP의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단독 또는 산, 학, 연 간의 공동개발형태로 수행되며, 출연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형태로 지원
- 총 기술개발기간 3~5년 이내로 지원(과제 특성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통합형, 병렬형 과제)



○ 추진체계(일반형 과제)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IT)	사업계획서 접수
		신규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진도점검·연차평가	전담기관(KEIT)	평가위원회
단계·최종평가	전담기관(KEIT)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담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담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8. 8월 ~ '18. 12월	'18. 12월 ~ '19. 1월	'19. 2월 ~ '19. 3월	'19. 3월 ~ '19. 4월

7. 지원규모 : 821.58억원 (신규 144.81억원, 계속 676.77억원)

(단위 : 억원)

구 분	신 규	계 속	합 계
로봇 융합제품	-	24.5	24.5
로봇 원천기술	-	140.5	140.5
인공지능 융합 로봇시스템기술	30.06	314.25	344.31
범부처 협력 로봇 제품기술	60.83	145.72	206.55
로봇 핵심 공통기반기술	53.92	51.8	105.72
합 계	144.81	676.77	821.58

8. 중점 추진사항

- 인공지능 산업현장 로봇 기술 등 로봇기술과 AI, IoT, 빅데이터 기술을 융합한 로봇 원천 기술 개발
- 로봇기술을 포함한 4차 산업혁명 유발기술을 활용하여 전 산업분야에서의 로봇 활용 확대를 위한 융합제품화 기술 개발
- 로봇산업 확대를 위한 H/W 및 S/W 플랫폼, 모듈, 부품 등 공통기술 개발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경쟁률	2.75 : 1	2.74 : 1	2.9 : 1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정부출연금	582백만원	733백만원	774백만원

11.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과 : ☎ 044-203-4316, moon0320@motie.go.kr (www.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기계로봇팀 : ☎ 053-718-8415~6, parkb@keit.re.kr (www.keit.re.kr)

15. 바이오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1. 개 요

- 유망 신산업인 바이오 분야의 핵심·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산업화를 촉진하고 산업경쟁력을 제고하여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

2. 지원대상분야

- 바이오핵심기술개발
 - 바이오의약, 바이오소재, 개인 맞춤형 바이오융합 시스템 개발 등을 지원
- 유망바이오IP사업화촉진
 - 잠재된 유망 바이오IP기반 기술 고도화 및 기술이전·사업화 R&D 지원
- 바이오화학산업화촉진기술개발
 - 바이오원료(바이오슈가)생산기술개발, 바이오화학소재 개발, 바이오화학산업융합기술개발을 통한 산업화 기반마련

3.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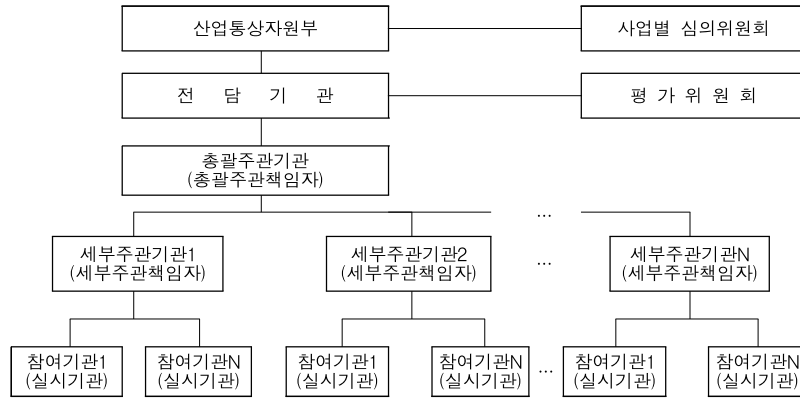
- 기업, 대학, 연구소, 사업자단체 등

4.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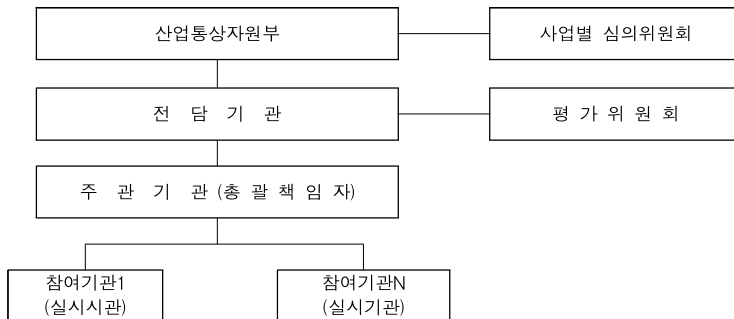
- 바이오핵심기술개발
 - 건강증진, 질병의 예방 치료, 노화 지연 등에 활용되는 의약품에 대한 전임상 및 글로벌 임상(1상/2상) 지원
 - 의약품 개발에 필수적인 평가기반기술, 플랫폼 기술 등 지원
 - 식물 등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화학제품 또는 바이오 기능성 신소재 생산 및 스케일업 연구 지원
 - 생물체 관련 검출·분석 기술로 IT, NT 등이 융합되어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는 응용 연구 및 사업화 연구 지원
- 유망바이오IP사업화촉진
 - 기술가치 괴리(GAP) 해소를 위한 추가 연구 및 사업화 R&D 자금 지원을 통해 기술이전 촉진
 - 유망 바이오 IP기반 혁신 기술에 대한 원천 기술 개발, 사업화 기술 개발 및 글로벌 바이오스타 기술 개발 등 IP 권리화·사업화 R&D 지원
- 바이오화학산업화촉진기술개발
 - 주력산업(자동차, 섬유, 전기전자)와 연계하여 원료생산부터 소재 및 시제품 개발까지 전주기적 R&D지원을 통해 바이오화학제품의 조기사업화 및 바이오화학 산업화 기반 확보 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통합형, 병렬형 과제)



○ 추진체계(일반형 과제)



* 상기체계는 내역사업별 다소 상이할 수 있음(구체적인 사항은 내역사업별 공고문 참조)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선정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IT)	지원과제 공고
		사업계획서 접수
		신규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진도점검·연차평가	전담기관(KEIT)	평가위원회
단계·최종평가	전담기관(KEIT)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담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정책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담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 상기체계는 내역사업별 다소 상이할 수 있음(구체적인 사항은 내역사업별 공고문 참조)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연중

7. 지원규모 : 593.15억원 (계속 593.15억원)

8. 중점 추진사항

- 국내 바이오산업 기초를 다지기 위한 산업, 융합 및 의학 분야의 핵심·원천기술(IP포함) 및 제품 개발 계속 지원
-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 계속 지원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경쟁률	1.5 : 1	7.3 : 1	4.5 : 1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 바이오핵심기술개발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정부출연금	645백만원	323백만원	483백만원

○ 유망바이오IP사업확충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정부출연금	600백만원	500백만원	787백만원

11.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나노과 : ☎ 044-203-4397, mijin8@korea.kr (www.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바이오나노융합팀 : ☎ 053-718-8234~6, 8246, djfls100@keit.re.kr (www.keit.re.kr)

16. 산업소재핵심기술개발사업

1. 개 요

-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한 전략기술 분야의 핵심·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미래신산업을 육성하고 주력기간산업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하여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
 - 대표적 소재부품산업인 화학, 금속, 섬유, 세라믹 및 첨단뿌리산업의 핵심원천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산업경쟁력 제고 및 전방산업의 수요에 적합한 핵심소재를 공급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 확충

2. 지원대상분야

- 산업소재(화학공정소재, 금속재료, 섬유의류, 세라믹) 및 첨단뿌리기술 분야의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 신성장동력 및 신기후 체제 대응을 위한 소재 및 공정기술 개발 지원

3.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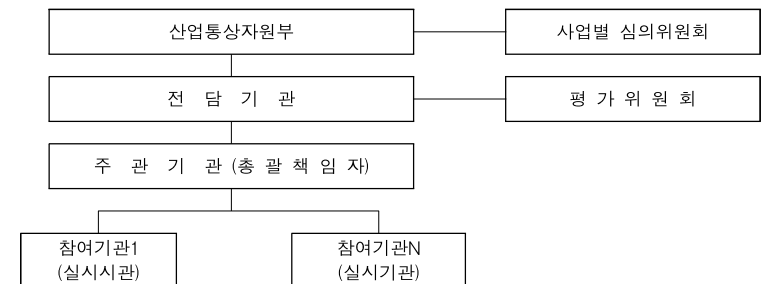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협회, 병원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4. 지원내용

- 공모방식 : 지정공모 및 품목지정
 - RFP의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단독 또는 산, 학, 연 간의 공동개발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형태로 지원
- 지원기간 및 금액
 - 총 기술개발기간 3~5년 내외, 과제 특성에 따라 차등 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일반형 과제)



○ 추진절차

(Top-Down) 정책방향 설정	(Bottom-up) 기술수요조사	산업통상자원부 KEIT(PD)	R&D정책 · 중점 지원방향 설정 기술수요조사 실시
과제기획	산업통상자원부 KEIT(PD)	기획대상 후보과제 발굴	
		기획대상과제 선정 및 세부기획	
	산업통상자원R&D 전략기획단(OSP)	기획대상과제 목표검증	
지원대상 과제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기획대상과제 우선순위 도출	
		지원대상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	사업계획서 접수	
		신규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진도관리·중간평가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최종평가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담기관	종료시 납부방식 결정 (정액 또는 경상)	
성과활용평가	전담기관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8. 9월 ~ '18. 11월	'18. 12월 ~ '19. 2월	'19. 3월 ~ '19. 5월	'19. 5월 ~ '19. 6월

7. 지원규모 : 1,238.19억원 (신규 77.1억원, 계속 1,161.09억원)

8. 중점 추진사항

- 향후 5년 이후 세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전략품목의 핵심 기술을 선정하여 집중 지원
-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강화
- 산업간 융합촉진을 위해 융합형 R&D 과제 발굴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경쟁률	2.5 : 1	2.5 : 1	2.3 : 1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정부출연금	513백만원	434백만원	338백만원

* 회계연도 일치로 6/12개월로 조정된 평균 정부출연금

11.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철강화학(화학공정) : ☎ 044-203-4283, kse1003@motie.go.kr (www.motie.go.kr)
 철강화학(금속재료) : ☎ 044-203-4287, kskhm@motie.go.kr (www.motie.go.kr)
 섬유세라믹(섬유의류) : ☎ 044-203-4291, river10@korea.kr (www.motie.go.kr)
 섬유세라믹(세라믹) : ☎ 044-203-4295, oh8075@motie.go.kr (www.motie.go.kr)
 산업기반총괄(첨단뿌리) : ☎ 044-203-4257, hwsayu@korea.kr (www.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섬유화학금속팀 :
 (화학공정) ☎ 02-718-8312, chemjang@keit.re.kr (www.keit.re.kr)
 (금속재료) ☎ 053-718-8352, mslim@keit.re.kr (www.keit.re.kr)
 (섬유의류) ☎ 053-718-8353, jyl@keit.re.kr (www.keit.re.kr)
 (세라믹) ☎ 053-718-8395, yangms@keit.re.kr (www.keit.re.kr)
 (첨단뿌리) ☎ 053-718-8363, bhlee@keit.re.kr (www.keit.re.kr)

17. 산업융임베디드시스템기술개발사업

1. 개 요

- 인공지능이 내장(임베디드)된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개발을 통해 전자부품분야 미래 유망 핵심기술의 획득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통한 중소·중견기업의 新 융합시장 진출 지원

2. 지원대상분야

- (임베디드 인공지능 시스템 기술개발) 뉴로모픽 프로세서 최적화, 뉴로셀기반 딥러닝 최적화 및 임베디드기반 자기결정엔진 등의 기술개발 지원
- (산업용 지능융합부품 기술개발) 지능형센서 융합, 웨어러블 디바이스 융합 및 지능형 디스플레이 융합 등의 기술개발 지원

3.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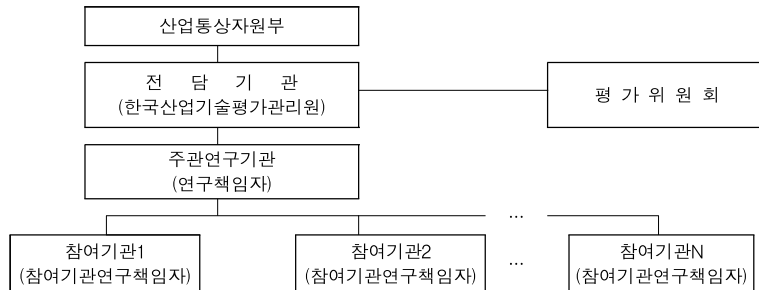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4.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연구조합 등
- 지원조건 : 2~5년 이내, 과제 특성에 따라 차등 지원
- * 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등은 세부사업 공고 시 별도 안내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 사업계획 공고(산업통상자원부) → 신청서 접수(전담기관) → 사업계획서 평가(평가위원회/전담기관) → 지원과제 확정(산업통상자원부) → 협약체결/정부출연금 지원(산업통상자원부) → 사업수행(주관기관)

6. 추진일정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산업융임베디드 시스템	'18.6월~'19.2월	'19.2월	'19.4월~'19.5월	'19.5월~'19.6월	'19.7월

7. 지원규모 : 17.19억원 (신규 17.19억원)

8. 중점 추진사항

- 임베디드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
 - 뉴로셀기반 딥러닝 및 뉴로모픽 프로세서 등 인공지능 프로세서 최적화 시스템 개발
 - 클라우드 연동형 프로세싱 기술, 인공지능디바이스 네트워크 및 독립형 인공지능 판단엔진 기술 개발
- 산업용 지능융합부품 개발
 - 지능형 웨어러블디바이스 및 디스플레이에 인공지능 엔진을 융합하고, 이를 활용한 전자 부품 개발
 - 인공지능 엔진을 지능형 센서에 융합한 모션센서, 바이오센서 및 환경센서 개발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경쟁률	-	-	-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정부출연금	-	-	-

11.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전자부품과 : ☎ 044-203-4274, ejbae@motie.go.kr (www.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전자전기팀 : ☎ 053-718-8449, kauring66@keit.re.kr(www.keit.re.kr)

18. 산업현장핵심기술수시개발사업

1. 개 요

- 급변하는 국내·외 시장·기술 변화로 유발되는 시급성이 높은 산업계 애로기술을 해결하고, R&D 취약분야 지원 및 미래 유망 핵심기술을 발굴·검증

2. 지원대상분야

- 산업경쟁력강화
- 시범형기술개발
- 글로벌기술장벽대응맞춤기술개발

3.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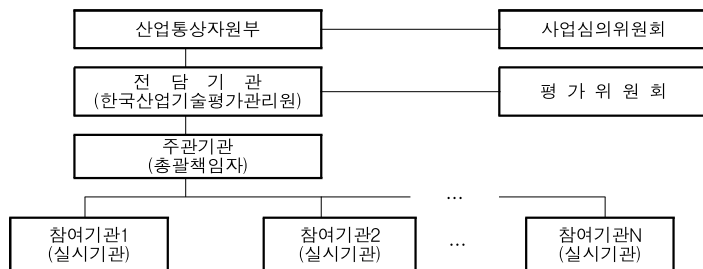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협회, 병원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 대기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 제외

4. 지원내용

- (산업경쟁력강화) 급변하는 산업환경 변화로 유발되는 산업군별 애로기술을 적기에 해결하고 R&D 취약분야의 기술개발 지원
- (시범형기술개발) 중장기 대규모 R&D 투자 이전 선행연구사업으로 R&D 투자 효율성·필요성을 사전 검증하는 '파일럿형 기술개발'
- (글로벌기술장벽대응맞춤기술개발)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새로운 통상 환경에 대응하여 통상 상대국 기술규정에 적합한 기술개발 및 FTA원산지 규정에 부합하는 제품 개발 지원
- 지원조건 : 사업기간 1년, 과제당 정부출연금 2~3억원/년 이내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 사업계획 공고(산업통상자원부) → 신청서 접수(전담기관) → 사업계획서 평가(평가위원회/전담기관) → 지원과제 확정(산업통상자원부) → 협약체결/정부출연금 지원(전담기관) → 사업수행(주관기관) → 중간점검(평가)/최종평가(산업통상자원부/전담기관) → 사업비 정산(전담기관) → 기술료 징수 등 사후관리(전담기관)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자유공모	'18. 3월	'18. 5월	'18. 6월
자유공모	'18. 8월	'18. 10월	'18. 11월

7. 지원규모 : 99.17억원 (신규 93.1억원, 계속 6.07억원)

8. 중점 추진사항

- 국내·외 기술환경 변화로 유발되는 산업계 기술애로에 대한 시의성 있는 R&D 지원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경쟁률	3.05 : 1	10.92 : 1	35.2 : 1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정부출연금	408백만원	412백만원	330백만원

11. 문의처

- 산업현장핵심기술수시개발사업(산업경쟁력강화, 시범형기술개발)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 ☎ 044-203-4526, hwp172@korea.kr(www.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혁신기업디자인팀 : ☎ 053-718-8221, jc.jin@keit.re.kr(www.keit.re.kr)
- 산업현장핵심기술수시개발사업(글로벌기술장벽대응맞춤기술개발)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기획과 : ☎ 044-203-4874, chk1009@motie.go.kr(www.motie.go.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업R&D팀 : ☎ 02-6009-3543, heart225@kiat.or.kr(www.kiat.or.kr)

19. 생산시스템산업전문기술개발

1. 개요

- 청정생산, 그린자동차 부품의 기술혁신 역량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의 핵심기술 개발 지원을 통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육성
- **(청정생산기반전문기술개발)** 국제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개발, 제품설계 및 생산 단계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발생을 사전에 제거·감축하는 청정기반기술 개발 지원
- **(그린자동차 부품 실용화 및 실증연구)** 세계적인 자동차 환경규제 강화, 미국 무공해자동차 판매 의무화 법규(ZEV, Zero Emission Vehicle) 등 전력기반(구동시스템, 에너지시스템, 공통 핵심부품, 플랫폼효율향상, 부품실증 등) 그린자동차 시장 요구에 선제적 대응 기술개발지원

2. 지원대상분야

- 청정생산기반전문기술개발
 - EU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대응 차원을 넘어 신산업 창출이나 기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기술분야
 - 기존의 규제별 대응에서 국가에 관계없이 산업별로 대응할 수 있는 분야
 - 공정부산물 고부가가치화, 제조공정 청정화, 산업현장 유해물질 저감 등 생산 공정의 개선을 통해 공정 중 오염물 발생을 제거(저감)할 수 있는 기술분야
- 그린자동차 부품 실용화 및 실증연구
 - 장거리주행 그린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부품기술개발(R&D)
 - 장거리주행 그린카 부품 시험평가 방법론 기술개발
 - 개발부품의 차량탑재용 시제품 제작, System Integration 기술 개발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4. 지원내용

- 총 기술개발 기간 3년 내외, 연간 5억원 내외 지원
 - ※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출연금은 기술개발사업비의 67%까지 지원
 - ※ 기타 지원 세부내용은 공고 참조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6. 추진일정 : 신규지원 예정없음

※ 본 사업은 2019년에 계속과제만 사업비를 최종 지급한 후 2020년에 종료 예정

7. 지원규모 : 108.79억원 (계속 108.79억원)

- 청정생산기반전문기술개발 : 66.9억원 (계속 66.9억원)
- 그린자동차 부품 실용화 및 실증연구 : 37.04억원 (계속 37.04억원)

8. 중점 추진사항

- 청정생산기반전문기술개발
 - 규제강화에 따른 산업계 수요 증가, 규제 선점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위해 국제 환경규제 대응기술 분야 지원
 - 국내 여러 기업에 보급할 수 있고 수출 가능성이 높은 청정공정 개발과 관련된 기술분야 지원
- 그린자동차 부품 실용화 및 실증연구
 - 그린자동차 요소 부품 및 시스템·차량 단위의 실증 평가 기술 개발 지원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경쟁률	5.0 : 1	8.3 : 1	6.0 : 1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정부출연금	440백만원	330백만원	330백만원

11.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www.motie.go.kr)
 - 산업환경과(청정생산기반전문기술개발) : ☎ 044-203-4244, hope1104@korea.kr
 - 자동차항공과(그린자동차 부품실용화 및 실증 기술개발) : ☎ 044-203-4324, ironcat@korea.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www.keit.re.kr)
 - 섬유화학금속팀(청정생산기반전문기술개발) : ☎ 053-718-8313, k989@keit.re.kr
 - 수송플랫폼팀(그린자동차 부품실용화 및 실증 기술개발) : ☎ 053-718-8486, jslee@keit.re.kr

20. 섬유·의류·혁신역량강화사업

1. 개 요

- 제조경쟁력 향상이 가능한 지능형 섬유제조공정기술 개발과 he 산업과의 융합제품 개발을 통해 국내 섬유기업의 혁신역량강화 지원

2. 지원대상분야

- 국내 섬유제조 기업이 가격, 생산성, 품질 등에서 시장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스마트제조 시스템 및 공정기술 개발
 - 섬유제품 제조공정에 대한 정보를 수집, 관리, 분석, 제어하기 위한 ICT융합 기술 개발
- 섬유-IT, 섬유-수송 등 산업 간 융합기술개발을 지원
 - IT기술을 융합하여 신체 및 환경 정보를 수집, 모니터링, 분석, 대응 할 수 있는 융합 섬유제품 개발
 - 글로벌 수요기업과의 협업한 항공수송기기용 소형부품 개발

3.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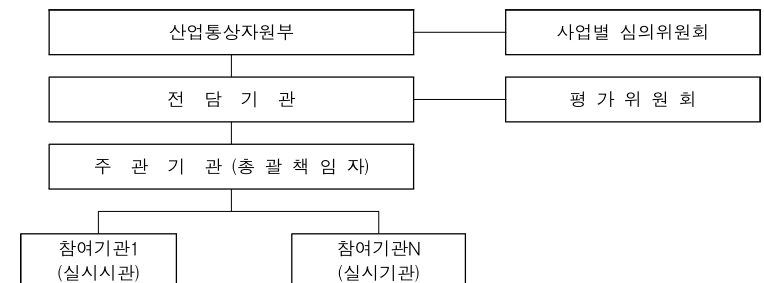
- 주관기관은 중소·중견기업, 참여기관은 제한없음(공고 시 RFP 참조)

4. 지원내용

- 공모방식 : 지정공모 및 품목지정
 - RFP의 수행조건에 따라 산, 학, 연 간의 공동개발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민간부담금 매칭)형태로 지원
- 지원기간 및 금액
 - 총 기술개발기간 3년 이내, 과제 내용 및 특성에 따라 예산 차등 지원(공고 시 RFP 참조)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일반형 과제)



○ 추진절차

■ 지정공모형		■ 품목지정형	
해당 연도 추진방향 설정	산업통상자원부	해당 연도 추진방향 설정	산업통상자원부
과제기획 수행	PD	후보품목 발굴	PD
지원대상과제 및 예산(안) 심의확정	사업별 심의위원회	지원품목 및 예산(안) 심의확정	사업별 심의위원회
신규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신규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사업계획서 접수	주관기관 → 전담기관	개념평가	전담기관
사전 서면검토	전담기관	사업계획서 접수	주관기관 → 전담기관
신청과제 평가	전담기관(평가위원회)	사전 서면검토	전담기관
지원대상과제 및 사업자 확정	전담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신청과제 평가	전담기관(평가위원회)
신청과제 협약 체결	전담기관 ↔ 주관기관(참여기관)	지원대상과제 및 사업자 확정	전담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연구발표회 또는 연차평가	주관기관 → 전담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신청과제 협약 체결	전담기관 ↔ 주관기관(참여기관)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 → 전담기관 / 위탁정산기관	연구발표회 또는 연차평가	주관기관 → 전담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단계평가 ¹⁾	주관기관 → 전담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 → 전담기관 / 위탁정산기관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 → 전담기관 / 위탁정산기관	단계평가 ¹⁾	주관기관 → 전담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차기단계 협약 체결 ²⁾	전담기관 ↔ 주관기관(참여기관)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 → 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최종평가	주관기관 → 전담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차기단계 협약 체결 ²⁾	전담기관 ↔ 주관기관(참여기관)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 → 전담기관 / 위탁정산기관	최종평가	주관기관 → 전담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기술료 징수 ³⁾	주관기관 → 전담기관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 → 전담기관 / 위탁정산기관
성과활용 보고, 평가 등 사후관리	주관기관 → 전담기관	기술료 징수 ³⁾	주관기관 → 전담기관
- 1), 2) : 단계 협약과제의 경우에 해당 - 3) 사업 공고 시 기술료 징수 대상과제의 경우에 해당		- 1), 2) : 단계 협약과제의 경우에 해당 - 3) 사업 공고 시 기술료 징수 대상과제의 경우에 해당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 '19년 신규사업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정부출연금	-	-	-

11.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섬유세라믹과 : ☎ 044-203-4298, runsky@motie.go.kr (www.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섬유화학금속팀 : ☎ 053-718-8353, jyl@keit.re.kr (www.keit.re.kr)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8. 10월 ~ '18. 12월	'18. 12월 말 ~ '19. 1월 말	'19. 2월~3월	'19. 4월

7. 지원규모 : 62.61억원 (신규 62.61억원)

8. 중점 추진사항

- 중소·중견기업의 섬유·의류 제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염색, 봉제 지능형 제조시스템 개발 지원
- 미래 신시장 선점을 위한 IT융합 스마트의류 개발 및 항공수송기용 융합기술 개발 지원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 '19년 신규사업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경쟁률	-	-	-

21. 센서산업고도화전문기술개발사업

1. 개 요

- 주력산업 및 차세대 신성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일반센서 중심의 산업 구조를 첨단센서 중심으로 고도화

2. 지원대상분야

- 첨단센서 핵심기반기술 확보 및 기반기술과 연계한 혁신제품 기술개발 지원
 - (핵심기반) 주력·신산업의 첨단센서 제품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핵심센서 소자 및 지능화·신뢰성 기반기술 개발
 - (응용·상용화) 핵심기반 기술개발과 연계하여 주력·신산업 분야에 필요한 첨단센서 제품화 및 조기 상용화 기술개발 지원

3.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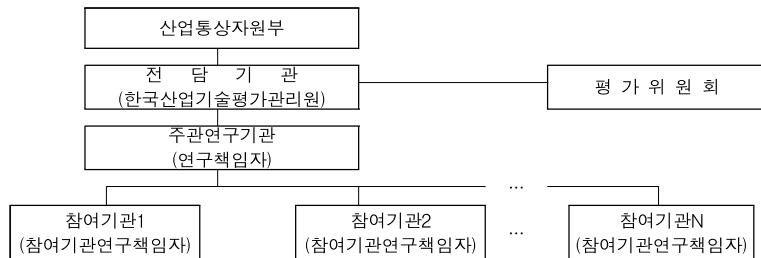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4. 지원내용

- 첨단센서 육성을 위한 핵심소자/기반기술을 확보하고, 이와 연계한 혁신 유망센서 조기 상용화 기술개발을 지원하며, 수요조사 및 기술기획을 통해 신규과제 발굴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연구조합 등
- 지원조건 : 2~5년 이내, 과제 특성에 따라 차등 지원
 - * 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등은 세부사업 공고 시 별도 안내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 사업계획 공고(산업통상자원부) → 신청서 접수(전담기관) → 사업계획서 평가(평가위원회/전담기관) → 지원과제 확정(산업통상자원부) → 협약체결/정부출연금 지원(산업통상자원부) → 사업수행(주관기관)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8. 7월 ~ '18. 12월	'18. 12월 ~ '19. 1월	'19. 2월 ~ '19. 3월	'19. 4월

7. 지원규모 : 82.33억원 (신규 53.86억원, 계속 28.47억원)

8. 중점 추진사항

- 첨단센서 산업 육성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국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첨단센서 상용화에 집중하고, 센서 수요 및 공급기업 간 상호 협력 추진체계 구축
- 핵심센서 국산화를 통한 센서 강국 도약이 주요 목표이므로 응용·상용화 기술을 중심으로 핵심기반 기술과 연계하여 추진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경쟁률	3.3 : 1	20 : 1	2 : 1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정부출연금	493백만원	552백만원	608백만원

11.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전자부품과 : ☎ 044-203-4277, gdpang@motie.go.kr (www.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전자전기팀 : ☎ 053-718-8446, 8454, versagliere@keit.re.kr (www.keit.re.kr)

22. 소재부품글로벌투자연계기술개발사업

1. 개 요

- 소재부품기업의 해외 유망핵심기술 획득 및 해외 수요기업과 연계를 통한 글로벌 Supply-chain 진입 촉진

2. 지원대상분야

- **글로벌개방형 기술개발** : 해외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①해외기업·IP 인수, ②해외기업에 지분투자, ③해외기업으로부터 투자유치)를 맺은 기업의 사업화 기술개발 지원
 - (기술획득형(Buy R&D)) 핵심기술 보유 해외기업(또는 IP)를 인수하고 사업화를 위한 추가 기술개발 지원
 - (기술투자형(Invest R&D)) 원천기술을 보유한 해외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지분투자) 관계를 구축하고 사업화를 위한 공동개발 지원
 - (기술연계형(Connect R&D)) 해외 투자자(전략적 투자자)가 투자한 국내기업의 사업화 공동 기술개발 지원
- **기술확보 로드맵구축** : 해외 전략적 제휴 타겟 발굴, 타겟·협력기업 분석 및 전략 수립 지원 등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개방형혁신에 필요한 연구를 지원하고 민간주도의 글로벌 개방형혁신 기반 조성

3.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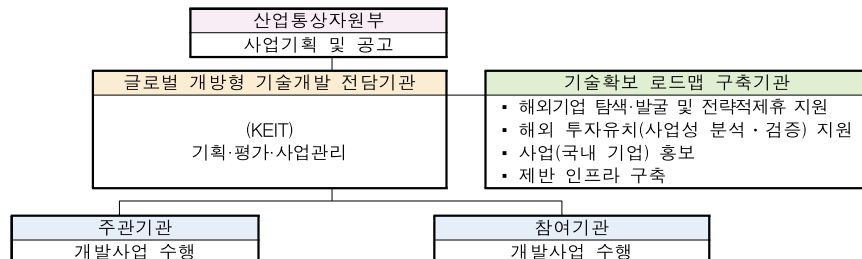
- (글로벌개방형 기술개발) 주관기관은 국내 소재부품 중소·중견기업, 참여기관은 제한없음
 - 단, 주관기관은 해외 기관과의 전략적 제휴가 이루어진 기업으로 한정
- (기술확보 로드맵구축) 전문기관(소재부품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정책지정)

4. 지원내용

- 신산업분야 기술개발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조기에 글로벌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핵심·원천기술 보유 해외기업 발굴 및 사업화 기술개발 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공고/접수 단계	공고	'19.1월	○전담기관
	개념계획서 접수 및 사전분석	'19.2월	○전담기관 및 로드맵구축 기관
기술확보 로드맵 구축	맞춤형 컨설팅 (지원유형 결정, 타겟조사, 해외 투자자 발굴 등)	'19.2~3월	기술획득/ 기술투자/ 기술연계 ○로드맵구축 기관
	협상/해외 IR 지원	'19.3월~4월	○로드맵구축 기관
	투자계약 체결	'19.5월	○로드맵구축 기관 및 신청기업
글로벌 개방형 기술 개발	사업계획서 접수	'19.6월	○전담기관
	기술성 평가	'19.7월	○전담기관
	신규과제 확정	'19.8월	○전담기관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	'19.8월	○전담기관
	사후 관리 지원	'19.8월 ~	○로드맵구축 기관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자유공모형	'19. 1월	'19. 7월	'19. 7월

- * 기술확보 로드맵구축은 별도의 추진일정을 따름
- * 세부사업 공고시 자세한 추진일정 등 참고(상기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7. 지원규모 : 8.2억원 (신규 8.2억원)

구분	신규	계속	계
글로벌개방형 기술개발	3.5	-	3.1
기술확보 로드맵구축	4.7	-	5.1
계	8.2	-	8.2

8. 중점 추진사항

-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맞춰 해외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속도감 있는 기술취득·확보 및 신속한 해외시장 진출 거점을 확보함으로써 글로벌 Supply-chain 진입 촉진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 신규사업으로 해당사항 없음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 신규사업으로 해당사항 없음

11.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총괄과 : ☎ 044-203-4265, leewg@motie.go.kr (www.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소재부품기획팀 : ☎ 053-718-8349, jinu@keit.re.kr (www.keit.re.kr)

23.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1. 개 요

- 국내 부품·소재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글로벌 시장의 조달 참여가 유망하고, 소재·부품 및 타 분야의 기술혁신과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핵심 소재·부품기술개발 지원

2. 지원대상분야

-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소재·부품의 범위)에 해당되는 12대 소재·부품 업종분야*
 - * 소재업종(5개) : 1차 금속, 화합물·화학, 고무·플라스틱, 비금속 광물, 섬유
 - * 부품업종(7개) : 조립금속, 기계·장비, 컴퓨터·사무기기, 전자기계, 전자·영상·음향·통신, 의료·정밀기기, 수송기계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협회, 병원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 단, 내역사업/과제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은 상이할 수 있으며, 상세 내용은 해당 신규 공고 시 안내 예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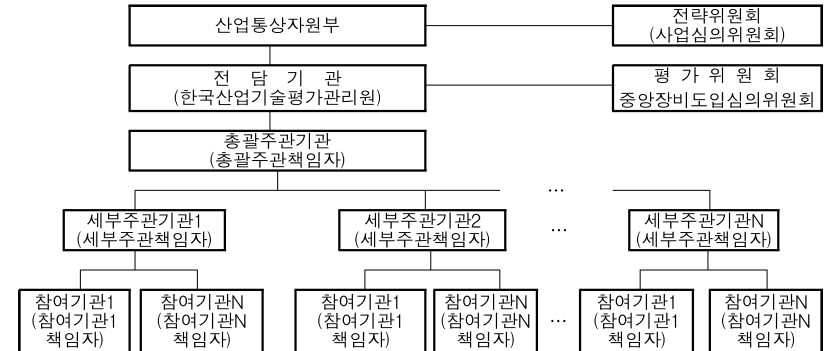
4. 지원내용

내역 사업	지원기간	지원내용
○소재부품패키지형 기술개발	7년 이내	소재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개발 소재의 신뢰성 검증을 위해 소재-부품-모듈-수요 간 연계를 통한 소재부품 중장기 기술개발 지원
○소재부품이종기술융합형 기술개발	4년 이내	소재부품기업의 시장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2개 이상 異種 기술 결합, 업종 연계 및 산업 적용이 가능한 소재부품 단기 기술개발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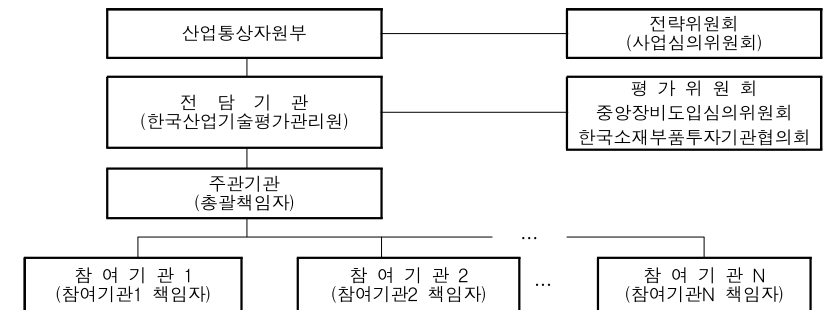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소재부품패키지형기술개발



- 소재부품이종기술융합형기술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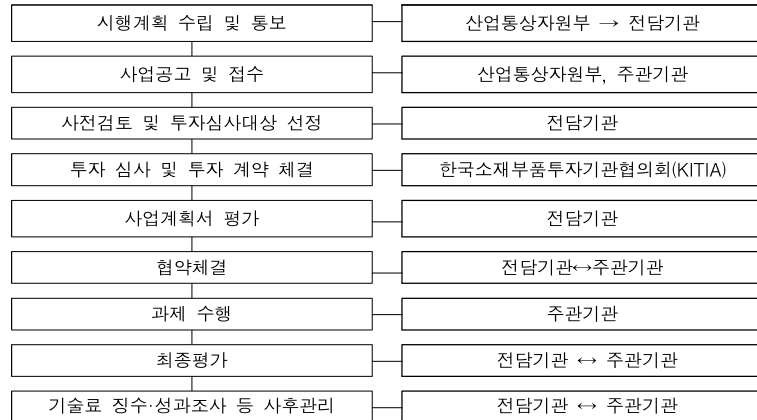


○ 추진절차

- 소재부품패키지형기술개발



- 소재부품이종기술융합형기술개발



6. 추진일정

내역사업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소재부품패키지형	'18. 6월~'18. 12월	'19. 1월~'19. 2월	'19. 3월	'19. 4월
○ 소재부품이종기술융합형	'18. 6월~'18. 12월	'19. 1월~'19. 2월	'19. 2월~'19. 5월	'19. 6월

7. 지원규모 : 2,359.91억원 (신규 109.45억원, 계속 2,250.46억원)

8. 중점 추진사항

- 기존 칸막이식 사업구조의 한계로 4차 산업혁명 대응 및 주력산업 고도화의 동시 뒷받침이 어려움에 따라 융합 R&D 지원체제로 개편('18년부터 시행 중)

~'17년		⇒	'18년 ~	
내역사업	내내역사업		내역사업	
핵심소재 경쟁력 강화	WPM		소재부품 패키지형	· 첨단 소재 개발을 시작으로 소재-부품-모듈-장비-수요간 연계를 통한 소재부품 중장기 기술개발 지원
	핵심소재원천			
	전략적핵심소재		소재부품 異種기술 융합형	· 2개 이상 異種기술 결합, 업종 연계 및 산업 적용이 가능한 소재부품 단기 기술개발 지원 · 우수 원천 기술-상용화 연계 지원
	핵심방산소재			
융복합 소재부품개발	수요자연계형			
	벤처형전문소재			
	투자자연계형			

- 중장기 대형과제는 패키지형, 단기 중소형과제는 異種기술융합형으로 구분하여 다양한 연계가 가능한 융합 기술개발 추진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내역사업	2018년
○ 소재부품패키지형	2.5 : 1
○ 소재부품이종기술융합형	8.1 : 1

* '18년부터 사업구조 개편에 따라 '18년도 내역사업 기준으로 표기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내역사업	2018년
○ 소재부품패키지형	2,050백만원
○ 소재부품이종기술융합형	496백만원

11.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총괄과 : ☎ 044-203-4262, sanghoo@motie.go.kr (www.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소재부품평가팀 : ☎ 053-718-8349, 8341, 8345, jinu@keit.re.kr (www.keit.re.kr)

24. 소재부품산업미래성장동력

1. 개 요

- 미래 우리나라의 먹거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새로운 소재부품산업 창출 및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핵심 미래성장동력 개발
 - 디스플레이, 반도체, 웨어러블디바이스, 인쇄전자 등 차세대 기술개발을 통한 신시장 창출

2. 지원대상분야

-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웨어러블 디바이스 산업의 글로벌 시장선점을 위한 웨어러블 특화형 임베디드SW, 반도체, 디스플레이, 센서, 플랫폼 등 핵심부품 및 요소기술 개발
-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플렉서블·스트레처블·홀로그래픽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력 강화 및 디스플레이 산업의 세계 1위 수성을 위한 차세대 소재·소자, 모듈 기술 및 유연기판 기술, 핵심공정 기술 등 전주기적 기술개발
- (글로벌 수요연계 시스템반도체 기술개발) 스마트카용 시스템반도체(멀티미디어 통합솔루션), IoT(스마트홈, 웨어러블디바이스) 시스템반도체 등 개발
- (신산업창출 파워반도체 상용화) 고효율 SiC소자, 고효율 IGBT 및 모듈, 전력절감 Power MOSFET, Power Module 및 IPM, IoT용 스마트 전력관리 SoC 등 개발
- (실종아동 등 신원확인을 위한 복합인지기술개발) 첨단 ICT 기술을 통한 범죄대응 및 국민 생활안전 증대를 위한 복합인지 기반 신원확인 및 과학수사 기술 개발
- (OLED 공정장비용 핵심부품 기술개발) 수입에 의존하는 OLED 공정 핵심 부품 중 국내 기업에서 개발이 가능하며, 파급효과가 큰 공용 부품 및 증착기 핵심부품 등 개발
- (차세대 반도체 기술개발) 차세대 반도체 설계 핵심기술 개발 및 상용화, 차세대 반도체 제조기반기술(소재, 공정, 장비) 개발
-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 혁신소재·장비·공정을 중심으로 FIVid*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 FIVid : Flexible Intelligent Varied information display

3.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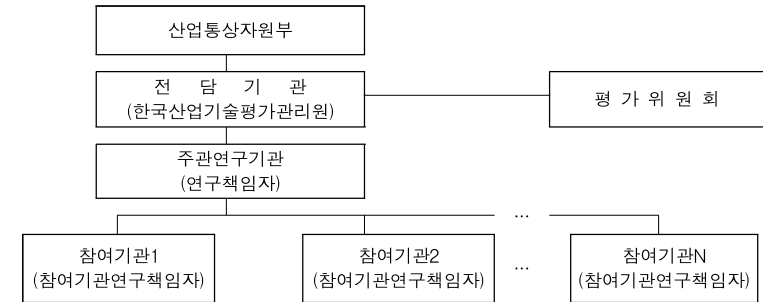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4. 지원내용

- 산, 학, 연 간의 공동개발형태로 수행되며 출연 형태로 지원 / 민간매칭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과제기획 및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IT)	사업계획서 접수
		신규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진도점검·연차평가	전담기관(KEIT)	평가위원회
최종평가	전담기관(KEIT)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담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담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사업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소재부품산업 미래성장동력	'18. 9월~'18. 12월	'19. 1월~2월	'19. 2월~4월	'19. 4월
디스플레이혁신공정 플랫폼구축	'18. 12월~'19. 3월	'19. 4월~5월	'19. 5월~6월	'19. 7월

7. 지원규모 : 632.06억원 (신규 303.83억원, 계속 328.23억원)

(단위 : 억원)

사업명	2018년도 예산		
	신규	계속	합계
○ 소재부품산업미래성장동력	303.83	328.23	632.06
-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	163.6	163.6
-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	63	63
- 글로벌 수요연계 시스템반도체 기술개발	34.55	23.9	58.45
- 신산업창출 파워반도체 상용화	41.4	68.73	110.13
- 실증아동 등 신원확인을 위한 복합인지기술개발	-	9	9
- OLED 공정장비용 핵심부품 기술개발	15.48	-	15.48
- 차세대 반도체 기술개발	144.5	-	144.5
-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	67.9	-	67.9

8. 중점 추진사항

- (글로벌 수요연계 시스템반도체) 중국을 거점으로 중국 세트기업과 협력하여 중국 및 해외 시장 진출을 통해 국내 기업의 매출 확대를 통한 글로벌 팹리스 기업 육성
- (신산업창출 파워반도체 상용화) 전력효율 향상을 위한 화합물 기반 고효율 파워반도체 소자/모듈 기술개발 및 상용화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글로벌 파워반도체 시장 주도권 확보
- (OLED 공정장비용 핵심부품 기술개발) OLED 패널 제작 공정 핵심 장비 중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핵심 부품품에 대한 국산화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연계
- (차세대 반도체 기술개발) 차세대 반도체 설계 핵심기술 개발 및 상용화, 차세대 반도체 제조기반기술 개발(소재, 공정, 장비) 개발
-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 디스플레이 산업의 독점시장 창출, 초격차, 초저원가 실현을 위한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경쟁률	3.3 : 1	3 : 1	3.8 : 1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정부출연금	2,271백만원	877백만원	796백만원

11.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전자부품과 : ☎ 044-203-4272, hsw1017@korea.kr (www.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전자전기팀 : ☎ 053-718-8442,8454, kang59@keit.go.kr (www.keit.re.kr)

25. 소재부품산업전문기술개발사업

1. 개요

- 국내 섬유산업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섬유 기반의 소재·부품 기술개발 지원

2. 지원대상분야

- (섬유생활스트림간협력) 섬유패션스트림 간(또는 섬유패션산업과 패션산업 간) 구성된 공동 컨소시엄의 글로벌 시장 진입을 위한 단기 상용화 제품 기술개발 지원
- (해양융복합소재산업화) 해양산업 생태계 제고 및 혁신 소재 중심으로의 산업구조 개편을 위한 섬유 기반의 융·복합 소재·부품 기술개발 지원
- (물없는컬러산업육성) 제조업 혁신을 통한 섬유산업 신성장동력 발굴, 물 없는 혁신공정으로의 컬러산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기술개발 및 인프라 조성 지원
- (섬유패션제조혁신선도)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한국형 신발 지능형 공장 핵심 기술 개발 지원

3.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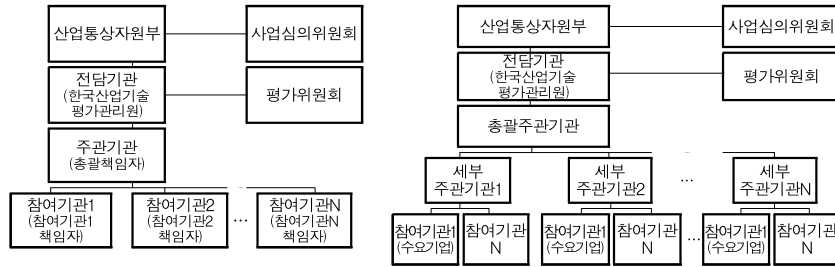
- (섬유생활스트림간협력) 주관기관은 중소·중견기업, 참여기관은 제한없음
단, 섬유패션스트림은 하기와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야 함
- 스트림 구성 : 3개 이상의 단위 스트림* 필수 참여
* 단위 스트림 : 원료부터 제품을 생산하기까지의 개별 공정을 지칭함
- 컨소시엄 구성 :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모두 포함)의 수는 최대 5개 이내로 권장하며, 수행기관 중 기업이 최소 2개 이상 반드시 참여해야 함
- (해양융복합소재산업화) 주관기관은 중소·중견기업 및 연구소, 참여기관은 제한없음
- (물없는컬러산업육성) 주관기관은 중소·중견기업 및 연구소, 참여기관은 제한없음
- (섬유패션제조혁신선도) 제한없음

4. 지원내용

- (섬유생활스트림간협력) 3년 이내, 3~9억원/연 이내 지원
- (해양융복합소재산업화) 과제별 특성에 따라 지원예산 및 기간 상이(공고 시 RFP 참조)
- (물없는컬러산업육성) 과제별 특성에 따라 지원예산 및 기간 상이(공고 시 RFP 참조)
- (섬유패션제조혁신선도) 과제별 특성에 따라 지원예산 및 기간 상이(공고 시 RFP 참조)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섬유생활스트림간협력, 해양융복합소재산업화) 일반형
- (물없는컬러산업육성, 섬유패션제조혁신선도) 통합형



< 일반형 >

< 통합형 >

○ 추진절차

- (섬유생활스트림간협력) 품목지정형 또는 자유공모형
- (해양융복합소재산업화, 물없는컬러산업육성, 섬유패션제조혁신선도) 지정공모형

■ 지정공모형		■ 품목지정형 또는 자유공모형	
해당 연도 추진방향 설정	산업통상자원부	해당 연도 추진방향 설정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주요조사	전담기관	기술주요조사	전담기관
기획대상과제 도출	MD/기획위원회/PD	후보품목 발굴	MD/기획위원회/PD
과제기회 수행	MD/기획위원회/PD	후보품목에 대한 의견수렴	전담기관
기획과제의 목표 검토	기획위원회/과제기획중단	지원품목 및 예산(안) 심의확정	사업별 심의위원회
지원대상과제 및 예산(안) 심의확정	사업별 심의위원회	신규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신규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개념평가	전담기관
사업계획서 접수	주관기관 → 전담기관	사업계획서 접수	주관기관 → 전담기관
사전 서면검토	전담기관	사전 서면검토	전담기관
신청과제 평가	전담기관/평가위원회	신청과제 평가	전담기관/평가위원회
지원대상과제 및 사업자 확정	전담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지원대상과제 및 사업자 확정	전담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신청과제 협약 체결	전담기관 ↔ 주관기관(참여기관)	신청과제 협약 체결	전담기관 ↔ 주관기관(참여기관)
연구발표회 또는 연차평가	주관기관 → 전담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연구발표회 또는 연차평가	주관기관 → 전담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비 정산 ¹⁾	주관기관 → 전담기관 / 위탁정산기관	사업비 정산 ¹⁾	주관기관 → 전담기관 / 위탁정산기관
단계평가 ²⁾	주관기관 → 전담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단계평가 ²⁾	주관기관 → 전담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 → 전담기관 / 위탁정산기관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 → 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차기단계 협약 체결 ³⁾	전담기관 ↔ 주관기관(참여기관)	차기단계 협약 체결 ³⁾	전담기관 ↔ 주관기관(참여기관)
최종평가	주관기관 → 전담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최종평가	주관기관 → 전담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 → 전담기관 / 위탁정산기관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 → 전담기관 / 위탁정산기관
기술료 정수 ⁴⁾	주관기관 → 전담기관	기술료 정수 ⁴⁾	주관기관 → 전담기관
성과활용 보고, 평가 등 사후관리	주관기관 → 전담기관	성과활용 보고, 평가 등 사후관리	주관기관 → 전담기관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	-	-

※ 신규과제 없음

7. 지원규모 : 433.14억원 (계속 433.14억원)

(단위 : 억원)

구분	신규	계속	계
섬유생활스트림간협력	-	221.91	221.91
해양융복합소재산업화	-	66.83	66.83
물없는컬러산업육성	-	114.4	114.4
섬유패션제조혁신선도	-	30.0	30.0
계	-	433.14	433.14

8. 중점 추진사항

- (섬유생활스트림간협력)
 - (기술개발) ① (섬유패션스트림) 고부가가치 섬유제품(의류용, 생활용, 산업용) 개발
 - ② (성숙산업고도화) 고부가가치 4대 소비재(생활세라믹, 신발, 피혁, 섬유소재) 개발
- (해양융복합소재산업화)
 - (기술개발) 섬유 기반의 해양산업용 융·복합 소재·부품 제품화 기술 지원
 - (기반구축) 해양융복합소재센터(부산), 고분자융복합소재센터(전남) 구축 지원
- (물없는컬러산업육성)
 - (기술개발) 초임계유체 염색 및 디지털 날염 관련 설비, 염/안료, 공정 원천기술 확보
 - (기반구축) 물없는컬러산업융합지원센터(대구) 구축 지원
- (섬유패션제조혁신선도)
 - (기술개발) 신발 제조공정 통합관리시스템, 소재(갑피,창) 및 新공정기술 개발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섬유생활스트림간협력	6.7 : 1	6.4 : 1	-
해양융복합소재산업화	-	-	-
물없는컬러산업육성	-	1 : 1	-
섬유패션제조혁신선도	-	-	1 : 1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 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섬유생활스트림간협력	537백만원	513백만원	-
해양융복합소재산업화	-	-	-
물없는컬러산업육성	-	262백만원	-
섬유패션제조혁신선도	-	-	733백만원

11.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섬유세라믹과 : ☎ 044-203-4291, river10@korea.kr (www.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섬유화학금속팀 : ☎ 053-718-8358, cj0109@keit.re.kr (www.keit.re.kr)
- : ☎ 053-718-8351, yoonhj@keit.re.kr
- : ☎ 053-718-8354, hcs858@keit.re.kr

26. 소형무장헬기연계민수헬기핵심기술개발사업

1. 개 요

- 국내·국외 헬기체계업체 간 공동으로 국외체계업체 운용 헬기를 개량 개발하여 2020년까지 형식인증을 획득하고, 이와 병행하여 주요 부품과 핵심기술을 국내 개발

2. 지원대상분야

- 체계 및 민군겸용구성품 개발
- 헬기 핵심기술 개발
- 민군겸용구성품의 감항인증

3.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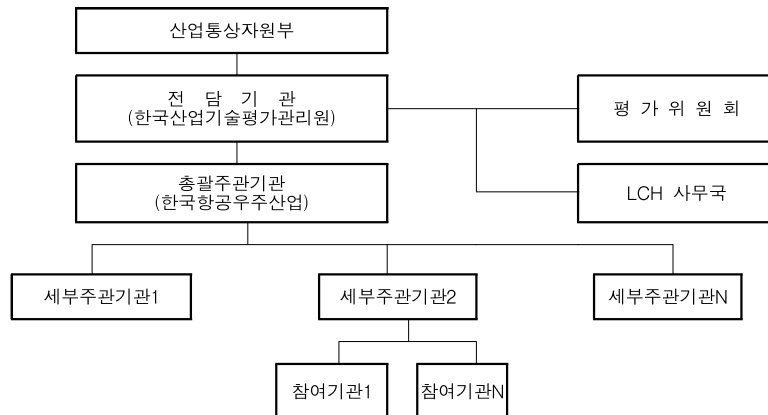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4. 지원내용

- 소형무장헬기 연계 4,500kg급 소형민수헬기 개발을 위한 체계 및 민군겸용구성품 개발, 핵심기술 개발 지원
- 총 기술개발기간 7년 이내 지원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로드맵	산업통상자원부	통합기술청사진/로드맵 수립
과제기획	전담기관(KEIT)/ 항공우주기술연구조합	과제기획 후보과제 발굴
		기획대상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IT)	사업계획서 접수
		신규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연차평가	전담기관(KEIT)	평가위원회
최종평가	전담기관(KEIT)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담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담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 신규지원 예정없음

7. 지원규모 : 583.4억원 (계속 583.4억원)

8. 중점 추진사항

- 기본 플랫폼 기반 성능개량 민수헬기 체계 국제공동개발, 형식인증 획득 및 기술향상 지원
- 소형민수헬기 구성품 국산화 기술개발 지원
- 독자헬기 개발 기반구축을 위한 핵심기술 및 핵심 구성품 개발 지원
- 국내개발 민군겸용구성품에 대한 감항인증 지원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경쟁률	-	-	-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정부출연금	-	-	-

11.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 : ☎ 044-203-4315, neohacky@korea.kr (www.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수송플랫폼팀 : ☎ 053-718-8478, choijs@keit.re.kr (www.keit.re.kr)

27. 수송분야 비배기관 미세먼지 저감사업

1. 개 요

- 자동차 비배기관(타이어, 브레이크 등)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신소재·부품 개발 및 미세먼지 측정·평가·실증 기술개발 지원

2. 지원대상분야

- 자동차 비배기관 유래 미세먼지 저감 소재·부품 기술 개발
- 자동차 비배기관 유래 미세먼지 측정·평가 시스템 개발

3.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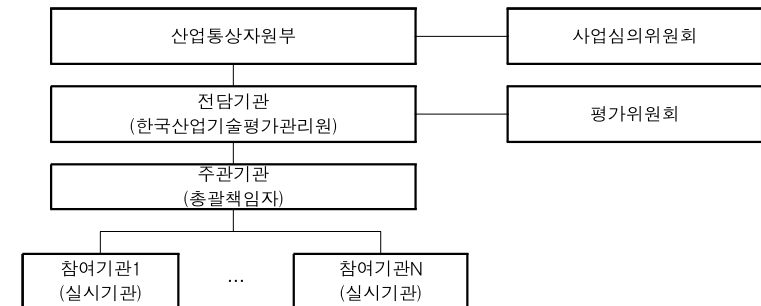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협회, 병원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 과제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은 상이할 수 있으며, 상세 내용은 해당 신규공고 시 안내 예정

4. 지원내용

- 공모방식 : 지정공모
- 지원기간 및 금액
 - 총 기술개발기간 5년 이내, 과제 특성에 따라 차등 지원 (사업공고 시 RFP 참조)
 - 출연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 형태로 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일반형



○ 추진절차

해당 연도 추진방향 설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대상과제 도출	PD
과제기획 수행 (기술/시장 및 특허·표준분석)	PD
기획과제의 목표 검토	과제기획검증단
신규지원대상과제 및 예산(안) 심의·확정	사업별 심의위원회
신규 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사업계획서 접수	주관기관 → 전담기관
사전검토	전담기관
사전 서면검토	전담기관(평가위원회)
신청과제 평가	전담기관(평가위원회)
지원대상과제 및 사업자 확정	전담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선정과제 협약 체결	전담기관↔주관기관(참여기관)
연구발표회 또는 연차 평가	주관기관→전담기관→산업통상자원부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최종 평가	주관기관→전담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기술료 징수	주관기관→전담기관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사후관리	주관기관→전담기관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8. 9월 ~ '18. 11월	'18. 12월 ~ '19. 2월	'19. 2월 ~ '19. 3월	'19. 4월

7. 지원규모 : 30억원 (신규 30억원)

8. 중점 추진사항

- 자동차 비배기관 부품 배출 미세먼지의 지속적 감축을 위한 플랫폼 구축 및 마모에 의한 미세먼지 발생량 30% 저감을 위한 소재·부품·평가 기술 개발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 신규사업으로 해당사항 없음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 신규사업으로 해당사항 없음

11.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섬유세라믹과 : ☎ 044-203-4295, oh8075@motie.go.kr (www.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섬유화학금속팀 : ☎ 053-718-8395, yangms@keit.re.kr (www.keit.re.kr)

28. 스마트공장용 중소기업 보급형 로봇개발지원사업

1. 개 요

- 제조로봇 연구개발 및 실증지원을 통해 제조산업 고도화 및 로봇산업 활성화 지원

2. 지원대상분야

- 중소기업 제조라인에 적용 가능한 보급형 제조로봇 등 기술개발 및 실증지원
- ※ 동 사업의 지원대상 분야 및 추진사항은 사업공고 시 확정 발표 예정

3.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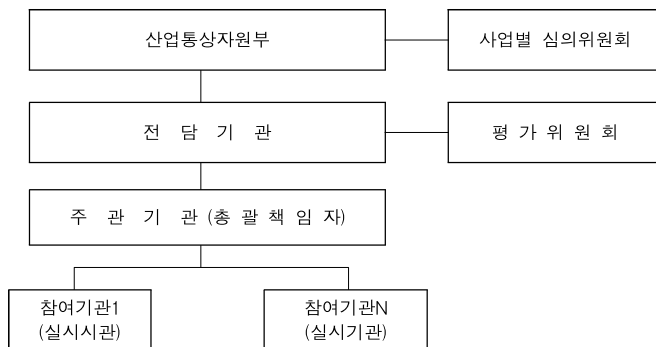
- 주관기관은 기업만 신청가능하며, 참여기관으로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협회, 병원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참여가능

4. 지원내용

- RFP의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단독 또는 산, 학, 연 간의 공동개발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형태로 지원
- 총 기술개발기간 33개월 이내로 지원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일반형 과제)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IT)	사업계획서 접수
		신규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진도점검·연차평가	전담기관(KEIT)	평가위원회
단계·최종평가	전담기관(KEIT)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담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담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8. 7월 ~ '18. 12월	'18. 12월 ~ '19. 1월	'19. 2월 ~ '19. 3월	'19. 4월

7. 지원규모 : 45억원 (신규 45억원)

8. 중점 추진사항

- (기술개발) 스마트공장 적용 및 중소기업의 환경을 고려한 보급형 제조로봇 개발
- (실증지원) 기술개발 결과물의 성능평가, 인증절차 등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제조공정에 로봇적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술 개발 등 실증지원
- ※ 동 사업의 지원대상 분야 및 추진사항은 사업공고시 확정 발표 예정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경쟁률	-	-	-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정부출연금	-	-	-

11.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과 : ☎ 044-203-4316, moon0320@motie.go.kr (www.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기계로봇팀 : ☎ 053-718-8415, parkb@keit.re.kr (www.keit.re.kr)

29. 스마트공장제조핵심기술개발사업

1. 개 요

- 제조업과 ICT융합을 통한 국내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기술력 제고를 위해 스마트공장 공급기술 개발

2. 지원대상분야

- (고도화핵심기술) 고도화 스마트공장 구현을 위한 기반핵심 기술 개발
- (패키지SW) 국내 중소제조환경에 적합한 스마트공장 통합솔루션 개발
- (모델공장) 한국형 고도화 표준 모델공장 개발
- (품질평가체계) 스마트제조 핵심부품의 성능 및 품질인증체계 개발

3.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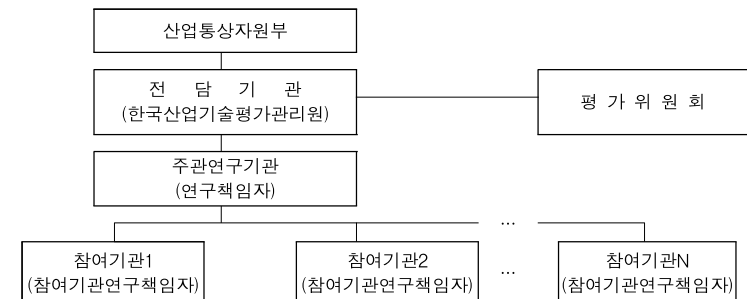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사업자단체, 기타 산업 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 ※ 세부과제별 지원대상은 공고 시 별도 안내

4. 지원내용

- 중간2 이상 고도화 스마트공장의 확산, 스마트공장 핵심SW, 시스템 등 기술간 연결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 개발 지원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연구조합 등
- 지원조건 : 2~3년 이내, 과제 특성에 따라 차등 지원
- * 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등은 세부사업 공고 시 별도 안내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 사업계획 공고(산업통상자원부) → 신청서 접수(전담기관) → 개념계획서 및 사업계획서 평가(평가위원회/전담기관) → 지원과제 확정(산업통상자원부) → 협약체결/정부출연금 지원(산업통상자원부) → 사업수행(주관기관)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8. 7월 ~ '18. 12월	'19. 1월	'19. 3월	'19. 4월

7. 지원규모 : 116.2억원 (신규 71.47억원, 계속 44.73억원)

8. 중점 추진사항

- (스마트공장 수준 고도화) 국내 제조업 현실에 맞고, 최신 국제표준 및 글로벌 트렌드에 적합한 고도화 스마트공장 관련 핵심기술 개발
- (패키지SW 플랫폼 개발) 스마트공장 기반산업 육성을 위해 예지보전, 물류, 에너지 절감, 공정 최적화 등 국내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패키지 솔루션 개발
- (선도모델 개발) 국내기업의 스마트공장 필요성 인식 확산을 위해 국내 제조기업 현실에 적합한 산업별·주요공정별 스마트공장의 구체적 방향제시 및 스마트제조 관련 상호호환성 테스트베드 등을 통한 신기술 사전검증 및 신뢰성 확보
- (품질평가인증체계 개발) 핵심기술 연구성과물의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공장 구성 기술, 제품 및 솔루션에 대한 국가브랜드 차원의 인증체계 개발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경쟁률	-	-	3.75 : 1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정부출연금	-	-	962백만원

11.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일자리혁신과 : ☎ 044-203-4223, ybjang@motie.go.kr (www.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전자전기팀 : ☎ 053-718-8455, sslim@keit.re.kr (www.keit.re.kr)

30. 스마트공장협업패키지기술개발사업

1. 개 요

- 제조현장의 스마트화를 위한 다양한 핵심기술 국산화, 사람중심 협업공장 및 고도화기술 기반 공장 구축을 통해 한국형 첨단 스마트공장 모델 구현

2. 지원대상분야

- (패키지R&D기술개발) 스마트공장 업종별 수직형 통합패키지 기술개발 및 제조데이터 공동활용플랫폼 개발
- (고도화스마트공장협업기술개발) 스마트공장 작업자의 안전성, 편의성, 효율성 향상 및 사람-기계 협업기술 개발

3.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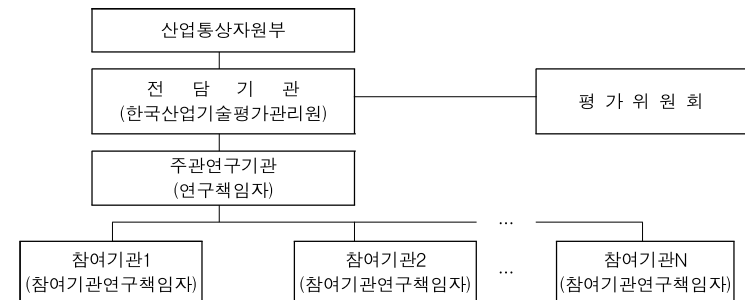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사업자단체, 기타 산업 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 ※ 세부과제별 지원대상은 공고 시 별도 안내

4. 지원내용

- 고도화 수준의 스마트협업공장 기술개발 및 선단형 패키지R&D 기술개발 지원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연구조합 등
- 지원조건 : 2~3년 이내, 과제 특성에 따라 차등 지원
- * 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등은 세부사업 공고 시 별도 안내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 사업계획 공고(산업통상자원부) → 신청서 접수(전담기관) → 개념계획서 및 사업계획서 평가(평가위원회/전담기관) → 지원과제 확정(산업통상자원부) → 협약체결/정부출연금 지원(산업통상자원부) → 사업수행(주관기관)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8. 7월 ~ '18. 12월	'19. 1월	'19. 3월	'19. 4월

7. 지원규모 : 61.92억원 (신규 61.92억원)

8. 중점 추진사항

- (패키지 R&D 기술개발) 스마트공장 공급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종별 패키지 기술 및 수평적 데이터 분석, 고객 맞춤 제조 기술 개발하는 실증형 기술 개발
- (고도화 스마트공장협업 기술개발) 스마트공장 작업자의 안전성, 편의성, 효율성 향상 및 공장內 Factory- Thing과의 협업 시너지 극대화를 위한 사람-기계 협업 핵심기술 개발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 해당없음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 해당없음

11.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일자리혁신과 : ☎ 044-203-4223, ybjang@motie.go.kr (www.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전자전기팀 : ☎ 053-718-8455, sslim@keit.re.kr (www.keit.re.kr)

31. 시스템산업미래성장동력사업

1. 개요

- 사업목적
 - 미래 우리나라의 먹거리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시스템산업분야의 핵심 미래성장동력기술 개발

2. 지원대상분야

- 산업기술개발
 - 국민안전로봇프로젝트
 - 첨단공구산업기술고도화

3.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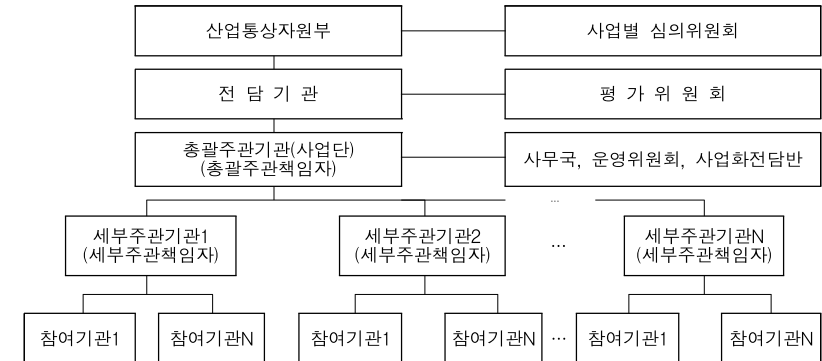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4.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산, 학, 연 간의 공동개발형태로 수행되며 출연(정부출연금은 총사업비의 75% 이내) 형태로 지원
 - 민간 Matching(대규모 민간 투자를 유도)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IT)	사업계획서 접수
		신규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진도점검·연차평가	전담기관(KEIT)	평가위원회
단계·최종평가	전담기관(KEIT)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담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담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 신규지원 예정없음

7. 지원규모 : 195.11억원 (계속 195.11억원)

사업명	2019년도 예산(억원)		
	신규	계속	합계
○ 국민안전로봇프로젝트	-	8,510	8,510
○ 첨단공구산업기술고도화	-	11,001	11,001

8. 중점 추진사항

- 시스템산업 미래선도기술분야 원천기술을 확보하여 신시장창출의 기반을 마련하고, 대·중·소 상생협력으로 산업생태계 조성 및 중소·중견기업의 기술력 제고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경쟁률	1 : 1	-	-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정부출연금	435백만원	-	-

11.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과 : ☎ 044-203-43180 cloud@motie.go.kr (www.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기계로봇팀 : ☎ 053-718-8418 jhyun87@keit.go.kr (www.keit.re.kr)

32. 안전보호융복합섬유산업육성사업

1. 개 요

- 안전보호 섬유제품의 국산화 개발 및 인증평가 인프라를 구축하여 우수한 안전보호 섬유 제품을 산업현장에 보급, 산업재해 감소와 안전한 사회 구현

2. 지원대상분야

- 다발성 재해, 극한 열환경 위험, 산업전반의 공통 위험에 대응을 위한 섬유소재 기반 융복합 안전보호 소재 및 제품개발 지원
- 안전보호제품의 제품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기술개발 및 사업화 과정에서 필요한 성능평가 및 인증 인프라 확보 지원

3.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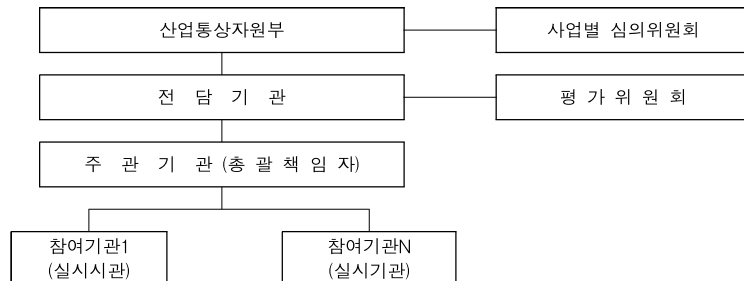
- RFP별 주관기관의 요건이 상이하며, 참여기관은 제한없음(공고 시 RFP 참조)

4. 지원내용

- 공모방식 : 지정공모
 - RFP의 수행조건에 따라 산, 학, 연 간의 공동개발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민간부담금 매칭)형태로 지원
- 지원기간 및 금액
 - 총 기술개발기간 3~5년 이내, 7억원/년 내외로 과제 내용 및 특성에 따라 예산 차등 지원 (공고 시 RFP 참조)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일반형 과제)



- 추진절차



1), 2) : 단계협약과제의 경우에만 해당 3) : 사업 공고시 기술료 징수 대상과제에 한함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8. 10월 ~ '18. 12월	'18. 12월 말 ~ '19. 1월 말	'19. 2월~3월	'19. 4월

7. 지원규모 : 55.55억원 (신규 55.55억원)

8. 중점 추진사항

- 방열복, 내화학복, 방진복, 내절단 장갑, 내진동 보호복 및 장갑 등 가격경쟁력이 있으며 성능이 우수한 산업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안전보호섬유제품 확보 지원
- 안전보호섬유제품의 성능평가 및 인증을 위한 기반 마련 지원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 '19년 신규사업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경쟁률	-	-	-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 '19년 신규사업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정부출연금	-	-	-

11.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섬유세라믹과 : ☎ 044-203-4291, river10@korea.kr (www.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섬유화학금속팀 : ☎ 053-718-8353, jyl@keit.re.kr (www.keit.re.kr)

33. 안전인증역량강화사업

1. 개 요

- 국민의 생활안전 확보 및 후생증진을 위해 제품안전기준 및 차세대 계량기술을 개발하고 제품 및 화학물질 안전관리체계 개선

2. 지원대상분야

구 분	지원대상 분야
소비자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	· 안전취약 위해제품과 융복합제품의 안전기준 연구와 신중위해물질 등 위해성 평가 및 시험검사방법 개선연구 등을 통한 안전한 사회 실현
차세대계량기술개발	· IT융복합 기술활용을 통한 계량·측정기기 성능향상 및 불법조작 방지로 4차산업, 에너지 신산업 대응과 국민의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
화학물질 안전 관리기반확충	· 국민 안전과 건강 및 환경보호를 위한 화학물질 규제 강화에 따라 산업혁신을 위한 화학물질 안전관리기반 확충 및 화학사고 예방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4. 지원내용

구 분	지원비율
소비자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	· 소요비용의 100% 이내에서 정부출연금 지원
차세대계량기술개발	· 소요비용의 100% 이내에서 정부출연금 지원
화학물질안전관리기반확충	· 소요비용의 100% 이내에서 정부출연금 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 (소비자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 : 지정공모, 자유공모
- (차세대계량기술개발) : 자유공모
- (화학물질안전관리기반확충) : 지정공모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8. 12월 ~ '18. 1월	'19. 2월	'19. 3월	'19. 4월

7. 지원규모 : 74.59억원 (신규 51.24억원, 계속 23.35억원)

(단위 : 억원)

구 분	신 규	계 속	합 계
소비자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	40.44	11.80	52.24
차세대계량기술개발	10.80	4.20	15.00
화학물질안전관리기반확충	-	7.35	7.35
합 계	51.24	23.35	74.59

8. 중점 추진사항

- 소비자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
 - 융·복합제품 안전기준 적기마련 및 안전취약·사고다발 제품 및 기술진보 제품의 안전기준 업그레이드 등에 대한 연구 지원
 - 가습기 살균제 사고 재발 방지 등을 위한 신규 화학물질의 위해성 평가, 위해제품 효율적 차단을 위한 안전 관리체계 개선 및 기업 자율적 제품안전경영체계 구축 등 연구 지원
- 차세대계량기술개발
 - IT 융·복합 계량기술 고도화(스마트미터링), 에너지산업(태양광 발전, 친환경 차량 등) 확산을 위한 차세대 계량기술 개발 및 관련 핵심소재·부품 개발 등에 관한 연구 지원
 - IT 융·복합 계량기술 및 차세대 계량기술 평가·인증을 위한 시험·검사방법, 신뢰성 평가 기반 조성 및 관련 제도개선 등에 관한 연구 지원
- 화학물질안전관리기반확충
 - 국내 화학물질 유해·위험성 시험·평가기반 확충을 위한 시설·장비·운영체계 구축, 기술·노하우보급·저변확대를 위한 기반확충 지원
 - 화학물질 영세공급망 단위의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화학물질 취급·관리현황, 관련 법령·안전 진단 및 전주기관리시스템 보급·활용 지원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경쟁률	-	-	1.61 : 1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정부출연금	-	-	168백만원

11. 문의처

사업명	소관과	연락처 (e-mail)	담당팀	연락처 (e-mail)
소비자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	043-870-5413 ldj9874@korea.kr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표준인증팀	053-718-8252 hspark@keit.re.kr
차세대계량기술개발	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	043-870-5479 jeehoon@korea.kr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표준인증팀	053-718-8252 hspark@keit.re.kr
화학물질안전관리기반확충	기후변화산업환경과	044-203-4242 kshskw@korea.kr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표준인증팀	053-718-8252 hspark@keit.re.kr

34. 엔지니어링핵심기술개발사업

1. 개 요

- 엔지니어링 분야의 핵심·원천기술 개발을 통한 기술 경쟁력 강화 및 주력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기반 확보

2. 지원대상분야

- 엔지니어링의 체계적 기술개발을 위해 엔지니어링 R&D 지원
 - 국내 엔지니어링 산업의 공동 취약 분야인 기본설계, FEED, 안전설계, 신뢰성 설계 등 선행 엔지니어링 설계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전주기 프로젝트 통합 관리, O&M 기술 등 엔지니어링 산업 기술 개발을 지원
 - 엔지니어링 산업의 경쟁역량 강화를 위하여 주요 분야별 엔지니어링 R&D를 지원

3.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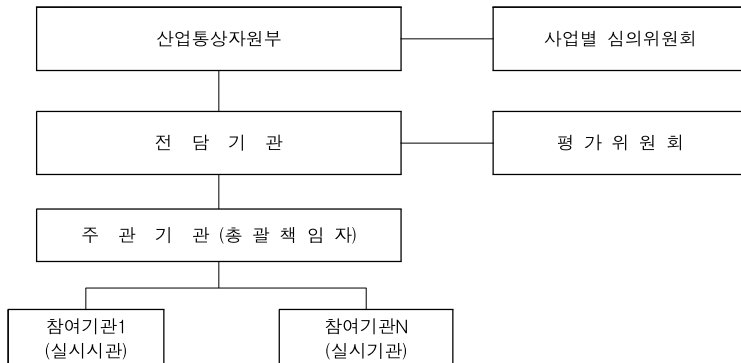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4. 지원내용

- RFP의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단독 또는 산, 학, 연 간의 공동개발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형태로 지원
- 총 기술개발기간 3~5년 이내로 연차평가를 통해 차기년도 지원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과제기획	PD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IT)	사업계획서 접수
		신규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진도점검·연차평가	전담기관(KEIT)	평가위원회
단계·최종평가	전담기관(KEIT)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담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담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 신규지원 예정없음

7. 지원규모 : 192.25억원 (계속 192.25억원)

8. 중점 추진사항

- 기본설계 등 가치사슬 상위의 기술확보에 주력하고, 분야별 특화된 고부가가치 엔지니어링 분야를 발굴·집중지원
- 엔지니어링 전문기업의 역량 강화를 설계기술 등 고부가가치 엔지니어링 분야 기술개발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경쟁률	2.6 : 1	1.9 : 1	3 : 1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정부출연금	627.3백만원	819백만원	500백만원

11.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엔지니어링디자인과 : ☎ 044-203-4206, terminat@motie.go.kr (www.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바이오·노융합팀 : ☎ 053-718-8239, poweron@keit.re.kr, (www.keit.re.kr)
: ☎ 053-718-8242, immort@keit.re.kr

35. 우수기술연구센터(ATC)사업

1. 개 요

- 세계 일류기술에 대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우수한 기술 잠재력을 보유한 기업부설연구소를 집중 지원
- 국내 기업 부설연구소를 우수기술연구센터(Advanced Technology Center)로 지정·지원하여 기술고도화, 성장 동력 확충

2. 지원대상분야

(ATC 분야)

- 주관기관에서 자유롭게 개발하고자 하는 것을 제조업 및 신산업* 분야에 대해 순수 자유 공모 방식으로 지원
- 참여기관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대학, 연구소 등
 - * 신산업 : ICT융합(지식서비스, 로봇, 웨어러블디바이스, 전기·자율주행차, 3D 프린팅, IoT가전), 바이오·헬스(바이오의약, 스마트헬스케어), 첨단신소재(탄소소재, 타이타늄, 나노소재, 융복합소재)

(글로벌 융합ATC 분야)

- 우수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하고 외투기업 R&D 센터 및 외국 대학의 국내 정착을 지원
- 주관기관에서 자유롭게 개발하고자 하는 것을 제조업 및 신산업 분야에 대해 순수 자유 공모 방식으로 지원
 - * 외투기업 R&D지원시 자사제품의 현지화를 위한 R&D지원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에는 외투기업 R&D 센터*, 외국대학 국내분교**가 1개 이상 반드시 참여하여 공동연구를 수행하여야 하며,
 - 외투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에는 국내 중소·중견기업(기업부설연구소 보유必)이 1개 이상 반드시 참여하여 공동연구 수행
 - * 외투기업 R&D 센터: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1항에 해당되는 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투자비율 50%이상)으로서 국내에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R&D 센터를 보유한 기업
 - ** 외국대학 국내분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 2조 1,2항에 해당되는 기관으로, 국내에 설립된 외국고등학교(대학)의 분교(캠퍼스) 또는 연구소(단독 또는 한국 연구소와 공동 설립된 연구소 포함)

3. 신청자격

- 지원조건 : 직전년도 또는 직년 2개년도 매출액 및 매출액 중 수출 비중과 R&D 투자액 비율을 동시에 만족하는 중소·중견기업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중견 기업

<참고: 18년 사업 공고 시 지원조건>

매출액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 ¹⁾	매출액 대비 수출액비율 ²⁾ (신산업/뿌리산업 해당 없음)
주력산업	신산업		
100억원 이상	30억원 이상	매출액 400억원 미만까지는 3% 이상	ATC 10% 이상 글로벌 융합 ATC 5%이상
		매출액이 40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① 매출액 400억원 미만까지는 3%, ② 400억원 초과분은 2% ①, ②를 합산하여 기업의 실제 R&D 투자비율과 비교하여 적용	

1)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

- 산정 시 재무제표에 기재된 경상연구개발비만 인정하며, 별도의 확인서 등은 불인정함.
단, 경상연구개발비에 포함되지 않은 기업부설연구소 소속인원의 인건비는 R&D투자비용으로 인정함.
(부속서류, KOITA 발급 기업부설연구소 인원현황 및 인건비 지급조서(급여증비) 등)
- 매출규모별로 400억원 미만일 경우 최저 연구개발비를 3%를 적용하고, 400억원 이상일 경우 40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2% 적용 후 합산함.
(예시 : 매출액이 700억원인 기업의 경우 400억원에 대하여 3%(12억원) 적용, 나머지 300억원에 대하여 2%(6억원) 적용 후 합산하여 연구개발비가 총 18억원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

2) 매출액 대비 수출액비율 : 신산업 및 뿌리산업*은 해당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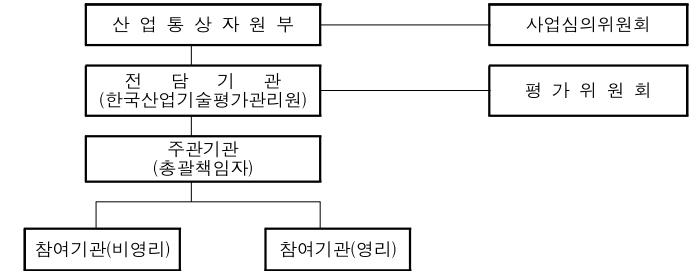
- 수출실적은 수출신고필증발급분,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에 의한 수출로 함(첨부의 수출액 및 투자액 산정기준 참고)
- * 뿌리산업(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뿌리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이거나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으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 분야는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율 조건 없음.

4. 지원내용

- 세계 일류기술에 대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우수한 기술 잠재력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를 집중 지원
 -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업종의 중소·중견기업으로서 기업부설연구소를 별도 보유하고, 매출·수출조건이 우수한 기업
- 기업의 창의성 제고를 위하여 100% 자유공모 실시, 최대 5년간 연간 5억원 이내 기술개발비의 지원
- 기업부설연구소의 집중 성장을 컨소시엄 구성
 - 주관기관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만 가능하며 연구역량 강화의 집중을 위해 단독수행이 가능하며,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정부출연 연구소 또는 대학과 컨소시엄 가능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19년 일몰로 신규 없음	'19년 일몰로 신규 없음	'19년 일몰로 신규 없음

7. 지원규모 : 578.7억원 (계속 578.7억원)

8. 중점 추진사항

- 글로벌 시장 경쟁 우위 확보가 가능한 우수기술 보유 연구소 선정 및 기술개발 집중 지원
- 우수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외투기업 R&D 센터 및 외국 대학의 국내정착을 위해 글로벌 융합ATC사업 지원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경쟁률	3.42 : 1	2.2 : 1	7.17 : 1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정부출연금	470백만원	423백만원	356백만원

11.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 ☎ 044-203-4526, hwp172@motie.go.kr (www.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혁신기업디자인팀 : ☎ 053-718-8213, kjpark@keit.re.kr (www.keit.re.kr)

36. 인공지능바이오로봇의료융합기술개발사업

1. 개 요

- 인공지능, 로봇기술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을 의료산업에 융합한 신개념 의료융합기술을 부처협업으로 전주기 지원
- 범부처(산업부, 과기부, 복지부, 식약처) 공동투자를 통해 원천연구부터 상용화까지 전과정 공동관리

2. 지원대상분야

- 바이오 신산업 및 의료기기 산업 육성을 위한 4차 산업혁명 대비 인공지능, 로봇 융합 의료기기 전주기 기술개발 지원을 부처간 협업 추진
- 헬스케어 패러다임 변화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 집중 지원

3.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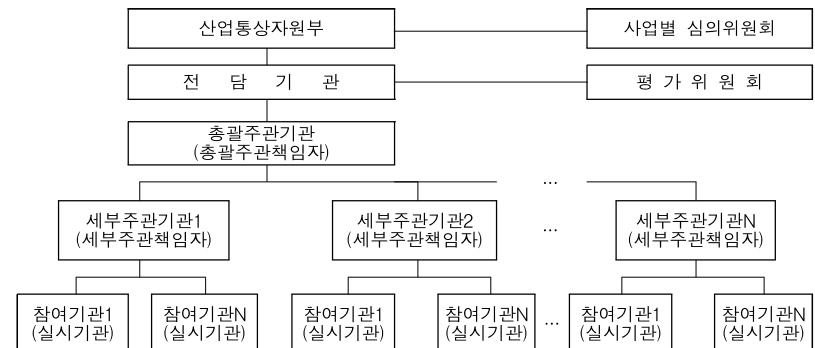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협회, 병원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 과제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은 상이할 수 있음

4.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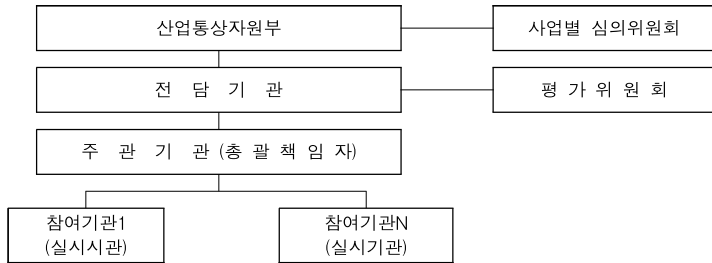
- RFP의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단독 또는 산, 학, 연, 병 간의 공동개발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형태로 지원
- 총 기술개발기간 3~5년 이내로 연차평가를 통해 차기년도 지원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통합형, 병렬형 과제)



○ 추진체계(일반형 과제)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IT)	사업계획서 접수
		신규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진도점검·연차평가	전담기관(KEIT)	평가위원회
단계·최종평가	전담기관(KEIT)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담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담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신규과제 없음	신규과제 없음	신규과제 없음	신규과제 없음

7. 지원규모 : 84억원 (계속 84억원)

- 범부처(산업부, 과기부, 복지부) 공동투자 R&D과제 및 R&D총괄지원과제 지원
 - * 산업부 예산: 28억원 (계속 28억원)

8. 중점 추진사항

- 3대 중점투자분야별 기술분야 지정형 자유공모 형태로 지원
 - 지능형 인체 삽입형 의료기기 개발
 - 스마트 진단/치료 통합솔루션 개발
 - 인공지능 기반 로봇 융합 의료기기 개발
- R&D과제의 인허가, 사업화, 인증·표준화, 신의료기술평가, 보험등재 등의 지원을 위한 연구지원(코디네이터) 총괄과제 별도 선정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경쟁률	-	-	19.7:1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정부출연금	-	-	790백만원

11.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나노과 : ☎ 044-203-4354, cdistone@motie.go.kr (www.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바이오나노융합팀 : ☎ 053-718-8264~5, 8241, kwonsh@keit.re.kr (www.keit.re.kr)

37. 자동차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1. 개 요

- 주요 수출국의 환경·안전규제 대응 및 新시장 조기선점을 위한 미래형 자동차(그린카, 스마트카) 핵심기술 개발

2. 지원대상분야

- 그린카 :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 친환경 내연기관 등 이산화탄소 배출 절감, 연비 성능을 개선한 친환경차 핵심기술 개발
- 스마트카 : 기존 기계 중심의 자동차에 전기, 전자, 정보통신 기술을 융·복합하여 안전과 편의를 극대화한 차량 핵심기술 개발
- 대형버스용 자율주행부품·시스템 개발 및 수소자율버스 시범운행 : 수소/전기버스 기반의 자율주행 상용차 부품 및 자율주행 차량을 개발해 특정 지역에서 시범운행을 통해 부품 실증

3.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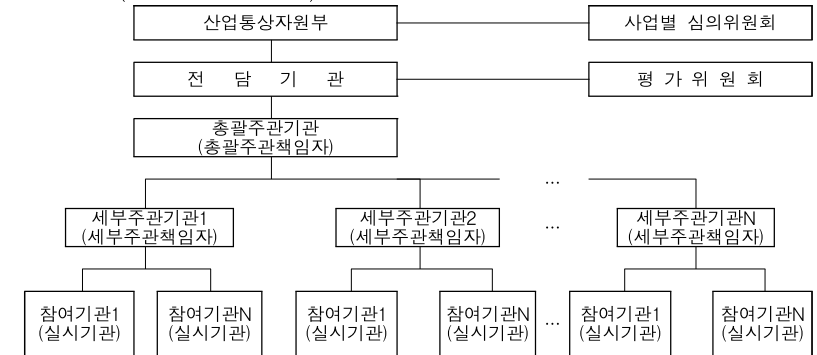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4.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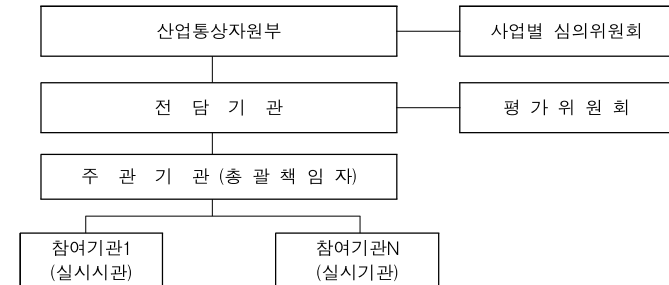
- RFP의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단독 또는 산, 학, 연 간의 공동개발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 형태로 지원
- 총 기술개발기간 5년 이내 지원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통합형, 병렬형 과제)



- 추진체계(일반형 과제)



○ 추진절차

로드맵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 R&BD 전략 수립
과제기획	PD	수요조사
		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IT)	사업계획서 접수
		신규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연구발표회·연차평가	전담기관(KEIT)	연구발표회(일괄협약 및 단계협약), 평가위원회
단계·최종평가	전담기관(KEIT)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담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담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8. 9월 ~ '18. 11월	'18. 12월 ~ '19. 2월	'19. 2월 ~ 4월	'19. 4월 ~ 5월

※ 상기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7. 지원규모 : 787.67억원 (신규 141.84억원, 계속 645.83억원)

8. 중점 추진사항

- 향후 5년 이후 세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전략품목의 핵심 기술을 선정하여 집중 지원
-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강화
- 산업간 융합촉진을 위해 융합형 R&D 과제 발굴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경쟁률	3.47 : 1	3.07 : 1	2.71 : 1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정부출연금	805백만원	839백만원	990백만원

11.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 : ☎ 044-203-4321~2, chk0517@motie.go.kr (www.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수송플랜트팀 : ☎ 053-718-8471, shhong@keit.re.kr (www.keit.re.kr)

38. 자율비행 개인항공기 기술개발사업

1. 개 요

- 자율비행 개인항공기 기술검증을 위한 전기동력 분산추진 및 수직이착륙 방식의 유무인 겸용 비행시제기 및 지상장비 개발

2. 지원대상분야

- 유무인 겸용 전기동력 수직이착륙 기술검증용 비행시제기, 공력 핵심기술 및 지상장비 개발, 지상 및 비행시험 수행

3.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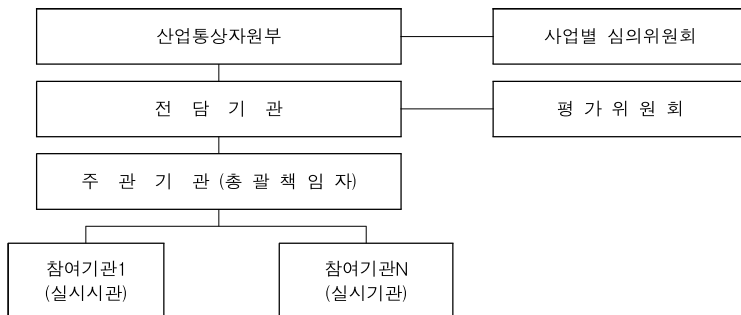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4. 지원내용

- RFP의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단독 또는 산, 학, 연 간의 공동개발형태로 수행되며, 출연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 형태로 지원
- 총 기술개발기간 5년 이내 지원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일반형 과제)



- 추진절차

과제기획	기획위원회	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IT)	지원과제 공고
		사업계획서 접수
연구발표회·연차평가	전담기관(KEIT)	신규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단계·최종평가	전담기관(KEIT)	연구발표회(일괄협약 및 단계협약),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평가위원회
기술료 징수관리	전담기관(KEIT)	사업비 정산
성과활용 평가	전담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8. 11월 ~ '18. 12월	'19. 1월 ~ '19. 2월	'19. 3월 ~ 4월	'19. 4월 ~ 5월

※ 상기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7. 지원규모 : 10억원 (신규 10억원)

8. 중점 추진사항

- 개인항공기 세계시장 적기 진출을 위한 선도 핵심기술 개발 강화
-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강화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경쟁률	-	-	-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정부출연금	-	-	-

11.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 : ☎ 044-203-4326, www.twcom@motie.go.kr (www.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수송플랫폼팀 : ☎ 053-718-8428, dusgns@keit.re.kr (www.keit.re.kr)

39. 전자부품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1. 개 요

- (주력산업 IT융합) 주력산업 분야의 IT융합 핵심·원천기술 개발 및 인공지능, IoT 등 新산업 수요대응형 핵심전자부품 및 시스템 개발을 통해 산업 경쟁력 제고 및 미래 신산업 육성
- (융복합디스플레이) 디지털사이니지 및 웨어러블·자동차·건축·의료 디스플레이 등 융복합 신시장 개척과 터치기술·센서 등을 탑재함으로써 다양한 기능이 부가된 제품으로 기존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융복합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2. 지원대상분야

- (주력산업 IT융합) 주력산업(자동차, 조선해양, 항공, 섬유 등)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IT 기반 융합기술 개발 지원
- (융복합디스플레이) 융복합 디스플레이의 중·단기 상용화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한 평가체계 개발 지원

3.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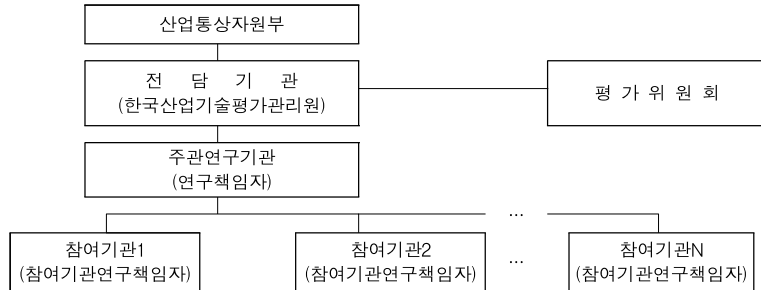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4. 지원내용

-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한 전략기술 분야의 핵심·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미래신산업을 육성하고 주력기간산업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하여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연구조합 등
- 지원조건 : 2~5년 이내, 과제 특성에 따라 차등 지원
 - * 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등은 세부사업 공고 시 별도 안내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 사업계획 공고(산업통상자원부) → 신청서 접수(전담기관) → 사업계획서 평가(평가위원회/전담기관) → 지원과제 확정(산업통상자원부) → 협약체결/정부출연금 지원(산업통상자원부) → 사업수행(주관기관)

6. 추진일정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전자부품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18.3월~'18.12월	'18.12월	'19.1월~'19.2월	'19.2월~'19.3월	'19.4월

7. 지원규모 : 213.34억원 (신규 43.20억원, 계속 170.14억원)

(단위 : 억원)

사업명	2019년도 예산		
	신규	계속	합계
○ 전자부품산업핵심기술개발	43.20	170.14	213.34
- 주력산업 IT융합	43.20	125.14	168.34
- 융복합 디스플레이	-	45.00	45.00

8. 중점 추진사항

○ 주력산업 IT융합

- (글로벌 경쟁력 유지) 자동차, 조선, 섬유 등 전통 주력산업의 글로벌 경쟁 우위 유지를 위해 산업 전반에 활용 가능한 IT 융합기술 개발 지원
- (산업용 플랫폼) 첨단기술(ICT)을 산업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제품·서비스를 지원하는 융합 플랫폼 형태의 전자부품 기술 개발 지원

* 산업용 IoT, 산업용 AR/VR, 산업용 제조플랫폼 등

○ 융복합 디스플레이

- (융복합) 퍼블릭/임베디드, 지능형 디스플레이, AR/VR 등 디스플레이 융복합 응용분야를 겨냥한 소재/부품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
- (시장/성장성) 다양한 기능이 부가된 제품으로 기존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융복합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지원
- (산업생태계) 중소기업 중심의 소량 다품종, 주문/맞춤형 전방산업 육성을 통한 균형있는 산업생태계의 패러다임 변화 유도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경쟁률	3.4 : 1	6.5 : 1	3.6 : 1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정부출연금	755백만원	833백만원	471백만원

11.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전자부품과 : ☎ 044-203-4274, ejbae@motie.go.kr (www.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전자전기팀 : ☎ 053-718-8449, kauring66@keit.re.kr(www.keit.re.kr)

40. 전자시스템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1. 개 요

-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한 의료기기 분야의 핵심·첨단기술 개발에 대한 집중지원을 통해 미래 신산업 육성하고 산업경쟁력을 제고하여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
 - 의료기기 산업핵심기술개발, 대구, 오송, 원주 등 의료기기 지원 인프라를 활용한 애로기술 개발, 해외인증 대응 지원 등

2. 지원대상분야

- (의료기기핵심기술개발) 의료기기산업 핵심·원천기술 개발 지원
-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대구, 오송) 내 기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하여 산·학·연·병원과의 공동연구를 통한 첨단의료기기 제품화 지원 및 임상시험과 품목허가 지원 등
- (첨단의료기기글로벌진출기술개발) 최근 강화된 국제규격에 대응하는 의료기기 해외인증 평가기술 개발 및 교육 등
- (초감각및생체결합디바이스개발) IoT 기술의 융합을 통해 의료 및 헬스케어 산업 분야에 응용이 가능한 초감각 디바이스 및 생체결합 디바이스 신기술 개발 지원

3.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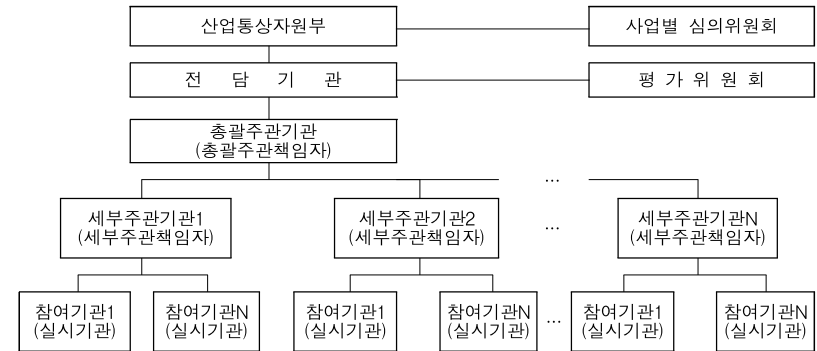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협회, 병원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 과제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은 상이할 수 있음

4.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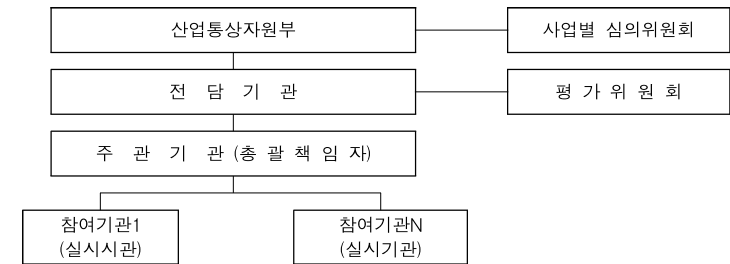
- RFP의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단독 또는 산, 학, 연, 병 간의 공동개발형태로 수행되며, 출연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형태로 지원
 - 총 기술개발기간 3~7년 이내로 연차평가를 통해 차기년도 지원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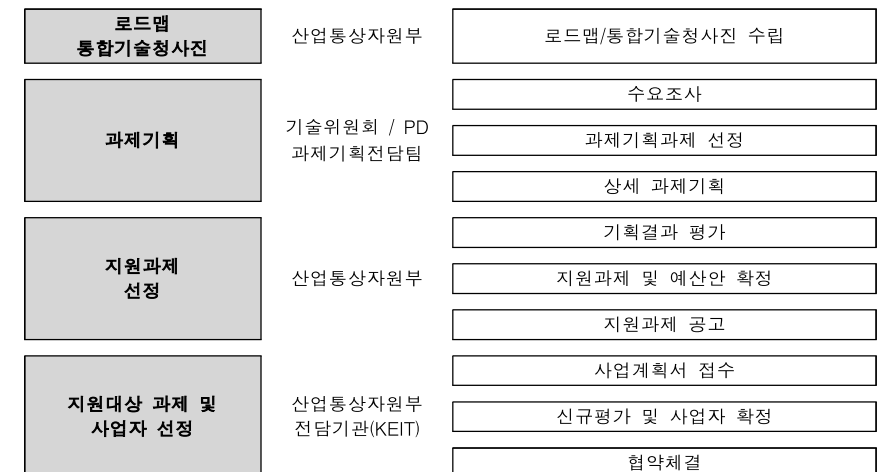
○ 추진체계(통합형, 병렬형 과제)



○ 추진체계(일반형 과제)



○ 추진절차



진도점검·연차평가	전담기관(KEIT)	평가위원회
단계·최종평가	전담기관(KEIT)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담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담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신규과제 없음	신규과제 없음	신규과제 없음	신규과제 없음

7. 지원규모 : 321.36억원 (계속 321.36억원)

8. 중점 추진사항

- 향후 5년 이후 세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전략품목의 핵심 기술을 선정하여 집중 지원
-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강화
- 산업간 융합촉진을 위해 융합형 R&D 과제 발굴
- 의료기기 특성을 반영한 병원-기업 연계형 수요자 맞춤형 R&D 과제 발굴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경쟁률	2.9 : 1	2.7 : 1	-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정부출연금	549백만원	1,250백만원	-

11.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나노과 : ☎ 044-203-4354, cdistone@motie.go.kr (www.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바이오나노융합팀 : ☎ 053-718-8264~5, 8241, kwonsh@keitre.kr (www.keitre.kr)

41. 전자시스템전문기술개발사업

1. 개요

- 중소·중견기업을 전자시스템 전문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술개발 지원

2. 지원대상분야

- (레이저핵심부품국제공동개발) 레이저 부품 및 모듈 분야의 해외 대학·연구소와 공동연구를 통해 레이저 핵심기술 국산화
- (장비연계3D프린팅소재기술개발) 시장수요 및 발전전망 등을 반영한 장비·소재 연계형 기술개발 및 품질평가체계 개발을 통해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차세대조선·에너지부품3D프린팅제조공정개발) 차세대 맞춤형 다품종 소량 조선·에너지 부품용 3D프린팅응용 핵심부품 실용화 개발
- (제조혁신3D프린팅기술개발) 3D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수요산업별 맞춤형 장비·공정·소재기술 확보를 통한 국내 제조업 혁신 도모
- (지능융합전자정보기기기술개발) 4차 산업혁명 대응 초지능·초연결·초실감 전자정보기기 (VR·AR 디바이스, IoT가전) 기술 역량 강화를 통한 글로벌 新시장 선도

3.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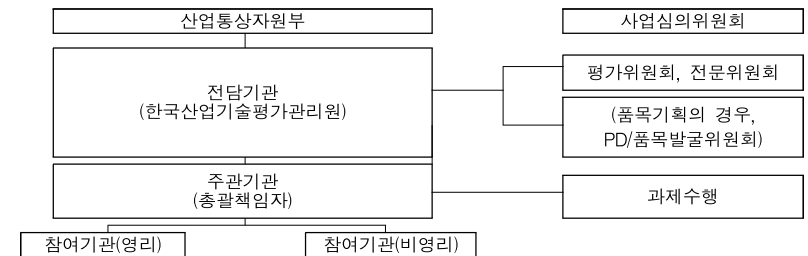
- 주관기관은 중소·중견기업이며, 참여기관은 제한없음
 - 단, 내역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은 상이할 수 있으며, 상세 내용은 해당 신규공고 시 안내 예정임

4. 지원내용

- RFP의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단독 또는 산, 학, 연 간의 공동개발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형태로 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수요조사 실시	제출자→전담기관
수요조사서 심의(품목발굴 기획)	전담기관
신규지원 대상과제 및 예산(안)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신규 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개념계획서 접수	주관기관→전담기관
개념계획서 평가	전담기관
개념평가결과와 통보	전담기관→주관기관(통보)
사업계획서 접수	주관기관→전담기관
신청과제 서면평가 및 대면평가	전담기관(평가위원회)
지원대상과제 및 사업자 확정	전담기관→산업통상자원부
선정과제 협약 체결	전담기관↔주관기관(참여기관)
연차·단계 평가	주관기관→전담기관→산업통상자원부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최종 평가	주관기관→전담기관→산업통상자원부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기술료 징수	주관기관→전담기관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사후관리	주관기관→전담기관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8. 7월 ~ '18. 12월	'18. 12월 ~ '19. 1월	'19. 2월 ~ 3월	'19. 4월

※ 세부사업 공고시 자세한 추진일정 등 참고(상기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7. 지원규모 : 257.77억원 (신규 43억원, 계속 214.77억원)

(단위 : 억원)

사업명	2019년도 예산		
	신규	계속	합계
레이저핵심부품국제공동개발	-	22.3	22.3
장비연계형3D프린팅소재기술개발	-	36.1	36.1
차세대조선탄소·에너지부품3D프린팅제조공정개발	-	42.6	42.6
제조혁신3D프린팅기술개발	18.0	51.8	69.8
지능융합전자정보기기기술개발	25.0	61.9	86.9
합계	43.0	214.7	257.7

8. 중점 추진사항

- 중소·중견기업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강화
- 산업간 융합촉진을 위한 융합형 R&D 과제 발굴

9. 문의처

사업명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	홈페이지
전자시스템전문기술개발	전자전기과 044-203-434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전자전기팀 053-718-8447	www.keit.re.kr
- 레이저핵심부품국제공동개발	전자전기과 044-203-4347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전자전기팀 053-718-8447	www.keit.re.kr
- 장비연계형3D프린팅소재기술개발	전자전기과 044-203-434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전자전기팀 053-718-8447	www.keit.re.kr
- 차세대조선탄소·에너지3D프린팅제조공정개발	전자전기과 044-203-434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전자전기팀 053-718-8447	www.keit.re.kr
- 제조혁신3D프린팅기술개발	전자전기과 044-203-434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전자전기팀 053-718-8459	www.keit.re.kr
- 지능융합전자정보기기기술개발	전자전기과 044-203-4341, 4343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전자전기팀 053-718-8459	www.keit.re.kr

- 산업통상자원부 전자전기과 : ☎ 044-203-4342, kschoi@motie.go.kr (www.motie.go.kr)
☎ 044-203-4341, kim3933@motie.go.kr (www.motie.go.kr)
☎ 044-203-4345, kihong@motie.go.kr (www.motie.go.kr)
☎ 044-203-4347, hongkp@motie.go.kr (www.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전자전기팀 : ☎ 053-718-8493, athome@keit.re.kr (www.keit.re.kr)
☎ 053-718-8447, kicheol.kim@keit.re.kr (www.keit.re.kr)
☎ 053-718-8459, soonok@keit.re.kr (www.keit.re.kr)

8. 중점 추진사항

- 제조업종별로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맞춤형 미세먼지 감축 실용화 기술개발 및 현장실증 실시
- 미세먼지 감축 기여 및 규제대응 지원과 더불어, 현장실증 Reference 공유 등 PIE 내 기술 교류로 전 부문 감축시너지 제고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 해당 없음(2019년 신규사업)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 해당 없음(2019년 신규사업)

11.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환경과 : ☎ 044-203-4249, maypark@korea.kr (www.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섬유화학금속팀 : ☎ 053-718-8313, k989@keit.re.kr (www.keit.re.kr)

43. 조선해양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1. 개 요

- 주요 수출국의 환경·안전규제 대응 및 新시장 조기선점을 위한 미래형 조선 및 해양플랜트 분야 핵심·원천 기술, 관련 기자재 개발

2. 지원대상분야

- 조선 : 환경규제 · 안전규제에 대응하는 핵심기술개발, IT 접목을 통한 중소조선소 경쟁력 강화 집중
- 해양플랜트 : 창의 · 시스템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목표로 엔지니어링 등 기반분야 핵심 기술 적극 육성 추진

3.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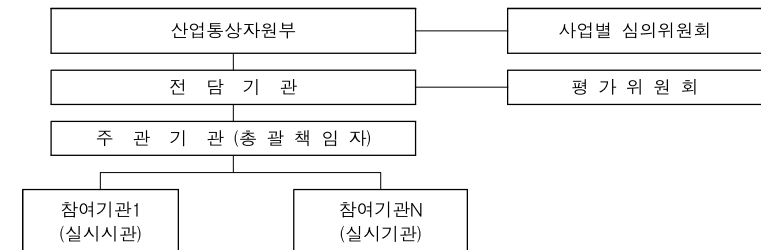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4. 지원내용

- RFP의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단독 또는 산, 학, 연 간의 공동개발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형태로 지원
- 총 기술개발기간 3~7년 이내로 연구발표회 및 연차평가를 통해 차기년도 지원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일반형 과제)



○ 추진절차

로드맵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 R&BD 전략 수립
과제기획	PD	수요조사
		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IT)	사업계획서 접수
		신규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연구발표회·연차평가	전담기관(KEIT)	연구발표회(일괄협약 및 단계협약), 평가위원회
단계·최종평가	전담기관(KEIT)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담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담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 신규지원 예정없음

7. 지원규모 : 292.97억원 (계속 292.97억원)

8. 중점 추진사항

- 4차 산업혁명 선도기술 및 신기후체제 대응기술 확보를 위한 기 지원과제 계속지원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경쟁률	1.8 : 1	1.9 : 1	1.8 : 1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정부출연금	529백만원	616백만원	661백만원

11.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 : ☎ 044-203-4332, jilee0202@korea.kr (www.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수송플랜트팀 : ☎ 053-718-8421, 8471, joaehyun@keit.re.kr (www.keit.re.kr)

44. 중견조선소혁신성장개발사업

1. 개 요

- 중형 선박의 제조혁신을 위한 엔지니어링 지원을 통해 주력 선종별로 전문화하여 설계 능력 고도화 및 중견 조선소의 기술 경쟁력 강화

2. 지원대상분야

- 중견조선소 및 설계엔지니어링 업체의 특성에 맞는 표준화된 설계정보 관리 및 생산계획 효율화를 위한 플랫폼 개발
- 조선사별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연구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선종별 표준화, 원가절감 등 공동개발을 통해 IMO 등 대기환경 기술 공동 대응
 - 중형조선 설계경쟁력 강화를 통해 최대 20% 생산성 향상 및 IMO Tier-3 환경규제 대응

3.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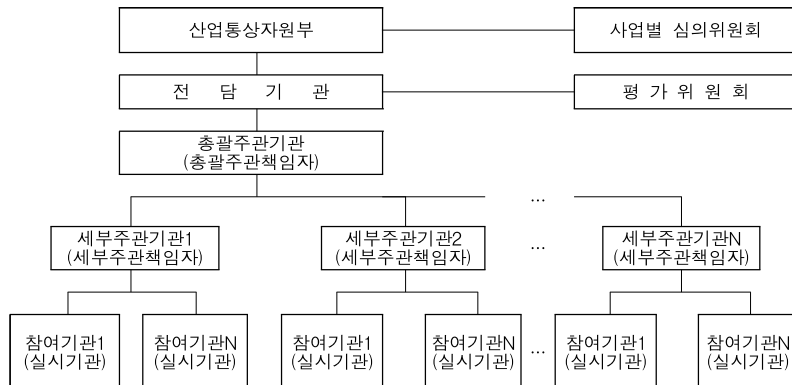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4.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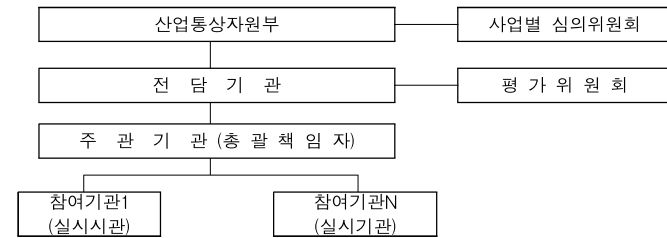
- RFP의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단독 또는 산, 학, 연 간의 공동개발형태로 수행되며, 출연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형태로 지원
- 총 기술개발기간 3~5년 이내로 연구발표회 및 연차평가를 통해 차기년도 지원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통합형, 병렬형 과제)



- 추진체계(일반형 과제)



- 추진절차

과제기획	PD	수요조사
		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IT)	사업계획서 접수
		신규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연구발표회·연차평가	전담기관(KEIT)	연구발표회(일괄협약 및 단계협약), 평가위원회
단계·최종평가	전담기관(KEIT)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담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담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8. 11월 ~ '18. 12월	'19. 1월 ~ 2월	'19. 3월	'19. 4월

* 상기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7. 지원규모 : 60억원 (신규 60억원)

8. 중점 추진사항

- 중소형 조선사에 특화된 설계·생산 기술개발을 통한 중견조선소 경쟁력 강화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경쟁률	-	-	-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정부출연금	-	-	-

11.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 : ☎ 044-203-4332, jilee0202@korea.kr (www.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수송플랜트팀 : ☎ 053-718-8421, 8471, jojaehyun@keit.re.kr (www.keit.re.kr)

45.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전기자동차 개방형 공용 플랫폼사업

1. 개 요

-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진입이 가능한 개방적·수평적 전기차 산업을 육성하고, 다변화된 소비자의 수요와 글로벌 시장에 대응한 전기차 기술경쟁력 확보

2. 지원대상분야

- SW, 전자, 프레임 등 전기자동차 핵심부품의 모듈화·공용화 및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 가능한 개방형 표준 플랫폼 제공

3.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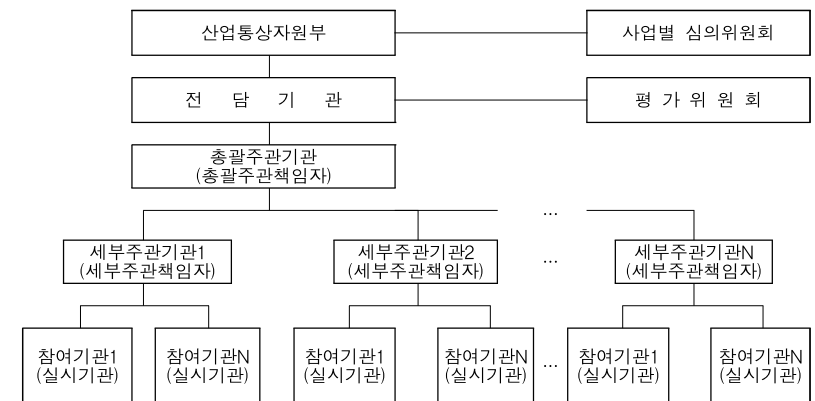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4.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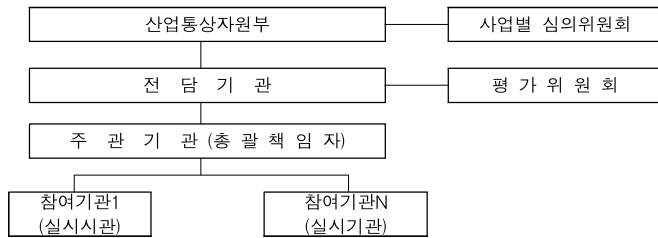
- RFP의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단독 또는 산, 학, 연 간의 공동개발형태로 수행되며, 출연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 형태로 지원
- 총 기술개발기간 3년 이내 지원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통합형, 병렬형 과제)



○ 추진체계(일반형 과제)



○ 추진절차

과제기획	PD	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IT)	사업계획서 접수
		신규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연구발표회·연차평가	전담기관(KEIT)	연구발표회(일괄협약 및 단계협약), 평가위원회
단계·최종평가	전담기관(KEIT)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담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담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8. 11월 ~ '18. 12월	'19. 1월 ~ '19. 2월	'19. 3월 ~ 4월	'19. 4월 ~ 5월

※ 상기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7. 지원규모 : 80억원 (신규 80억원)

8. 중점 추진사항

- 전기자동차 핵심부품의 모듈화, 표준화, 공용화 기술개발을 통한 기술경쟁력 강화
-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강화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경쟁률	-	-	-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정부출연금	-	-	-

11.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 : ☎ 044-203-4322, chk0517@motie.go.kr (www.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수송플랜트팀 : ☎ 053-718-8474, sjyoon@keit.re.kr (www.keit.re.kr)

46. 지식서비스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1. 개 요

- 지식서비스 분야 핵심·원천기술 개발 지원을 통해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의 역량강화 및 경쟁력 동반향상
- 서비스의 과학화·IT융합화, 지식화를 통해 기존 산업(제조업·서비스업)을 고도화하고 서비스 신산업을 창출하기 위한 핵심기술개발 지원

2. 지원대상분야

- 제조서비스융합 : 제조업(기술, 제품)과 서비스를 융합한 제조업 서비스화 기술과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고부가가치를 위한 서비스 핵심 기술
- 서비스산업융합고도화 : 컨설팅, 유통·물류 등 既존재하는 서비스산업 고도화, 서비스 산업간 융합을 통한 새로운 서비스(산업) 창출을 위한 기술

3.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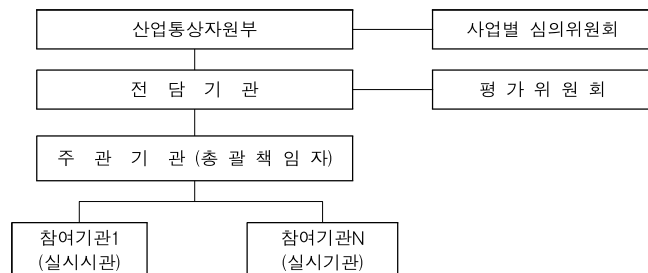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협회, 병원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4. 지원내용

- RFP의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단독 또는 산, 학, 연 간의 공동개발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형태로 지원
- 총 기술개발기간 1~4년 이내로 매년 연구발표회 등을 통해 과제조정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IT)	사업계획서 접수
		신규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진도점검·연차평가	전담기관(KEIT)	평가위원회
단계·최종평가	전담기관(KEIT)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담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담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8. 8월 ~ '18. 12월	'18. 12월 ~ '19. 2월	'19. 3월	'19. 4월

7. 지원규모 : 420.86억원 (신규 59.92억원, 계속 360.94억원)

8. 중점 추진사항

- 제조업+서비스 융합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발굴과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술개발
- 기존존재하는 서비스산업 고도화와 서비스 산업간 융합을 통한 새로운 서비스산업 창출을 위한 기술개발
- 창의적·도전적인 비즈니스 아이디어(BI)를 바탕으로 시장 중심의 유망한 비즈니스모델(BM)을 개발하고, 이를 R&D와 연계하여 기술개발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경쟁률	5.46 : 1	5.56 : 1	6 : 1

* BI연계형 과제 제외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정부출연금	623백만원	437백만원	693백만원

* BI연계형 과제 제외

11.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엔지니어링디자인과 : ☎ 044-203-4237, lky0329@motie.go.kr (www.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바이오나노융합팀 : ☎ 053-718-8227, jhjang@keit.re.kr, (www.keit.re.kr)
: ☎ 053-718-8240, judong1226@keit.re.kr

47. 차세대하이브리드PCB기술개발

1. 개 요

- 전자부품 분야의 차세대 PCB 핵심기술 획득을 통한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및 수요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글로벌 시장의 진출 확대 지원

2. 지원대상분야

- (차세대 통신기기용 하이브리드 PCB) 고밀도화, 유연화, 고주파 신호 등의 차세대 통신기기용 PCB의 기술 요구를 대응하기 위한 저유전 특성 Rigid-Flex PCB 제조 기술 및 Hybrid Substrate Like PCB용 소재 및 공정 기술개발
- (자율주행차 전장부품용 하이브리드 PCB) 자율주행차 전장부품용 PCB 기술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고주파 RF 전장부품용 하이브리드 PCB 제조기술 및 고주파 대응 저유전손실 소재 기반 하이브리드 PCB 공정기술 개발

3.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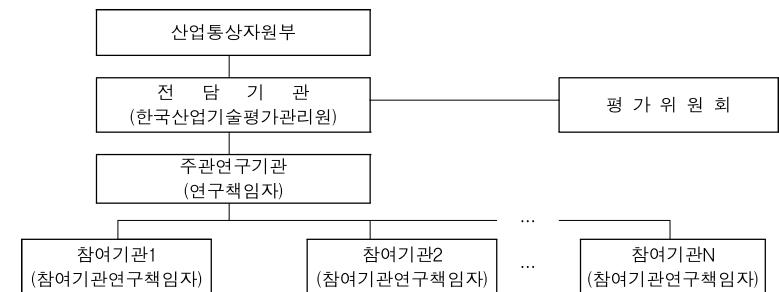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4. 지원내용

- 산, 학, 연 간의 공동개발형태로 수행되며 출연 형태로 지원 / 민간매칭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과제기획 및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IT)	사업계획서 접수
		신규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진도점검·연차평가	전담기관(KEIT)	평가위원회
최종평가	전담기관(KEIT)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담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담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8. 10월 ~ '19. 3월	'19. 4월 ~ 5월	'19. 5월 ~ 6월	'19. 7월

7. 지원규모 : 16.5억원 (신규 16.5억원)

8. 중점 추진사항

- 차세대 PCB 제품군의 부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쇄전자공정과 융합된 新공정 기술의 하이브리드 PCB 기술개발 지원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 해당사항 없음 ('19년 신규)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 해당사항 없음 ('19년 신규)

11.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전자부품과 : ☎ 044-203-4277, gdpaeng@motie.go.kr (www.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전자전기팀 : ☎ 053-718-8442, kang59@keit.re.kr (www.keit.re.kr)

48. 창의산업미래성장동력사업

1. 개 요

- 미래 우리나라의 먹거리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창의산업 핵심 미래선도기술 개발

2. 지원대상분야

- 스마트바이오생산시스템 개발
- PHR기반 개인맞춤형 건강관리시스템 개발
- 경험지식기반 체험형가상훈련 기술개발

3.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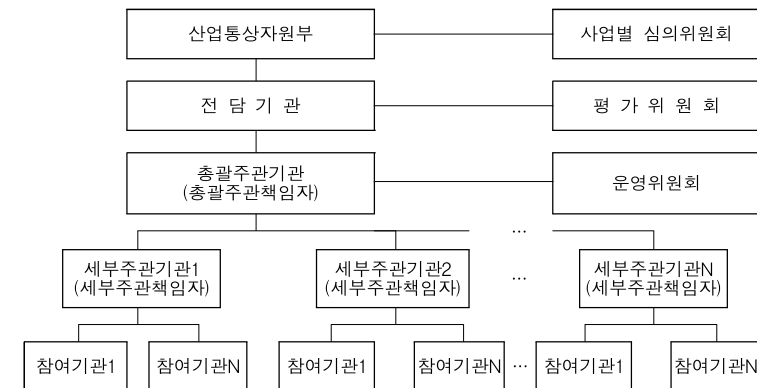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4. 지원내용

- 산, 학, 연 간의 공동개발형태로 수행
- 민간 Matching(대규모 민간 투자를 유도)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IT)	사업계획서 접수
		신규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진도점검·연차평가	전담기관(KEIT)	평가위원회
최종평가	전담기관(KEIT)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담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담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 신규과제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8. 9월~'18.12월	'19. 1월	'19. 2월	'19. 3월~4월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7. 지원규모 : 103.06억원 (신규 38.49억원, 계속 64.57억원)

사업명	2018년도 예산(억원)		
	신규	계속	합계
○ 스마트바이오생산시스템 개발	-	39.75	39.75
○ PHR기반 개인맞춤형 건강관리시스템 개발	29.2	11.97	41.17
○ 경험지식기반 체험형가상훈련 기술개발	9.29	12.85	22.14

*신규과제 예산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8. 중점 추진사항

- 창의산업 미래선도기술 분야 원천기술을 확보하여 신시장창출의 기반을 마련하고, 대·중·소 상생협력으로 산업생태계 조성 및 중견·중소기업의 기술력을 제고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경쟁률	1 : 1	6 : 1	7.5 : 1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정부출연금	900백만원	400백만원	225백만원

* 병렬형 세부과제 기준

11.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나노과 : ☎ 044-203-4395 (www.motie.go.kr)
- (가상훈련시스템) 전자전기과 : ☎ 044-203-4341 (www.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바이오나노융합팀 : ☎ 053-718-8235 (www.keit.re.kr)

49. 창의산업전문기술개발사업

1. 개 요

- 기술혁신 역량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의 핵심기술 개발 지원을 통해 창의산업분야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육성
- **(소비재산업고도화기술개발)** 소비재 산업의 프리미엄화·수출산업화 촉진을 위한 생활 소비재 분야의 융합형 신제품, 수출 BM 등 기술 개발 지원
-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기술개발)** 전문지식·창의성 등 인적 역량에 의하여 경쟁력이 결정되는 기획·설계 분야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 **(산업융합촉진)** 기존의 인증제도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시 시장출시를 위해 인증 관련기관과 중소·중견기업 등의 공동연구를 통한 인증·평가기준 개발 지원

2. 지원대상분야

- **(소비재산업고도화기술개발)**
 - 유망 생활소비재 주요 품목(가구, 문구, 가방 등 7대 분야)을 대상으로 제품 가치·기능·시장성 제고를 위한 융합형 제품, 수출 비즈니스모델 창출 등 연구개발 지원
-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기술개발)**
 - 5대 분야에 속하고 「K-BrainPower(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에 선정된 기업
 - ※ 5대 분야 : 바이오, 엔지니어링, 임베디드SW, 디자인, 시스템반도체
- **(산업융합촉진)** 기존의 인증제도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시 시장출시를 위해 인증 관련기관과 중소·중견기업 등의 공동연구를 통한 인증·평가기준 개발 지원

3.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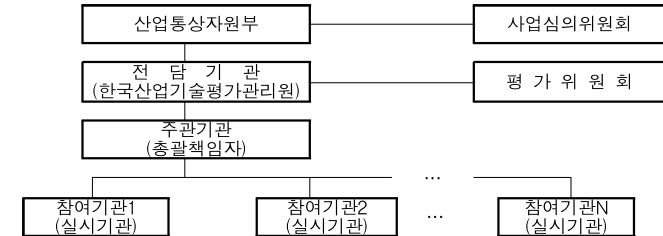
- **(소비재산업고도화기술개발)**
 - 소비재 지원대상 분야 기술개발이 가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참여기관은 제한 없음
-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기술개발)**
 - 「K-BrainPower(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에 한하며, 참여기관은 제한 없음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에서 인증한 「K-BrainPower(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에 한함
- **(산업융합촉진)**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 ※ 지원대상 과제별로 신청자격이 상이함에 따라 공고시 별도 안내

4. 지원내용

- 공모방식 : 품목공모, 자유공모
- 기업별 지원 규모
 - 지원금액 : 연간 정부출연금 3억원 이내
 - 지원기간 : 3년 이내
 - ※ 세부사업별 지원내용은 공고 시 별도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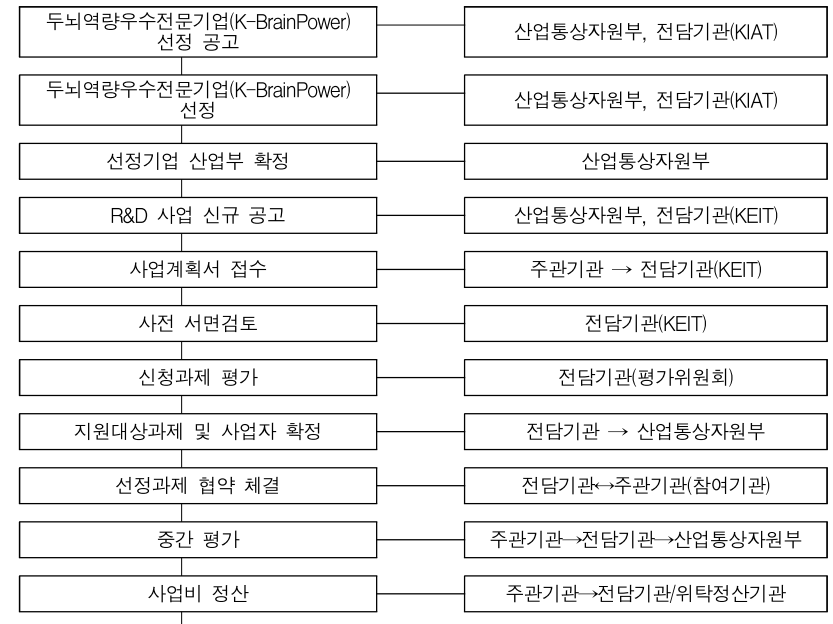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기술개발) 자유공모



최종 평가	주관기관→전담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기술료 징수	주관기관→전담기관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사후관리	주관기관→전담기관

- (소비재산업고도화기술개발) 품목공고, 자유공모

기술수요조사 (Top-down, Bottom-up)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
후보품목 및 과제 발굴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
지원 과제·품목 및 예산(안) 심의·확정	사업별 심의위원회
신규 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이하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기술개발'과 동일	

- (산업융합촉진) 자유공모

R&D 사업 신규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사업계획서 접수	주관기관 → 전담기관
사전 서면검토	전담기관
신청과제 평가	전담기관(평가위원회)
지원대상과제 및 사업자 확정	전담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선정과제 협약 체결	전담기관→주관기관(참여기관)
중간 평가	주관기관→전담기관→산업통상자원부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최종 평가	주관기관→전담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기술료 징수	주관기관→전담기관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사후관리	주관기관→전담기관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9년 일몰로 신규 없음	'19년 일몰로 신규 없음	'19년 일몰로 신규 없음	'19년 일몰로 신규 없음

7. 지원규모 : 126.67억원 (계속 126.67억원)

(단위 : 억원)

구 분	신규	계속	합계
두뇌역량우수기업전문기술개발	-	32.8	32.8
소비재산업고도화기술개발	-	79.36	79.36
산업융합촉진	-	14.51	14.51
합 계	-	126.67	126.67

8. 중점 추진사항

- (두뇌역량우수기업전문기술개발) 창의산업(기획·설계) 분야 R&D 지원을 통한 글로벌 전 문기업육성
- (소비재산업고도화기술개발) 유망 소비재 제품의 프리미엄화를 통한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 (산업융합촉진) 개발된 시제품(융합 신제품)의 시험·평가항목 및 규격 개발 등 인증에 관한 개발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두뇌역량우수기업전문기술개발	6 : 1	5 : 1	11.5:1
소비재산업고도화기술개발	11.3 : 1	3.2 : 1	8:1
산업융합촉진	1 : 1	1.5 : 1	1:1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두뇌역량우수기업전문기술개발	337백만원	334백만원	366백만원
소비재산업고도화기술개발	287백만원	269백만원	321백만원
산업융합촉진	497백만원	187백만원	471백만원

11. 문의처

-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기술개발)
 - 산업통상자원부 엔지니어링디자인과 : ☎ 044-203-4237, lky0329@motie.go.kr(www.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혁신기업디자인팀 : ☎ 053-718-8225, clover4@keit.re.kr(www.keit.re.kr)
- (소비재산업고도화기술개발)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진흥과 : ☎ 044-203-4844, leemy@motie.go.kr (www.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혁신기업디자인팀 : ☎ 053-718-8225, clover4@keit.re.kr(www.keit.re.kr)
- (산업융합촉진)
 -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산업진흥과 : ☎ 043-870-5503, hjkim60@korea.kr (www.kats.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표준인증팀 : ☎ 053-718-8252, hspark@keit.re.kr (www.keit.re.kr)

50. 첨단의료복합단지미래의료산업원스톱지원사업

1. 개 요

- 대구/오송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기구축 인프라를 활용하여 신약 및 의료기기 제품화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 범부처(산업부, 과기부, 복지부) 공동투자 사업

2. 지원대상분야

-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의료연구개발기관이 공동R&D사업을 수행하고, 수요자 맞춤형 연구 개발 및 제품화 지원

3. 신청자격

-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및 침복단지 특별법에 따른 의료연구개발기관(의료관련 산·학·연·병)
- 상세 내용은 해당사업 신규공고 시 안내 예정

4. 지원내용

-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의료연구개발기관이 공동R&D사업을 수행하고, 수요자 맞춤형 연구 개발 및 제품화 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미정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9. 12월 ~ '19. 1월	'19. 1월	'19. 2월	'19. 3월

7. 지원규모 : 18.68억원 (신규 18.68억원)

8. 중점 추진사항

- 기 구축된 침복 인프라를 활용하여 기업 등을 위한 전주기 R&D 지원사업을 추진
- (합성·IT기반 의료제품 개발지원)합성신약 및 IT기반 의료기기 개발의 사업화 지원을 위한 전주기적 지원

- (바이오·BT기반 의료제품 개발지원)바이오신약 및 의료기기 개발 단계의 응용연구부터 임상 시험 진입까지의 맞춤형 패키지 지원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경쟁률	-	-	-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정부출연금	-	-	-

11. 문의처 : 미정

51. 청정생산기반 산업공생 기술개발사업

1. 개 요

- 사전오염예방을 위한 폐쇄순환형 산업공생 핵심기술 개발 및 국내외 시장 진입을 위한 사업화 기술 개발

2. 지원대상분야

- 개별 사업장공정기술 시스템 개발 : 범용 공정 내 자원·에너지 사용 저감을 위한 제어기술 시스템 개발 지원
- 기업 간 연계기술 시스템 개발 : 제조 단위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 부산물, 용수, 에너지의 기업 외부(타 사업장 또는 지역사회) 사용에 수반되는 요소기술 및 기술 시스템 개발 지원
- 폐쇄순환 그리드 기술개발 : 폐쇄순환 설정 공간 내 기업 및 폐자원·에너지 정보에 기반한 수요 예측 및 구축된 네트워크의 최적 물질교환 관리 기술 개발 지원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4. 지원내용

- 총 기술개발 기간 3년 이내, 연간 5억원 내외 지원
 - ※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출연금은 기술개발사업비의 67%까지 지원
 - ※ 기타 지원 세부내용은 공고 참조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신규지원 예산(안)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과제 기획	전담기관
신규 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개념계획서 접수	주관기관→전담기관
개념계획서 평가	전담기관
개념평가결과 확정/통보	전담기관→산업통상자원부(확정) 전담기관→주관기관(통보)
사업계획서 접수	주관기관→전담기관
신청과제 평가	전담기관(평가위원회)
지원대상과제 및 사업자 확정	전담기관→산업통상자원부
선정과제 협약 체결	전담기관↔주관기관(참여기관)
연구발표회	주관기관→전담기관→산업통상자원부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최종 평가	주관기관→전담기관→산업통상자원부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기술료 징수	주관기관→전담기관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사후관리	주관기관→전담기관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8. 10월 ~ '18. 12월	'19. 1월	'19. 3월	'19. 4월

7. 지원규모 : 26.53억원 (신규 26.53억원)

- 개별 사업장공정기술 시스템 개발 : 3.75억원 (신규 3.75억원)
- 기업 간 연계기술 시스템 개발 : 17.78억원 (신규 17.78억원)
- 폐쇄순환 그리드 기술개발 : 5억원 (신규 5억원)

8. 중점 추진사항

- 대내·외 기술수요가 큰 산업공생(생태산업) 기술을 적기에 개발해 청정생산 기술의 국내 확산과 해외진출 기회로 적극 활용
- 개별사업장 내의 자원(에너지) 저감, 기업 간 부산물 연계, 기업 및 지역사회를 아우르는 폐쇄순환 네트워크 구축 기술 등 산업공생(생태산업)분야의 활성화
-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국내 산업공생 기술수요에 맞춰 중국, 터키 등 해외에 적용 가능한 맞춤형 기술개발로 수출 연계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 해당 없음(2019년 신규사업)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 해당 없음(2019년 신규사업)

11.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환경과 : ☎ 044-203-4244, hope1104@korea.kr (www.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섬유화학금속팀 : ☎ 053-718-8313, k989@keit.re.kr (www.keit.re.kr)

52. 초절전LED융합기술개발사업

1. 개 요

- 차세대 광원*인 마이크로 LED 및 융합 신기술 개발로 4차 산업혁명 변화의 기반기술을 제공하고 에너지 절감 및 세계 기후변화협약에 주도적 대응
- * 백열등 · 형광등 → LED → LCD → OLED → 마이크로 LED

2. 지원대상분야

- 대부분 수입 의존하는 마이크로 LED의 핵심 공정 국산화 목표로 3대 공정(광원/집적 모듈/응용)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사업 지원
- 대량 · 고속 전사기술, 생체인식 및 모션인식용 근적외선 광원기술, 다중과장 구현이 가능한 수직/수평 광원, 스위칭소자(CMOS/TFT)와 마이크로 LED 집적형 Monolithic 모듈 등 추진 예정

3.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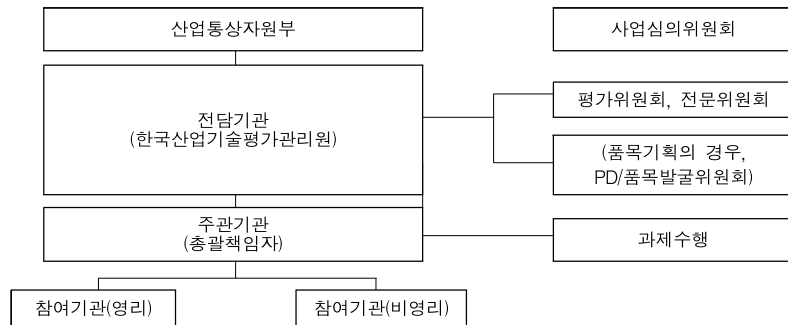
- 주관기관은 중소 · 중견기업이며, 참여기관은 제한없음

4. 지원내용

- RFP의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단독 또는 산, 학, 연 간의 공동개발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형태로 지원 / 민간매칭 필요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8. 7월 ~ '18. 12월	'18. 12월 ~ '19. 1월	'19. 2월 ~ 3월	'19. 4월

※ 세부사업 공고시 자세한 추진일정 등 참고(상기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7. 지원규모 : 45.58억원 (신규 23.2억원, 계속 22.38억원)

8. 중점 추진사항

- 마이크로 LED 광원 및 공정기술 확보

9.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전자전기과 : ☎ 044-203-4347, hongkp@motie.go.kr (www.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전자전기팀 : ☎ 053-718-8447, kicheol.kim@keit.re.kr (www.keit.re.kr)

53. 친환경수소연료선박R&D플랫폼구축

1. 개 요

- 차세대 유망 산업인 친환경 수소선박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수소연료전지 추진선박 기술 경쟁력 확보로 국내 조선해양·기자재 산업 진흥

2. 지원대상분야

- 차세대 친환경 수소선박용 수소연료 저장·공급 기술 등 3대 핵심기술 개발
- 수소추진선박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성능 및 인증 시험설비 등 구축

3.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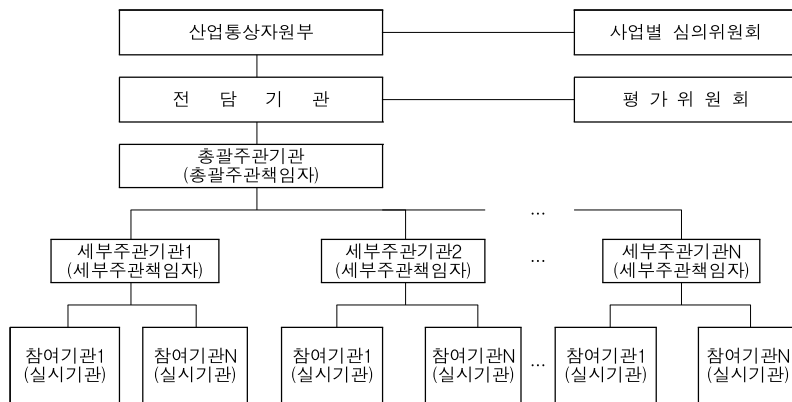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4.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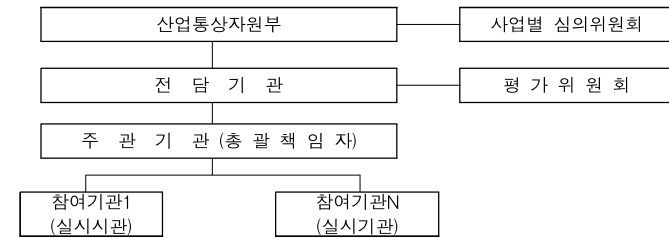
- RFP의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단독 또는 산, 학, 연 간의 공동개발형태로 수행되며, 출원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형태로 지원
- 총 기술개발기간 3~5년 이내로 연구발표회 및 연차평가를 통해 차기년도 지원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통합형, 병렬형 과제)



- 추진체계(일반형 과제)



- 추진절차

과제기획	PD	수요조사
		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IT)	사업계획서 접수
		신규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연구발표회·연차평가	전담기관(KEIT)	연구발표회(일괄협약 및 단계협약), 평가위원회
단계·최종평가	전담기관(KEIT)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담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담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8. 11월 ~ '18. 12월	'19. 1월	'19. 3월	'19. 4월

* 상기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7. 지원규모 : 50억원 (신규 50억원)

8. 중점 추진사항

- 국내기술수준 초기 단계인 친환경 수소연료전지 구현을 위한 국내 기술역량 강화
- 향후 미래를 위한 핵심원천기술 선점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경쟁률	-	-	-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정부출연금	-	-	-

11.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헤양플랜트과 : ☎ 044-203-4334, mamsae@korea.kr (www.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수송플랜트팀 : ☎ 053-718-8421, 8471, joaehyun@keit.re.kr (www.keit.re.kr)

54. 탄소산업기반조성사업

1. 개 요

- 융·복합 탄소소재·부품 기술개발 및 신뢰성평가 기반구축 지원을 통해 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및 전후방산업 경쟁력 강화

2. 지원대상분야

- (내역1. 탄소산업클러스터조성사업) 융복합 탄소소재·부품 기술개발 및 인프라구축
- (내역2. 탄소복합제신뢰성 평가기반 구축사업) 탄소복합재 활용제품 상용화 및 수출지원을 위한 표준개발 및 신뢰성평가 장비구축
- (내역3. 고부가가치 인조흑연 소재기술개발사업) 인조흑연소재의 제조 및 생산 공정기술 확보를 통해 '기초원료-중간원료-복합소재'의 전주기 기술개발 추진

3.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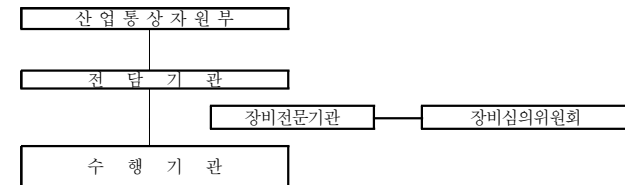
- 미정

4. 지원내용

- 탄소복합재료는 최근 전자, 자동차, 기계, 환경·에너지 등 전 산업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기술의 융·복합화 및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융합 신산업 출현에 적극 대응하고, 시장 및 기술 선점을 위하여 선진국과 경쟁해야 하는 고부가가치 핵심소재 기술개발 지원
- 국내에서 개발 및 생산된 탄소복합재 제품의 시험분석·평가를 통해 탄소제품에 대한 경제·사회적 신뢰성 제고 및 탄소복합재 시장확대에 필요한 성능평가 기반구축 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2] 추진절차를 따름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9. 1월 ~ '19. 3월	'19. 4월	'19. 5월	'19. 6월

7. 지원규모 : 152.19억원 (신규 37.48억원, 계속 114.71억원)

8. 중점 추진사항

- 신규 내역사업 추진 예정
 - 고부가가치 인조흑연 소재기술개발사업 : 인조흑연소재의 제조 및 생산 공정기술 확보를 통해 '기초원료-중간원료-복합소재'의 전주기 기술개발 추진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경쟁률	-	2.43 : 1	1.5 : 1

※ 본 사업은 17년 신규 사업임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정부출연금	-	6,694백만원	1,500백만원

※ 본 사업은 17년 신규 사업임

11.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철강화학과 : ☎ 044-203-4283, jaisin1@motie.go.kr (www.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섬유화학금속팀 : ☎ 053-718-8362, oceancanaria@keit.re.kr (www.keit.re.kr)

55.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

1. 개 요

- 맞춤형 의료 구현을 위한 국제적 수준의 유전체 연구 자원·정보 확보 및 맞춤형 예방·진단·치료기술 개발 지원

2. 지원대상분야

- 유전체 정보서비스 프로세스 최적화, 유전체 비즈니스모델 구축 및 산업화지원, 표준게놈지도 작성사업 등 포스트게놈시대를 대비한 유전체 정보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3.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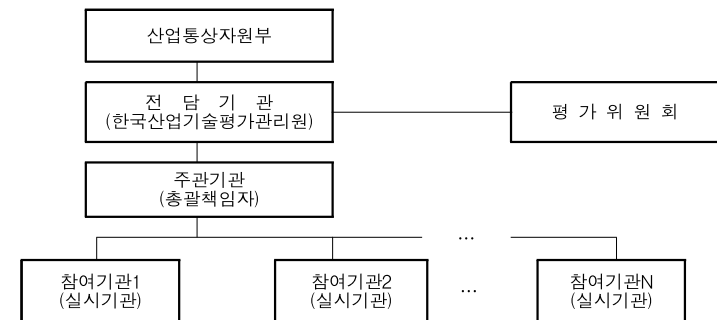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의료기관 등
- ※ 세부과제별 지원대상은 공고 시 별도 안내

4. 지원내용

- 생물정보학 기반의 분석 및 응용 플랫폼, 소프트웨어 개발 및 타부처 유전체 기초·기전 연구 결과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제품·서비스 모델 개발 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일반형 과제)



- 일반형 과제 : 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주관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총괄책임자라 함은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추진절차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8. 8월 ~ '18. 12월	'19. 1월	'19. 3월	'19. 4월

7. 지원규모 : 57.25억원 (신규 27.37억원, 계속 29.88억원)

8. 중점 추진사항

- 유전체 기초·기전 연구 결과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제품·서비스 모델 개발지원으로 중소·중견기업 육성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경쟁률	3 : 1	3.5 : 1	1 : 1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정부출연금	617백만원	515백만원	600백만원

11.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나노과 : ☎ 044-203-4395, hgw0008@motie.go.kr (www.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바이오나노융합팀 : ☎ 053-718-8234, hscha@keit.re.kr (www.keit.re.kr)

56. 표준안전기반구축사업

1. 개 요

- 국제상호인정협정(ILAC-MRA) 유지, 국제기준에 의한 시험역량 확보 등을 통한 무역상 기술장벽(TBT) 극복 및 해외진출 지원

2. 지원대상분야

구 분	지원대상 분야
국제상호인정시험 평가능력기반구축	· 신수요분야 시험장비 구축 및 해외진출 등 시험인증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 지원

3.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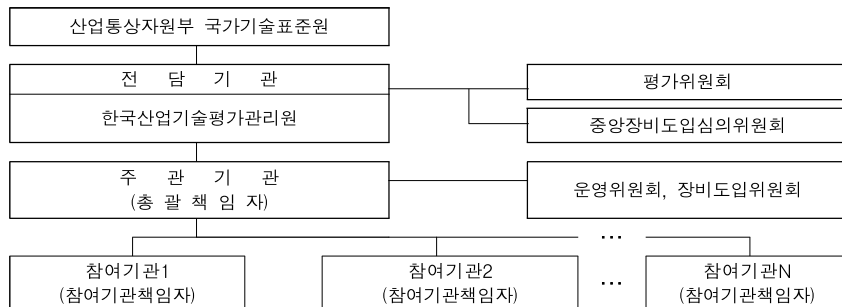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 ※ 세부과제별 지원대상은 공고 시 별도 안내

4. 지원내용

구 분	지원비율
국제상호인정시험평가능력기반구축	· 소요비용의 75% 이내에서 정부출연금 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 (국제상호인정시험 평가능력기반구축) : 지정공모(Top-down), 자유공모



6. 추진일정

과제별 계속과제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8. 12월	'19. 1월

7. 지원규모 : 98.9억원 (계속 98.9억원)

8. 중점 추진사항

- 신수요분야 시험장비 구축 및 해외진출 지원 강화를 위해 시험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특화된 분야에 집중적인 지원으로 국내 시험인증 능력 수준 제고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국제상호인정시험평가능력기반구축	2.24 : 1	2.33 : 1	-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국제상호인정시험평가능력기반구축	311백만원	1,400백만원	-

11. 문의처

-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산업진흥과 : ☎ 043-870-5503 hjkim60@korea.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표준인증팀 : ☎ 053-718-8272, kes80@keit.re.kr

57.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

1. 개 요

- 항공우주 부품·소재 기술개발로 세계적 항공우주부품 공급 지지화 및 항공우주분야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기술 개발

2. 지원대상분야

- 사업화 목적의 항공기 탑재 부품, 시스템 개발 (수출 및 국산화 기술개발)
- 기술 자립화 및 해외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항공부품 원천핵심기술 개발

3.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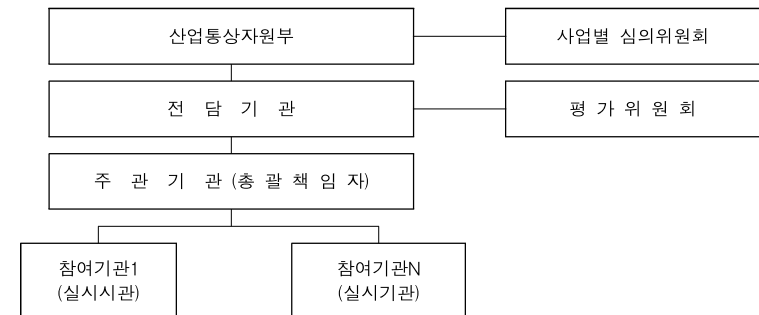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4. 지원내용

- 사업화 목적의 항공기 탑재부품 상용기술개발 및 기술 자립화와 해외 경쟁력 확보를 위한 원천핵심기술 개발 지원
- 지원기간 : 단기(3년 이내) 또는 중장기(총 5년 이내, 단계별 2~3년)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일반형 과제)



○ 추진절차

로드맵	산업통상자원부	통합기술청사진/로드맵 수립
과제기획	전담기관(KEIT)/ 항공우주기술연구조합	과제기획 후보과제 발굴
		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IT)	사업계획서 접수
		신규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연구발표회·연차평가	전담기관(KEIT)	연구발표회(일괄협약 및 단계협약), 평가위원회
단계·최종평가	전담기관(KEIT)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담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담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8. 7월 ~ '19. 1월	'19. 1월	'19. 3월	'19. 4월

※ 상기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7. 지원규모 : 270.53억원 (신규 37억원, 계속 233.53억원)

8. 중점 추진사항

- 완제기 부품국산화 및 성능개량기술 지원
- 민수 항공기 부품 국제공동개발 및 수출사업 지원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경쟁률	1.7 : 1	1.4 : 1	1.33 : 1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정부출연금	929백만원	1,571백만원	961 백만원

11.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 : ☎ 044-203-4315, neohacky@korea.kr (www.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수송플랜트팀 : ☎ 053-718-8428, dusgns@keit.re.kr (www.keit.re.kr)
- 한국항공우주기술연구조합 : ☎ 02-786-4379, bk@aerospace.or.kr (www.aerospace.re.kr)

58.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

1. 개 요

- 국가 전략기술 분야에 대해 신속하고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신산업 창출 및 국민 삶의 질 향상

2. 지원대상분야

- **(경량소재)** 현 주력산업의 토대인 철강소재에 이어 미래차, 항공기 등의 미래산업을 이끌어갈 타이타늄 항공부품 개발과 자동차용 알루미늄 판재 제조 기술 확보
- **(가상증강)** 가상·증강현실 디바이스 당면 과제인 저시야각, 저해상도, 고증량에 대한 근본적 해결 및 차세대 가상·증강현실 디바이스 핵심원천 기술 확보
- **(탄소자원화)** 부생·온실가스의 탄소원(CO, CO₂, CH₄ 등)을 자원으로 활용, 화학소재·탄산염제품 생산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여 및 신시장 창출

3.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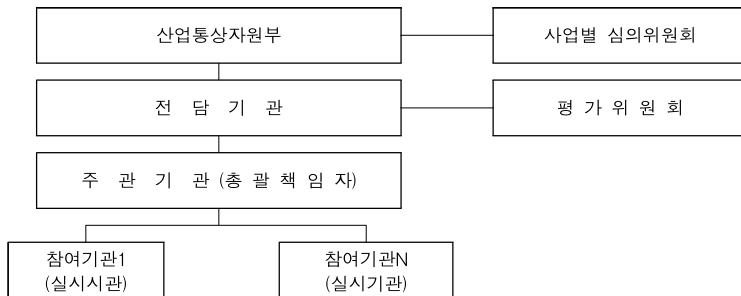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4.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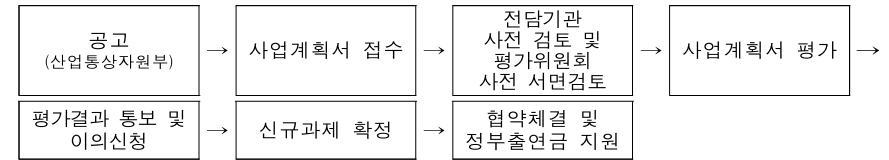
- RFP의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단독 또는 산, 학, 연 간의 공동개발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 형태로 지원
- 총 기술개발기간 5년 이내 지원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6. 추진일정 : 신규지원 예정없음

7. 지원규모 : 64.87억원 (계속 64.87억원)

8. 중점 추진사항

- **(경량소재)** 현 주력산업의 토대인 철강소재에 이어 미래차, 항공기 등의 미래산업을 이끌어갈 Ti 항공부품 개발과 자동차용 AI 판재 제조기술 확보에 집중
- **(가상증강)** 가상·증강현실 디바이스 당면 과제인 저시야각, 저해상도, 고증량에 대한 근본적 해결 및 차세대 가상·증강현실 디바이스 핵심원천 기술 확보
- **(탄소자원화)** 탄소광물화 플레그쉽 실증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연 도	2015년	2016년	2017년
경쟁률	-	-	1.25 : 1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15년	2016년	2017년
정부출연금	-	-	1,440백만원

11.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 ☎ 044-203-4523, mjjang@motie.go.kr (www.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경량소재추진단 : ☎ 053-718-8352, mslim@keit.re.kr (www.keit.re.kr)

59. 현장수요반영의료기기고도화기술개발사업

1. 개 요

- 의료현장 아이디어 기반의 기술개발, 인허가, 마케팅 등 전주기 지원을 통한 의료기기 제품화 성공률 제고

2. 지원대상분야

- (현장수요반영R&D) 의료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진이 보유한 신개념 의료기기 개발 및 기존 제품의 개선 추진
- (연구개발지원) 현장 아이디어의 제품화를 위한 기획, 개발, 시험검사, 전임상·임상, 해외인증, 인허가, 마케팅 등 제품의 신속 사업화를 위한 전주기 인프라 활용 지원

3.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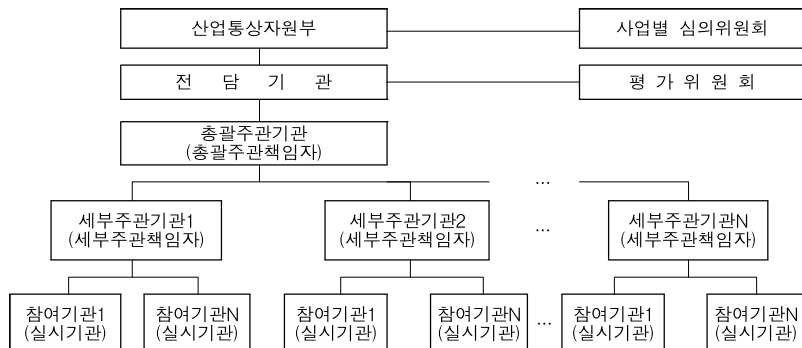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협회, 병원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 과제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은 상이할 수 있으며, 상세 내용은 해당사업 신규공고 시 안내 예정

4.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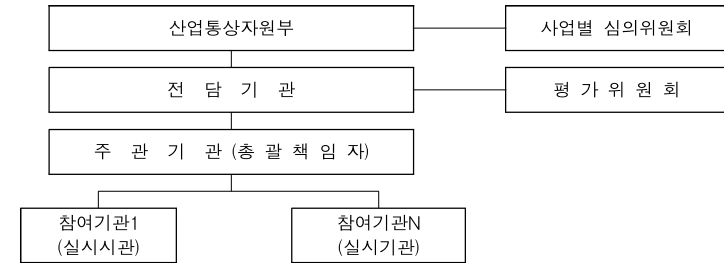
- RFP의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단독 또는 산, 학, 연, 병 간의 공동개발형태로 수행되며, 출연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형태로 지원
 - 총 기술개발기간 3~5년 이내로 단계평가를 통해 차단계 지원 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통합형, 병렬형 과제)



- 추진체계(일반형 과제)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IT)	사업계획서 접수
		신규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진도점검·연차평가	전담기관(KEIT)	평가위원회
단계·최종평가	전담기관(KEIT)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담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담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9. 1월 ~ '19. 3월	'19. 3월	'19. 5월	'19. 6월

7. 지원규모 : 55.27억원 (신규 55.27억원)

8. 중점 추진사항

- 병원(의료인) 수요 기반으로 시장진입(사업화)이 가능한 의료기기 개발을 지원하고 과제참여 병원은 구매의사를 확인
- 단계평가를 통한 경쟁형 R&D추진으로 1단계 지원 후 우수 과제를 선별하여 2단계 지원
- R&D지원과제를 통해 개발단계에서부터 인허가, 마케팅까지 사업화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경쟁률	-	-	-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정부출연금	-	-	-

11.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나노과 : ☎ 044-203-4354, cdistone@motie.go.kr (www.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바이오나노융합팀 : ☎ 053-718-8264~5, 8241, kwonsh@keit.re.kr (www.keit.re.kr)

60. 3D프린팅 의료기기 산업기술 실증사업(R&D)

1. 개 요

- 3D프린팅 의료기기 신시장 창출 및 시장 선점을 위한 전략품목의 임상실증 및 실증체계를 구축 지원하고 사업화(인허가, 보험적용 등)를 위한 실증지원 환경 조성

2. 지원대상분야

구 분	지원대상 분야
3D프린팅 의료기기 시생산 및 임상실증	장기적 제품개발 및 시험·평가, 임상·실증, 인허가를 요구하는 고위험·고난이도 3D프린팅 의료기기 임상실증 추진
3D프린팅 의료기기 상용화 실증지원	상용화 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성과 연계 임상지원 체계 수립, 선행·추가 R&D, 제도개선, DB화, GMP시설 위탁생산 등

3.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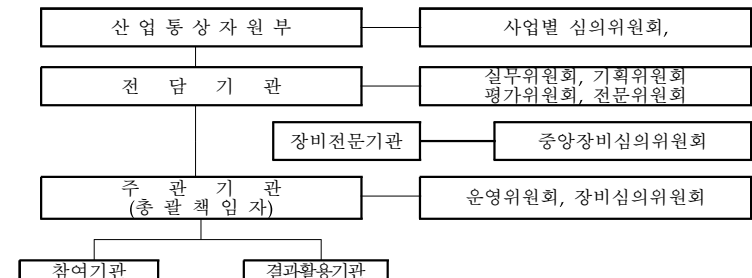
- 기업, 연구소, 대학, 병원, 업종별 단체 등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실시기관 등

4. 지원내용

- 공고 시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단독 또는 산, 학, 연 간의 공동개발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 또는 지자체가 참여하는 경우 매칭) 형태로 지원
- 총 사업기간 2~5년 내외, 정부출연금 지원은 과제 별 상이
 - * 3D프린팅 의료기기 시생산 및 임상실증 : 과제별 6억 내외('19년 기준이며, 총 30억 이내 수준)
 - * 3D프린팅 의료기기 상용화 실증지원 : 과제별 8억 내외('19년 기준이며, 총 80억 이내 수준)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 각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 자격, 출연금 지원 조건, 추진 방법 및 절차가 상이할 수 있음.

** 1), 2)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절차는 신규평가를 준용함.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7. 7월 ~ '19. 1월	'19. 1월 ~ 2월	'19. 3월	'19. 4월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7. 지원규모 : 40억원 (신규 40억원)

8. 중점 추진사항

- '19년 신규 사업으로,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실증사업의 목적 및 내용에 따라 3D프린팅 의료기기 신 시장 창출 및 시장 선점 도모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경쟁률	-	-	-

* '19년 신규 사업으로 지난 경쟁률 없음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정부출연금	-	-	-

* '19년 신규 사업으로 지난 정부출연금 없음

11.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전자전기과 : ☎ 044-203-4342, kschoi@motie.go.kr (www.motie.go.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반장비팀 : ☎ 02-6009-3294, shw0707@kiat.or.kr (www.kiat.or.kr)

61. 광역협력권산업육성(R&D)

1. 개 요

- 시·도간 자율적 연계협력을 통한 협력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구성된 14개 협력 프로젝트의 유망품목 기술개발 지원
- 전기·자율차, 바이오헬스, 첨단신소재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협력프로젝트 지속 지원**으로 지역의 **미래성장동력 창출** 도모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분야 : 6개 신산업, 14개 협력프로젝트

신산업 분야	2단계 협력프로젝트('18~'20년)	협력시도
전기·자율차	전기차 기반 전장융합부품 개발	대구, 경남
	고안전 자율주행 차량용 (협력/편의)부품 및 시스템 개발	울산, 경북, 세종
	상용 및 SUV 특화 친환경·고안전 차량부품개발	전북, 광주, 부산
에너지·신산업	태양광·풍력 기반 분산전원 핵심 융합부품 기술개발	충북, 제주
	에너지·위더 그리드 통합기기 및 시스템 개발	대전, 강원
	도심 특화 Micro-Grid 부품 및 시스템 개발	광주, 전북
바이오 헬스	웰라이프 바이오 헬스케어 특화 기능성 소재 및 융합형 의료기기 기술개발	강원, 대전
	실버케어 특화 생활의료기기 및 식품 개발	충남, 세종
프리미엄 소비재	천연 특화자원을 이용한 프리미엄 뷰티·향장제품 개발	제주, 충북, 충남, 전북
첨단 신소재	첨단 경량소재 특화 차량용 소재부품 개발	경북, 대구, 울산
	고강도·경량화 금속 및 플라스틱 부품 상용화 플랫폼 구축	세종, 경남, 충남
	금속/고분자/세라믹분야 고기능·친환경·차세대 소재부품 개발	전남, 경남
스마트·친환경선택	LNG 벙커링 특화 조선 기자재 기술 개발	경남, 울산
	ICT 융합형 스마트 친환경 선박 및 고부가가치 기자재 기술개발	부산, 전남

3. 신청자격

- 비즈니스협력형 R&D
 - (주관기관) 협력프로젝트의 주관·참여 시도 내 소재한 중소·중견기업
 - 컨소시엄 구성시 주관·참여 시도 내 소재한 기업 참여 필수, 그 외 시도 참여 자율
 - * 예) “LNG 벙커링 특화 조선 기자재 기술 개발(경남, 울산)”의 경우 주관기관은 경남이나 울산소재 기업 필수, 수행기관 중 경남소재 기업과 울산소재 기업 참여 필수(주관기관 포함)

4. 지원내용

구분	사업목적	지원내용
비즈니스 협력형	시도간 협력이 가능한 신산업 분야 집중 육성 및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14개 협력프로젝트 지원	(지원규모) 연차별 과제당 5~10억원 내외 (지원기간) 과제별 2년 이내 (수행기관) 5개 내외 컨소시엄 (지원방식) 품목지정, 자유공모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관리기관) 지역사업평가단
 - (사업수행) 기업, 대학, 지역발전 지원기관, 기타 비영리 연구기관 등

○ 추진절차



6. 추진일정

과제기획 (품목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8. 11월 ~ '18. 12월	'19. 1월 ~ '19. 2월	'19. 3월	'19. 4월

7. 지원규모 : 710.89억원 (신규 71.05억원, 계속 639.84억원)

8. 중점 추진사항

- 2단계 프로젝트별 목표 달성을 위해 컨소시엄 연계협력을 통한 산업생태계 조성 강화
 - 2단계 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통한 성과목표 달성과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프로젝트별 신규품목 발굴지원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경쟁률	2.8 : 1	4.2 : 1	2.7 : 1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정부출연금	513백만원	505백만원	607백만원

11.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진흥과 : ☎ 044-203-4428, tjsound@motie.go.kr (www.motie.go.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육성팀 : ☎ 02-6009-3766, 3767 atodos@kiat.or.kr (www.kiat.or.kr)

62. 광역협력권산업육성(R&D)(세종)

1. 개 요

- 세종시와 타 시도간 자율적 연계협력을 통한 협력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협력 프로젝트별 유망품목 기술개발 지원
 - 전기·자율차, 바이오헬스, 첨단신소재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협력프로젝트 지속 지원으로 지역의 미래성장동력 창출 도모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분야 : 3개 신산업, 3개 협력프로젝트

신산업 분야	2단계 협력프로젝트('18~'20년)	협력시도
전기·자율차	고안전 자율주행 차량용 (협력/편의)부품 및 시스템 개발	울산, 경북, <u>세종</u>
바이오헬스	실버케어 특화 생활의료기기 및 식품 개발	충남, <u>세종</u>
첨단신소재	고강도·경량화 금속 및 플라스틱 부품 상용화 플랫폼 구축	<u>세종</u> , 경남, 충남

3. 신청자격 : 광역협력권산업육성사업과 동일

4. 지원내용 : 광역협력권산업육성사업과 동일

5. 추진체계 및 절차 : 광역협력권산업육성사업과 동일

6. 추진일정 : 광역협력권산업육성사업과 동일

7. 지원규모 : 약 48억원 (신규 9억원, 계속 39억원)

8. 중점 추진사항 : 광역협력권산업육성사업과 동일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 광역협력권산업육성사업과 동일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 광역협력권산업육성사업과 동일

11. 문의처 : 광역협력권산업육성사업과 동일

63. 권역별신산업육성사업

1. 개 요

- 권역별 전략산업 육성을 통해 신성장 산업기반 마련 및 지역경제 발전

2. 지원대상분야

- 수소연료전지차부품실용화및산업기반육성 : 연료전지자동차 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 개발 Hub구축
- 자율주행자동차핵심기술개발 : 운전자 관여 없이 차량이 가속/조향/제동을 모두 수행 (level3)하기 위한 자율주행의 핵심부품 개발 및 이를 적용한 시스템 개발

3.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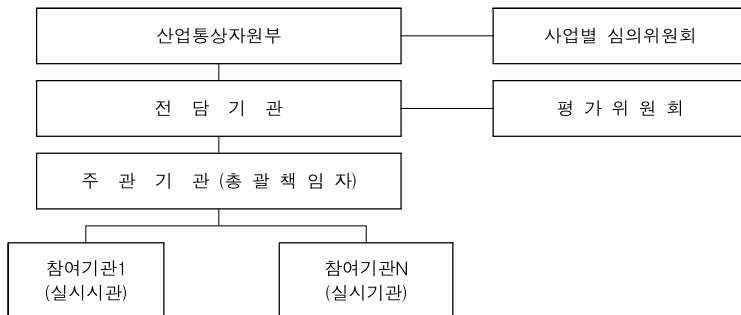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4. 지원내용

- RFP의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단독 또는 산, 학, 연 간의 공동개발형태로 수행되며, 출연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 형태로 지원
- 총 기술개발기간 5년 이내 지원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일반형 과제)



- 추진절차

과제기획	전담기관 (PD, 기술위원회)	수요조사
		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	사업계획서 접수
		신규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연차평가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단계·최종평가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담기관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정책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담기관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9. 1월~'19. 2월	'19. 2월~'19. 3월	'19. 3월	'19. 4월

※ '19년 신규과제 추진일정에 한함 (상기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7. 지원규모 : 292.73억원 (신규 2.52억원, 계속 290.21억원)

8. 중점 추진사항

- 수소연료전지차 및 자율주행자동차 핵심부품 성과 창출을 위한 지원 강화
-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강화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경쟁률	수소연료전지차	-	1.3 : 1	-
	자율주행자동차	-	2 : 1	-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정부출 연금	수소연료전지차	-	333백만원	-
	자율주행자동차	-	779백만원	-

11. 문의처

(수소연료전지차)

-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 : ☎ 044-203-4324, ykhwang@motie.go.kr (www.motie.go.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성장장비팀 : ☎ 02-6009-3796, tokisin@kiat.or.kr (www.kiat.or.kr)

(자율주행자동차)

-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 : ☎ 044-203-4321, pic0722@motie.go.kr (www.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수송플랜트팀 : ☎ 053-718-8471, shhong@keit.go.kr (www.keit.re.kr)

64. 글로벌중견기업육성프로젝트지원(R&D)

1. 개 요

-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의지와 잠재력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을 World Class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하여 취약한 산업의 허리를 강화하고 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며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

2. 지원대상분야

- World Class 300 기업의 성장전략서*에서 제시된 기술확보 전략을 바탕으로 핵심 및 응용기술개발을 지원
- * 성장전략서 : 시장확대, 기술확보, 투자, 경영혁신·고용 등 4개 분야별로 향후 10년간 기업의 성장전략을 기술

3. 신청자격

- World Class 300 선정기업(World Class 300 선정기업 중 R&D 미수혜기업)

<참고 : World Class 300 선정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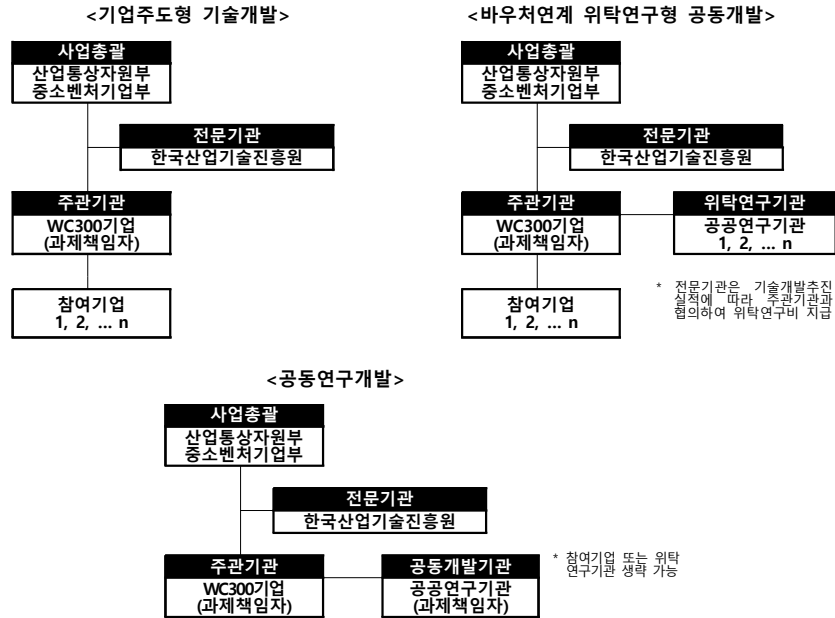
공통조건	선택조건
① 매출액 4백억~1조원 중소, 중견기업 (SW, 엔지니어링, 디자인 업종은 100억원 이상)	② 선택조건 2-1 : 일반 트랙 ▷ 직전년도 직간접 수출비중 20% 이상 ▷ 최근 3년간 평균 R&D 투자율 2% 이상 또는 최근 5년간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 15% 이상 2-2 : 혁신형 트랙 ▷ 직전년도 직간접 수출비중 10% 이상, 최근 3년간 평균 R&D 투자율 4% 이상

4.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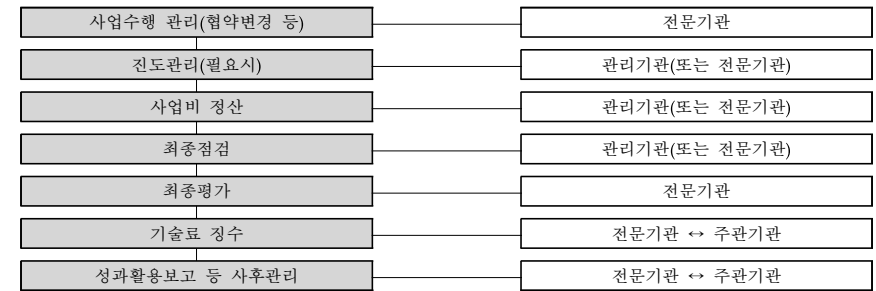
- 과제별 지원 규모
 - 지원금액/기간 : 연간 정부출연금 최대 15억원 이내/최대 5년 이내
 - * 중장기 핵심기술지원과제(최대5년)와 단기집중 투자지원과제(2년) 지원 가능
-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및 민간부담금 비율
 - 정부출연금 : 연도별 총 개발사업비의 50% 이내
 - 민간부담금 : 연도별 총 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금액(현금+현물)
 - * 민간현금부담금 : 민간부담금 총액의 40% 이상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6. 추진일정 : 신규지원 예정없음

7. 지원규모 : 339.1억원 (계속 339.1억원)

8. 중점 추진사항

- World Class 300 기업의 R&D역량 강화 및 R&D지원을 제고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경쟁률	2.8 : 1	1.1 : 1	1.1 : 1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정부출연금	631백만원	692백만원	463백만원

11.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혁신과 : ☎ 044-203-4375, swkac@korea.kr (www.motie.go.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혁신팀 : ☎ 02-6009-3541, ryu9810@kiat.or.kr (www.kiat.or.kr)

65. 기술성과활용촉진

1. 개 요

- 기술의 거래·사업화를 위한 인프라 조성 및 공공 R&D 성과물의 이전·사업화 촉진을 통한 국가 기술경쟁력 강화

2. 지원대상분야

- 사업화기반구축 및 성과확산 : 국가연구개발 성과물의 이전·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기술 시장의 조성 및 기술금융, 글로벌 진출 연계지원
- R&D개발전프로젝트 : 기술은행(NTB : www.ntb.kr)에 등록된 공공연구기관의 사업화 유망 기술 및 '기술나눔·기부채납·기술신탁'을 통해 기업에 이전된 사업화 유망 기술

3.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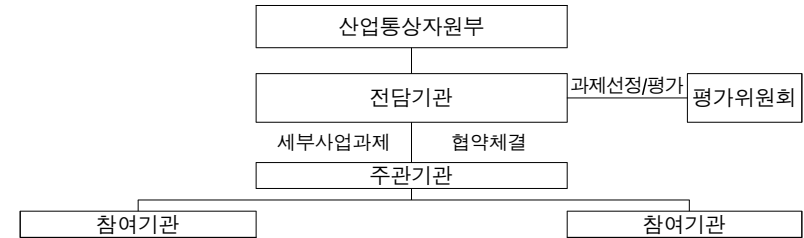
- 기술거래·평가기관, 중견·중소기업, 공공연구기관, 비영리기관 등

4. 지원내용

- 사업화기반구축 및 성과확산
 - (기술은행 구축·운영) 공공·대기업 보유 기술정보 DB 구축 및 기술사업화 정보 제공, 기술이전설명회를 통한 기술이전·사업화 지원
 -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 중소·중견기업과 접점에 있는 테크노파크와 민간기술거래기관이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기술이전·사업화 지원
 - (신성장동력기술사업화) 기업이 기술사업화 전문기관으로부터 기술사업화 서비스(BM기획, 기술성평가 등)를 받을 수 있도록 바우처 제공
 - (기술금융지원) 기술금융 조달지원을 통한 우수기술 보유기업의 사업화를 촉진 및 품질 관리 등을 통한 평가기관 역량강화 및 신뢰성 제고
 - (글로벌기술사업화) 국내 우수기술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기술수출 활성화
- R&D개발전프로젝트
 - 기술은행(NTB)에 등록된 공공·대기업 보유 기술 등을 중소·중견기업에 이전하고, 이전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기업과 공공의 추가 상용화 개발 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공고	▶ 산업부/KIAT 홈페이지 공고
↓	
사업제안서 검토 및 평가	▶ 신청서 검토, 선정평가
↓	
지원기관 확정 및 협약	▶ 최종확정 및 협약, 사업비지급
↓	
사업수행	▶ 사업추진 및 연차평가실시

6. 추진일정

사업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8. 12월 ~ '19. 1월	'19. 2월~3월	'19. 3~5월	'19. 6월

* 예시이며, 내역사업별로 상이

7. 지원규모 : 219.12억원 (신규 117.8억원, 계속 101.32억원)

8. 중점 추진사항

- 과거 R&D 결과물의 재발전을 통해 민간 기업에서 도입할 수 있는 기술을 발굴하여 공공 R&D 성과물의 활용률 제고
-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 중 상용화가 유망한 기술을 기업에 이전하고, 이전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추가 상용화 개발 지원
- 기술이전 후 추가 연구개발 등에 애로를 겪는 중소·중견기업 지원
- 과기정통부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범 부처 협업 기반의 후속 R&D 지원체계 구축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경쟁률	2.4 : 1	2.5 : 1	2.6 : 1

* 예시이며, 내역사업별로 상이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정부출연금	330백만원	320백만원	320백만원

* 예시이며, 내역사업별로 상이

11.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과 : ☎ 044-203-4532, focusminds@korea.kr (www.motie.go.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기획팀 : ☎ 02-6009-4301, jmcho@kiat.or.kr (www.kiat.or.kr)

66.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

1. 개 요

- 사업화 유망기술과 우수BM(Business Model)에 대한 지원을 통해 R&D성과물의 사업화 촉진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 벤처캐피탈 등 민간투자유치와 연계, 사업화전략(BM기획) · 기술개발(R&D) · 제품화 · 시험인증 등 사업화全过程을 지원

2. 지원대상분야

- **(민간투자연계형)** 신성장동력분야 유망기술을 민간투자유치와 연계하여 기술사업화全过程 (후속기술개발(출연금) ~양산(민간자금)) 통합지원
- **(범부처연계형)** 각 부처에서 지원/개발완료한 新기술의 사업화성공을 제고를 위한 양산용 제품화/시험인증 등 후속 사업화과정 지원

3.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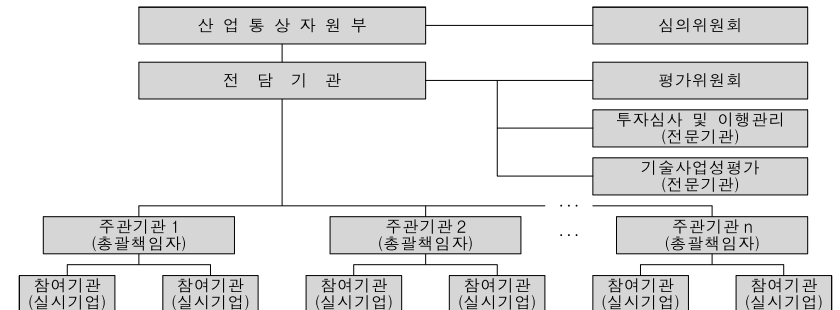
- 중소기업1), 중견기업2)
 -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기업
 -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기업

4. 지원내용

- 사업화 유망기술의 제품화를 위한 추가상용화개발, 시제품 성능평가 및 인증, 디자인 개발 등 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사업시행계획 및 예산안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시행계획 수립
		예산안 확정 및 시행계획 공고
지원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IAT)	사업계획서 접수
		신규평가 및 사업자 확정(평가위원회)
		협약체결
진도관리·연차점검	전담기관(KIAT)	평가위원회(현장실사 등)
최종평가	전담기관(KIAT)	평가위원회(현장실사+발표평가)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담기관(KIAT)	성공 또는 성실수행과제
성과활용관리	전담기관(KIAT)	성과활용평가 등

6. 추진일정(예정)

사업공고 및 접수	과제별 적합성 검토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8. 12월 ~ '19. 2월	'19. 2월	'19. 3월	'19. 4월

7. 지원규모 : 379.58억원 (신규 153.91억원, 계속 225.67억원)

8. 중점 추진사항

- 사업기간 내 제품 및 서비스의 시장진출과 사업화가 가능한 R&D성과물에 대해 우선 지원
- 글로벌 진출계획이 명확하고 시장파급효과가 큰 산업기술의 사업화 촉진
- 글로벌 신시장 창출가능성이 높은 BM(Business Model)의 사업화 촉진
- 범부처가 참여하는 사업화지원을 통해 기술-기술, 기술-서비스가 융합한 신산업 창출지원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경쟁률 (민간투자연계형)	3:1	2.7:1	5.1:1
경쟁률 (범부처연계형)	-	-	2.6:1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정부출연금 (민간투자연계형)	508백만원	600백만원	514백만원
정부출연금 (범부처연계형)	-	-	500백만원

11.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과 : ☎ 044-203-4531, skmin76@motie.go.kr (www.motie.go.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실용화팀 : ☎ 02-6009-4361, yhk7522@kiat.or.kr (www.kiat.or.kr)

67. 산업기술국제협력(R&D)

1. 개 요

- 개방형 혁신 및 글로벌 기술경쟁 가속화에 따라, 국제기술협력을 통해 해외기술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첨단기술 확보 및 해외시장진출을 촉진하고 산업경쟁력을 고도화

2. 지원대상분야

- 산업기술혁신사업 요령에 따라 국가차원에서 해외 주요국과의 국제공동연구 필요성이 인정되는 산업기술 전 분야
 - * 일부 양국 정부간 공동기술사업의 경우, 정부간 협의에 의해 사전 기획된 협력 분야 지원

3. 신청자격

- 국내외 산학연으로 구성된 국제R&D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하되, 국내기업의 참여 필수
 - 주관기관은 국내 기업 또는 대학 또는 연구소 (단, 사업유형별로 주관기관 자격이 상이하므로 세부 공고 참조)
 - 수행기관 중 국내기업은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 산업기술진흥협회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을 받은 기업에 한함

4. 지원내용

- 해외기관(산·학·연)과의 공동기술개발 자금 지원

지원유형	지원금액	지원기간
양국 정부간 국제공동기술개발 (양자펀딩형) (한-독일, 한-러시아, 한-스위스, 한-스페인, 한-싱가포르, 한-영국, 한-이스라엘, 한-인도, 한-중국, 한-체코, 한-캐나다, 한-프랑스)	연 5억원 내외	3년 이내
EU 다자간 국제공동연구개발프로그램 참여 지원 (다자펀딩형) (EUREKA, EUROSTAR2, Horizon 2020)	연 5억원 내외	3년 이내

* 양국 정부간 국제공동기술개발(양자펀딩형) 중 프랑스, 스페인의 경우 EUREKA 일정 준용

** 한-이스라엘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일정은 한·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재단에서 확인(www.koril.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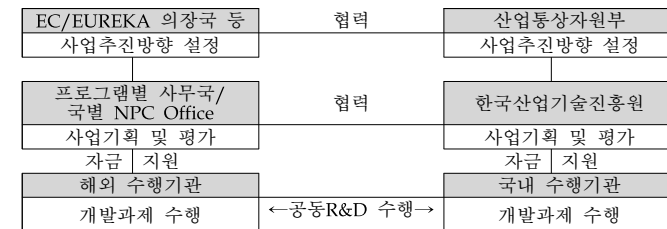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양자공동펀딩 R&D



- 유럽 다자간 공동펀딩 R&D



○ 추진절차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19. 1월 ~	'19. 3월 ~	'19. 4월 ~

* 상대국가별로 추진일정이 상이하여 반드시 사업공고에서 국가별 추진일정 확인 필요

7. 지원규모 : 596.95억원 (신규 68.88억원, 계속 464.53억원)

8. 중점 추진사항

- 공동연구 및 결과물 공유에 대한 해외기관과의 사전 협의(MoU 등) 필요
- 지식재산권 및 실시권 획득 및 활용에 관한 전략을 사업계획서에 제시
-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계획서는 국문과 영문 병행 작성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연 도	2015년	2016년	2017년
경쟁률	4.2 : 1	2.7 : 1	2.5 : 1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15년	2016년	2017년
정부출연금	407백만원	453백만원	424백만원

11.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 ☎ 044-203-4505 (www.motie.go.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제협력기획팀(양자) : ☎ 02-6009-3181~5 (www.kiat.or.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제협력사업팀(다자) : ☎ 02-6009-3201, 3212, 3207 (www.kiat.or.kr)

68. 산업기술혁신기반구축

1. 개 요

- **산업기술인프라연계활용** :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한 既구축 공동활용장비의 업그레이드를 지원하여, 중소기업 등이 기술개발 및 사업화 과정에서 지속 활용할 수 있도록 촉진
- **산업현장여성R&D인력참여확산기반구축** :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로 경제활동 참여비중이 저조한 R&D분야의 여성인력 활용 제고를 위하여 산업현장 진출지원 및 사회 분위기 조성

2. 지원대상분야

- **산업기술인프라연계활용** : 「신산업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신산업 민·관협의회, ' 16.12)」 관련 12대 신산업 분야 등
- **산업현장여성R&D인력참여확산기반구축** : 신진여성R&D인력산업현장진출지원, 경력단절 여성연구원 재취업 교육, 여성R&D인력 창업 및 기술지원 컨설팅, 여학생 산업기술현장체험(K-Girls' Day) 운영

3.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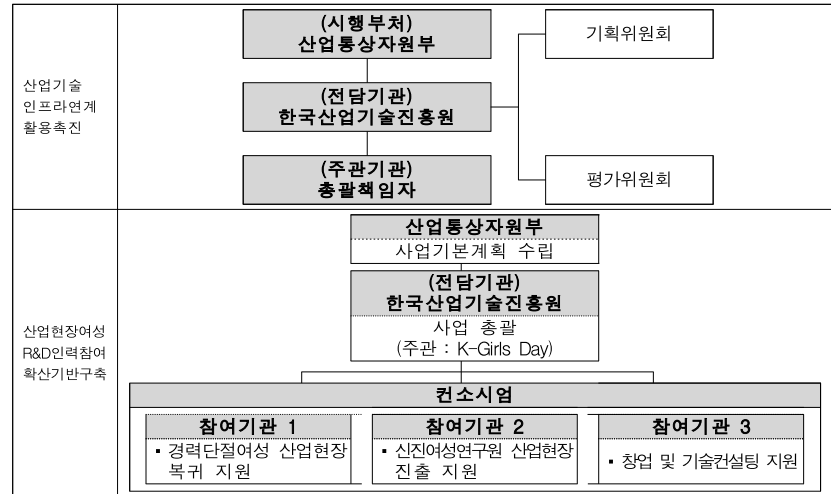
- **산업기술인프라연계활용** :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지원받아 도입·구축된 장비 중 공고일 기준 성과활용기간에 속하거나 성과활용기간이 종료된 장비를 보유한 비영리기관
- **산업현장여성R&D인력참여확산기반구축** : 비영리기관

4. 지원내용

- **산업기술인프라연계활용** : 해당 장비 취득가액의 20% 이내에 한하여, 최대 30백만원 이내로 지원
 - 부품 교체, 운영SW 업그레이드, 장비 수리·개조, 장비 전문인력 교육·훈련 비용
 - 협약일로부터 1년 이내, ' 19년 정부출연금 982백만원
- **산업현장여성R&D인력참여확산기반구축** :
 - (신진여성연구원 산업현장 진출지원) 신진여성연구원을 채용한 중소·벤처기업의 R&D 과제 수행 인건비 지원, 799백만원(1인당 1,300만원 이내, 50명 이내 지원)
 - (경력단절여성연구원 재취업교육) 경력단절여성R&D인력의 산업R&D분야 복귀지원을 위한 산업R&D 전문여성 아카데미 운영, 370백만원(3개 교육과정 운영 및 60명 이상 교육, 30명 이상 인턴십 지원)
 - (여성R&D인력 창업 및 기술 컨설팅) 여성과학기술인의 창업 및 기술 컨설팅 지원, 50 백만원(창업컨설팅 10명 이상, 기술지원컨설팅 4건 이상)
 - (여학생기술체험프로그램(K-Girls' Day)) 여학생의 이공계열 진학 및 산업현장으로 진출을 유도하기 위해 전국 산업현장(기업, 연구소, 대학 등)에서 실시하는 여학생 산업기술 현장 체험 프로그램, 570백만원(90개社 내외에서 1,800여명 내외의 여학생 참여)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6. 추진일정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산업기술인프라연계 활용촉진	'19. 1월~3월	'19. 4월	'19. 5월	'19. 6월	'19. 6월
산업현장 여성R&D인력참여 확산기반구축	'18. 11월~12월	'19. 1월	'19. 1월~2월	'19. 2월	'19. 2월

7. 지원규모 : 27.89억원 (신규 27.89억원)

- 산업기술인프라연계활용 : 9.82억원
- 산업현장여성R&D인력참여확산기반구축 : 17.89억원

8. 중점 추진사항

- 산업기술인프라연계활용 : 기존 장비의 성능향상을 통해 불필요한 신규 장비도입의 절차·비용을 절감하여 기업지원 신속성과 예산효율성 제고
- 산업현장여성R&D인력참여확산기반구축 : 예비여성R&D인력 육성과 창업 지원 및 신진여성R&D인력, 경력단절 여성R&D인력의 산업현장 참여확대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사업명	2016년	2017년	2018년
산업기술인프라연계활용촉진	-	-	3.4 : 1
산업현장여성R&D인력 참여확산기반구축	-	3:1	2:1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사업명	2016년	2017년	2018년
산업기술인프라연계활용촉진	-	-	25백만원
산업현장여성R&D인력 참여확산기반구축	3,400백만원	2,150백만원	2,150백만원

11.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 ☎ 044-203-4512, park615@motie.go.kr (www.motie.go.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www.kiat.or.kr)
 - (산업기술인프라연계활용촉진) 산업기반장비팀 : ☎ 02-6009-3293, kimbych@kiat.or.kr
 - (산업현장여성R&D인력참여확산기반구축) 중견기업기획팀 : ☎ 02-6009-3504, bunny64@kiat.or.kr

69. 산업위기지역미래자동차종합안전시험장

1. 개 요

- 강화되는 국제 충돌 안전 신법규 및 신상품 시험평가 대응을 위해 울산지역에 미래자동차 종합안전성 평가 시스템 구축 및 미래자동차 고안전·고신뢰성 차량부품개발로 자동차 부품업체의 기술경쟁력 강화

2. 지원대상분야

- 산업위기지역내(울산) 기업, 연구소, 대학 등

3.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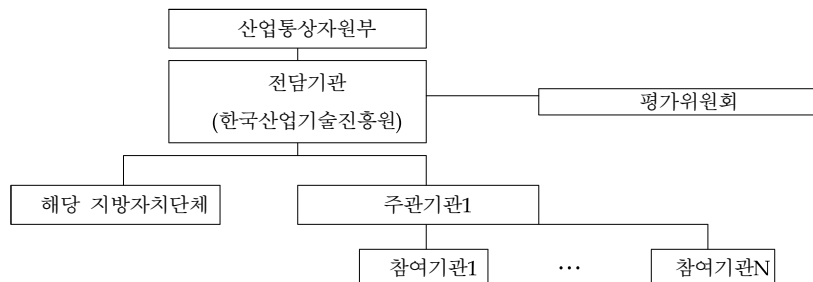
- 기업, 연구소, 대학, 업종별 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및 기술개발 실시기관 등

4. 지원내용

- 공고시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단독 또는 산, 학, 연 간의 공동개발형태로 수행되며, 출연 (기업 또는 지자체가 참여하는 경우 매칭) 형태로 지원
- 총 사업기간 3년 내외, 과제특성에 따라 차등 지원
 -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추진내용	추진주체	추진일정
시행계획 통보	산업통상자원부	'19.1 초
↓		
공 고	산업통상자원부 · KIAT	'19.1 중
↓		
사업계획서 접수	신청기관 → KIAT	~ '19.2 말
↓		
신규평가위원회	KIAT	'19.3 중
↓		
신규평가 결과 확정 통보	산업통상자원부	'19.3 말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	KIAT ↔ 주관기관	'19.4 중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9. 1월	'19. 2월 ~ 3월	'19. 4월	'19. 4월

7. 지원규모 : 40억원 (신규 40억원)

8. 중점 추진사항

- 미래자동차 종합안전시험장 구축 및 고안전 부품개발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연 도	2015년	2016년	2017년
경쟁률	-	-	-

* '19년도 신규과제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15년	2016년	2017년
정부출연금	-	-	-

* '19년도 신규과제

11.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 : ☎ 044-203-4324, hyk9414@korea.kr (www.motie.go.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반장비팀 : ☎ 02-6009-3295, jslim@kiat.or.kr (www.kiat.or.kr)

70. 산업위기지역미래자동차핵심부품개발

1. 개 요

- 미래자동차 핵심부품인 구동시스템, 배터리 시스템, 전기구동 새시융합부품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지역 자동차 산업위기 극복

2. 지원대상분야

- 산업위기지역내(경남) 기업, 연구소, 대학 등

3.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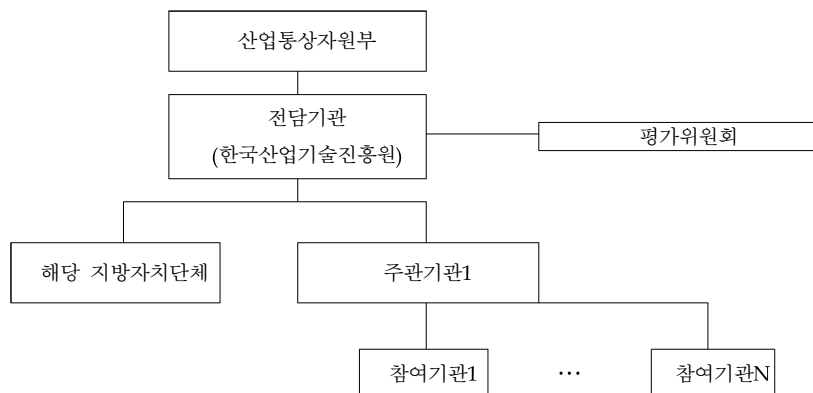
- 기업, 연구소, 대학, 업종별 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및 기술개발 실시기관 등

4. 지원내용

- 공고시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단독 또는 산, 학, 연 간의 공동개발형태로 수행되며, 출연 (기업 또는 지자체가 참여하는 경우 매칭) 형태로 지원
- 총 사업기간 3년 내외, 과제특성에 따라 차등 지원
 -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추진내용	추진주체	추진일정
시행계획 통보	산업통상자원부	'19.1 초
↓		
공 고	산업통상자원부 · KIAT	'19.1 중
↓		
사업계획서 접수	신청기관 → KIAT	~ '19.2 말
↓		
신규평가위원회	KIAT	'19.3 중
↓		
신규평가 결과 확정 통보	산업통상자원부	'19.3 말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	KIAT ↔ 주관기관	'19.4 중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9. 1월	'19. 2월 ~ 3월	'19. 4월	'19. 4월

7. 지원규모 : 30억원 (신규 30억원)

8. 중점 추진사항

- 미래자동차 핵심부품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실증화 사업 및 인증지원 시스템구축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연 도	2015년	2016년	2017년
경쟁률	-	-	-

* '19년도 신규과제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15년	2016년	2017년
정부출연금	-	-	-

* '19년도 신규과제

11.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 : ☎ 044-203-4324, hyk9414@korea.kr (www.motie.go.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반장비팀 : ☎ 02-6009-3295, jslim@kiat.or.kr (www.kiat.or.kr)

71. 산업위기지역미래형전기차부품개발

1. 개 요

- 미래형 전기차 핵심기술 확보·상용화를 통한 산업위기를 맞은 조선업종의 미래차 사업 전환, 4차 산업혁명 기술기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통해 산업위기 극복 지원

2. 지원대상분야

- 산업위기지역내(전남) 기업, 연구소, 대학 등

3.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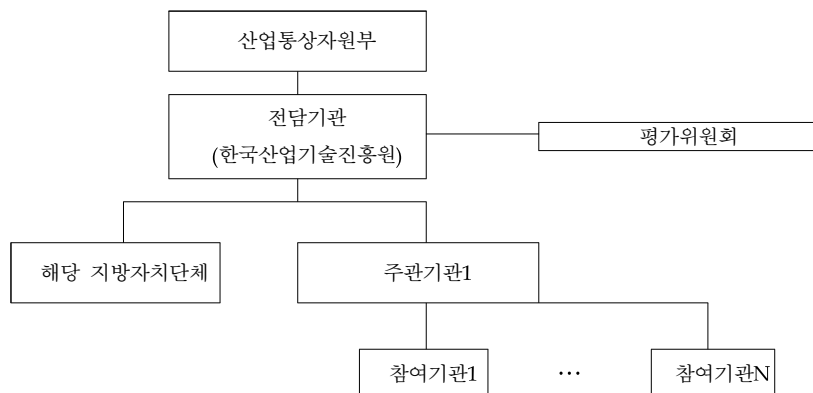
- 기업, 연구소, 대학, 업종별 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및 기술개발 실시기관 등

4. 지원내용

- 공고시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단독 또는 산, 학, 연 간의 공동개발형태로 수행되며, 출연 (기업 또는 지자체가 참여하는 경우 매칭) 형태로 지원
- 총 사업기간 3년 내외, 과제특성에 따라 차등 지원
 -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추진내용	추진주체	추진일정
시행계획 통보	산업통상자원부	'19.1 초
↓		
공 고	산업통상자원부 · KIAT	'19.1 중
↓		
사업계획서 접수	신청기관 → KIAT	~ '19.2 말
↓		
신규평가위원회	KIAT	'19.3 중
↓		
신규평가 결과 확정 통보	산업통상자원부	'19.3 말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	KIAT ↔ 주관기관	'19.4 중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9. 1월	'19. 2월 ~ 3월	'19. 4월	'19. 4월

7. 지원규모 : 40억원 (신규 40억원)

8. 중점 추진사항

- 전기차 주행성능 및 안전성 향상 등 기술개발과 기반구축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연 도	2015년	2016년	2017년
경쟁률	-	-	-

* '19년도 신규과제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15년	2016년	2017년
정부출연금	-	-	-

* '19년도 신규과제

11.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 : ☎ 044-203-4324, hyk9414@korea.kr (www.motie.go.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반장비팀 : ☎ 02-6009-3295, jslim@kiat.or.kr (www.kiat.or.kr)

72. 산업위기지역친환경고기능상용차특장차

1. 개 요

- 수송 분야 상용·특장부품의 안전성과 운영 효율성 제고, 사고예방을 제고할 수 있는 기술 개발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험평가·인증 체계 구축

2. 지원대상분야

- 산업위기지역내(전북) 기업, 연구소, 대학 등

3.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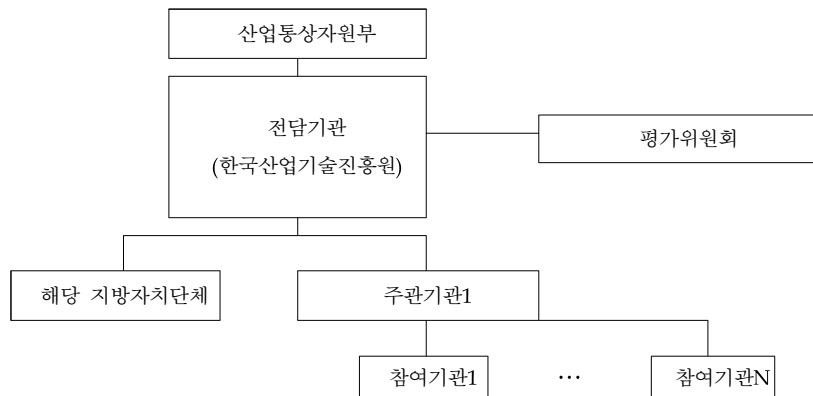
- 기업, 연구소, 대학, 업종별 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및 기술개발 실시기관 등

4. 지원내용

- 공고시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단독 또는 산, 학, 연 간의 공동개발형태로 수행되며, 출연 (기업 또는 지자체가 참여하는 경우 매칭) 형태로 지원
- 총 사업기간 3년 내외, 과제특성에 따라 차등 지원
 -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추진내용	추진주체	추진일정
시행계획 통보	산업통상자원부	'19.1 초
↓		
공 고	산업통상자원부 · KIAT	'19.1 중
↓		
사업계획서 접수	신청기관 → KIAT	~ '19.2 말
↓		
신규평가위원회	KIAT	'19.3 중
↓		
신규평가 결과 확정 통보	산업통상자원부	'19.3 말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	KIAT ↔ 주관기관	'19.4 중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9. 1월	'19. 2월 ~ 3월	'19. 4월	'19. 4월

7. 지원규모 : 45억원 (신규 45억원)

8. 중점 추진사항

- 상용 및 특장차량의 친환경·자율 고안전 기술 전환 및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시험평가, 시생산 지원 및 실증기반 마련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연 도	2015년	2016년	2017년
경쟁률	-	-	-

* '19년도 신규과제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15년	2016년	2017년
정부출연금	-	-	-

* '19년도 신규과제

11.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 : ☎ 044-203-4324, hyk9414@korea.kr (www.motie.go.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반장비팀 : ☎ 02-6009-3295, jslim@kiat.or.kr (www.kiat.or.kr)

73. 산업융합기반구축

1. 개요

- 개별기업이 구축하기 힘들지만 산업기술개발에 필수적인 공동활용 인프라 구축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산업기술혁신 역량 제고

2. 지원대상분야

구 분	지원대상 분야
산업융합기반구축	산업 고도화 및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주력산업 분야의 공동활용 기반을 조성

3.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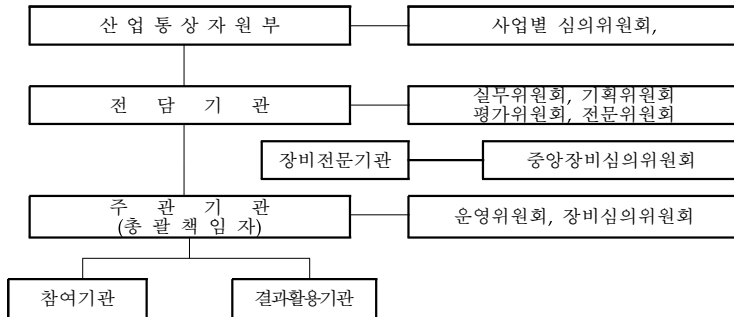
- 연구소, 대학, 업종별 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실시 기관 등

4.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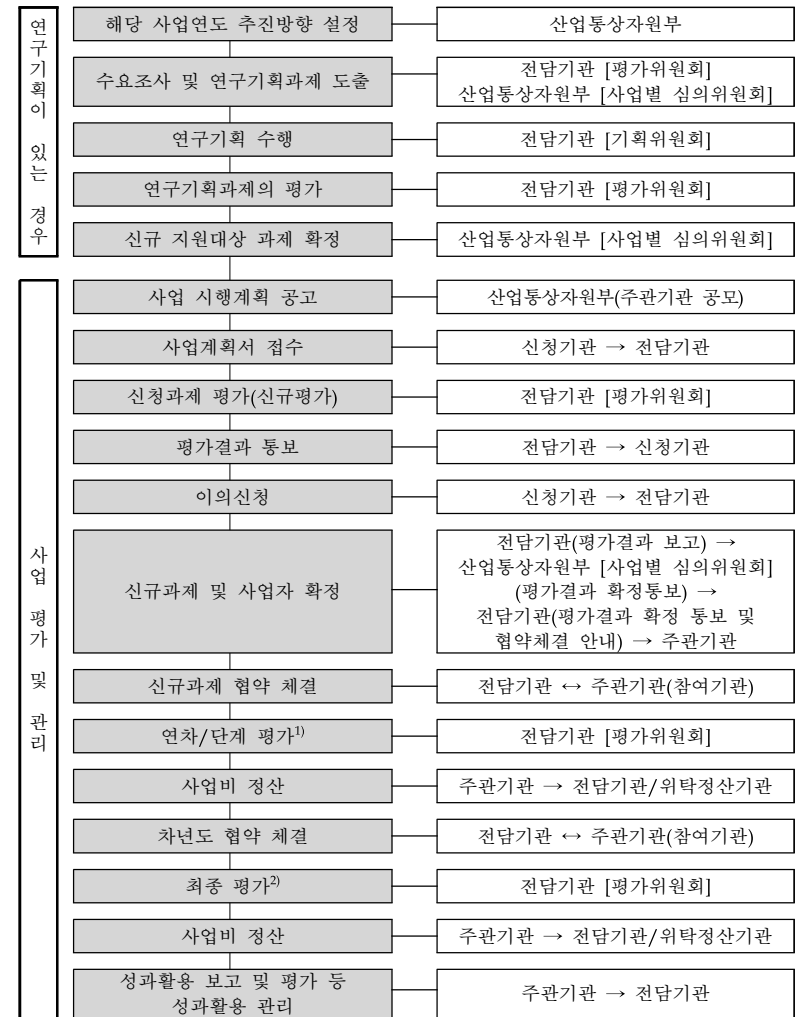
- 공고시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단독 또는 산, 학, 연 간의 공동개발형태로 수행되며, 출연 (기업 또는 지자체가 참여하는 경우 매칭) 형태로 지원
- 총 사업기간 3~5년 내외, 과제별 총 정부출연금 100억원 이하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 각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 자격, 출연금 지원 조건, 추진 방법 및 절차가 상이할 수 있음.

** 1), 2)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절차는 신규평가를 준용함.

6. 추진일정

* '19년 신규과제 계획 없음

7. 지원규모 : 430.79억원 (계속 430.79억원)

8. 중점 추진사항

- '사업 유형화'에 따라 기존 수행과제를 기반구축의 대표 유형별로 기획·평가·관리하여 사업추진 효과를 제고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연 도	2015년	2016년	2017년
경쟁률	1.3 : 1	1.4 : 1	1.5 : 1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15년	2016년	2017년
정부출연금	1,000백만원	909백만원	930백만원

11.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 ☎ 044-203-4512, park615@motie.go.kr (www.motie.go.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반장비팀 : ☎ 02-6009-3292, dongwan27@kiat.or.kr (www.kiat.or.kr)

74. 산업융합기술진흥사업

1. 개 요

- 융합 新제품·서비스 등의 시장진출 촉진을 위해 안전성·시장성 등 사업화 가능성을 검증하고, 실증 Track record 확보를 통해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도출

2. 지원대상분야

- 융합 新제품·서비스 등

3.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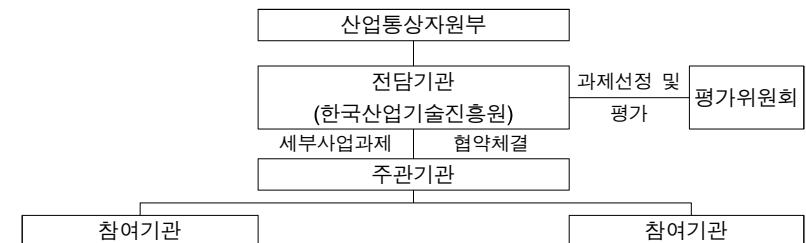
- 기술개발은 완료되었으나, 현행 법·제도의 공백 또는 규제에 막혀 실증 및 시장출시에 애로를 겪고 있는 융합 新제품·서비스 등
- (주관기관) 비영리기관, (참여기관) 제한 없음

4.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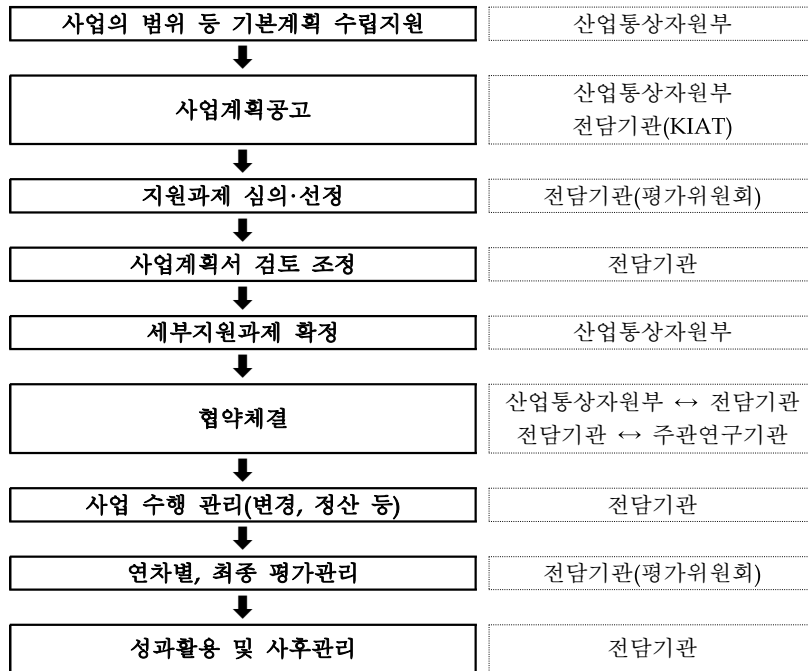
- 제품·서비스 융합 기반 新비즈니스의 안전성·시장성 검증 및 관련 법·규제 개선을 위한 실증 지원
- 총 사업기간 2년 이내, 과제별 출연금 연간 560백만원 이내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	-	-

* '19년 신규과제 없음

7. 지원규모 : 5.82억원 (계속 5.82억원)

8. 중점 추진사항

- 既개발된 기술에 대한 실증 및 오류·안전성·보안성 등을 보완하는 '최적화 R&D'와 '법·제도 개선'으로 제품·서비스 비즈니스의 성공적 시장진입 지원

* 4단계 추진: ❶제품·서비스 실증기획→ ❷제품·서비스 현장실증→
❸제품·서비스 최적화R&D→❹사업화 제도개선 도출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경쟁률	-	-	20 : 1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정부출연금	-	-	560백만원

11.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 ☎ 044-203-4512, park615@motie.go.kr (www.motie.go.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반장비팀 : ☎ 02-6009-3293, kimbych@kiat.or.kr (www.kiat.or.kr)

75.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R&D)

1. 개 요

- 미래산업을 선도할 다양한 산업전문인력의 양성과 양성된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산업에 우수인력을 지속 공급하는 선순환 시스템 구축

2. 지원대상분야

- 산업분야 전반

3.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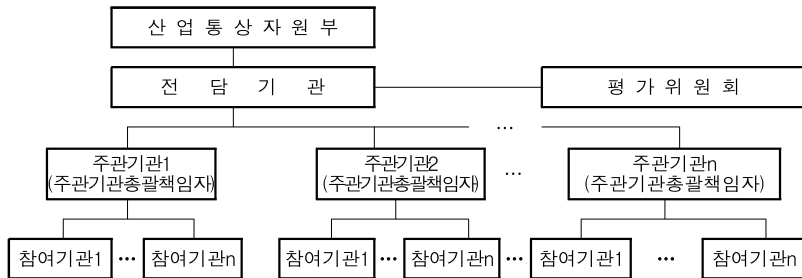
- 대학, 연구소, 단체 등

4.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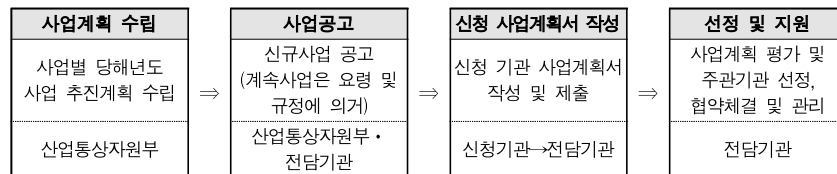
- 지원규모 : 내역사업별로 상이
- 지원기간 : 총 사업기간 5년 이내로 사업별 단계평가를 통해 차기단계 지원 결정
- 지원대상 : 대학(원)생 등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8. 1월 ~ '18. 5월	'19. 1월 ~ 3월	'19. 3월	'19. 3월 ~ 6월

7. 지원규모 : 851.38억원 (신규 172.2억원, 계속 679.18억원)

8. 중점 추진사항

- 산업계 수요 및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한 미래선도산업, 신산업분야의 핵심·원천기술별 R&D를 선도할 인력양성 및 고용연계형 교육과정 운영 강화
-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분야 중심의 인력공급 강화
-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인력수급통계 등 활용한 산업별 인력의 수요·공급간 정합성 제고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연 도	2015년	2016년	2017년
경쟁률	2.38 : 1	2.5 : 1	2:1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15년	2016년	2017년
정부출연금	440.6백만원	1568.8백만원	2,420백만원

11.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일자리혁신과 : ☎ 044-203-4223, (www.motie.go.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인력혁신팀 : ☎ 02-6009-3232 jini@kiat.or.kr (www.kiat.or.kr)

76. 산학융합지구조성(R&D)

1. 개 요

- 산업단지와 대학을 공간적으로 통합하고, 현장 중심의 산학융합형 교육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산업 현장에서 R&D-인력양성-고용이 선순환되는 체계 구축
- 생산 중심의 산업단지를 생산, 교육, 문화 등이 어우러지는 복합공간으로 재창조하여 근로자에게 평생 교육의 기회 확대 및 근로생활의 질 향상

2. 지원대상분야

- 광역시·도별로 입주기업, 고용규모 등이 큰 산업단지 또는 산학융합의 수요가 큰 산업단지

3. 신청자격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4에 의하여 산학연으로 구성된 비영리법인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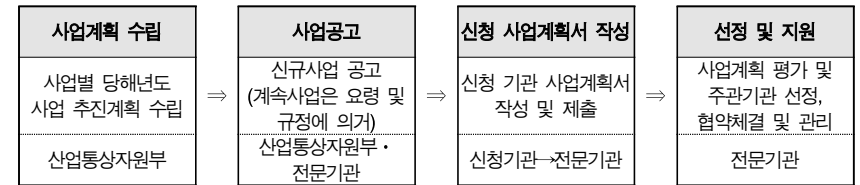
4. 지원내용

- (산학융합 거점공간 조성) 산업단지캠퍼스 및 기업연구관 조성 등
- (근로자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근로자가 산업단지에서 일하며 배울 수 있는 교육과정(학위,비학위) 운영, 마이스터고·특성화고 학생의 산업단지 기업·대학으로의 취업·진학 연계 지원
- (R&D 연계 현장맞춤형 교육) 기업 수요 기반의 현장형 기술·연구 인력 양성 및 취업·창업 연계 지원
-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 강화) 기업연구관 내에 중소·중견기업 연구소 입주 및 산학융합R&D 지원,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을 통한 교육·기술 지원
- (산학융합형 교육시스템 도입) 대학 교원, 학위, 교과과정을 개편하여 차별화된 현장맞춤형 산업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주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 사업 기본계획 수립 등
 -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세부 시행계획 수립, 주관기관 사업 평가·관리 등
 - 주관기관(산학연 컨소시엄 또는 비영리법인) : 세부 사업 수행

○ 추진절차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9년 중	'19년 중	'19년 중	'19년 중

7. 지원규모 : 210억원 (신규 120억원, 계속 90억원)

8. 중점 추진사항

- 해당사항 없음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경쟁률	1.67:1	-	-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정부출연금	24,000백만원	16,975백만원	10,053백만원

11.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 ☎ 044-203-4407, 4438, ydk0303@motie.go.kr (www.motie.go.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학협력팀 : ☎ 02-6009-3262, bowen@kiat.or.kr, (www.kiat.or.kr)

77. 소재부품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R&D)

1. 개 요

- 국가기간산업인 소재부품 분야 산업경쟁력 향상의 지원기반이 되는 지역산업거점기관에 대한 지원을 통해 소재부품산업 육성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2. 지원대상분야

구 분	지원내용
뿌리산업경쟁력강화지원	지역별 뿌리기술지원센터 설립 및 공동활용장비(파일럿플랜트) 구축을 기반으로, 뿌리중소기업에 대한 시제품제작, 성능시험 등 기술지원
3D프린팅 기술기반 제조혁신지원센터구축	산업용 금속/플라스틱 3D프린터 및 스캐닝시스템 구축을 기반으로, 지역 중소중견기업 대상 시제품제작, 기술교육, 현장방문 지원
광반공정혁신 플랫폼구축 및 산업화지원	광부품, 전자부품, 센서부품 관련 공정장비 구축 및 공정혁신 플랫폼 구축을 통해, 관련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시제품제작, 기술컨설팅 지원
희소금속 산업육성인프라구축	희소금속 재활용과 원소재 및 부품에 대한 시험분석장비 및 센터 구축을 통해, 희소금속 관련 중소중견기업 대상 기술개발 및 기술컨설팅, 인력양성 등 지원
항공산업기반구축	항공전자시험평가기반 및 항공비행시험평가 인프라를 구축하여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시험평가 및 인증 지원
나노탄소 소재의 실용화 및 신뢰성기반구축	나노탄소소재 공정(탄소나노튜브 정제, 그래핀 제조) 및 분석(열전도, 전자파차폐) 장비구축을 통해, 지역기업에 대한 시제품제작 및 신뢰성평가 지원
극한환경용 구조물 부식제어 융합기술기반구축	부식제어 분야에서 제품 안전성 확보와 환경규제 대응 등을 위한 극한환경(고온, 고압, 해상) 시험평가 인프라 구축
수출주력형 에너지 강관산업 경쟁력강화지원기반구축	에너지 강관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시험평가 및 생산기술개발 지원 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역산업 지속적 육성
융복합 디스플레이 소재부품 핵심 기술개발 및 기업지원 종합 허브구축	융·복합 디스플레이 소재부품 핵심 기술개발 및 기업지원 종합 허브구축을 위한 인프라 조성 및 기술표준화 기반 마련
경석자원을 활용한 세라믹 원료생산 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연구 기반 조성 및 상용화 기술지원	경석자원을 활용한 세라믹 신소재 원료생산 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연구 기반 조성 및 상용화 기술지원
미래신성장동력 00 고부가가치 사업화 플랫폼구축	국내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에 대한 시험분석·인증 관련 시험법의 표준화 적용 등의 플랫폼 구축

3.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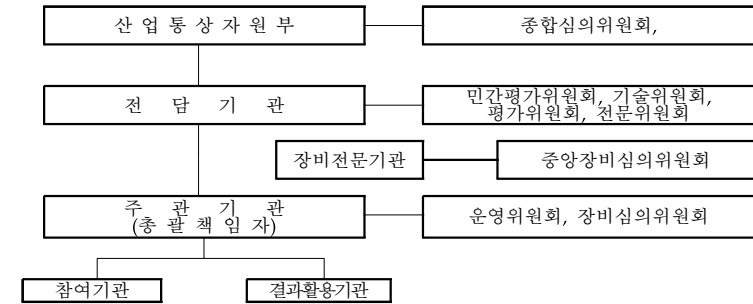
- 연구소, 대학, 업종별 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실시기관(비영리기관) 등

4. 지원내용

- 공공재적 성격의 연구장비·시설의 인프라 조성을 통해 관련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및 시제품 제작, 시험·인증 등의 기술서비스를 제공
- 총 사업기간 3~5년 이내
 - * 각 내역사업별 및 지원유형별 특성에 따라 총수행기간이 상이할 수 있음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6. 추진일정 : '19년 신규지원 없음

7. 지원규모 : 168.26억원 (계속 168.26억원)

8. 중점 추진사항

- 지역 내 기업의 지원활동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기반활용도를 높이고 센터 자립화를 도모
 - 기반조성의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역사업 설명회를 통해 센터(시설·장비) 홍보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경쟁률	1 : 1	1 : 1	-

* '18년 신규과제 없음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정부출연금	2,000백만원	1,962백만원	3,341백만원

11.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철강화학과 : ☎ 044-203-4283, kse1003@korea.kr (www.motie.go.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혁신기획팀 : ☎ 02-6009-34423, dany12030@kiat.or.kr (www.kiat.or.kr)

78. 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사업(R&D)

1. 개 요

- 소재부품(철강화학, 전자부품, 섬유세라믹 등) 산업분야의 기술개발과정에서 필요한 인프라 구축지원을 통해 해당분야 중소기업의 산업기술혁신 역량 강화

2. 지원대상분야

구 분	지원대상 분야
소재부품기술기반혁신	국내 소재부품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과 사업화기반을 지원하여 글로벌 소재부품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고, 글로벌 공급기지화를 달성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	광양만권 중심으로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기술개발 활성화 및 사업화 인프라 확보를 통한 미래형 소재산업 육성
플렉서블 전자소재 산업기술기반 조성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태양전지 등 플렉서블 전자소재의 시제품 제작 및 시험평가 기반구축을 통해 기업 지원 및 연계확산 지원
첨단산업 전략 소재부품 시험인증 기반구축	탄소복합체, 타이타늄 등 첨단산업용 극한성능 비철 소재·부품 인증 및 시제품 생산 지원 인프라 구축
레포트첨유발전 기반구축	레포트 첨유소재 R&D지원/시제품지원/시험평가/인증지원/기업지원까지 종합지원 인프라를 구축하여 레포트 첨유 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바이오세라믹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지원 기반구축	바이오세라믹 융합 소재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기반 구축을 통한 통합 평가 지원체계 마련, 제품 신뢰성 제고 및 관련 분야 산업화 촉진
기능성점토광물사업 육성	기능성 점토광물을 활용한 국내 최초 GMP급 테라피용 점토원료 양산 설비 구축 및 산업체 연계 기능성 제품 생산시설을 확보함으로써 고부가 원자재 국산화와 미래 성장산업 육성

3.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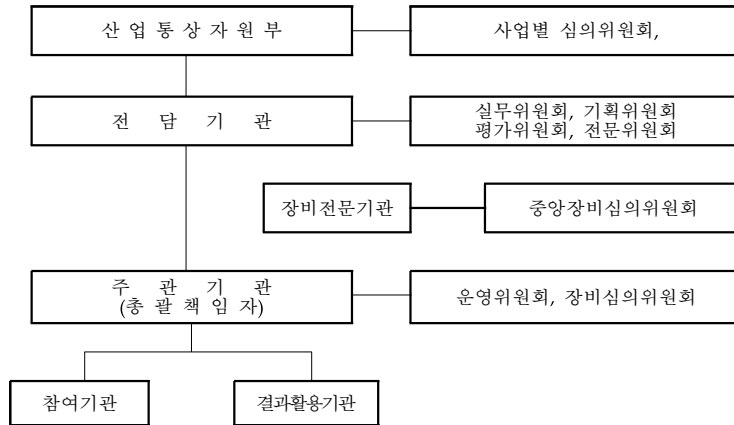
- 연구소, 대학, 업종별 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실시기관 등

4.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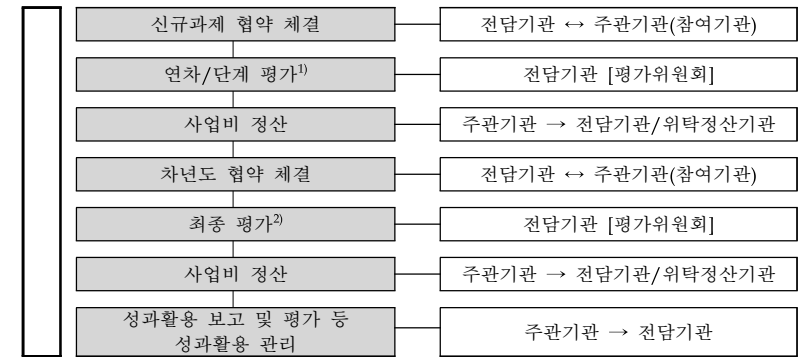
- 공고시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단독 또는 산, 학, 연 간의 공동개발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 또는 지자체가 참여하는 경우 매칭) 형태로 지원
- 총 사업기간 3~5년 내외, 과제특성에 따라 차등 지원
 -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9. 1월 ~ 2월	'19. 3월 ~ 4월	'19. 4월	'19. 5월

7. 지원규모 : 640.89억원 (계속 640.89억원)

8. 중점 추진사항

- '사업 유형화'에 따라 기존 수행과제를 기반구축의 대표 유형별로 기획·평가·관리하여 사업추진 효과를 제고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연 도	2015년	2016년	2017년
경쟁률	XXX : 1	1 : 1	-

* '17년도 신규과제 없음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15년	2016년	2017년
정부출연금	1,375백만원	533백만원	-

11.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 ☎ 044-203-4512, park615@motie.go.kr (www.motie.go.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반장비팀 : ☎ 02-6009-3295, jslim@kiat.or.kr (www.kiat.or.kr)

79. 시스템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R&D)

1. 개 요

-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기술혁신역량 강화에 필수적인 공동활용 기반 구축 및 산업-지역 간 융복합 얼라이언스 활성화 지원을 통해 지역 주역·신산업 육성

2. 지원대상분야

- 지역기업의 혁신역량 제고를 위해 연구기관 등이 지자체 제공 부지·유휴공간에 센터 건축 및 장비 구축을 하여 시험·평가·인증, 시생산, 테스트베드 등 기업 지원서비스를 제공
 - 장비구축 : 지역 중소·중견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마련하기 어려운 고가의 공동활용 장비·시설을 구축하여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

3.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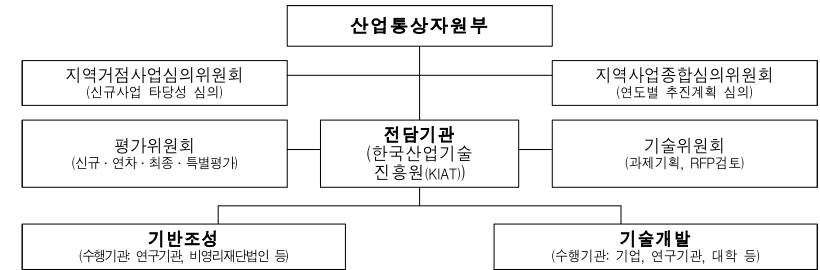
- 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법인
 - 사업별 해당 지자체의 현금·현물출연 확약을 받은 비영리법인(기관)

4.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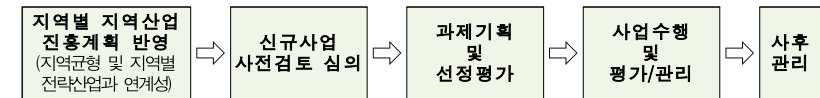
구분	내역사업명	지원기간	'18년도 국비
1	IoT 기반 스마트토이 클러스터 조성 사업	2019~2023	1,785백만원 이내
2	4차산업 선도, 플리즈마 탄소나노 융복합소재 거점기반 구축사업	2019~2023	2,320백만원 이내
3	항공기 복합재 부품 시험평가분석시스템 구축사업	2019~2021	600백만원 이내
4	백신상용화 기술지원기반시스템 구축사업	2019~2022	670백만원 이내
5	대용량 전력저장용 레독스흐름전지(RFB) 인증센터 구축사업	2019~2023	2,050백만원 이내
6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LIFE CARE산업 기반구축	2019~2023	1,000백만원 이내
7	유전자의약산업진흥 유전체 분석시스템 구축사업	2019~2023	1,136백만원 이내
8	창성공기산업 특화를 통한 기업육성 및 신성장 창출을 위한 기반구축 사업	2019~2022	600백만원 이내
9	파워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신뢰성 평가인증센터 구축사업	2019~2022	600백만원 이내
10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주행 기반 전장부품소재 기반구축 사업	2019~2023	600백만원 이내
11	3D프린팅 소재 상용화 품질평가 체계 구축 사업	2019~2023	600백만원 이내
12	산업용 드론 기업육성을 위한 기반 구축 및 실증 시범사업	2019~2022	600백만원 이내
13	중재적메카노바이오 기술융합연구센터 구축 사업	2019~2023	800백만원 이내
14	디지털 제조 Try-out 센터 구축 사업	2019~2023	600백만원 이내
15	유용 아열대 미생물자원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 사업	2019~2023	500백만원 이내
16	충남 첨단 금속소재산업 초정밀기술지원 플랫폼 사업	2019~2023	600백만원 이내
17	세포치료제 상용화지원시스템 기반구축사업	2019~2022	1,450백만원 이내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8. 1월 ~ '18. 5월	'19. 2월	'19. 3월	'19. 4월

7. 지원규모 : 1,086.11억원 (신규 192.11억원, 계속 894억원)

8. 중점 추진사항

- 4차 산업혁명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산업 등에 대한 집중투자 필요
 - 로봇, 자동차, 선박, 항공·드론, 전기·자율차 등 12대 신산업과 연계하여 수행하고, 이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해 신산업의 발전기반 마련이 필요
 - 지능정보사회로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자동차, 로봇, 의료, VR 등 주력산업 및 신산업과 지능정보기술과의 융복합을 통해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부상될 수 있도록 이에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
 - 4차 산업혁명에 중요한 IoT 관련 시험·검증, 테스트베드 조성 등 상용화 촉진을 위한 투자 확대 필요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경쟁률	1 : 1	1 : 1	1 : 1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 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정부출연금	1,920백만원	1,500백만원	1,043백만원

11.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과 : ☎ 044-203-4319, phk01@motie.go.kr (www.motie.go.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성장장비팀 : ☎ 02-6009-3092, ysk9003@kia.go.kr (www.kiat.re.kr)

80. 시스템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R&D)

1. 개 요

- 기업이 독자적으로 구축하기 어려운 공동활용 인프라 구축지원을 통해 시스템산업(기계, 로봇, 자동차, 항공, 조선, 해양플랜트 등) 관련 중소·중견기업의 산업기술 혁신역량을 제고

2. 지원대상분야

구 분	지원대상 분야
마이크로 의료로봇센터 구축	마이크로의료로봇 전문인력과 구축된 장비 및 특수시설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국내 마이크로의료로봇 기업육성 및 시장창출
로봇융합부품 고도화 기반구축	국내 로봇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로봇부품 산업의 기반조성, 장비구축 등 중소 로봇부품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한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
헬스케어로봇 실증단지 구축	고령자 헬스케어와 관련한 로봇제품과 기술의 실증테스트 및 인증, 인허가, 임상시험을 지원할 수 있는 실증단지 구축
첨단소재 가공시스템 기술지원 기반구축	첨단소재를 이용한 고부가가치 신제품이 국내 기술로 양산되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첨단소재부품 가공시스템” 기술개발과 연계한 기반구축 및 기업지원을 수행하고 이를 통한 산업 생태계 조성
차세대 차량 융합부품 기술개발 지원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갖춘 차세대 차량융합부품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차량융합부품분야 4대분야 글로벌 품질 인증/평가 연구기반 구축
전기구동 운송수단 실증환경 기반구축	전기구동 운송수단 핵심부품 및 차량단위 평가기반 구축을 통한 관련 산업 활성화 및 글로벌 기술선도 중소·중견기업 육성 지원
자동차 주요 안전부품 평가인증지원기반구축	자동차 사고예방과 피해경감이 가능하고 자동차부품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자동차 안전관련 8대 핵심부품 설정과 국제적인 인증능력을 보유한 인증기반 인프라를 구축
조선 기자재 성능 고도화 기반구축	선박 및 수중방사소음 규제강화 등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 기자재 성능고도화를 위한 기업 공동활용 시험인증 통합 지원체계 구축
해양 케이블 시험연구센터 구축	해양플랜트 케이블 관련 연구개발 및 국산화를 위한 시험인증 기반 구축하여 국산화 기술 기반확보 및 시험평가 비용 절감
해양플랜트 고급기술 연구기반 구축	해양플랜트 관련 EPCI(M) 전주기 핵심원천기술 역량 강화를 통해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전주기 시장진출에 의한 해양플랜트산업 수출증대
조선해양기자재 장수명 기술지원센터 구축	조선해양기자재 장수명 기술지원센터 기반구축을 통한 신뢰성 인증 및 노후기자재 수명진단으로 장수명 인증 지원체계 구축
가스(LNG) 연료 추진 조선기자재지원 기반구축	LNG등 가스 추진 연료로 사용하는 중대형 선박의 가스연료추진시스템(가스연료탱크, 고/저압 가스연료공급장치)에 장착되는 각종 기자재 및 모듈의 성능/신뢰성 평가, 중소기업 지원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
클라우드 기반 해양플랜트 O&M 엔지니어링 가상시스템 기술기반구축	해양플랜트 산업 고부가가치 영역인 운영·유지보수(Operation & Maintenance, O&M) 분야의 클라우드 기반 가상시스템 기술기반 구축을 통한 신성장동력산업 창출
레이저융합 의료기기/첨단소재가공 산업기반구축	레이저를 활용한 차세대 의료기기 및 첨단소재 가공기기 산업 육성 기반을 구축하여 레이저 응용기기 산업을 지역/국가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차세대 DC 전기전자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기반 구축	DC 전기전자 기기의 개발, 시험평가, 분석을 위한 공동활용 장비 및 기업지원서비스 체계 구축을 통해 DC 전기전자 산업 활성화
OLED 조명산업 클러스터 조성	국내 OLED 조명산업 조기 활성화 및 세계시장 선점 지원을 위한 역량 강화 및 기반구축
광·음·복합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기반구축	광기반 융·복합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시제품제작 지원 및 시험인증 기반구축
철도차량핵심부품시험인증 기반구축	철도차량 핵심부품 시험·인증 기반 구축을 통해 철도차량부품 산업 활성화 및 글로벌 강소 부품전문기업 육성
의료기기 표준플랫폼	의료기기 개발 및 제조기술의 국내 플랫폼 개발과 공용부품의 표준 모듈화를 통한

구 분	지원대상 분야
기술개발 및 보급	국내 제조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친환경자동차 부품클러스터조성	친환경자동차 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부품기업 기술역량 강화를 통한 자동차 창조융합 기술 생태계 조성과 일자리 창출 및 확산을 위해 부품기업 지원 및 관련 연구기반조성

3.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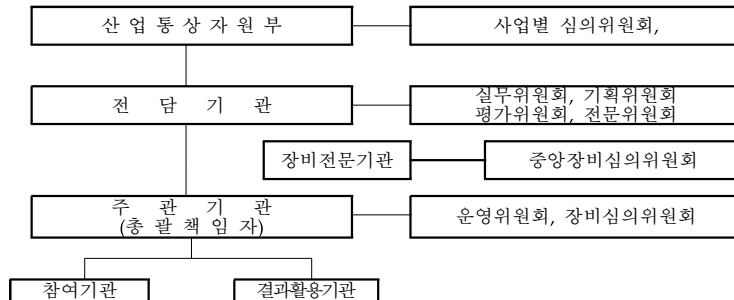
- 연구소, 대학, 업종별 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실시기관 등

4.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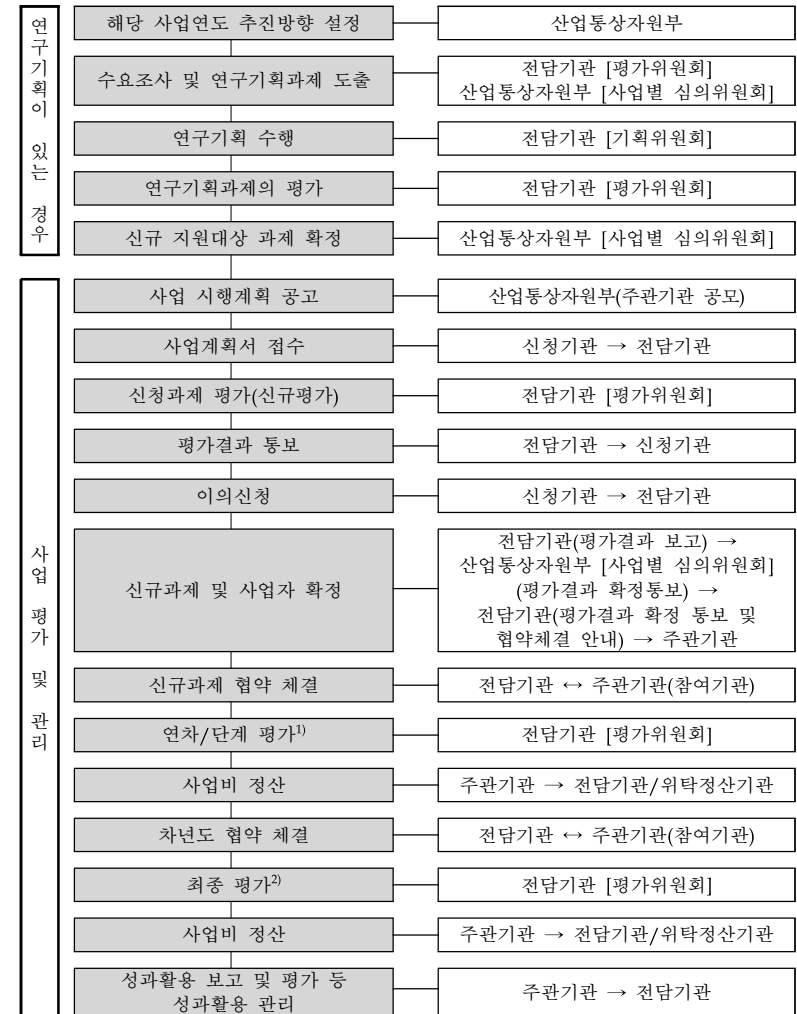
- 공고시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 단독 또는 산, 학, 연간의 공동형태로 수행가능하며, 출연(지자체 및 결과활용기관 등의 민간부담금 매칭) 형태로 지원
- 총 사업기간 3~5년 내외, 과제별 총 정부출연금 100억원 이하('16년 신규지원 기준)
* 단,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은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총 정부출연금 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	과제별 상이	과제별 상이

* 사업 일몰에 따라 신규과제는 없으며, 과제별 연차일정에 따른 연차평가 및 협약·사업비 지급 추진 예정

7. 지원규모 : 768.53억원 (계속 768.53억원)

8. 중점 추진사항

- ‘사업 유형화’에 따라 기존 수행과제를 기반구축의 대표 유형별로 기획·평가·관리하여 사업추진 효과를 제고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경쟁률	1.4 : 1	-	-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정부출연금	11,000백만원	-	-

11.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 ☎ 044-203-4512, park615@motie.go.kr (www.motie.go.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기반팀 : ☎ 02-6009-3287, jhoh@kiat.or.kr (www.kiat.or.kr)

81. 안전산업경쟁력강화

1. 개 요

- 안전분야 기술개발 및 R&D 연계형 기술협력 플랫폼 구축(R&D - 제품효과성 검증 - 사업화촉진 연계형 플랫폼)을 통해 안전산업 경쟁력 강화 및 안전산업 생태계 조성 지원

2. 지원대상분야

- 안전기술 상용화 연계형 R&D 사업
 - 기술개발과 검증 및 인증을 위한 인프라, 안전산업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최적의 결과물 도출을 위한 R&D의 기획 및 상용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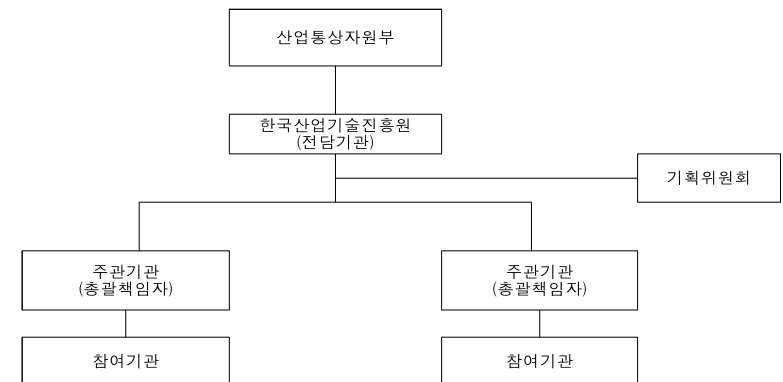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소, 사업자단체 등 지원대상 분야에 대한 역량을 보유한 기관 및 컨소시엄 등
 - 단, 세부 내역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은 제한 또는 상이할 수 있으며, 상세 내용은 해당 세부사업 신규사업자 선정 공고 시 안내 예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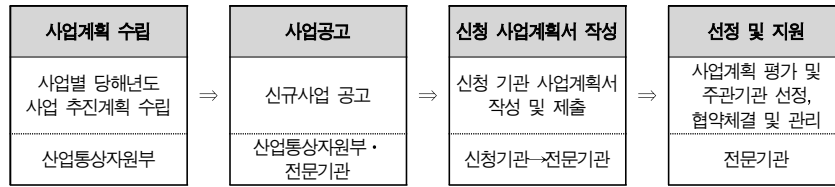
4. 지원내용

- 총 사업기간 2~3년 이내
 - * 각 내역사업별 및 지원유형별 특성에 따라 총수행기간이 상이할 수 있음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절차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8.12월~'19.1월	'19. 1월~2월	'19. 3월~4월	'19. 5월

7. 지원규모 : 15.5억원 (신규 3.1억원, 계속 12.4억원)

8. 중점 추진사항

- 안전산업 분야 시장수요 및 상용화 플랫폼 활용도 높은 과제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경쟁률	-	-	2.5:1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정부출연금	-	-	1억원

11.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총괄과 : ☎ 044-203-4262, sanghoo@motie.go.kr (www.motie.go.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신뢰성향상팀 : ☎ 02-6009-3922, heynam@kiat.or.kr (www.kiat.or.kr)

82. 자동차부품기업협력제고사업

1. 개 요

- 핵심부품, 전기·자율차 등 미래차 부품, 글로벌 조달 부품 등의 개발을 위한 R&D 지원

2. 지원대상분야

- 판로개척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글로벌 시장 조달 부품개발
- 부품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통요소 부품 및 미래차 요소 부품개발

3. 신청자격

- 전기차·자율차 등 미래차 요소 기술 개발, 신규 차종의 부품 납품기회를 획득한 국내 중소·중견 부품기업
- * 위기지역 입지 업체, 부품협력업체 클러스터의 경우 평가시 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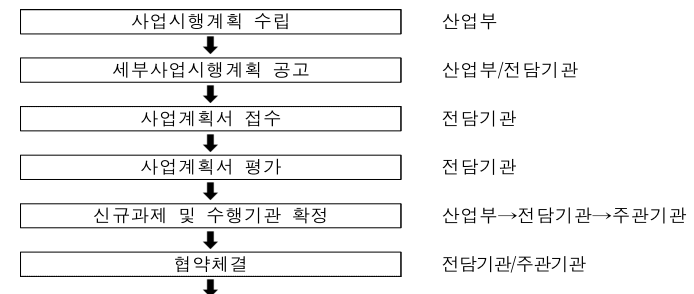
4.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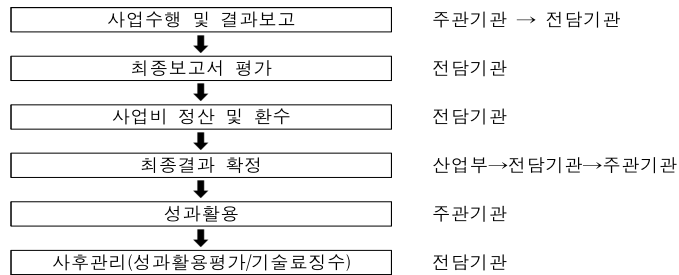
- (글로벌 시장 부품개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부품을 개발하는 중소·중견 부품기업의 기술개발
- (공통요소 부품개발) 내연기관, 경량화 부품 등 자동차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부품 기술개발
- (미래차 요소 부품개발) 전기차·자율차 등 미래차에 적용 가능한 요소 부품 기술개발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지원방식 : 자유공모
 - 지원대상 : 산업체, 대학, 연구소 등

○ 추진절차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8. 2월 ~ '18. 12월	'19. 3월	'19. 4월	'19. 5월

7. 지원규모 : 250억원 (신규 250억원)

8. 중점 추진사항

- 국내 부품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를 목표로 부품기업의 R&D 지원을 통한 성장 동력 확보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연 도	2015년	2016년	2017년
경쟁률	-	-	-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15년	2016년	2017년
정부출연금	-	-	-

11.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 : ☎ 044-203-4324, hyk9414@korea.kr (www.motie.go.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소재부품기획팀 : ☎ 02-6009-3905, eunu10@kiat.or.kr (www.kiat.or.kr)

83. 중견기업 상생혁신 R&D 사업(R&D)

1. 개 요

- 기업생태계 내 전·후방 기업과의 상생 R&D를 통한 중견기업 주도의 포용적 성장 모델 구축
- 중견기업과 중소·벤처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R&D 기획 및 R&D 지원을 통해 중견기업 중심의 상생협력 R&D 모델 발굴 및 확산

2. 지원대상분야

- 산업 전 분야(주력산업 분야 및 신산업 분야 유망품목 가점 우대)

< 산업별 중견기업 유망 품목(안) >

- 주력산업 분야 : 자동차(모터, 인버터, 자율주행 핵심부품), 반도체·디스플레이(파워·시스템 반도체, 차세대 OLED 장비·부품·소재), 석유화학(정밀화학 기초원료, 전자소재), 섬유(산업용 섬유, 고기능·고감성 원단소재), 철강(고부가 경량 금속), 조선(친환경 기자재)
- 신 산업 분야 : 바이오·헬스(바이오 의학, 혁신 의료기기, 개인맞춤 헬스케어 서비스), IOT가전(IOT가전, 첨단센서, 스마트홈 서비스), ICT융합신산업(AI제품·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 유통(AI기반 상품추천, 가상현실 쇼룸몰), 항공드론(드론부품, PAV), 로봇(협동로봇, 서비스로봇), 에너지신산업(풍력부품, 스마트미터, ESS)

3. 신청자격

- 협력사(중소, 벤처기업 등)와 상생협력 활동을 추진 중이거나 추진예정인 중견기업
- 주관기관은 중견기업으로 한정되되, 참여기관은 중견, 중소, 벤처기업 등
- 매출액 3천억 원 미만의 초기 중견기업에게 가점 부여

4.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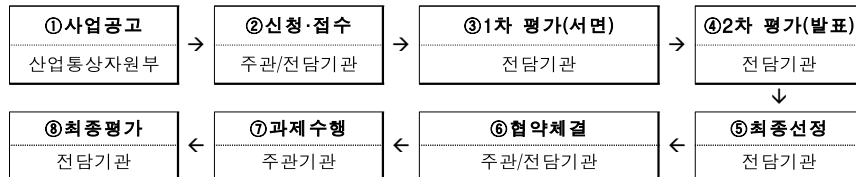
- (상생 R&D 기획) 중견기업이 국내 중소, 벤처기업과 협력이 필요한 시제품 개발 등 혁신성장을 위한 R&D 기획 지원(최대 9개월, 3천만원 이내)
- R&D 기획 시, 중견기업과 참여기업간의 성과공유제 도입이 필수이며, R&D 수행 이후 성과 창출 시 이 제도에 따라 협력 중소·벤처기업에 성과를 보상
- R&D 기획 수행 시 상생 R&D 연계는 필수로 R&D 기획 결과를 활용하여 상생R&D 추진
- (국내형 상생 R&D) 중견기업과 중소, 벤처기업 간 협력을 통해 기술이나 제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중견기업의 R&D 지원(최대 2년, 연간 5억원 이내)
- 모든 R&D 유형에 대한 지원 가능, R&D 수행 시 협력 중소, 벤처기업과의 성과공유제 도입 및 성과 창출 시 제도에 따라 협력기업에 성과 보상
- (글로벌형 상생R&D) 중견기업과 해외 글로벌기업 간의 기술개발 협력 지원(최대 2년, 연간 5억원 이내, 중소, 벤처기업 컨소시엄 시 가점 우대)
- 해외 글로벌 기업의 기술개발사 선정 단계부터 최종 납품대상 제품 테스트 단계까지의 R&D 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8. 12월 ~ '19. 1월	'19. 1~2월	'19. 3월	'19. 4월 ~

7. 지원규모 : 7.94억원 (신규 7.94억원)

8. 중점 추진사항

- 공공 R&D 중심의 기업 간 협력을 통해 기업생태계 내 상생협력의 주체로서 중견기업 역할을 강화
- 대기업 중심의 상생협력에서 탈피하여 중견기업을 새로운 상생주체로 부각하되, 성과공유제 도입 의무화 등을 통해 중견기업과 중소, 벤처기업간 성과 보상 및 배분 등 상생효과 강화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 해당없음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 해당없음

11.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혁신과 : ☎044-203-4377, kms1208@motie.go.kr (www.motie.go.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기획팀 : ☎02-6009-3503, 3506, hjcho@kiat.or.kr (www.kiat.or.kr)

84. 중견기업 핵심연구인력 성장지원사업(R&D)

1. 개 요

- 청년 석·박사, 기술전문 경력인을 R&D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초기 중견기업에 공급하여 산업성장 촉진 및 청년일자리 창출

2. 지원대상분야

- 대상 : 매출 3천억 미만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중견기업
- * 정부연구개발 10대 중점투자 분야, 5대 신산업분야(전기, 자율주행차, IOT가전, 에너지 신산업, 바이오·헬스, 반도체, 디스플레이) 초기 중견기업 우선 지원

3. 신청자격

- (지원인력) 이공계 출신으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 ① 청년 석·박사 : 만 19~39세 석·박사로, 학위취득 후 5년 이내(당해연도 학위취득 예정자 포함)
- ② 고경력 : 기업·공공연구기관·대학 등 연구경력이 학사 10년, 석사 7년, 박사 3년 이상인 자
- (지원조건) 채용된 인력은 연구전담요원 등록 및 R&D 프로젝트 제출 의무화
- (지원기간) 최대 3년 (최대 2년 + 심사 후 추가 1년 연장)

4. 지원내용

- 초기 중견기업이 청년 석·박사 및 기술전문 경력직 연구인력 채용 시 R&D인력 인건비를 최대 3년간 지원(출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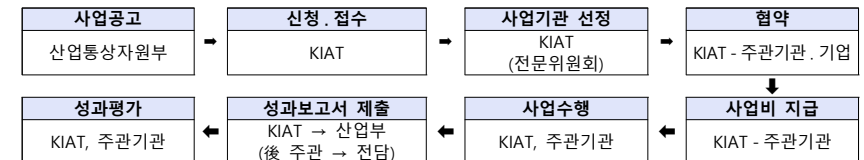
구 분	①청년 석·박사 연구인력 채용지원		②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석 사	박 사	기술전문 경력 연구인력
정부지원액/년	계약연봉 대비 40% 이내 지원		
지원한도	1,600만원	2,000만원	2,800만원

* ①번 : 최대 2명까지 지원, ②번 : 최대 1명 지원 → ①,②번 중복지원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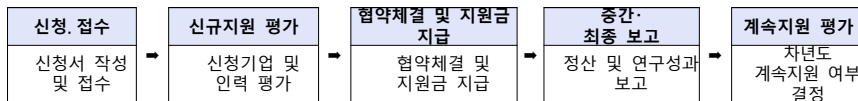
** (예시) 기술경력 전문 1명, 청년 석·박사 1명 → 가능 / 기술경력 전문 2명 → 불가

5. 추진체계 및 절차

○ 사업추진 절차



- 사업수행 절차(지원대상 선정 및 관리)



6. 추진일정

주관기관 선정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9.2	'19.4(상반기), '19.9(하반기)	'19.5(상반기), '19.10(하반기)	'19.6(상반기), '19.11(하반기)

7. 지원규모 : 9.89억원 (신규 4.90억원, 계속 4.99억원)

8. 중점 추진사항 : 해당없음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 해당없음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 해당없음

11.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혁신과 : ☎ 044-203-4373, dasom1111@korea.kr (www.motie.go.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성장팀 : ☎ 02-6009-3512, yoopearl@kiat.or.kr (www.kiat.or.kr)

85. 중형선박설계경쟁력강화(R&D)

1. 개요

- 조선산업 신선종 및 LNG 연관 등 고부가 중형선박 설계 등 기술지원

2. 지원대상분야

- 조선·해양플랜트 산업 분야

3. 신청자격

- 해당사항 없음(계속사업으로 '18년 수행기관 선정)

4. 지원내용

- 인력채용 및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한 중형선박 설계 등 기술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6. 추진일정

- '18년 신규과제 계획 없음

7. 지원규모 : 109.65억원 (계속 109.65억원)

8. 중점 추진사항

- 조선산업 분야 고급인력 및 청년 채용, 인프라 구축을 통한 고부가가치 중형선박 제품개발 및 설계기술 지원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연 도	2015년	2016년	2017년
경쟁률	-	-	1 : 1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 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15년	2016년	2017년
정부출연금	-	-	662백만원

11.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 : ☎ 044-203-4332, jilee0202@korea.kr (www.motie.go.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인력혁신팀 : ☎ 02-6009-3235, ym4825@kiat.go.kr (www.kiat.go.kr)

86. 지역대표중견기업육성사업(R&D)

1. 개 요

- (추진배경) 중견기업은 양질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기업이나 수도권에 중견기업의 수·혁신역량이 집중

<중견기업 분포 현황>

- ① 전체 중견기업 중 수도권 소재 중견기업은 63%(*16)
* 전체 중견기업 : 4,014개社 / 수도권 : 2,526개社(63%)↔ 지방 : 1,488개社(37%)
- ② 혁신역량을 갖춘 우수 중견기업도 수도권에 집중 분포
* (수도권 비중) R&D비중 3%↑ : 70% / 수출비중 20%↑ : 52% / WC300: 52%

- (목적) 지역 간 균형 발전과 지역의 자립적 혁신역량 제고를 위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역 중견기업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및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시키는 구심체로 육성

2. 지원대상분야 : 전기·자율주행차,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등 7대 신산업분야

- * 분야 : 전기·자율주행차,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석유화학, 섬유·패션, 반도체·디스플레이, IoT가전

- 3. 신청자격 : ①본사 또는 주요 생산시설이 비수도권 지역에 소재하며, ②수출비중 5% 또는 R&D집약도가 1% 이상인 중견기업

4. 지원내용

- ◆ 5년간('19~'23) 지역대표 중견기업 50개社를 선정·지원
- ◆ '19년 10여개社를 선정, R&D, 금융, 컨설팅 등을 패키지로 지원

- (정부지원) 지역내 혁신주체(중소기업, 대학, 연구소 등)와 공동 R&D
 - 품목지정형(50개) : 전기·자율주행차,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등 7대 신산업분야
 - * 분야 : 전기·자율주행차,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석유화학, 섬유·패션, 반도체·디스플레이, IoT가전
 - * 지원규모 : 개발기간 2년 이내, 최대 4억원(민간 50%이상 매칭)
 - * 청년 고용창출 연계 추진 : ① 지역의 대학·연구소와 공동R&D시 청년 석·박사를 필수 연구 인력으로 참여 ② 과제 종료 후 취업연계 계획이 있을시 가점부여 등
- (연계지원) 향후 ①산업부의 정부지원 사업에 우대가점부여 및 기존 ②WC300 패키지 지원시책(14개 내외) 연계적용

<WC300 패키지 지원시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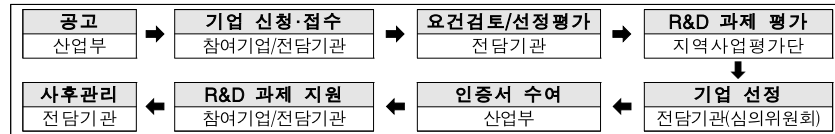
- ① (수출) KOTRA(월드챔프)·한국특허전략개발원(글로벌기술 IP) 등을 통한 해외 시장진출
- ② (금융) 산은·수은등 금융기관을 통한 금융컨설팅·우대금리·요건면제 등의 금융 지원
- ③ (인력) 잡페스티벌(고용지원), 한국디자인진흥원(인건비 분담) 등을 통한 인력 지원
- ④ (컨설팅)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특허전략개발원 등을 통한 기술·특허·지재권 컨설팅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6. 추진일정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지역대표중견기업 육성사업	'18. 2월~12월	'19. 3월	'19. 3월~4월	'19. 4월	'19. 5월

7. 지원규모 : 20.15억원 (신규 20.15억원)

8. 중점 추진사항

- 신산업·신기술 중심의 R&D 설계 및 수행
-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중견기업에 대한 R&D 지원·육성
- 지역 혁신생태계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사업명	2016년	2017년	2018년
지역대표중견기업육성사업 ('19년 신규사업)	-	-	-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사업명	2016년	2017년	2018년
지역대표중견기업육성사업 ('19년 신규사업)	-	-	-

11.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혁신과: ☎ 044-203-4375, swkim1991@motie.go.kr (www.motie.go.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기획팀: ☎ 02-6009-3504, bunny64@kiat.or.kr (www.kiat.or.kr)

87.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R&D)

1. 개 요

- 지역여건에 맞는 지역주도 성장을 위하여 지역별 특성화된 혁신자원과 역량 등을 활용하여 지역의 자립적 성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 촉진
- ①(국가혁신융복합단지지원) 지역의 혁신성장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신성장거점 육성
- ②(이전공공기관연계육성) 혁신도시이전 공공기관의 역량을 활용한 지역 내 산학연 혁신생태계 조성
- ③(커뮤니티비즈니스) 사회적경제기업 상품, 서비스의 혁신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통한 지역문제 해결

2. 지원대상분야

구 분	지원대상 분야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원	14개 시·도별 클러스터의 특성화된 자원을 활용하여 기술개발 및 산업육성을 위한 지원(시도별 지정분야)
이전공공기관연계육성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지역경제의 파급효과가 큰 산업분야의 오픈랩(개방형 혁신공간), 기술개발, 기업지원
커뮤니티비즈니스	14개 시·도에서 자율 선정한 중점추진분야

3.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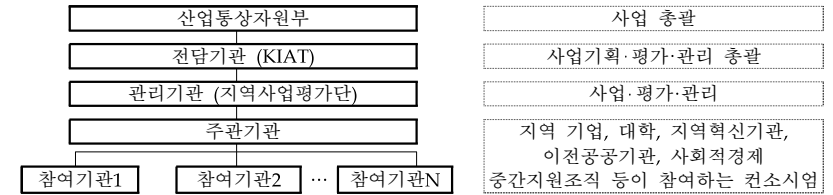
구 분	신청자격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원	기업, 대학, 연구소, 지역혁신기관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이전공공기관연계육성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 중소·중견기업, 대학, 연구기관 및 지역혁신기관 컨소시엄
커뮤니티비즈니스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지역혁신기관·대학·연구소 등 컨소시엄 * 수혜대상 : 사회적경제 기업(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4.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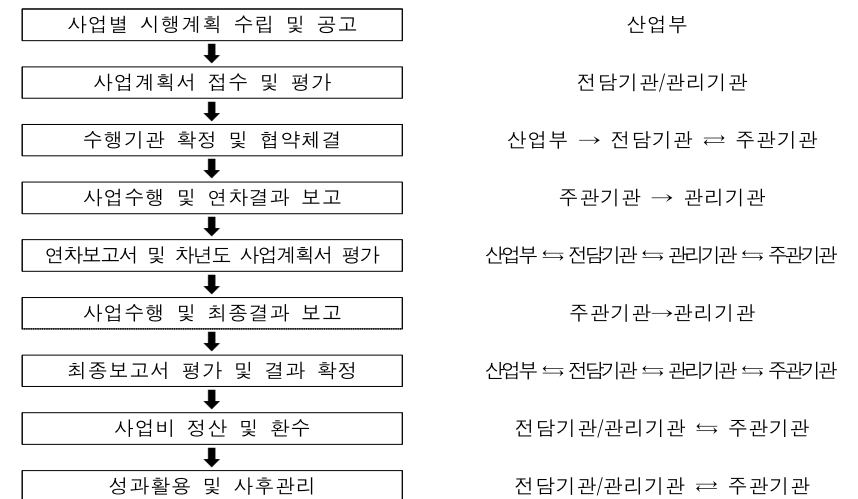
- 지원유형 : 기술개발, 산·학·연·관 네트워크 및 오픈랩 구축 등으로 사업유형을 구분하여 지원
- 총 수행기간 : 3~5년
* 각 내역사업별 및 지원유형별 특성에 따라 총 수행기간은 상이함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6. 추진일정

-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 : '19년 신규 없음
* 사업 추진절차에 따라 수행하고, 연차평가(연구발표회, 진도점검 등) 및 연차별 정산 수행
- 이전공공기관연계육성 : '19년 신규 없음
* 사업 추진절차에 따라 수행하고, 연차(최종) 평가 및 정산 수행

○ 커뮤니티비즈니스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신규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9. 1월 ~ '19. 2월	'19. 3월	'19. 4월

7. 지원규모 : 634.99억원 (신규 23.1억원, 계속 611.89억원)

8. 중점 추진사항

- (국가혁신융복합단지) R&D 혁신 프로젝트 본격 추진을 통한 조기성과 창출 및 지역별 클러스터 혁신성장 지원
 - * '19년 신규없음
- (이전공공기관연계육성) '18년 선정과제를 통한 오픈랩 활성화 및 기업지원 서비스 확대
 - * '19년 신규없음
- (커뮤니티비즈니스) 지역문제해결을 위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서비스 기술혁신 지원
 - * 지역 사회적경제 현장 수요를 반영하여 지원품목 확대('18년 22개 → '19년 30개)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경쟁률	1.4 : 1	2.1 : 1	1.4 : 1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정부출연금	255백만원	243백만원	747백만원

11.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총괄과 : ☎ 044-203-4457, kihok9476@korea.kr (www.motie.go.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기획팀 : ☎ 02-6009-3708, junc@kiat.or.kr (www.kiat.or.kr)

88.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R&D)(세종)

1. 개 요

- 지역여건에 맞는 지역주도 성장을 위하여 세종지역에 특성화된 혁신자원과 역량 등을 활용하여 지역의 자립적 성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간 균형발전 촉진

2. 지원대상분야

- 세종지역 클러스터 특성화된 자원을 활용하여 기술개발 및 산업육성을 위한 지원 (세종시 지정분야)

3.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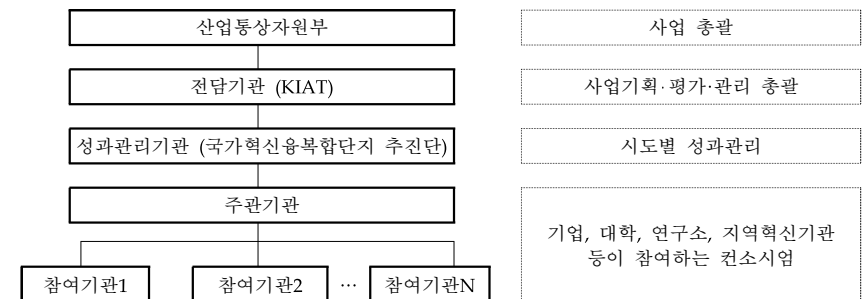
- 기업, 대학, 연구소, 지역혁신기관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4.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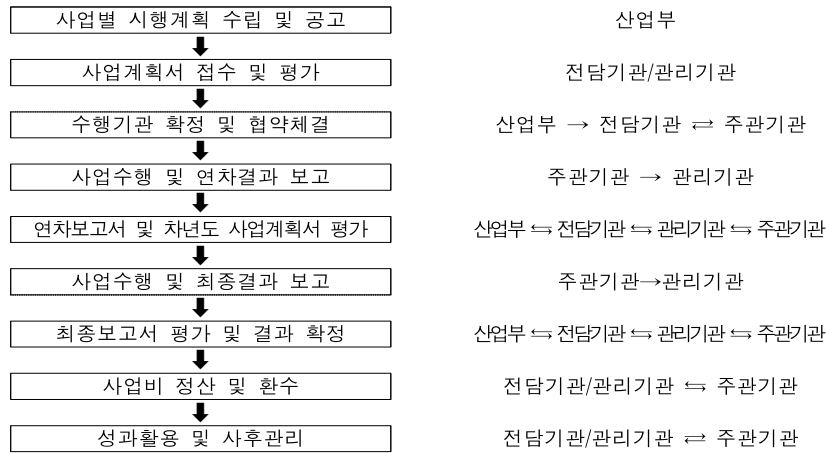
- 지원유형 : 기술개발
- 총 수행기간 : 3년 이내('18년~'20년)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6. 추진일정

- '19년 신규 없음
* 사업 추진절차에 따라 수행하고, 연차평가(연구발표회, 진도점검 등) 및 연차별 정산 수행

7. 지원규모 : 30억원 (계속 30억원)

8. 중점 추진사항

- 세종 국가혁신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혁신성장거점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경쟁률	-	-	1:1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정부출연금	-	-	1,071백만원

11.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총괄과 : ☎ 044-203-4457, kihok9476@korea.kr (www.motie.go.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기획팀 : ☎ 02-6009-3708, junc@kiat.or.kr (www.kiat.or.kr)

89. 창의산업거점기관지원

1. 개 요

- 산업경쟁력 향상의 지원 기반이 되는 산업기술거점기관을 지원하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창출과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

2. 지원대상분야

구 분	지원분야	비고
융합수용합산업육성	융합수의 특성 및 수처리 연구, 기능성 미세알 분리 및 산업화 소재 연구개발 등 융합수 융합산업 공정기술 개발 지원	계속
T2B나노융합R&BD촉진	나노융합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목적으로 중소·벤처기업으로 하여금 既 개발된 기술개발 결과를 활용하여 시제품 제작, 객관적 성능 지표를 확보하게 함으로써 수요연계 및 제품거리를 촉진	계속
미래첨단사용자편의서비스기반조성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친화제품 개발 활성화 및 전자 제품 등의 질 향상을 위한 장비기반 구축 및 기술개발 지원	계속
바이오상용기술고도화플랫폼구축	국내 천연·바이오산업 중소기업 등의 상용기술의 고도화를 통해 바이오제품 해외진출과 고부가 신시장 개척을 지원	계속
한국형유용균주산업화기반구축	기업체 맞춤형 유용균주 확보를 위한 한국형 유용미생물(K-GRAS) 자원화 기반 구축 지원	계속
친환경토공기계종합시험설비구축	환경 친화형 토공기계의 핵심 요소기술과 미래 유망 선도기술이 적용된 부품 및 완성차를 시험평가/검증할 수 있는 종합시험설비를 구축하여 우리나라 토공기계 산업의 경쟁력 강화	계속
인체맞춤형치료물제작기반구축	3D 프린팅을 활용한 인체맞춤형 치료물 제작을 지원하여 맞춤형 의료가 산업 육성 및 의료서비스 고도화	계속
3D프린팅응용친환경자동차부품R&BD구축	3D 프린팅 기반 친환경 자동차부품 응용 생산기술 개발을 통한 첨단 자동차 부품 산업 지원 및 기술 고도화	계속
안전 편의 서비스용스마트드론 활용기술기반구축	안전 및 방재, 편의서비스 분야에서 생활밀착형 스마트 드론 활용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 체계 구축	계속
자동차주행안전동력전달핵심부품개발	동력구동부품, 전기장치부품, 새시부품의 핵심부품 개발, 장비 구축, 건물구축 및 기업지원등을 통한 자동차 주행성능 고도화	계속
고성능자동차용초경량고강성차체사시부품기술개발	초경량 고강성 차체사시 기술 고도화를 통한 차체사시 부품산업 글로벌 경쟁력 혁신 및 친환경 고연비 자동차 시장 선도	계속
스마트클린변속시스템핵심부품기술개발	스마트 클린 변속시스템 및 핵심부품 기술개발, 평가기반 인프라 구축을 통한 중소·중견 기업 지원, 육성 및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계속

구 분	지원분야	비고
자동차메카니즘부품고도화협력기술개발기반구축	환경규제 및 연비향상을 위해 완성차업체가 자동차 메카니즘 부품의 고도화(최적설계, 다운사이징, 원가절감 등) 기술개발 요구에 따라 기업의 보유 기술을 바탕으로 수평적 기술개발 지원	계속
세라믹생태계조성	세라믹 원료기반 강화 및 전방산업 공급가치사슬 형성 지원	계속
안광학렌즈소재기술및신뢰성기반구축	안광학렌즈 소재개발, 시생산 연구 및 신뢰성 평가 기반조성을 통한 안광학렌즈 산업 선진화 및 혁신주도 신제품 개발	계속
고효율차량경량화부품소재개발	복합소재 기반의 차량 경량화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인프라 조성을 통해 글로벌 생산기술 공급거점 구축	계속
스마트 유전자의학 기반기술 플랫폼 구축사업	유전자의학 사업화 지원을 위한 공정기술개발 기반 사업화 핵심기술 공유/기업지원 플랫폼 구축	계속
천연물 조직배양 상용화 시설 구축	천연물 신소재 제조기반 연구, 생산 시설 구축, 공동연구개발 및 기술서비스 지원, 산학연관 협력 네트워크 운영 등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조직배양 상용화시설 구축	계속

3. 신청자격

-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 지원대상 분야에 대한 역량을 보유한 기관

4.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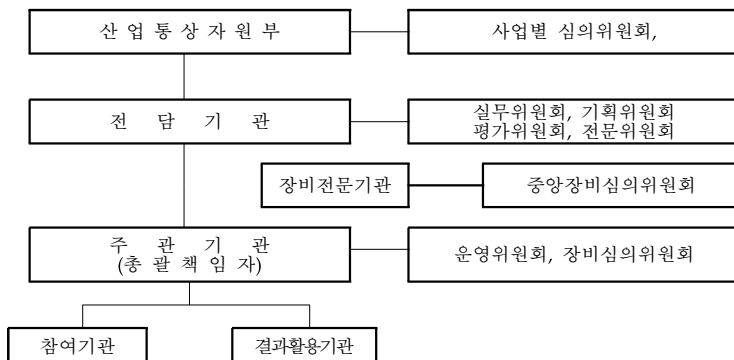
- 지원유형 : 장비구축, 기업지원 등 각 산업분야별 기반조성을 지원하되, 내역사업의 특성에 따라 기술개발 지원 등 변경될 수 있음

- 총사업기간 : 5년 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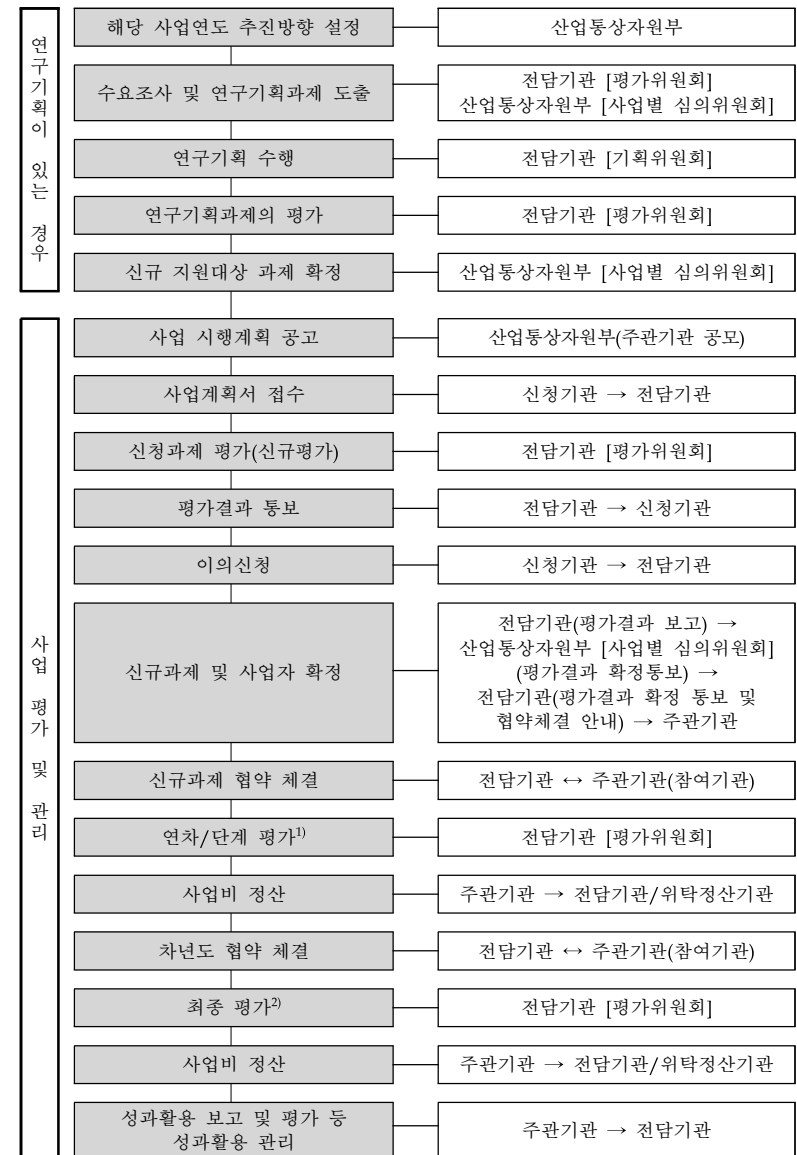
* 각 내역사업별 및 지원유형별 달리 결정할 수 있음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 각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 자격, 출연금 지원 조건, 추진 방법 및 절차가 상이할 수 있음.

** 1), 2)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절차는 신규평가를 준용함.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	-	-

7. 지원규모 : 402.92억원 (계속 402.92억원)

8. 중점 추진사항

- 과제별 사업계획서에 따른 연차별 수행 지원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경쟁률	1.7:1	1.1 : 1	1.9 : 1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정부출연금	221백만원	534백만원	316백만원

11. 문의처

내역사업명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
용암수용합산업육성	바이오나노과 044-203-4394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성장장비팀 02-6009-3781
T2B나노융합R&BD촉진	바이오나노과 044-203-4393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바이오나노융합팀 053-718-8243
미래첨단사용자편의서비스기반조성	바이오나노과 044-203-4394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성장장비팀 02-6009-3781
바이오상용기술고도화플랫폼구축	바이오나노과 044-203-4394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성장장비팀 02-6009-3795

내역사업명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
한국형유용군주산업화기반구축	바이오나노과 044-203-4394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성장장비팀 02-6009-3795
친환경토공기계융합시험설비구축	기계로봇과 044-203-4311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성장장비팀 02-6009-3787
인체맞춤형치료물제작기반구축	전자전기와 044-203-4342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성장장비팀 02-6009-3781
3D프린팅응용친환경자동차부품R&BD구축	전자전기와 044-203-4342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성장장비팀 02-6009-3781
안전편의서비스용스마트드론활용기술기반구축	자동차항공과 044-203-4326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성장장비팀 02-6009-3788
자동차주행안전동력전달핵심부품개발	자동차항공과 044-203-4324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성장장비팀 02-6009-3791
고성능자동차용초경량고강성차체샤시부품기술개발	자동차항공과 044-203-4324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성장장비팀 02-6009-3791
스마트클린변속시스템핵심부품기술개발	자동차항공과 044-203-4324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성장장비팀 02-6009-3791
자동차에카니즘부품고도화협력기술개발기반구축	자동차항공과 044-203-4324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성장장비팀 02-6009-3791
세라믹생태계조성	섬유세라믹과 044-203-4295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성장장비팀 02-6009-3787
안광학렌즈소재기술기반구축	철강화학과 044-203-4288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성장장비팀 02-6009-3798
고효율자량경량화부품소재개발	철강화학과 044-203-4288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성장장비팀 02-6009-3798
스마트 유전자의학 기반기술 플랫폼구축사업	바이오나노과 044-203-4394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성장장비팀 02-6009-3795
천연물 조직배양 상용화 시설구축	바이오나노과 044-203-4394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성장장비팀 02-6009-3795

90. 창의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R&D)

1. 개 요

- 바이오, 나노, 디자인, 엔지니어링 산업 분야의 기술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인프라 구축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산업기술 혁신역량 제고

2. 지원대상분야

구 분	지원대상 분야
디자인 기반구축	제품·서비스의 고부가가치화와 디자인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역 디자인 혁신기반을 강화하고, 지역별 디자인산업의 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 디자인 혁신기반을 확충
엔지니어링 기술진흥	엔지니어링을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제조 엔지니어링 SW 개발·활용을 통한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스마트 헬스케어 종합지원센터 구축	ICT, BT, NT 융합 기반 스마트헬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인증 지원, 인력양성(교육) 등 종합적 지원을 위한 센터 구축
의료용 유용단백질 핵심기술 지원센터	의료용 고부가 가치를 지닌 유용단백질 자원 및 핵심 요소기술을 집약한 기업기술지원 서비스 장비 인프라 구축을 통해 국내 바이오산업 활성화와 국제 경쟁력 강화
나노금형기반 맞춤형 융합제품 상용화 지원센터	나노패턴 원통금형 기반 공정시스템 및 응용제품 개발을 통한 중소·중견 기업 육성 및 나노융합산업 발전에 기여
디지털 헬스케어 소프트웨어 시험평가센터 구축	디지털 헬스케어 소프트웨어 인프라 구축을 통해 시험평가기술 개발, 기술지도 등을 바탕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제조기업의 경쟁력 강화
백신 글로벌 산업화 기반구축	백신산업 육성 및 글로벌 산업화 촉진을 위한 백신임상시료제조 인프라 구축

3.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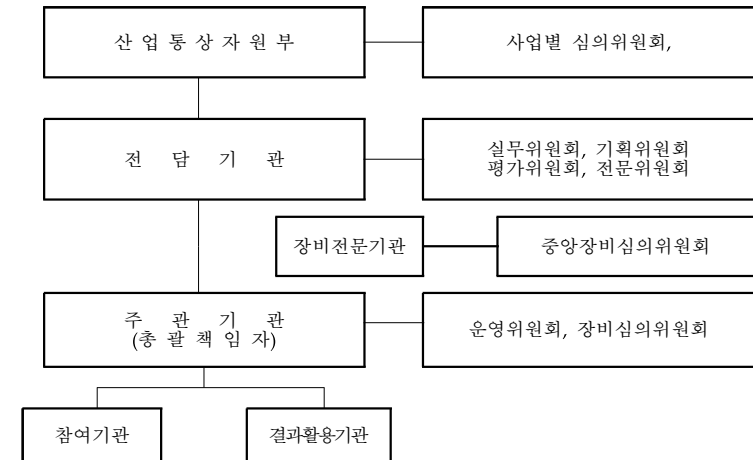
- 연구소, 대학, 업종별 단체 등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실시기관 등

4.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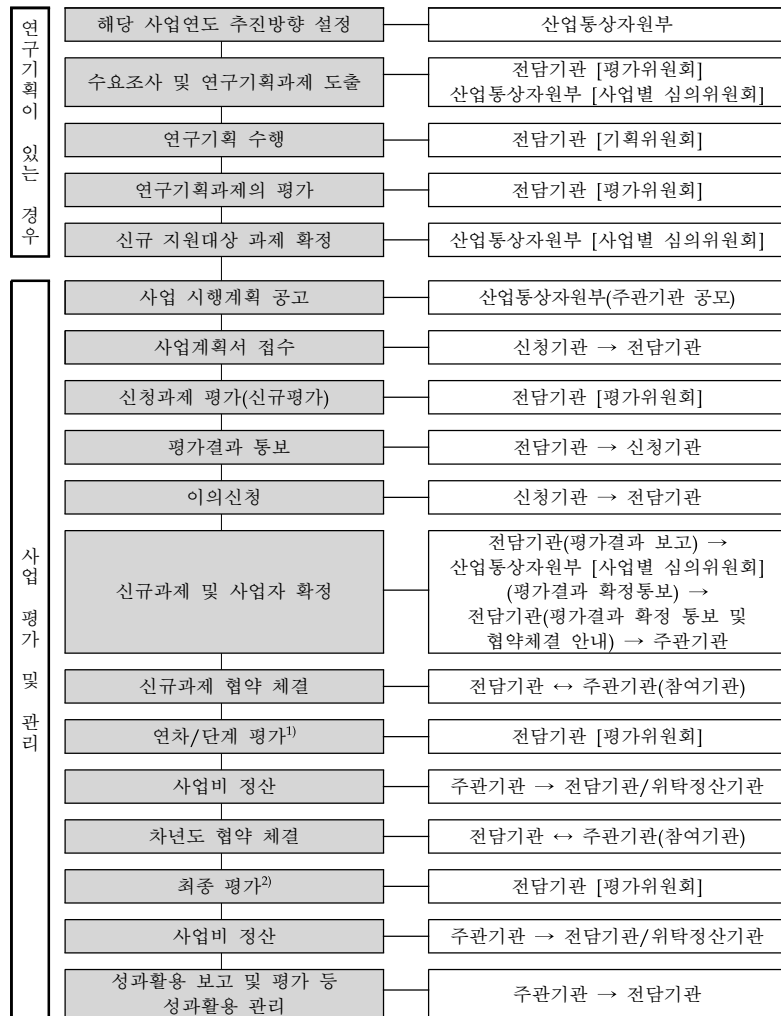
- 공고 시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단독 또는 산, 학, 연 간의 공동개발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 또는 지자체가 참여하는 경우 매칭) 형태로 지원
- 총 사업기간 4~5년 내외, 과제별 총 정부출연금 100억원 이하
 - * 단,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은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총 정부출연금 산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 각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 자격, 출연금 지원 조건, 추진 방법 및 절차가 상이할 수 있음.

** 1), 2)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절차는 신규평가를 준용함.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	과제별 상이	과제별 상이

* 사업 일몰에 따라 신규과제는 없으며, 과제별 연차일정에 따른 연차평가 및 협약·사업비 지급 추진 예정

7. 지원규모 : 580억원 (계속 580억원)

8. 중점 추진사항

- ‘사업 유형화’에 따라 기존 수행과제를 기반구축의 대표 유형별로 기획·평가·관리하여 사업추진 효과를 제고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경쟁률	1.2 : 1	-	-

* '17년 신규 과제는 정책지정 과제로 경쟁률과 관련사항 없으며, '18년 신규 과제 없음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정부출연금	2,536백만원	1,635백만원	-

* '18년 신규 과제 없음

11.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 ☎ 044-203-4512, park615@motie.go.kr (www.motie.go.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반장비팀 : ☎ 02-6009-3294, shw0707@kiat.or.kr (www.kiat.or.kr)

91. 청정제조기반구축

1. 개요

-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 구축을 위해 공정(청정기반기술보급 등), 제품(규제대응 제품 개발, 유니소재 등), 서비스(친환경 제품서비스) 등 청정생산 전 분야에 대한 기업지원 기반 조성

2. 지원대상분야

-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 구축을 위해 중견·중소기업 사업장 중심의 청정제조 기술개발 및 보급·확산

3.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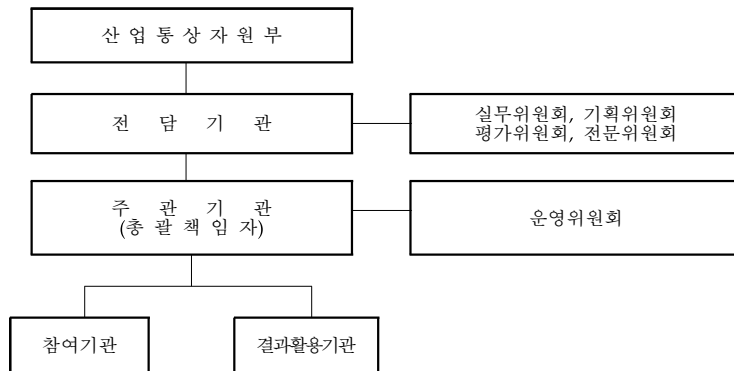
- 연구소, 대학, 업종별 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실시기관 등

4.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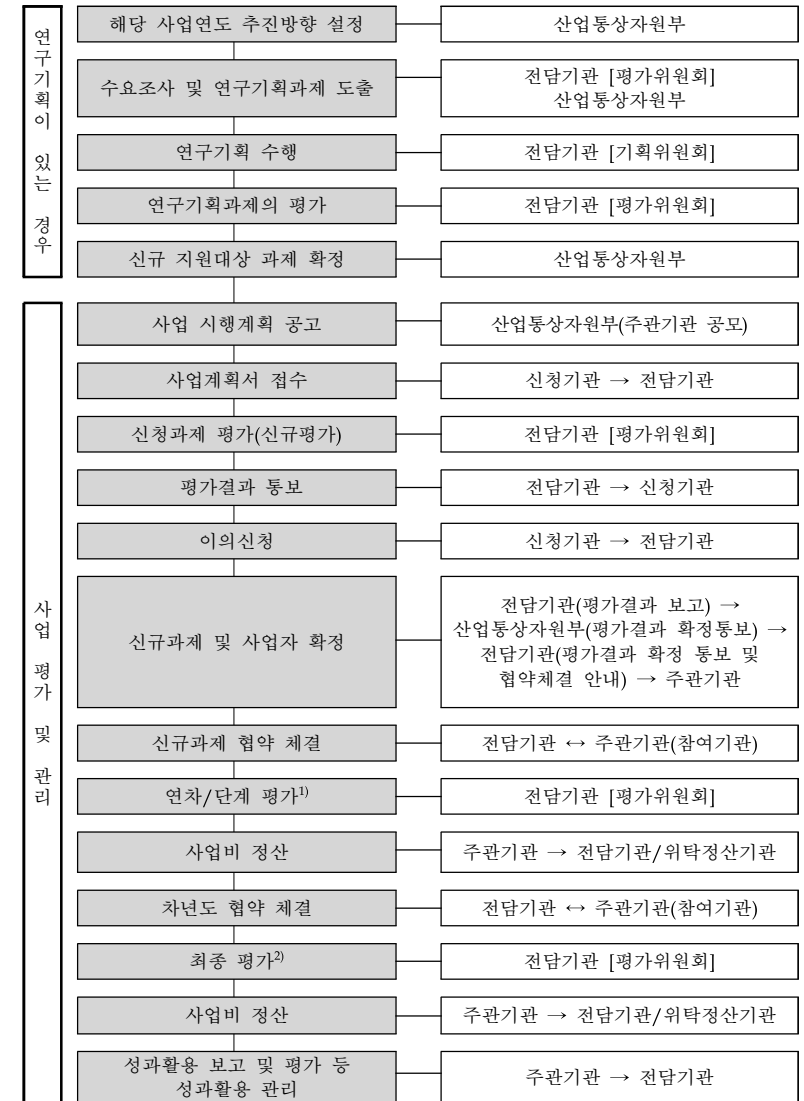
- 공고시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단독 또는 산, 학, 연 간의 공동개발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 또는 지자체가 참여하는 경우 매칭) 형태로 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 각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 자격, 출연금 지원 조건, 추진 방법 및 절차가 상이할 수 있음.

** 1), 2)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절차는 신규평가를 준용함.

6. 추진일정

* '19년 신규과제 계획 없음

7. 지원규모 : 24억 (계속 24억원)

8. 중점 추진사항

- 친환경·에너지절감형 범용제조설비 개발을 통해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청정공정 확산을 지원하고, 유니소재화 제품 개발 및 상용화 기반 마련
- 제조업 활용도(생산단계 기술), 소비자 사용(소비단계 기술), 주요 규제대상 오염원(최종처리단계 기술)을 중심으로 기술을 선정·개발하고,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사업화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경쟁률	-	-	-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정부출연금	-	-	-

11.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환경과 : ☎ 044-203-4246, ktp0117@motie.go.kr (www.motie.go.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신뢰성향상팀 : ☎ 02-6009-3922, heyname@kiat.or.kr (www.kiat.or.kr)

92. 해외 수주연계 항공부품산업 공정기술개발(R&D)

1. 개 요

- 항공부품산업내 공정 및 생산기술개발 사업 지원을 통한 항공제조업체의 해외 수주 확대 및 고부가가치화 추진

2. 지원대상분야

- 항공부품 해외 수주 확대를 위해 생산성 및 품질 향상에 필요한 가공 및 공정기술 개발, 최적의 시제품 제작을 위한 치공구 등 장비설계 및 개발, S/W 개발 및 운용 등 생산 기술개발 등 지원

3.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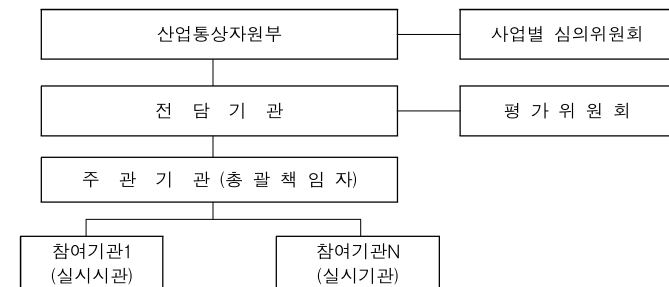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 (주관기관) 기업, (참여기관) 대학, 연구소 등

4. 지원내용

- 기관단독 또는 산, 학, 연 간의 공동개발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 형태로 지원
- 총 기술개발기간 최대 5년 이내로 연차평가를 통해 차기년도 지원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일반형 과제)



○ 추진절차

과제기획	전담기관(기획위원회)
신규 지원대상 과제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신규 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사업계획서 접수	주관기관 → 전담기관
신청과제 평가	전담기관(평가위원회)
지원대상과제 및 사업자 확정	전담기관 → 산업통상자원부(사업심의위원회)
선정과제 협약 체결	산업통상자원부-전담기관↔주관기관(참여기관)
과제 수행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중간 평가	주관기관→전담기관→산업통상자원부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차기연도 /차기 단계 협약 체결	전담기관↔주관기관(참여기관)
최종 평가	주관기관→전담기관→산업통상자원부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기술료 징수	주관기관→전담기관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사후관리	주관기관→전담기관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9. 3월 ~ '19. 4월	'19. 5월 ~ '19. 6월	'19. 6월	'19. 7월

7. 지원규모 : 20억원 (신규 20억원)

8. 중점 추진사항

- 항공부품 해외 수주 확대를 위한 가공 및 공정기술 개발
- 치공구 등 장비설계 및 개발, S/W 개발 및 운용 등 생산기술개발 등 지원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경쟁률	-	-	-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정부출연금	-	-	-

11.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 : ☎ 044-203-4355, snroot2@motie.go.kr (www.motie.go.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혁신팀 : ☎ 02-6009-3541, ryu9810@kiat.or.kr (www.kiat.or.kr)

93. 혁신성장 글로벌인재양성(R&D)

1. 개 요

- 해외 우수 연구기관(대학·연구소·기업)과의 공동R&D 및 프로젝트 수행을 통한 글로벌 혁신인재 양성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분야) 10개 혁신성장 산업분야
 - 미래자동차, 스마트공장, 로봇, 3D프린팅, 드론, 지능형반도체, 스마트선박, 엔지니어링, 혁신형디자인, 산업융입메디스W
- (지원대상) 국내 석·박사 재학생 또는 석·박사 학위소지자(최종 졸업 후 7년 이내의 자)
 - 기업, 연구소 등 재직자 및 박사후 연구생 포함

3. 신청자격

-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 공동R&D 또는 프로젝트 수행을 통한 연수(1년) 과정을 기획 및 운영·관리할 수 있는 국내 대학 및 연구기관
 - 해외 대학, 연구소, 기업 등과 사전 협의를 통해 연수생 파견을 위한 협약(계약) 체결이 완료된 컨소시엄

4. 지원내용

- 해외 우수 연구기관에서 1년 이내 공동연구(연수, 인턴십 포함)에 필요한 연수생 인건비, 체제비, 연구활동비, 국내기관 간접비 등 지원
 - 1인당 지원금 : 인건비, 체제비 48백만원 이내, 연구활동비 48백만원, 간접비 4백만원 이내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추진내용	시행주체	세부내용	일정(안)
사업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주관기관 모집공고	'19.1
사업계획 접수 및 주관기관 선정	전담기관(KIAT)	주관기관 사업계획 접수	'19.2
		선정평가위원회	'19.2
		주관기관 선정	'19.3
		협약체결	'19.4
해외연수생 선발('19년)	주관기관	모집공고	'19.5초
	주관기관	평가 및 선정	'19.6말
	연수생	해외연구·연수	'19.7~'20.6
해외연수생 선발('20년)	주관기관	모집공고	'19.10초
	주관기관	평가 및 선정	'19.11말
	연수생	해외연구·연수	'20.1~'20.12
1차년도 결과보고	주관기관→전담기관	협약(사업계획)에 기준하여 사업운영	'19.11
연차평가 및 협약	전담기관(KIAT)	평가위원회	'19.12
	주관기관	협약체결	'20.1
2차년도 결과보고	전담기관(KIAT)	평가위원회	'21.1
최종평가	전담기관(KIAT)	평가위원회	'21.2
최종완료 및 성과활용	전담기관(KIAT)	평가위원회 및 사후관리	'21.3~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해당없음(자유공모)	'19. 1월	'19. 3월	'19. 4월

7. 지원규모 : 50억원 (신규 50억원)

- '19년 : 과제당 5억원(10명) ~ 10억원(20명)
 - '19년은 연수생 파견기간을 6개월(7~12월)로 산정하여 지원하고, 잔여 6개월 소요예산은

8. 중점 추진사항

-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연수생 선발 우대
- 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해 혁신성장 분야 간 또는 국내 기관 간 컨소시엄형 우대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 해당없음 ('19년 신규)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 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 해당없음 ('19년 신규)

11.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일자리혁신과 : ☎ 044-203-4223, binjiang81@motie.go.kr (www.motie.go.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일자리정책팀 : ☎ 02-6009-3223, spark@kiat.or.kr (www.kiat.or.kr)

94. 혁신조달연계형신기술사업화R&D

1. 개 요

- 신기술·제품에 대한 공공부문(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선제적 도입 수요에 대해 상용화 R&D를 지원하고 공공조달을 연계하여, 미검증 신기술·제품의 초기시장 진출과 시장 활성화를 도모

2. 지원대상분야

- 신성장엔진 분야* 우수기술 보유 중소·벤처기업
- * 산업부 5대 신산업, 기재부 8대 선도사업, 과기부 13대 혁신성장, 10대 R&D 투자플랫폼 등

구분	분야
산업부 5대 신산업	전기·자율차, IoT가전,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반도체·디스플레이
기재부 8대 선도사업	초연결 지능화,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핀테크, 에너지신산업, 스마트 시티, 드론, 자율주행차
과기부 13대 혁신성장	빅데이터, 차세대통신,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드론(무인기), 맞춤형 헬스케어, 스마트시티, 가상증강현실, 지능형로봇, 지능형반도체, 첨단소재, 혁신신약, 신재생에너지
10대 R&D 투자플랫폼	초연결 지능화, 정밀의료, 스마트시티, 스마트농축수산, 스마트공장, 신재생에너지(스마트그리드), 자율주행차, 고기능무인기(드론), 지능형로봇, 국민생활문제해결, (미세먼지, 재난·재해·안전 등)

3. 신청자격

- 신성장엔진 분야 우수기술 보유 중견·중소·벤처기업(주관-기업, 참여-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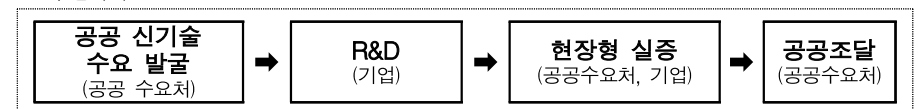
① 높은 기술수준을 보유하고 있는 신성장엔진 분야 과제	부품·소재 개발(X)
② 단기 내 상용화 수준으로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과제	단순 성능 개선(X)
③ 공공이 제시한 정책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과제	↓
④ 향후 민간시장으로 확산 가능한 신기술·제품 개발 과제	新제품 상용화(O)

4. 지원내용

- 신기술·제품의 공공도입·활용을 위한 양산수준의 기술·제품개발 + 실증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 수요발굴 → 선정·평가 → R&D 및 실증 → 우수조달제품 지정 → 공공구매
 - (수요발굴) 신제품 및 서비스를 활용하여 공공의 주요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과제수요를 공공부분으로부터 접수
 - (선정평가) 기업은 공공부분의 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계획서(솔루션)를 제출하고, 전담기관은 단계평가(2차)를 통해 최종 기업 선정(경쟁적 대화방식 진행)
 - (R&D 및 실증) 기업은 정해진 목표에 따라 제품개발을 진행하고 개발된 제품을 수요처 현장에서 실증하여 완성도를 제고
 - (우수조달제품 지정) 수요처의 구매절차 간소화(수의계약) 등을 위해 성공과제에 대해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신청 및 평가 진행
 - (공공수요처 구매) 과제 종료(실증테스트 완료) 후 기업공공수요처조달청 간 협의를 통해 구매계약 체결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8. 12월 ~ '19. 1월	'19. 1월	'19. 3월	'19. 4월

7. 지원규모 : 19.96억원 (신규 19.96억원) / 과제당 출연금 기준 5억원/년, 최대 2년 이내

8. 중점 추진사항

- 경쟁 기업들은 공공수요처가 함께 참여하는 "경쟁적 대화"를 진행(약2개월)하고, 최종 평가를 통해 1개 업체 선정
 - * 공공수요처가 적절한 대안을 찾을 때까지 기업들과 대화를 통해 과업내용을 보완하고 가장 우수한 제안을 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 본 사업 성공과제는 우수조달제품 신청 필수조건(NET, NEP 등 인증필요)에서 예외 적용되며, 우수조달물품 지정평가 시 품질소명자료 생략 가능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연 도	2015년	2016년	2017년
경쟁률	신규사업	신규사업	신규사업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15년	2016년	2017년
정부출연금	신규사업	신규사업	신규사업

11.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과 : ☎ 044-203-4534, suhee.kim@motie.go.kr (www.motie.go.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기반팀 : ☎ 02-6009-4326, nywook15@kiat.or.kr (www.kiat.or.kr)

95. 3D/4D 물리탐사연구선 건조사업

1. 개 요

- 대륙붕, 대양, 극지 등 전 세계 모든 해역에서 해저자원탐사를 수행할 수 있는 고성능 3D/4D 물리탐사연구선의 건조를 통한 해저자원탐사역량 고도화

2. 지원대상분야

- 5천톤급 고성능 3D/4D 물리탐사연구선 설계 및 건조
 - 고성능 3차원 물리탐사장비 등 연구장비 탑재 및 시험운항

3. 신청자격

- 지질자원관련 국책 연구기관

4. 지원내용

- 지원기간 및 내용 : 2018년 ~ 2022년 (총 5년)

기본설계 (1년)	실시설계 (1년)	건조 및 감리 (2년 9개월)	시험운항 및 수정 (3개월)
▶ 탐사연구선 규모와 기능 선정 ▶ 건조사양서, 기초선가내역서, 초기배치도면 완성 ▶ 건조사업의 추진체계 및 추진방안 마련 ▶ 건조 로드맵 및 활용계획 작성	▶ 개념 및 기본설계에 따른 성과품 검토 ▶ 건조입찰 및 감리 방안 마련 ▶ 분야별 세부도면 작성 ▶ 연구장비 목록 및 장착형상 확정	▶ 건조 입찰 및 건조사 선정 (국제경쟁입찰 방식) ▶ 감리사 선정 ▶ 탐사연구선 건조 ▶ 장비 구입 및 탑재 ▶ 건조공정 관리 감독	▶ 시운전을 통한 탐사선 제반 시스템 검증 ▶ 3D 탐사장비 시험탐사 후 시운전 결과를 반영하여 탐사선 운항 조건 등 수정 ▶ 물리탐사연구선 운영방안 마련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주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 사업 기본계획 수립 등
 - 전문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세부 시행계획 수립, 주관기관 사업 평가·관리 등
 - 주관기관 : 세부 사업 수행



○ 추진절차

로드맵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그린에너지 전략로드맵, 온실가스감축기술 전략로드맵 등
과제기획	PD/기획위원회	수요조사 (연중상시)
		기획대상주제 및 후보품목 도출
		과제기획
신규지원대상 확정	사업별 심의위원회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 공고
		지정공모 품목지정/자유공모
선정평가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개념계획서 접수 및 평가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 확정
		사업계획서 접수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사업관리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진도점검 · 중간평가
		최종평가
	전담기관(KETEP)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사후관리	전담기관(KETEP)	기술료 징수 * 불성실 수행이 아닌 과제는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전담기관(KETEP)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사후관리

6. 추진일정: 신규 지원 없음

7. 지원규모 : 27.58억원 (계속 27.58억원)

8. 중점 추진사항

- 기본설계, 개념설계 및 건조로드맵 작성 등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경쟁률	-	-	1 : 1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정부출연금	-	-	1,815백만원

11.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자원개발전략과 : ☎ 044-203-5148, 2825lwj@motie.go.kr (www.motie.go.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신산업기획실 : ☎ 02-3469-8342, jhkwn@ketep.re.kr (www.ketep.re.kr)

96. ESS기술개발사업

1. 개 요

- 에너지저장시스템 부품·소재 국산화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 ESS기술개발을 통한 3대 목표 달성
(①신수요처 대응, ②해외시장 창출, ③제품경쟁력 제고)

2. 지원대상분야

- 에너지저장핵심기술개발
 - ESS 초기 시장 창출을 위한 신규 수요 확대 및 시장창출을 통한 경제적 비즈니스 모델 확보
- 중대형이차전지상용화기술개발
 - 전기차용 이차전지 등 중대형 이차전지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하여 중대형 리튬이온전지 성능향상 및 공정혁신 기술개발

3.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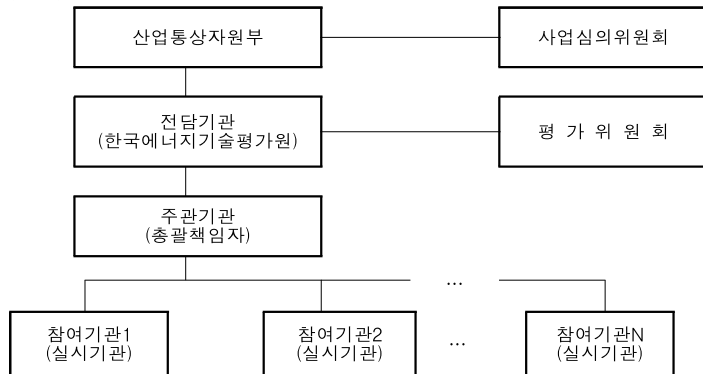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에너지법·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개발 사업 실시기관 등

4.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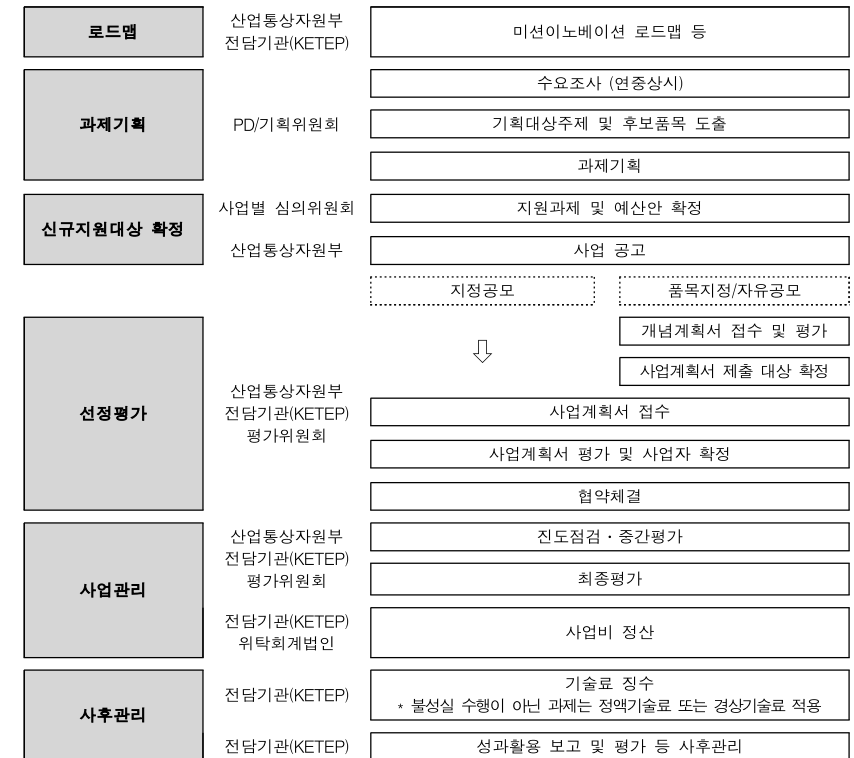
- RFP 등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 단독 또는 산·학·연 간의 공동개발 형태로 수행되며, 출연(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총 사업비의 33~100% 이내 정부매칭)형태로 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6. 추진일정 : 신규지원 예정없음

7. 지원규모 : 365.85억원 (계속 365.85억원)

8. 중점 추진사항

- ESS 초기 시장 창출을 위한 신규 수요 확대 및 시장창출을 통한 경제적 비즈니스 모델 확보
- 전기차용 이차전지 등 중대형 이차전지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하여 중대형 리튬이온전지 성능향상 및 공정혁신 기술개발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경쟁률	-	1.83 : 1	0.53 : 1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 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정부출연금	-	721백만원	1,049백만원

11.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신산업과 : ☎ 044-203-5391, ajhaja@motie.go.kr (www.motie.go.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신산업기획실 : ☎ 02-3469-8345, mjkang@ketep.re.kr (www.ketep.re.kr)

97. LNG발전용 가스터빈 고온부품 혁신기술개발사업

1. 개 요

- LNG발전용 가스터빈 고온부품 상용화 기술개발을 통해 관련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 및 국산자립화 기반 구축
 - 국산화 된 고온부품 시제품들의 장착 운전 시 파손 등으로 인한 리스크 사전 제거를 위한 내구성 및 수명 평가 기술 확보
 - 국내 운용 중인 발전용 가스터빈에 장착 및 상용화 운전 시 적용 가능한 200mm 이상 단결정 블레이드 주조 기반 터빈부품 국산화 핵심 제조기술 확보
 - 차산업혁명 대표기술인 금속 3D프린팅 적용으로 기존의 주조기술을 대체하고 제조기간도 획기적으로 단축 가능한 신기술 확보

2. 지원대상분야

- LNG발전용 가스터빈 고온부품 혁신기술
 - 발전용 가스터빈 고온부품 국산 상용화 제고에 필요한 기반 및 고부가가치 부품 기술

3.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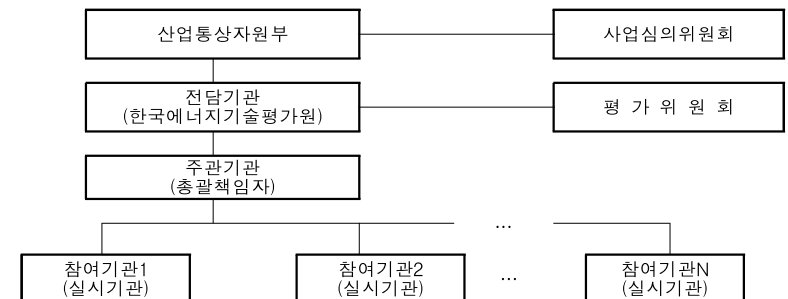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에너지법·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개발 사업 실시기관 등

4. 지원내용

- 중장기과제 : 핵심응용기술 개발을 통한 Pilot-scale의 시제품 개발, 실증 등을 통한 사업화(현실적용) 단계 기술개발 등을 목표로 하며, 매년 10~30억원 내외 지원
- 단기과제 : 시장애로기술 확보 및 비즈니스 창출 기술개발을 목표로 하며, 매년 5억원 내외 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로드맵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그린에너지 전략로드맵, 온실가스감축기술 전략로드맵 등
과제기획	기획위원회	수요조사 (연중상시)
		기획대상주제 및 후보품목 도출
		과제기획
신규지원대상 확정	사업별 심의위원회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 공고
		지정공모 품목지정/자유공모
선정평가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
		개념계획서 접수 및 평가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 확정
		사업계획서 접수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자 확정
사업관리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진도점검 · 중간평가
		최종평가
	전담기관(KETEP)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사후관리	전담기관(KETEP)	기술료 징수 * 불성실 수행이 아닌 과제는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전담기관(KETEP)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사후관리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8. 7월 ~ '19. 1월	'19. 1월 ~ '19. 4월	'19. 5월	'19. 6월

7. 지원규모 : 38.8억원 (신규 38.8억원)

8. 중점 추진사항

- LNG발전용 가스터빈 고온부품 상용화 기술개발을 통해 관련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 및 국산자립화 기반 구축
- 발전용 가스터빈 고온부품 성능검증 기술
- 단결정 주조 터빈 고온부품 상용화 및 정비 기술
- 금속 3D 프린팅 적용 가스터빈 고온부품 신뢰성평가 기술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 '19년 신규사업으로 해당사항 없음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 '19년 신규사업으로 해당사항 없음

11.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 ☎ 044-203-5247, maipang@motie.go.kr (www.motie.go.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청정전력기획실 : ☎ 02-3469-8353, youninmo@ketep.re.kr (www.ketep.re.kr)

98. 고효율 바이오가스 생산 기반 지역 분산 발전 시스템 구축사업

1. 개 요

- 지역적으로 인간의 활동을 통해 혹은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바이오매스에서 생산되는 바이오가스를 저비용, 고효율로 활용하여, 전기, 가스, 열, 수송연료를 지역 에너지 GRID에 안정적으로 공급

2. 지원대상분야

- 바이오가스 생산 핵심 기술 확보, 전력 GRID 연계 인프라 확보, 4차 산업 시스템 구축

3.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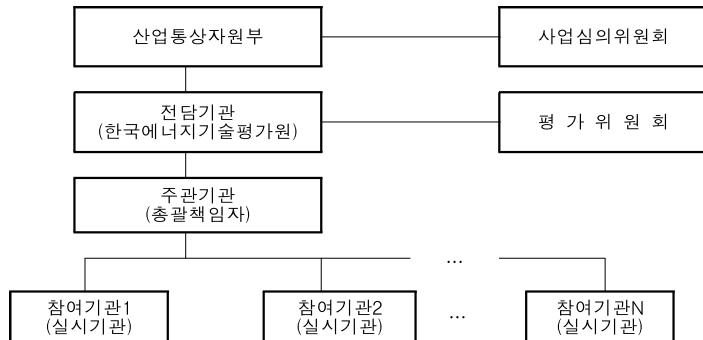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에너지법·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개발 사업 실시기관 등

4.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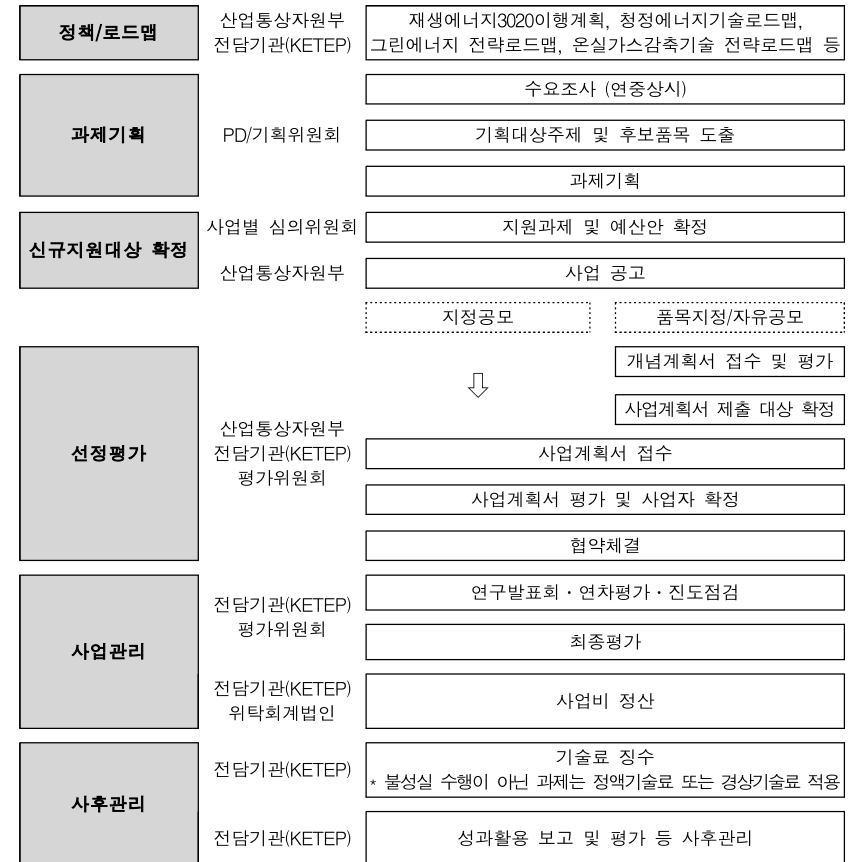
- RFP 등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 단독 또는 산·학·연 간의 공동개발 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형태로 지원
- * 세부유형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등은 사업공고 시 별도 안내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8. 8월 ~ '18. 12월	'19. 1월	'19. 5월	'19. 5월

* 사업 추진 세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7. 지원규모 : 75.32억원 (신규 75.32억원)

8. 중점 추진사항

-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내 바이오에너지 보급 목표 실현을 위한 바이오가스 발전시스템 및 기존 설비의 효율 향상 기술개발
- 바이오가스 분야의 'R&D↔보급'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보급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R&D 지원 추진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 해당 없음('19년 신규사업)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경쟁률	-	-	-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 해당 없음('19년 신규사업)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정부출연금	-	-	-

11.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보급과 : ☎ 044-203-5373, jwyoons57@motie.go.kr (www.motie.go.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신재생기획실 : ☎ 02-3469-8338, 5gun@ketep.re.kr (www.ketep.re.kr)

99. 농어촌 대상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시스템 개발 및 실증사업

1. 개 요

- 농어촌 커뮤니티 단위 재생에너지 자원 분석을 기반으로,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리빙랩 방식으로 최적 융합시스템을 개발하여 지역단위 재생에너지 사업 표준 모델 개발

2. 지원대상분야

- 융복합 시스템 개발, 자원조사/참여형 실증

3.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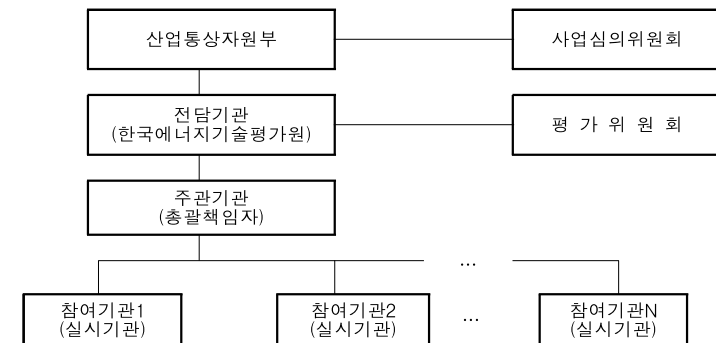
- 지자체,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에너지법·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4. 지원내용

- RFP 등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 단독 또는 산·학·연 간의 공동개발 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형태로 지원
- * 세부유형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등은 사업공고 시 별도 안내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정책/로드맵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재생에너지3020이행계획, 청정에너지기술로드맵, 그린에너지 전략로드맵, 온실가스감축기술 전략로드맵 등
과제기획		수요조사 (연중상시)
	PD/기획위원회	기획대상주제 및 후보품목 도출
		과제기획
신규지원대상 확정	사업별 심의위원회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 공고
		지정공모 품목지정/자유공모
선정평가		개념계획서 접수 및 평가
		↓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 확정
		사업계획서 접수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자 확정
사업관리		협약체결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연구발표회·연차평가·진도점검
		최종평가
사후관리	전담기관(KETEP)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전담기관(KETEP)	기술료 징수 * 불성실 수행이 아닌 과제는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전담기관(KETEP)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사후관리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8. 8월 ~ '18. 12월	'19. 1월	'19. 5월	'19. 5월

* 사업 추진 세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7. 지원규모 : 40억원 (신규 40억원)

8. 중점 추진사항

-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의 목표 달성을 위해 국민이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리빙랩 R&D 추진을 통한 수용성 제고 및 수익성 향상
- 지자체 및 주민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사업 표준모델 확보를 통해 높은 민원과 복잡한 인허가 극복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 해당 없음('19년 신규사업)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경쟁률	-	-	-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 해당 없음('19년 신규사업)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정부출연금	-	-	-

11.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보급과 : ☎ 044-203-5373, jwyoons57@motie.go.kr (www.motie.go.kr)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신재생기획실 : ☎ 02-3469-8334, jaein@ketep.re.kr (www.ketep.re.kr)

100. 멀티터미널직류송배전시스템개발사업

1. 개요

- 전력설비(송전선 등) 추가 건설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과 신재생에너지 등 분산전원 연계로 인한 전력계통 안정화 문제 해결을 위한 멀티터미널 HVDC(고압직류) 기술개발

2. 지원대상분야

- 멀티터미널직류송배전시스템
 - 전력설비(송전선 등) 추가 건설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과 신재생에너지 등 분산전원 연계로 인한 전력계통 안정화 문제 해결기술로 멀티터미널 HVDC 기술개발 지원

3.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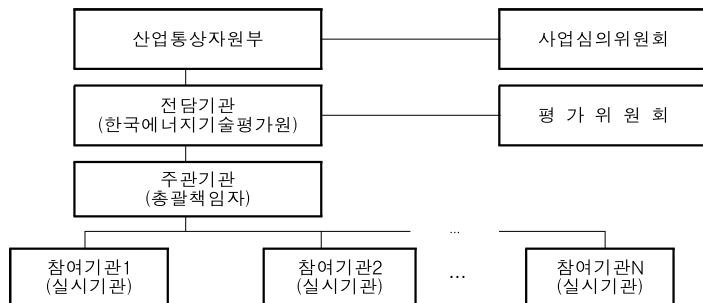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에너지법·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4. 지원내용

- RFP 등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 단독 또는 산·학·연 간의 공동개발 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형태로 지원
- 총 수행기간 4년 이내에서 매년 연차평가를 통해 차기년도 지원
 - * 세부유형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등은 사업공고 시 별도 안내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6. 추진일정 : 신규지원 예정없음

7. 지원규모 : 46.78억원 (계속 46.78억원)

8. 중점 추진사항

- 멀티터미널직류송배전시스템
 - 전력계통 안정화 문제 해결기술로 멀티터미널 HVDC 기술개발 지원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경쟁률	-	1 : 1	-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정부출연금	-	1,667백만원	2,821백만원

11.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진흥과 : ☎ 044-203-5264, snec21@motie.go.kr (www.motie.go.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청정전력기획실 : ☎ 02-3469-8351, johnny@ketep.re.kr (www.ketep.re.kr)

101. 미래형스마트그리드실증연구

1. 개 요

- 도시소재 아파트 단지 등을 대상으로 AICBM, 에너지 IoT 기술을 적용한 국민 체감형 스마트그리드 新기술·서비스 실증단지 조성
- 기존 실증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既 구축된 H/W 인프라를 활용하여 혁신기술·서비스(S/W) 실증에 주력

2. 지원대상분야

- 도심형 스마트그리드 新기술·서비스 실증단지 조성 핵심기술분야* 지원
- * 선택형 요금제 기반 서비스, 태양광공동체, 도심형 마이크로그리드, 분산자원 집합발전소 전력빅데이터 등 도심형 스마트그리드 핵심기술분야

3.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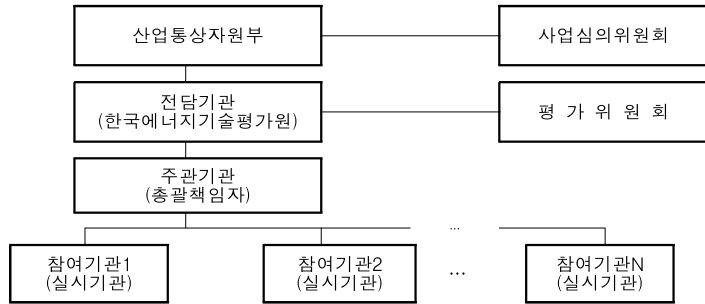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에너지법·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개발 사업 실시기관 등

4. 지원내용

- RFP 등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 단독 또는 산·학·연 간의 공동개발 형태로 수행되며, 출연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형태로 지원
- 총 수행기간 4년 이내에서 매년 연차평가를 통해 차기년도 지원
- * 세부유형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등은 사업공고 시 별도 안내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로드맵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그린에너지 전략로드맵, 온실가스감축기술 전략로드맵 등
과제기획	PD/기획위원회	수요조사 (연중상시)
		기획대상주제 및 후보품목 도출
		과제기획
신규지원대상 확정	사업별 심의위원회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 공고
		지정공모 품목지정/자유공모
선정평가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
		개념계획서 접수 및 평가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 확정
		사업계획서 접수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자 확정
사업관리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협약체결
		진도점검 · 중간평가
	전담기관(KETEP) 위탁회계법인	최종평가
사후관리	전담기관(KETEP)	사업비 정산
	전담기관(KETEP)	기술료 징수 * 불성실 수행이 아닌 과제는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전담기관(KETEP)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사후관리

6. 추진일정 :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8. 8월 ~ '18. 12월	'19. 1월	'19. 5월	'19. 5월

* 사업 추진 세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7. 지원규모 : 67.5억원 (신규 67.5억원)

8. 중점 추진사항

○ 서비스 중심의 스마트그리드 新기술 · 서비스 실증단지 조성 핵심기술분야 중점 지원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 '19년 신규사업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경쟁률	-	-	-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 '19년 신규사업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정부출연금	-	-	-

11.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진흥과 : ☎ 044-203-5264, snec21@motie.go.kr (www.motie.go.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청정전력기획실 : ☎ 02-3469-8351, johnny@ketep.re.kr (www.ketep.re.kr)

102. 방사성폐기물관리기술개발사업

1. 개 요

- 방사성폐기물 관리기술의 수준향상을 통해 방사성폐기물로 인한 위해방지 및 공공의 안전과 환경에 이바지

2. 지원대상분야

- 사용후핵연료관리기술개발
 - 사용후핵연료의 운반, 저장, 처분 등과 관련된 핵심기술 개발
- 중·저준위방폐물관리기술개발
 - 중·저준위 처분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핵심기술개발

3.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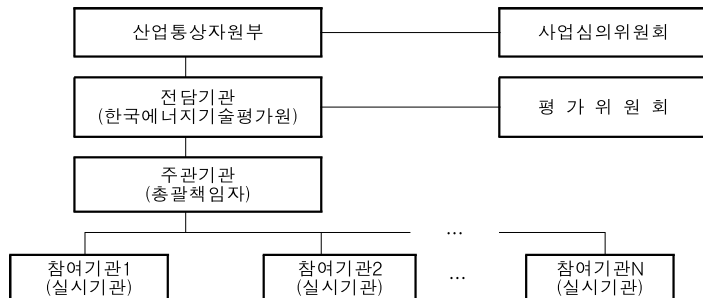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에너지법·방사성폐기물관리법·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4.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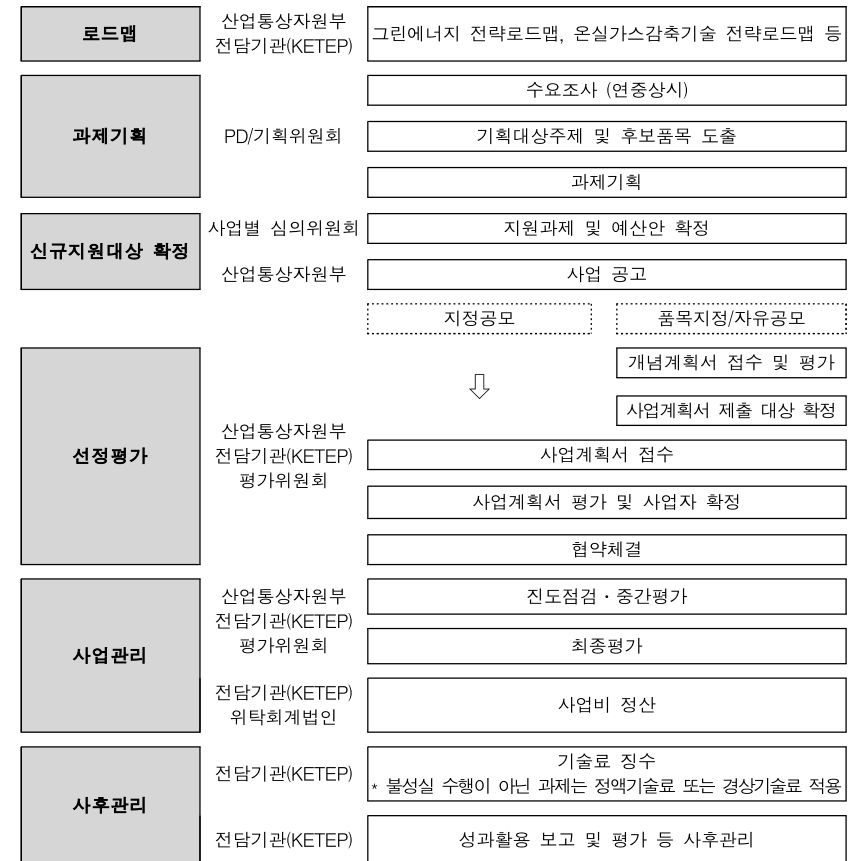
- RFP 등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 단독 또는 산·학·연 간의 공동개발 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형태로 지원
- 총 수행기간 3~5년 이내에서 매년 연차평가 또는 단계평가를 통해 차기년도 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6. 추진일정

- '19년 일몰대상 사업으로 신규 공고 추진 미예정

7. 지원규모 : 56.46억원 (계속 56.46억원)

8. 중점 추진사항

- 육해상 정상운반조건에서의 사용후핵연료 건전성평가 체계 및 DB 구축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경쟁률	3.0 : 1	1.0 : 1	1.0 : 1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정부출연금	604백만원	822백만원	300백만원

11.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환경과 : ☎ 044-203-5708, mjh2898@motie.go.kr (www.motie.go.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청정전력기획실 : ☎ 02-3469-8355, sujui@ketep.re.kr (www.ketep.re.kr)

103. 석탄발전 미세먼지 저감 친환경설비 혁신기술개발사업

1. 개 요

- 발전부문 미세먼지 저감 국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환경설비 신공정 및 성능향상 기술 개발
 - 저온탈질 기술을 연계하여 환경설비의 안정적 운영 및 미세먼지 처리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신공정 개발
 - 습식 탈황장치에 연계하여 미세먼지 유발 전구물질인 황산화물/질소산화물을 동시제거 처리하는 기술 및 전구물질 자원화 기술개발
 - 수은 등 중금속류 배출 저감 기술 개발

2. 지원대상분야

- 발전분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환경설비 혁신기술
 - 석탄화력발전소 탈질/집진/탈황 등 미세먼지 저감 신공정 등 환경기술 개발

3.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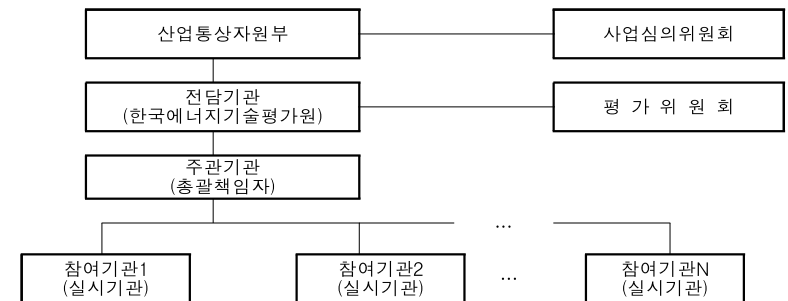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에너지법·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개발 사업 실시기관 등

4. 지원내용

- 중장기과제 : 핵심응용기술 개발을 통한 Pilot-scale의 시작품 개발, 실증 등을 통한 사업화(현실적용) 단계 기술개발 등을 목표로 하며, 매년 10~30억원 내외 지원
- 단기과제 : 시장애로기술 확보 및 비즈니스 창출 기술개발을 목표로 하며, 매년 5억원 내외 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로드맵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그린에너지 전략로드맵, 온실가스감축기술 전략로드맵 등
과제기획	기획위원회	수요조사 (연중상시)
		기획대상주제 및 후보품목 도출
		과제기획
신규지원대상 확정	사업별 심의위원회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 공고
		지정공모 품목지정/자유공모
선정평가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
		개념계획서 접수 및 평가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 확정
		사업계획서 접수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자 확정
사업관리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진도점검 · 중간평가
		최종평가
	전담기관(KETEP)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사후관리	전담기관(KETEP)	기술료 징수 * 불성실 수행이 아닌 과제는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전담기관(KETEP)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사후관리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8. 7월 ~ '19. 1월	'19. 1월 ~ '19. 4월	'19. 5월	'19. 6월

7. 지원규모 : 42.74억원 (신규 42.74억원)

8. 중점 추진사항

- 미세먼지 규제 강화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설비 신기술 발굴과 시스템 적용을 통한 효과 검증
 - 석탄화력발전소 배출 미세먼지(NOx, SOx, PM) 및 중금속 제거 기술 및 공정 개발
 - 포집된 미세먼지 전구물질의 자원화 전환 등 부가가치화 기술 개발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 '19년 신규사업으로 해당사항 없음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 '19년 신규사업으로 해당사항 없음

11.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 ☎ 044-203-5247, maipang@motie.go.kr (www.motie.go.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청정전력기획실 : ☎ 02-3469-8356, jungsh@ketep.re.kr (www.ketep.re.kr)

104. 수소융합단지실증

1. 개 요

-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전력을 활용한 수소에너지 산업생태계를 조기에 조성하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소에너지 R&D사업 기획 추진

2. 지원대상분야

- 수소융합실증단지 R&D 사업기획

3.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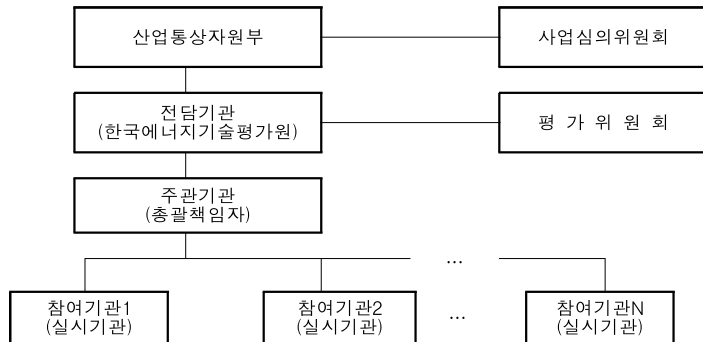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에너지법·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개발 사업 실시기관 등

4. 지원내용

- 정책지정 또는 지정공모 등의 절차를 거쳐 선정된 과제 지원
- * 세부유형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등은 사업공고 시 별도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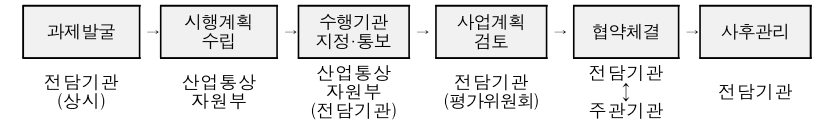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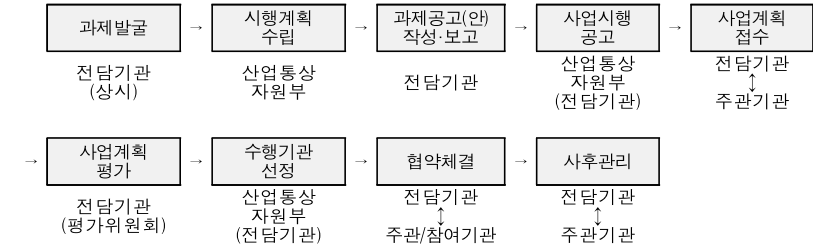


- 추진절차

- 정책지정 : 해당과제의 최종목표, 수행내용 등을 명시한 과제요구서(RFP) 및 수행기관을 주관부처에서 지정 및 시행



- 지정공모 : 최종목표, 수행내용 등을 명시한 과제요구서(RFP)를 기준으로 한 수행기관 선정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8. 8월 ~ '18. 12월	'19. 1월	'19. 4월	'19. 4월

* 사업 추진 세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7. 지원규모 : 16.69억원 (신규 16.69억원)

8. 중점 추진사항

- 수소융합실증단지 플랫폼 개발 및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 수소융합실증단지 실증 데이터의 공개활용을 위한 오픈플랫폼 구축
- 수소융합실증을 통한 분산전원 기반의 에너지융합형 新산업 기술 개발
- 수소융합실증을 통해 수소생산단가 저감, 수소에너지 연계기술의 미자립 핵심 부품의 국산화, 부품·시스템 단가 저감 기술 개발
- 수소융합실증단지를 활용한 에너지신기술의 시험·평가 방법을 개발하고 국내 시장진입 및 제품 신뢰성 제고를 위한 인증, 표준 개발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 해당 없음('19년 신규사업)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경쟁률	-	-	-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 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 해당 없음('19년 신규사업)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정부출연금	-	-	-

11.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과 : ☎ 044-203-5391, ych1212@motie.go.kr (www.motie.go.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신재생기획실 : ☎ 02-3469-8333, jaehyung@ketep.re.kr (www.ketep.re.kr)

105. 스마트그리드핵심기술개발사업

1. 개 요

- 기존 전력망에 지능정보기술*을 융합한 스마트그리드 기술개발을 통해 전력 수요감축 · 분산 등 에너지효율 최적화 및 전력분야 융합 신산업 창출
- * 지능: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등, 정보: 빅데이터, IoT, 클라우드, Mobile 등

2. 지원대상분야

- **(지능형송배전)** 분산발전(신재생 등) 및 EV 보급확대에 따른 전력계통의 혁신적인 변화에 대비한 차세대 전력계통
- **(지능형소비자)** 전력 수용가 영역 패러다임 변화(분산발전 증가, 수요관리 증가 등)를 수용할 수 있는 소비자 영역의 지능화를 위한 기술개발
- **(전기기기기술혁신)** 전기기기 산업 육성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전기기기 7대 품목* 기술개발
- * 7대 품목 : 발전기, 변압기, 개폐보호기, 변환장치, 전선, 절연물, DC배전기기

3.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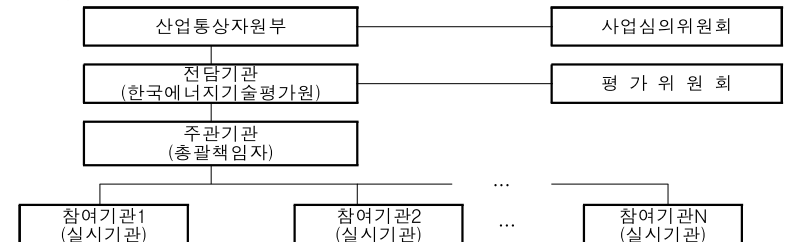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에너지법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4.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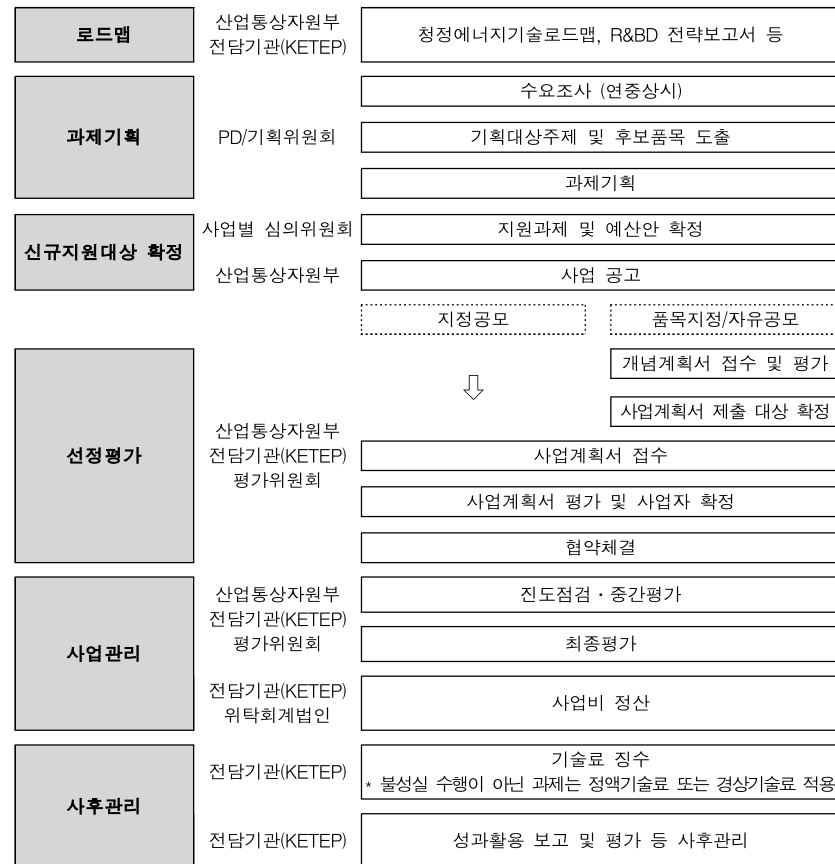
- RFP 등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 단독 또는 산·학·연 간의 공동개발 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형태로 지원
- 총 수행기간 3~5년 이내에서 매년 연차평가를 통해 차기년도 지원
- * 세부유형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등은 사업공고 시 별도 안내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8. 8월 ~ '18. 12월	'19. 1월	'19. 5월	'19. 5월

* 사업 추진 세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7. 지원규모 : 358.62억원 (신규 28.73억원, 계속 329.89억원)

8. 중점 추진사항

- 소비자의 참여확대, 서비스 활성화 등 소비자 편익을 증진하고, 에너지 신산업 창출을 위한 관련 비즈니스 모델 개발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경쟁률	5.0 : 1	2: 1	3.4 : 1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정부출연금	1,261백만원	793백만원	828백만원

11.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진흥과 : ☎ 044-203-5264, snec21@motie.go.kr (www.motie.go.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청정전력기획실 : ☎ 02-3469-8351, johnny@ketep.re.kr (www.ketep.re.kr)

106. 스마트시티 에너지 통합관제 핵심 기술개발 사업

1. 개 요

-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에 적용할 에너지 통합관제 핵심기술 확보

2. 지원대상분야

- 스마트시티 시범도시의 에너지 통합관제 환경 구축
 - 스마트시티 에너지 데이터 수집·처리 기술개발
 - 스마트시티 에너지 통합 관제를 위한 에너지 플랫폼 설계 기술개발
- 친환경 에너지 공급 및 수요관리 최적화를 위한 제어시스템 기술개발
 - 친환경 에너지 공급 자원(신재생, ESS 등) 제어시스템 개발
 - 스마트시티 에너지 소비 운영 관리를 위한 제어시스템 개발
- 스마트시티 에너지 인프라 기술개발
 - 스마트시티 모델의 보급 확대를 위한 비즈니스 서비스 기술개발
 - 스마트시티 에너지 신기술의 적용 장애요인 해소 기술개발

3.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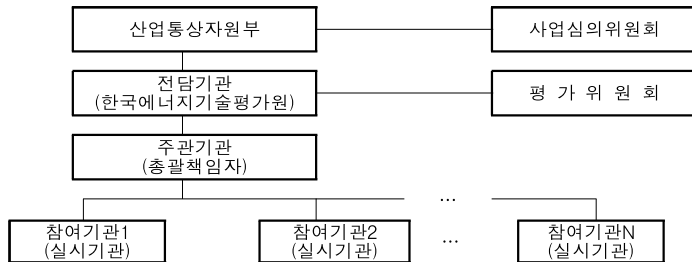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에너지법·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4.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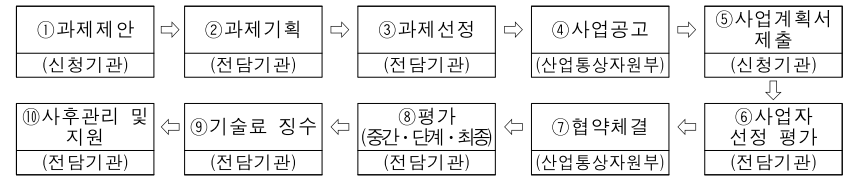
- RFP 등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 단독 또는 산·학·연 간의 공동개발 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형태로 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8. 8월 ~ '18. 12월	'19. 1월	'19. 5월	'19. 5월

7. 지원규모 : 30.05억원 (신규 30.05억원)

8. 중점 추진사항

- 기술 개발 기간의 한시성, 스마트시티 에너지 기능 충족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핵심 신기술을 엄선하여 기술개발 및 적용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경쟁률	-	-	-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정부출연금	-	-	-

11.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신산업과 : ☎ 044-203-5391, eclieps@motie.go.kr (www.motie.go.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신산업기획실 : ☎ 02-3469-8348, ksj@ketep.re.kr (www.ketep.re.kr)

107. 신재생에너지 연계 신송전 70kV급 핵심기술개발사업

1. 개 요

- 신재생에너지의 원활한 계통 접속을 위한 스마트그리드 70kV급 변전소에 적용할 지능형·친환경 전력시스템 개발

2. 지원대상분야

- 정부의 분산형 전원(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新 송전급(70kV) 변전소 구축을 위한 지능형·친환경 전력시스템 개발 및 실증
 - IoT 기술과 친환경 절연소재 적용 전기기기 기술 개발을 통해 변전소 내 핵심 부품·소재 국산화
 -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전기기기 데이터 표준화 및 분석을 통해 Full 디지털화 된 상태 진단 및 제어 시스템을 개발

3.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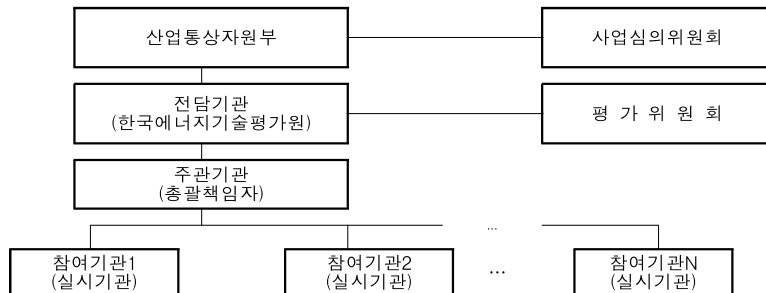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에너지법·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4.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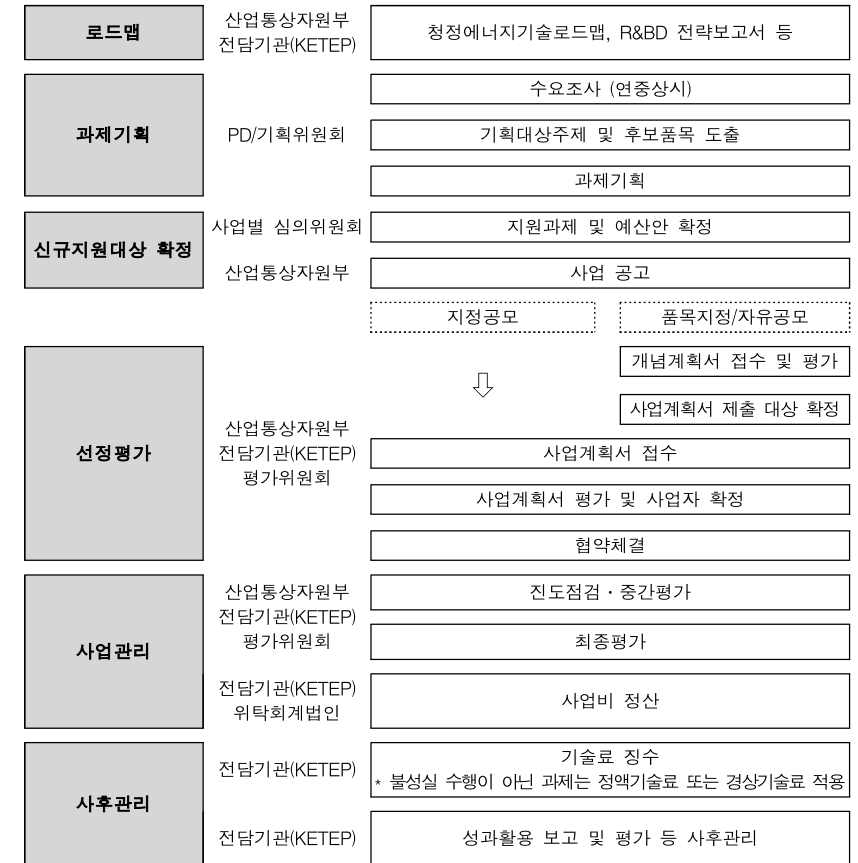
- RFP 등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 단독 또는 산·학·연 간의 공동개발 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형태로 지원
- 총 수행기간 3~5년 이내에서 매년 연차평가를 통해 차기년도 지원
 - * 세부유형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등은 사업공고 시 별도 안내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8. 8월 ~ '18. 12월	'19. 1월	'19. 5월	'19. 5월

* 사업 추진 세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7. 지원규모 : 17.51억원 (신규 17.51억원)

* 신규 지원규모는 변동 될 수 있음

8. 중점 추진사항

- IoT기술과 친환경 절연소재를 적용한 전기기기 국산화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Digital 상태진단·제어 시스템 개발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해당없음)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 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해당없음)

11.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전자전기과 : ☎ 044-203-4344, maxima99@motie.go.kr (www.motie.go.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청정전력기획실 : ☎ 02-3469-8357, cjftn33@ketep.re.kr (www.ketep.re.kr)

108.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사업

1. 개 요

- R&D 지원을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30년 20% 확대' 목표를 달성함과 동시에 온실가스 저감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구조 전환과 신산업 창출에 기여

2. 지원대상분야

- 태양광, 태양열, 풍력, 수력, 해양, 연료전지, 수소, 석탄이용, 바이오, 폐기물, 지열, 신재생 에너지융합,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수소융합충전소 시범사업

3.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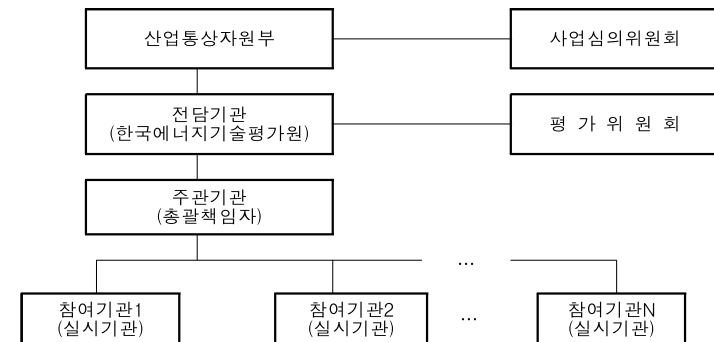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에너지법·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4. 지원내용

- RFP 등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 단독 또는 산·학·연 간의 공동개발 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형태로 지원
- * 세부유형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등은 사업공고 시 별도 안내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정책/로드맵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재생에너지3020이행계획, 청정에너지기술로드맵, 그린에너지 전략로드맵, 온실가스감축기술 전략로드맵 등
과제기획		수요조사 (연중상시)
	PD/기획위원회	기획대상주제 및 후보품목 도출
		과제기획
신규지원대상 확정	사업별 심의위원회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 공고
		지정공모 품목지정/자유공모
선정평가		개념계획서 접수 및 평가
		↓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사업계획서 접수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자 확정
사업관리		협약체결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연구발표회·연차평가·진도점검
		최종평가
사후관리	전담기관(KETEP)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전담기관(KETEP)	기술료 징수 * 불성실 수행이 아닌 과제는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전담기관(KETEP)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사후관리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8. 8월 ~ '18. 12월	'19. 1월	'19. 5월	'19. 5월

* 사업 추진 세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7. 지원규모 : 2,154.32억원 (신규 287.6억원, 계속 1,866.72억원)

8. 중점 추진사항

- 新정부의 '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 육성' 및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등 정부정책 실현을 위한 R&D분야 집중 지원
- 시장경쟁력 기술을 강화하여 보급촉진 및 시장점유율 확대
 - 단가저감, LCOE저감 및 수용성확보 기술 등 보급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개발 추진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경쟁률	3.1 : 1	2.3 : 1	2.2 : 1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정부출연금	942백만원	684백만원	866백만원

11.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보급과 : ☎ 044-203-5373, jwyoons57@motie.go.kr (www.motie.go.kr)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신재생기획실 : ☎ 02-3469-8331~8, 8462, jaein@ketep.re.kr (www.ketep.re.kr)

109. 신재생전원 확대와 전력계통 안정화를 위한 RMS 기술개발사업

1. 개 요

- 신재생 전원의 급격한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는 통합제어관리시스템(RMS) 구축을 통해 전력계통 안정성 확보

2. 지원대상분야

- 신재생 3020 전략목표 달성 및 전력계통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불규칙한 신재생 전원 확대에 대응한 계통운영 기술
 - 신재생 전원의 출력예측, 계통 평가 및 해석, 신재생 전원 제어시스템 개발
 - 전력시장, 신재생전원 계통연계를 위한 운영 제도 개선

3.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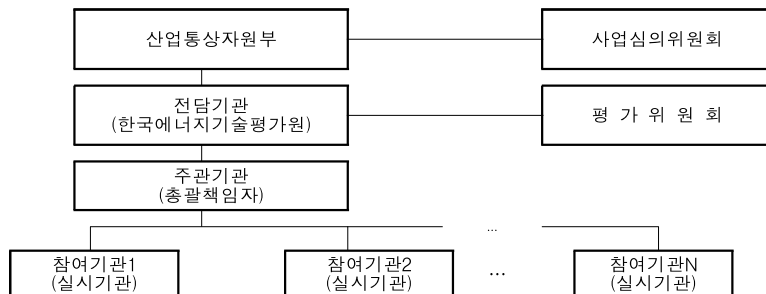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에너지법·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 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4.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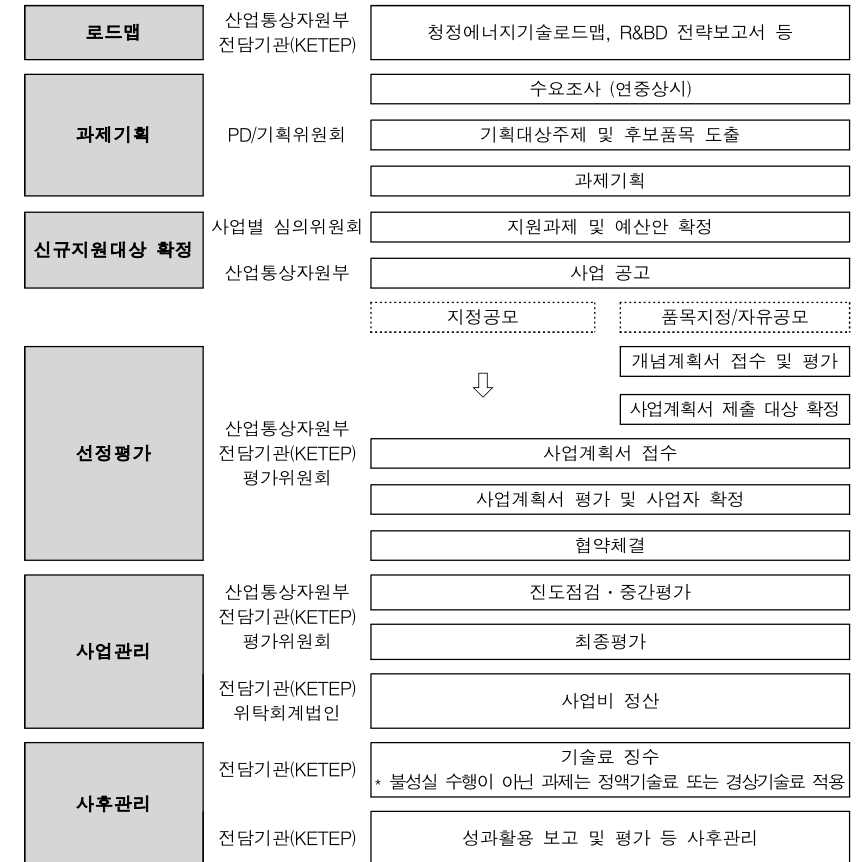
- RFP 등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 단독 또는 산·학·연 간의 공동개발 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형태로 지원
- 총 수행기간 3~5년 이내에서 매년 연차평가를 통해 차기년도 지원
 - * 세부유형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등은 사업공고 시 별도 안내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8. 8월 ~ '18. 12월	'19. 1월	'19. 5월	'19. 5월

- * 사업 추진 세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7. 지원규모 : 26.94억원 (신규 26.94억원)

- * 신규 지원규모는 변동 될 수 있음

8. 중점 추진사항

- 신재생 전원의 급격한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신재생 전원의 출력예측, 계통 평가 및 해석, 신재생 전원 제어시스템 개발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해당없음)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해당없음)

11.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 ☎ 044-203-5244, kim0506@motie.go.kr (www.motie.go.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청정전력기획실 : ☎ 02-3469-8357, cjftn33@ketep.re.kr (www.ketep.re.kr)

110.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에텍, 기금)

1. 개 요

- (목적) 해외와의 에너지기술 공동 R&D를 통해 선진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고, 해외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에너지기술경쟁력 제고와 에너지 신시장 창출에 기여
 - (선진기술획득) 기술선도국의 원천기술 확보 및 한국-협력국간 기술 시너지 창출
 - (해외시장진출)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개도국 등 현지 실증형 공동연구 지원
- (필요성) 해외와의 에너지기술 공동 R&D를 통해 에너지산업의 글로벌화,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대응 등 글로벌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

2. 지원대상분야

- 에너지자원, 신재생에너지, 전력, 원자력 분야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을 참여기관으로 포함 필수

4. 지원내용

- 수행기관 및 지원규모
 - (수행기관) 기업, 연구소, 대학 등 국내 및 해외기관
 - (지원규모, 사전타당성 연구과제) 1년 이내, 1억원 이내 지원
 - (지원규모, 그 외) 3년 내외, 연간 7억원 규모 지원
- 지원조건
 - 출연(Matching Fund, 연구수행 형태에 따라 33~100% 정부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 (연구 기획이 있는 경우) 사전기획(산업통상자원부) → 수요조사(전담기관) → 연구기획수행(과제기획위원회, 수행기관) → 연구기획과제의 평가(평가위원회) → 신규공고대상과제 및 지원 규모 확정(평가위원회 → 사업별 심의위원회)
- (과제 평가 및 관리) 신규사업공고(산업통상자원부) → 사업계획서접수(주관기관 → 전담기관) → 신청과제 평가(전담기관(평가위원회)) → 지원대상과제 및 사업자 확정 (전담기관 → 산업통상자원부(사업별 심의위원회) → 선정과제 협약 체결(산업통상자원부 ↔ 전담기관 ↔ 주관기관(참여기관)) → 과제수행(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 연차평가 (주관기관 → 전담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비 정산(주관기관 → 전담기관/ 위탁정산기관) → 최종평가(주관기관 → 전담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 → 전담기관/ 위탁정산기관) → 기술료 징수(주관기관→전담기관) → 성과활용보고 및 평가 등 사후관리(주관기관 → 전담기관)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19. 1월	'19. 2월	'19. 5월	'19. 7월

7. 지원규모 : 189.26억원 (신규 13.62억원, 계속 175.64억원)

8. 중점 추진사항

- 신남방 · 신북방 정부 정책에 기반한 에너지 분야 공동연구 추진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경쟁률	4.2 : 1	2.3 : 1	3.4 : 1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정부출연금	408백만원	194백만원	189백만원

11.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과 : ☎ 044-203-5167, kh20324@motie.go.kr (www.motie.go.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국제협력실 : ☎ 02-3469-8432~8, ksh@ketep.re.kr (www.ketep.re.kr)

111. 에너지기술 수용성 제고 및 사업화 촉진 사업

1. 개 요

- 기술의 **수용성***을 고려하지 않은 R&D는 연구개발 실패 또는 연구개발의 기술적 성공에도 불구하고 사업화 어려움에 직면
 - 에너지기술의 **사용자 수용성 향상**을 통한 기술의 활용 및 보급·확산으로 **에너지R&D의 사업화 촉진**
 - * 성능, 가격, 비용 등 기술적·경제적 요소 외에 사용자 편의성, 사회적 인식, 이해관계 상충, 환경·안전문제 등 제품, 서비스 및 시스템의 채택을 결정하는 요소
- 사용자, 지역주민, 이해관계자 등이 연구개발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현장에서 체감하는 에너지 제품 및 설비의 문제점 해결을 통해 사회적·기술적 수용성 제고
 - 연구수행기관과 공동연구팀(사용자 등 이해관계자)을 구성하여 에너지기술의 수용성 저해요인을 진단·분석하고 수용성을 개선된 시제품, 비즈니스 모델, 운영매뉴얼 등 문제해결 방안 도출·적용

2. 지원대상분야

- 에너지기술 수용성 연구
 - 에너지 제품·시설에 대한 이해상충, 사용자 편의성 등 수용성 문제와 연계된 이슈 및 분야

3.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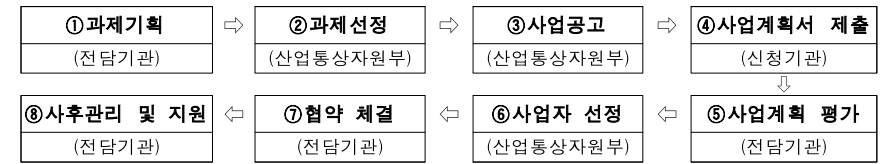
- 산·학·연 기관과 사업화 전문기관(컨설팅사 포함) 및 협회, 시민사회조직 등 NGO

4. 지원내용

- 사용자 참여형 공동연구팀을 구성, 현장문제 진단 및 사용자 행태 분석 등을 실시하고 수용성 문제 해결방안 도출·적용

대 상	연구내용	결과물
· 기존 에너지제품 및 설비	· 에너지제품 및 설비의 보급 및 확산을 위해 문제점 및 해결방안 도출 · 사용자 등 이해관계자 중심의 리빙랩 활동을 통한 과제 추진	· 수용성 개선을 반영한 사용자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 개발 · 수용성 개선을 반영한 시제품 및 비즈니스 모델 도출 · 수용성 개선 결과물의 확산을 위한 홍보 및 교육

5. 추진체계 및 절차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8. 12월 ~ '19. 1월	'19. 1월 ~ '19. 3월	'19. 4월	'19. 4월

* 사업 추진 세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7. 지원규모 : 18.28억원 (신규 3.64억원, 계속 14.64억원)

* 사업 추진 세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8. 중점 추진사항 : 해당사항 없음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경쟁률	5.2 : 1	3 : 1	4.3 : 1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정부출연금	210백만원	206백만원	288백만원

11.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과 : ☎ 044-203-5164, iamerin@motie.go.kr (www.motie.go.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기술사업화실 : ☎ 02-3469-8422, dreamtaehwan@ketep.re.kr (www.ketep.re.kr)

112. 에너지기술정책수립사업

1. 개 요

- 에너지기술 R&D와 관련하여 중장기 R&D계획 수립, 정책 발굴, 에너지기술 국내외 동향 분석, 시장·기술 수준 조사 및 분석 등을 위한 정책연구 사업

2. 지원대상분야

- 에너지자원기술정책지원
 - 기술정책 수립 : 에너지기술 기획 방향 및 전략적 지원 방향 도출
 - 정책시행 기반조성 :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술·시장 DB 확보 및 저변 확대

3.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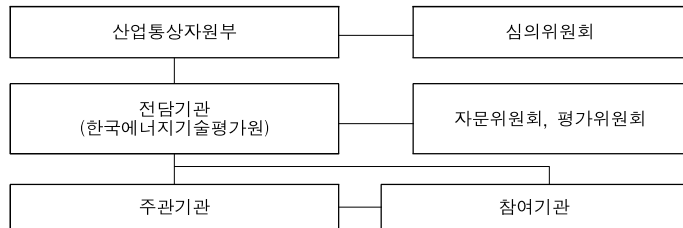
-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등 기타 에너지법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4. 지원내용

- 정책지정 또는 지정공모 등의 절차를 거쳐 선정된 과제 지원
- 소요예산 전액 정부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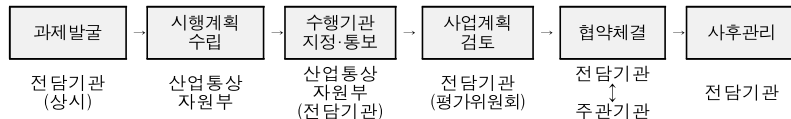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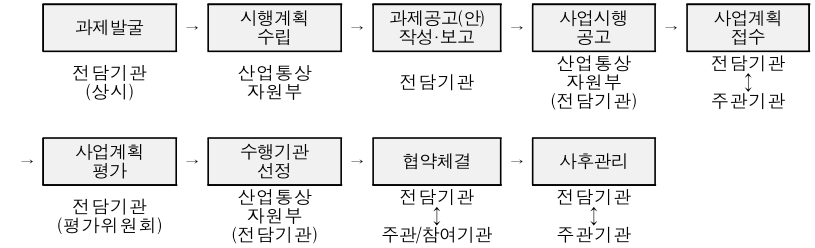


- 추진절차

- 정책지정 : 해당과제의 최종목표, 수행내용 등을 명시한 과제요구서(RFP) 및 수행기관을 주관부처에서 지정 및 시행



- 지정공모 : 최종목표, 수행내용 등을 명시한 과제요구서(RFP)를 기준으로 한 수행기관 선정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9. 1월 ~ '19. 2월	'19. 3월 ~ '19. 4월	'19. 5월	'19. 6월

* 사업 추진 세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7. 지원규모 : 8.24억원 (신규 8.24억원)

8. 중점 추진사항

- 에너지기본계획, 청정에너지기술 발전 전략 등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적인 기술개발 정책 발굴
-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적인 에너지기술 관련 시장·제도 분석 및 정보 공유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경쟁률	1.33:1	1 : 1	2 : 1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정부출연금	300백만원	131백만원	209백만원

11.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과 : ☎ 044-203-5164, iamerin@motie.go.kr (www.motie.go.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정책기획실 : ☎ 02-3469-8325, jooyoung.lee@ketep.re.kr (www.ketep.re.kr)

113.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사업

1. 개 요

- 신기후체제(Post-2020)·유가변동 등 급변하는 에너지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등 정부 핵심과제 추진을 위한 에너지효율향상, 온실가스처리, 에너지 신산업, 에너지수요관리융합, 수소환원제철공정 기술개발 지원

2. 지원대상분야

- 에너지효율향상
 - 에너지다소비기기/업종별 핵심 효율향상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 대응 및 에너지저소비사회 기반 확보가 가능한 기술개발 지원
- 온실가스처리
 - 발전소 및 산업체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CO₂를 포집 후 압축·수송하여 육·해상 지중에 저장(CCS)하거나 유용한 물질로 활용(CCU)하는 기술개발 지원
- 에너지신산업
 -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키우는 동시에 미래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문제해결형 산업”인 에너지신산업(제로에너지빌딩, 전기자동차/충전시스템 등) 창출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에너지수요관리융합
 - 타 산업(농·어업, 국방, 국토·교통 등), 디자인, 사회과학 등과의 융합, 혁신기술 발굴, 단기사업화 등 전략적 R&D 과제 지원
- 수소환원제철공정
 - 철강제조공정 중에 발생한 부생가스(COG, Coke Oven Gas)의 증폭 활용 기술과 CO₂를 15% 저감 할 수 있는 Hybrid 수소 제철 기술 개발

3.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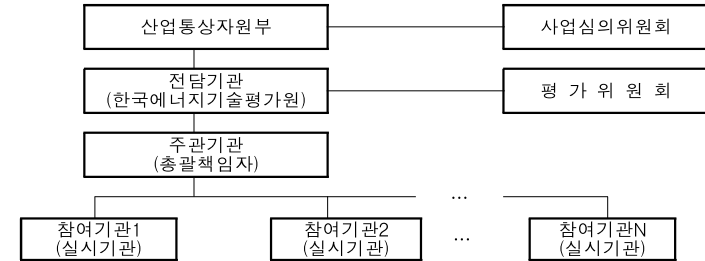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에너지법·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4.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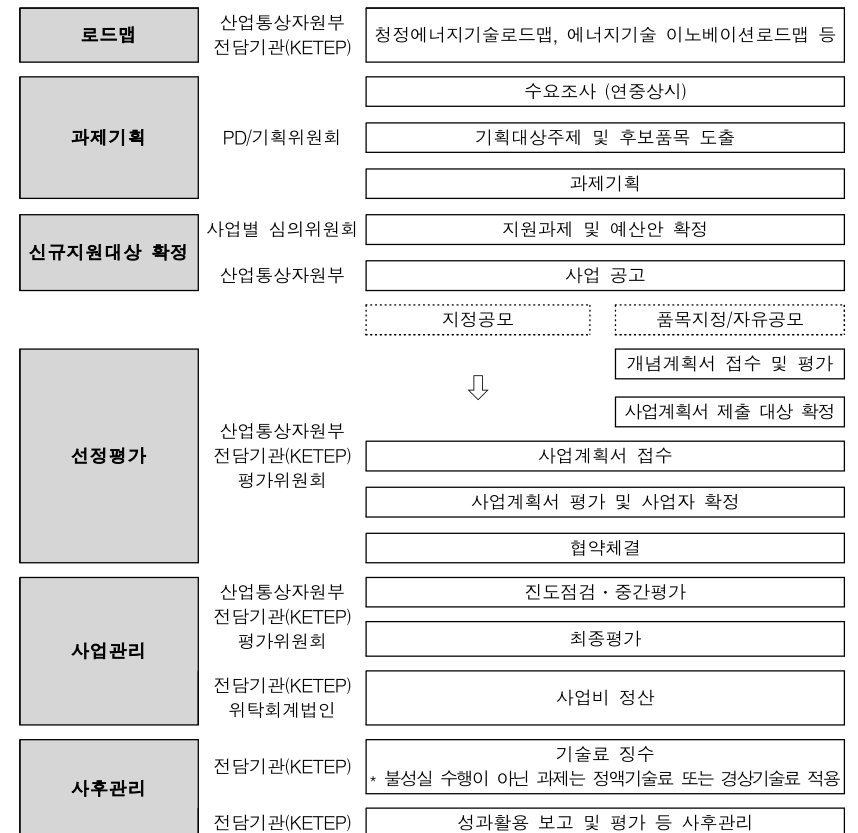
- RFP 등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 단독 또는 산·학·연 간의 공동개발 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형태로 지원
- 총 수행기간 3~5년 이내에서 매년 연차평가 또는 단계평가를 통해 차기년도 지원
 - * 세부유형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등은 사업공고 시 별도 안내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 기술수요조사(상시) : 해당연도 취합시점은 공고를 통해 안내

* 품목지정형/자유공모형 과제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 접수 전, 개념계획서 접수·평가 실시 예정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8. 8월 ~ '18. 12월	'19. 1월	'19. 5월	'19. 5월

* 사업 추진 세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7. 지원규모 : 1,666.7억원 (신규 80.29억원, 계속 1,586.41억원)

* 신규 지원규모는 변동 될 수 있음

8. 중점 추진사항

- 에너지기본계획, 에너지기술개발계획 등 장기·종합적 계획 및 新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및 '4차 산업혁명 대응' 등 주요 에너지 정책제시'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과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핵심기술 확보에 주력
- * 국정과제 33, 34, 37 - 스마트시티 조성확산, 친환경차 육성, 4차산업 적용 에너지사용효율화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경쟁률	2.9 : 1	3.0 : 1	2.1 : 1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정부출연금	834백만원	933백만원	922백만원

11.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신산업과 : ☎ 044-203-5391, eclieps@motie.go.kr (www.motie.go.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신산업기획실 : ☎ 02-3469-8346, gcshin@ketep.re.kr (www.ketep.re.kr)

114. 에너지신기술표준화 및 인증지원사업

1. 개 요

- 분산자원 확대에 따른 전력망 안정화, 스마트그리드 분야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해 전력 분야 표준의 제·개정을 지원하고
- 표준에 맞춰 제작된 기술·제품의 성능을 시험하고 인증할 수 있는 체계 구축 지원

2. 지원대상분야

- 차세대표준화체계지원
- 고효율 전력설비 신뢰성 연구기반구축

3.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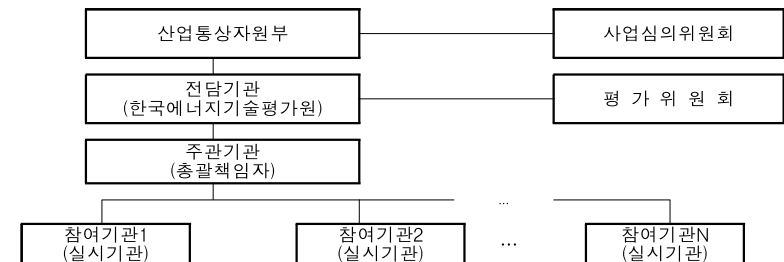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31조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14조(수행기관)에 의거
- 전기사업자 및 관련기관
- 전력산업관련 연구기관, 공단, 협회 및 단체
- 학교 및 부설연구소 등
- 기타 기반조성사업을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4. 지원내용

- (차세대표준화체계지원) 전력분야 新산업 창출 및 분산자원 확대에 따른 전력망 안정화 등을 위한 차세대 표준화 지원
- (고효율전력설비신뢰성연구기반구축) 22.9kV ~ 154kV 변전급 이하 인증 전 단계 예비(참고) 시험 지원을 위한 기반구축 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해당 사업연도 추진방향 설정	산업통상자원부
수요조사 및 연구기획과제 도출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연구기획 수행	전담기관 [기획위원회]
연구기획과제의 평가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신규 지원대상 과제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사업 시행계획 공고	산업통상자원부(주관기관 공모)
사업계획서 접수	신청기관 → 전담기관
신청과제 평가(신규평가)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통보	전담기관 → 신청기관
이의신청	신청기관 → 전담기관
신규과제 및 사업자 확정	전담기관(평가결과 보고) →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평가결과 확정통보) → 전담기관(평가결과 확정 통보 및 협약체결 안내) → 주관기관
신규과제 협약 체결	전담기관 ↔ 주관기관(참여기관)
연차/단계 평가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 → 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차년도 협약 체결	전담기관 ↔ 주관기관(참여기관)
최종 평가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 → 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성과활용 관리	주관기관 → 전담기관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8. 8월 ~ '18. 12월	'19. 1월	'19. 5월	'19. 5월

* 사업 추진 세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7. 지원규모 : 52억원 (신규 11.7억원, 계속 40.3억원)

* 신규 지원규모는 변동 될 수 있음

8. 중점 추진사항

- (차세대 표준화) 기술개발 및 표준 제·개정 연계 강화를 통해 개별 기술의 우수성과 함께 제품의 시장 확장성까지 고려하여 재정 효율화 추진
- (고효율 전력설비 시험센터) 중소기업 고효율 배전급 전력설비 분야 공인시험기관에 대한 시험적체 체감도가 높은 수준으로 기업경쟁력 지원차원에서 해당 이슈 해소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차세대표준화체계지원	해당없음	해당없음	1 : 1
고효율 전력설비 신뢰성 연구기반구축	해당없음	해당없음	1 : 1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차세대표준화체계지원	해당없음	해당없음	300백만원
고효율 전력설비 신뢰성 연구기반구축	해당없음	해당없음	4,000백만원

11.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진흥과 : ☎ 044-203-5268, woonjung@motie.go.kr (www.motie.go.kr)
- 산업통상자원부 전자전기과 : ☎ 044-203-4344, maxima99@motie.go.kr (www.motie.go.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청정전력기획실 : ☎ 02-3469-8357, cjftn33@ketep.re.kr (www.ketep.re.kr)

115. 에너지신산업 글로벌 인재양성

1. 개요

- 에너지신산업 분야 기술선도국에서 연구경험 습득을 통해 글로벌 고급인재를 양성하여 적기 공급하여 인력 미스매치 해소

2. 지원대상분야

- 에너지신산업 5대 분야

에너지신산업	세부 기술분야
신재생에너지	•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지능형 전력시스템	• 마이크로그리드, 가상발전소(VPP), V2G(Vehicle to Grid), ESS, 전력빅데이터 플랫폼 등
에너지 프로슈머	• 열·전기·가스 거래 플랫폼, 에너지 네가와트 시스템, 에너지 하베스팅, 에너지관리 시스템(XEMS) 등
청정화력	• 국산 고효율 대형 가스터빈, 석탄화력 미세먼지 저감 등
에너지 안전·보안	• 원전안전 및 해체, 에너지그리드 안정성(열·전기·가스 감시, 관측, 통보), 에너지사이버보안, 에너지안전(수소산업, 전기/LPG 복합충전소) 등

3. 신청자격

-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중심의 국내 대학 에너지분야 석·박사 재학생(한국 국적)

4. 지원내용

- 국내 석박사 재학생(중소·중견기업 재직자 포함)을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 공동 R&D 및 프로젝트 수행을 지원
 - 공동R&D 또는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인건비, 체재비 및 R&D 연구비 지원
 - 연간 1인당 지원금(안) : 인건비 및 체재비 4,800만원, 연구활동비(간접비) 4,900만원 내외(인건비) 국가연구개발관리규정 학생인건비 산정기준에 근거한 석사, 박사 차등 지급(체재비) 정부 여비규정에 따라 지급
 - (연구활동비) 주관기관에서 제안한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실비용(국내외지도교수지원비, 간접비 등 포함)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추진내용	시행주체	세부내용('19년)
홍보	KETEP	사업홍보 및 설명회 개최
기획	산업부	사업계획 및 세부지침 수립
수요조사	KETEP	연수희망 사전 수요조사
공고	산업부	모집공고
접수 및 선정	KETEP/주관기관	사업계획 접수
		주관기관선정
		파견학생선정
사업비	KETEP	사업비지급(1차)
해외연수	연수자	연수(출국) 실시
사업비	KETEP	사업비지급(2차)
결과보고	주관기관	최종보고서 제출
성과활용	KETEP	사후관리

6. 추진일정

사업	과제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에너지신산업 글로벌 인재양성	'18. 12월~'19.1월	'19. 2월	'19. 2월~4월	'19. 4월~5월	'19. 6월

7. 지원규모 : 20억원 (신규: 20억원)

8. 중점 추진사항

- (혁신인재 양성방식) 글로벌 협력 공동 프로젝트 추진
 - 해외대학, 연구소 등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연계한 국제협력 프로젝트 발굴하여 석 박사 과정생 파견 및 인력교류 추진
- (혁신인재 양성기관) 글로벌 네트워킹 역량을 갖춘 주관기관 선정
 - 해외 우수연구기관과 구체적인 협력(프로젝트 발굴, 학점 교류 또는 공동학위 등)으로 대학원생 인력교류가 가능한 주관기관(대학/연구소) 등을 선정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해당없음)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경쟁률	'19년 신규사업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해당없음)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정부출연금	'19년 신규사업		

11.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과 : ☎ 044-203-4541, chlee@motie.go.kr (www.motie.go.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인력양성실 : ☎ 02-3469-8440~5, khj@ketep.re.kr (www.ketep.re.kr)

116. 에너지안전관리핵심기술개발사업

1. 개 요

- 4차 산업혁명 확산, 에너지정책 전환 등으로 인해 급변하는 에너지산업의 안전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 신기술의 안전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국민 안전에 기여

2. 지원대상분야

- 수소에너지
 - 수소충전소·충전용기 성능평가 및 안전성 검증
- 에너지저장시스템
 - ESS 시설기준 안전플랫폼, 사고원인 분석 및 상태 모니터링 기술개발
- 신재생에너지융합
 - 직교류/직류 환경 안전 보호기술, 신재생에너지 시설 안전설치 기준 마련

3.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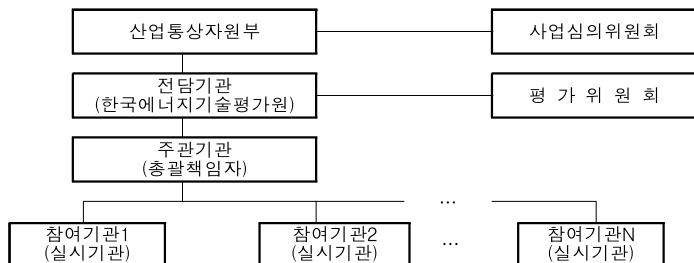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에너지법·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개발 사업 실시기관 등

4.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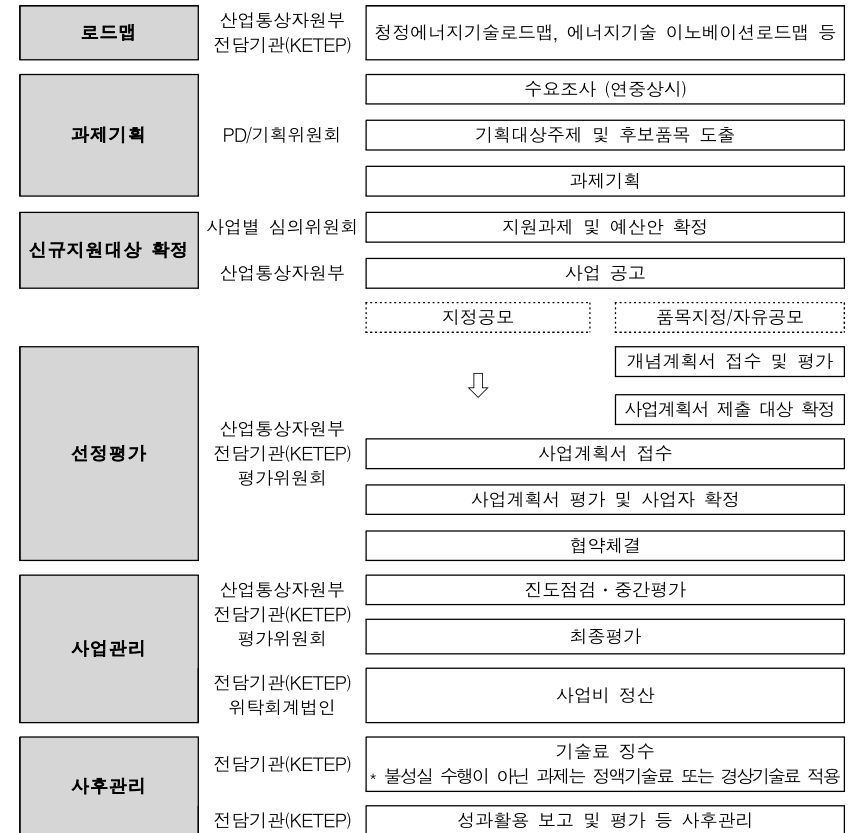
- RFP 등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 단독 또는 산·학·연 간의 공동개발 형태로 수행되며, 출연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형태로 지원
- 총 수행기간 3~5년 이내에서 매년 연차평가 또는 단계평가를 통해 차기년도 지원
 - * 세부유형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등은 사업공고 시 별도 안내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8. 8월 ~ '18. 12월	'19. 1월	'19. 5월	'19. 5월

* 사업 추진 세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7. 지원규모 : 32억원 (신규 32억원)

* 지원규모는 변동 될 수 있음

8. 중점 추진사항

- 에너지 융복합 新기술 수요 확대에 대비한 융복합시설 에너지안전 설치·운영기술 및 안전 기준 마련 기술개발 추진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경쟁률	-	-	-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 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정부출연금	-	-	-

11.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 ☎ 044-203-5135, ruy2000@motie.go.kr (www.motie.go.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신산업기획실 : ☎ 02-3469-8349, bluegold@ketep.re.kr (www.ketep.re.kr)

117. 에너지안전기술개발사업

1. 개 요

- 다양한 에너지(가스, 전기 등)의 안정적인 공급 및 사용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기술개발을 통해 국가 에너지 안전 사회 기반 마련

2. 지원대상분야

- 가스사고 선제적 예방, 피해저감을 위한 가스안전관리 역량고도화 융합형 기술개발
- 전기재해, 설비사고 감소 핵심기술 및 기반향상기술개발

3.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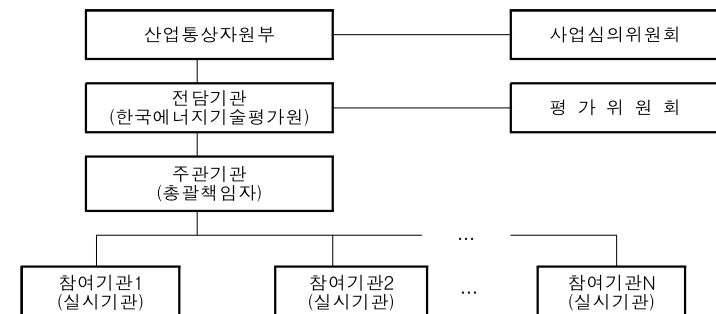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에너지법·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4.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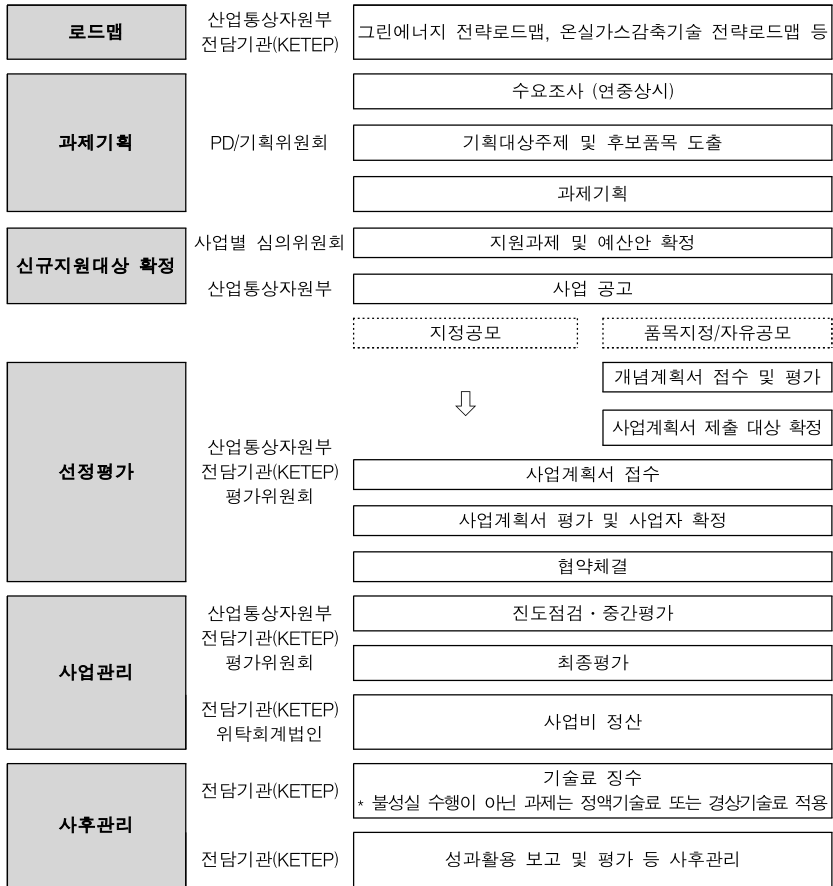
- RFP 등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 단독 또는 산·학·연 간의 공동개발 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형태로 지원
- 총 수행기간 3~5년 이내에서 매년 연차평가 또는 단계평가를 통해 차기년도 지원
- * 세부유형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등은 사업공고 시 별도 안내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8. 8월 ~ ‘18. 12월	‘19. 1월	‘19. 5월	‘19. 5월

* 사업 추진 세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7. 지원규모 : 94.14억원 (계속 94.14억원)

8. 중점 추진사항

- 가스에너지의 안전한 생산, 공급, 이용을 위한 국가 에너지 기반 설비의 안정적 가동과 재해 예방을 위해 실시간 계측, 원격 감시 및 제어, ICT 기반 지능화 개발을 통한 안전 관리 기술 실증 지원
- 공공안전을 위한 클라우드, IoT 등 신기술 기반 에너지안전관리 서비스 및 기술개발을 통한 에너지설비 안전관리 실증 지원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경쟁률	3.22 : 1	2.92 : 1	11:1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정부출연금	754백만원	406백만원	311백만원

11.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 ☎ 044-203-5135, ruy2000@motie.go.kr (www.motie.go.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신산업기획실 : ☎ 02-3469-8349, bluegold@ketep.re.kr (www.ketep.re.kr)

118. 에너지인력양성사업(에텍)

1. 개 요

- 에너지 산업의 신성장동력화·수출산업화를 선도할 수 있는 에너지 인력저변 확대 및 R&D 전문인력 육성

2. 지원대상분야

- 에너지효율향상, 기후변화 대응, 자원개발 등 에너지(에텍) 관련 분야

3. 신청자격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으로 대학원 과정이 설치된 대학

4.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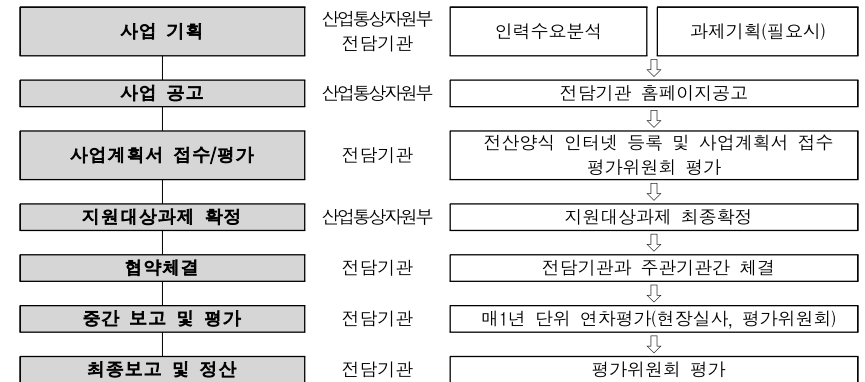
- 에너지 효율향상, 기후변화 대응, 자원개발 분야 등의 에너지 융합기술의 혁신을 선도하고 기업혁신역량을 제고할 우수 석사·박사급 인력양성
 - (미래기초인력양성, 기초트랙) 기업수요를 고려하여 다학제 교과과정을 패키지화한 교육 커리큘럼(트랙) 운영으로 융·복합 학부 인력양성
 - (정책연계 융·복합트랙, 고급트랙) 에너지 산업 및 정책 수요가 높은 에너지 기술 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우수 R&D 인력 양성
 - (미래선도 인력양성) 에너지산업을 선도할 혁신적 차세대 원천기술 분야(이차전지, 자원 개발) 최상위급 R&D 인력 양성
 -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기후변화 협약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제도 및 산업계 비즈니스 수요에 부합하는 융합형 기후변화 전문가 양성 지속 추진
- 자원안보 및 에너지수출 산업화를 위하여 자원부국 및 에너지 산업 수출대상국 유력인사를 대상으로 지한파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
 - (글로벌에너지정책전문가양성) 자원부국 및 에너지 산업 수출 대상국의 유력인사에 대하여 국내 학위 과정 지원을 통한 지한파 양성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6. 추진일정

- * 사업일몰로 신규지원('19년) 과제 없음('18년일몰)

7. 지원규모 : 120.26억원 (계속 120.26억원)

8. 중점 추진사항

- 에너지 R&D 정책적 우선순위 및 에너지산업 인력 수요에 따라 기 선정되어 지원하고 있는 과제 계속 지원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경쟁률	2.1 : 1	2.3 : 1	-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정부출연금	341백만원	299백만원	363백만원

11.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과 : ☎ 044-203-4541, chlee@motie.go.kr (www.motie.go.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인력양성실 : ☎ 02-3469-8440~5, khj@ketep.re.kr (www.ketep.re.kr)

119. 에너지인력양성사업(전력기금)

1. 개 요

- 에너지 산업의 신성장동력화·수출산업화를 선도할 수 있는 에너지 인력저변 확대 및 R&D 전문인력 육성

2. 지원대상분야

- 신재생에너지, 전력, 원자력 등 에너지(전력기금) 관련 분야

3.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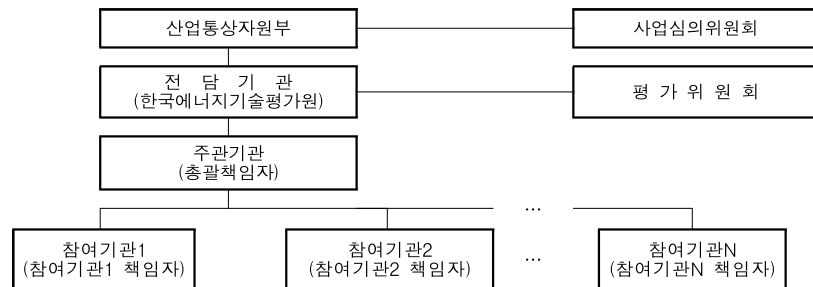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으로 대학원 과정이 설치된 대학

4.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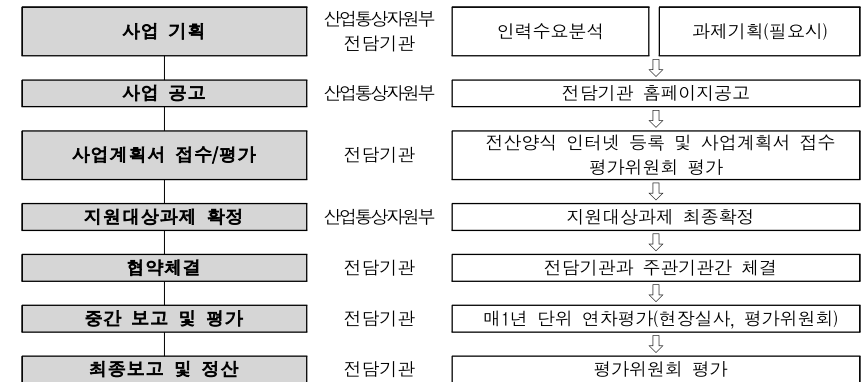
- 에너지 효율향상, 기후변화 대응, 자원개발 분야 등의 에너지 융합기술의 혁신을 선도하고 기업혁신역량을 제고할 우수 석사·박사급 인력양성
 - (미래기초인력양성, 기초트랙) 기업수요를 고려하여 다학제 교과과정을 패키지화한 교육 커리큘럼(트랙) 운영으로 융·복합 학부 인력양성
 - (정책연계 융·복합트랙, 고급트랙) 에너지 산업 및 정책 수요가 높은 에너지 기술 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우수 R&D 인력 양성
 - (미래선도 인력양성) 에너지산업을 선도할 혁신적 차세대 원천기술 분야(이차전지, 자원 개발) 최상위급 R&D 인력 양성
 - (산업전문고급인력양성)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및 인력 역량 강화를 위해 중소·중견기업 제작자 대상의 석사 학위과정 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6. 추진일정

- * 사업일몰로 신규지원('19년) 과제 없음('19년일몰)

7. 지원규모 : 213.98억원 (계속 213.98억원)

8. 중점 추진사항

- 에너지 R&D 정책적 우선순위 및 에너지산업 인력 수요에 따라 기 선정되어 지원하고 있는 과제 계속 지원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경쟁률	2.4 : 1	2 : 1	2.8 : 1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정부출연금	358백만원	288.6백만원	331.8백만원

11.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과 : ☎ 044-203-4541, chlee@motie.go.kr (www.motie.go.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인력양성실 : ☎ 02-3469-8440~5, khj@ketep.re.kr (www.ketep.re.kr)

120. 에너지자원순환기술개발

1. 개요

- 산업생산 과정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여 에너지 자원 사용량을 원천감축하고 순환형 산업경제구조(Circular Industrial Structure) 실현

2. 지원대상분야

- 에너지 및 자원순환 효율제고를 위한 도시광산 개발, 고가금속 대체 기술개발
- 에너지 및 자원 이용효율 개선을 위한 재제조 기술개발

3.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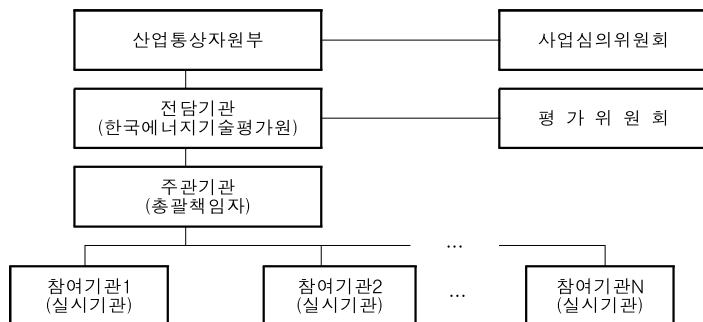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에너지법·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4.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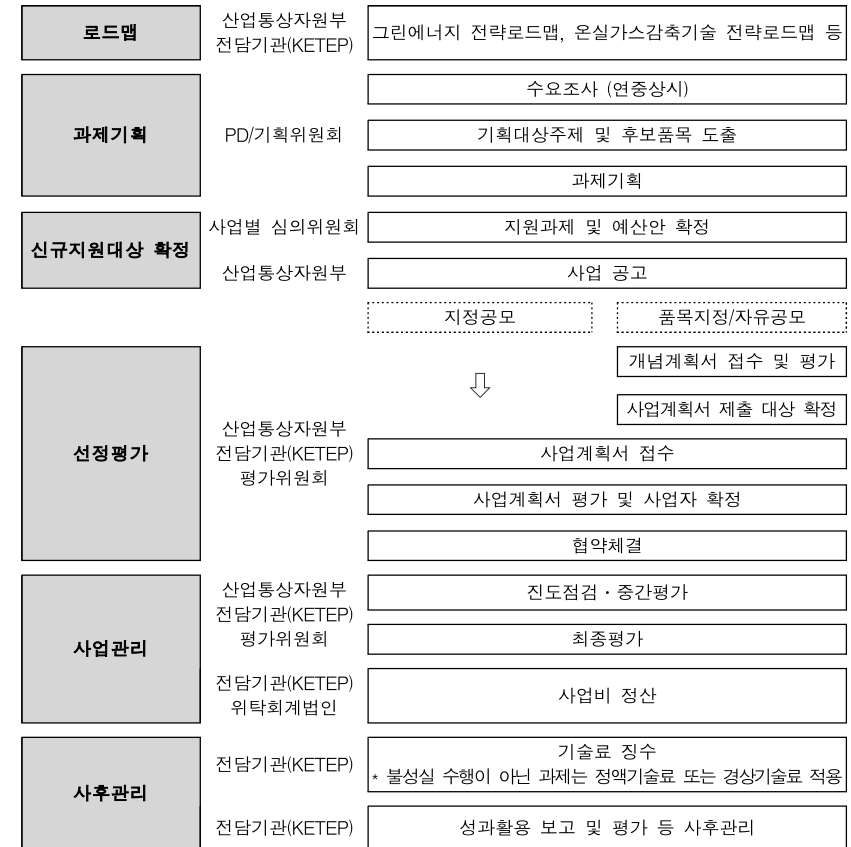
- RFP 등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 단독 또는 산·학·연 간의 공동개발 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형태로 지원
- 총 수행기간 3~5년 이내에서 매년 연차평가 또는 단계평가를 통해 차기년도 지원
 - * 세부유형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등은 사업공고 시 별도 안내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 * 기술수요조사(상시) : 해당연도 취합시점은 공고를 통해 안내
- * 품목지정형/자유공모형 과제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 접수 전, 개념계획서 접수·평가 실시 예정

6. 추진일정 : 신규지원 예정없음

7. 지원규모 : 18.38억원 (계속 18.38억원)

8. 중점 추진사항

- 금속자원 공급 구조개선을 위해 산업생산 공정 중에서 주요자원으로 사용되는 금속물질 등의 사용량을 원천감축 및 효율화하는 대체·저감 기술개발

- 에너지·자원순환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을 위해 에너지·자원 사용 후 발생하는 공정 부산물을 이용하여 금속자원 추출·정제·고순도화 및 제품, 부품을 이용한 재제조 등 부가가치 향상 기술개발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경쟁률	3.6 : 1	2.5 : 1	-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정부출연금	600백만원	275백만원	-

11.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환경과 : ☎ 044-203-4246, ozyui@motie.go.kr (www.motie.go.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신산업기획실 : ☎ 02-3469-8347, dmshin@ketep.re.kr (www.ketep.re.kr)

121. 원자력핵심기술개발사업

1. 개 요

- 안전 최우선의 원전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안전기술을 개발하여 최상의 원전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전력의 안정적 공급 기반구축에 기여

2. 지원대상분야

- 원자력 환경 및 해체 분야 기술개발

3.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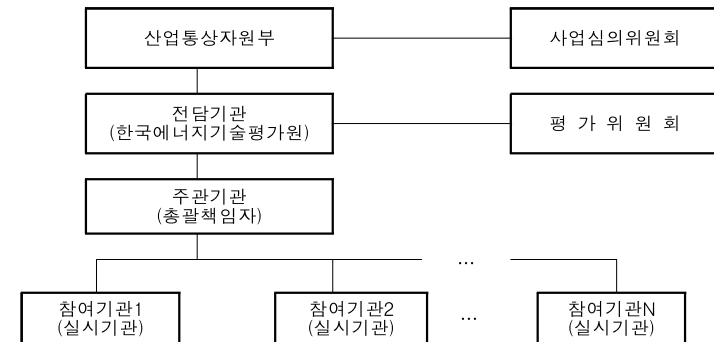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에너지법·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개발 사업 실시기관 등

4.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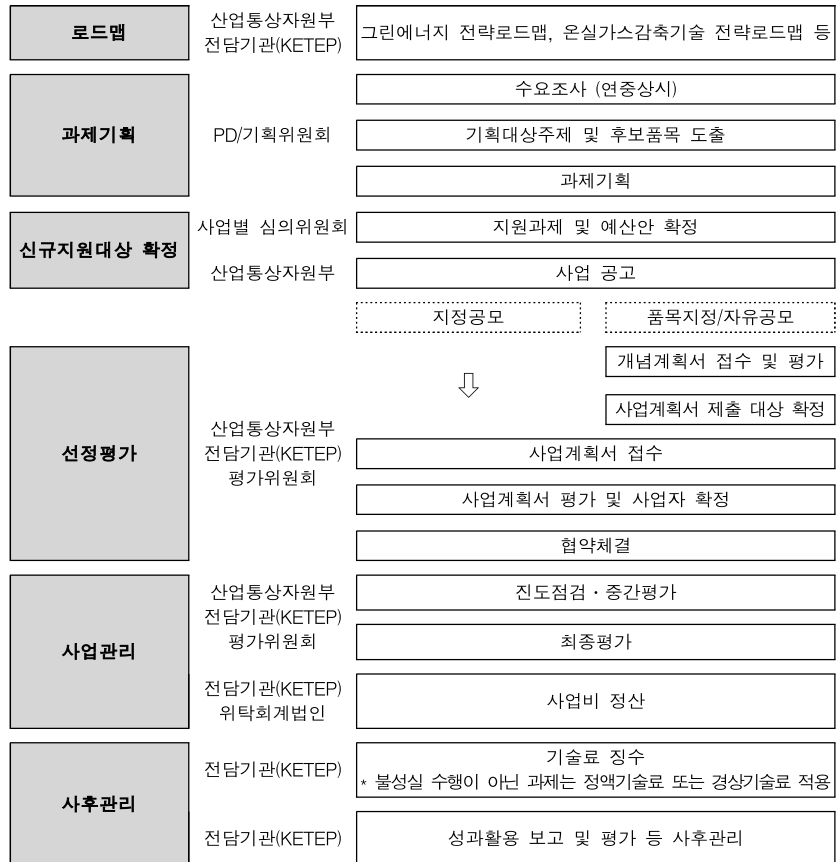
- 연구수행 형태에 따라 연구비의 33~100% 정부지원
- * 세부유형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등은 사업공고 시 별도 안내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8. 8월 ~ '18. 12월	'19. 1월	'19. 5월	'19. 5월

7. 지원규모 : 611.65억원 (신규 64.87억원, 계속 546.78억원)

8. 중점 추진사항

- 고리 1호기의 안전하고 경제적인 해체 준비 및 미래 원전해체 시장 진출을 위한 상용화 기술개발 추진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경쟁률	1.8 : 1	1.7 : 1	2.3 : 1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정부출연금	535백만원	525백만원	429백만원

11.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 ☎044-203-5322, hiandbul@motie.go.kr (www.motie.go.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청전전력기획실 : ☎02-3469-8352, yblee1101@ketep.re..kr (www.ketep.re.kr)

122. 원전 중대사고 방지 안전 강화 기술개발사업

1. 개 요

- 재난재해 등으로 유발되는 원전의 중대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가동 원전의 안전성 강화

2. 지원대상분야

- 원전 중대사고 방지 기술개발

3.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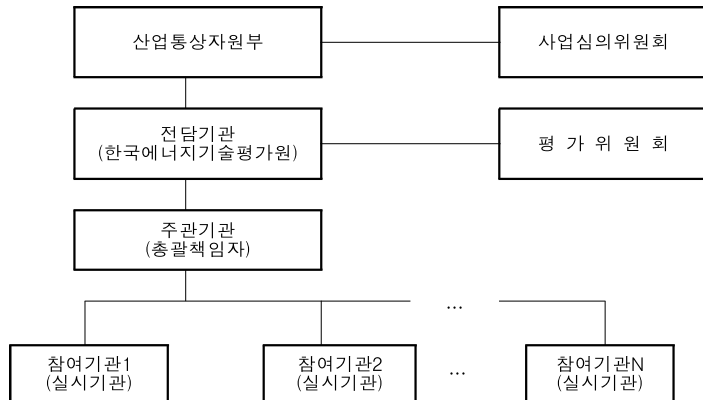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에너지법·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개발 사업 실시기관 등

4.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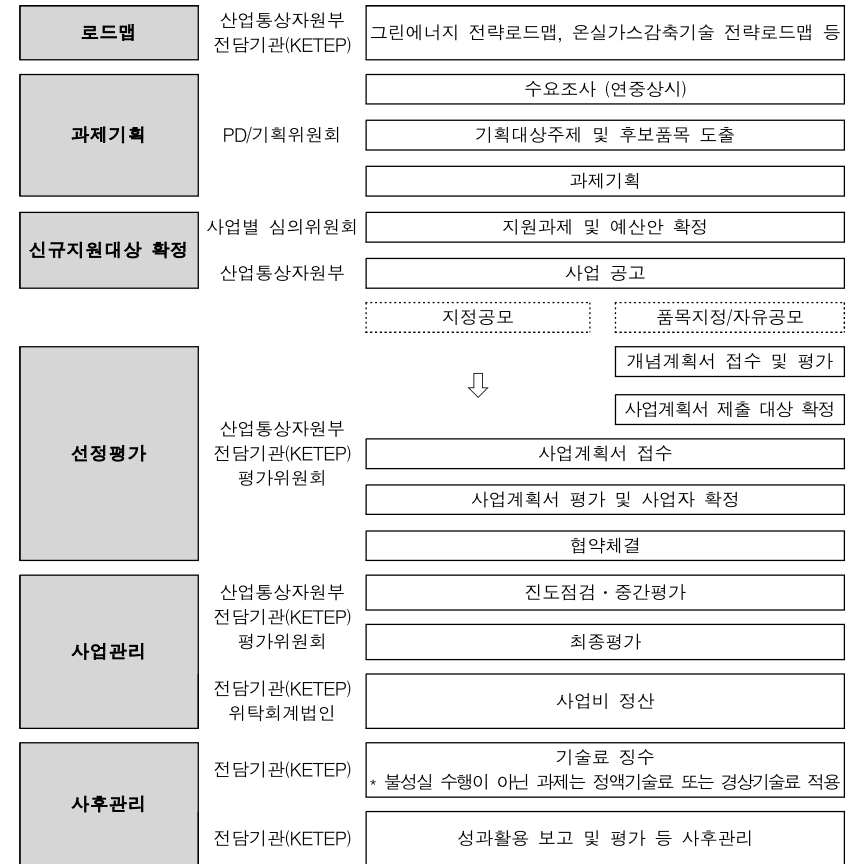
- 연구수행 형태에 따라 연구비의 33~100% 정부지원
- * 세부유형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등은 사업공고 시 별도 안내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8. 8월 ~ '18. 12월	'19. 1월	'19. 5월	'19. 5월

7. 지원규모 : 47.13억원 (신규 47.13억원)

123. 원전해체방폐물안전관리기술개발

1. 개 요

- 원전해체폐기물의 관리 기술 확보를 통한 국민생활 안전 및 환경 보존에 기여

2. 지원대상분야

- 원전해체로 발생되는 다종다양(多種多様)한 방사성폐기물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한 필요 기술 확보

3.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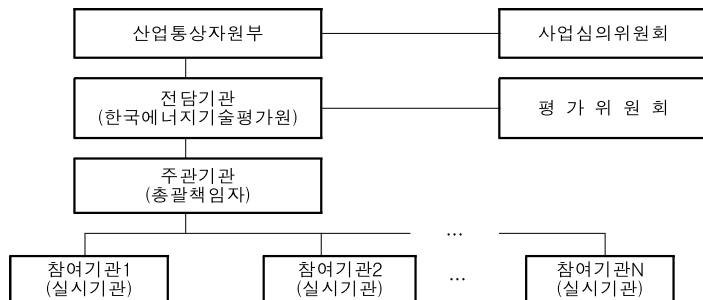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에너지법·방사성폐물관리법·산업기술 혁신촉진법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4.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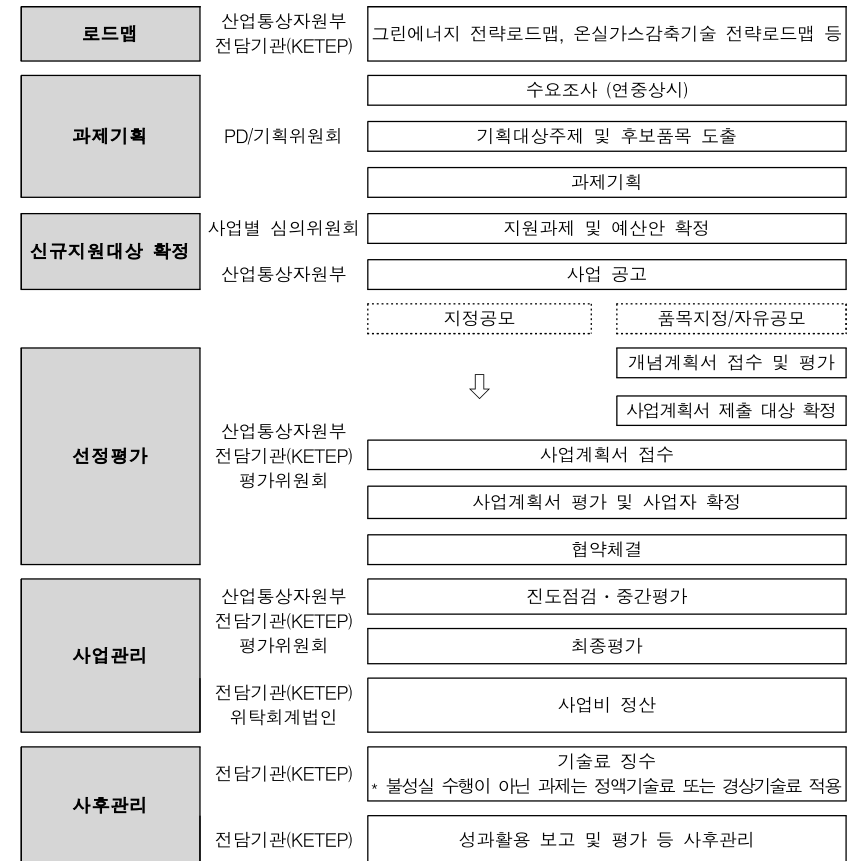
- RFP 등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 단독 또는 산·학·연 간의 공동개발 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형태로 지원
- 총 수행기간 3~5년 이내에서 매년 연차평가 또는 단계평가를 통해 차기년도 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8. 7월 ~ '19. 1월	'19. 1월 ~ '19. 4월	'19. 5월	'19. 6월

7. 지원규모 : 30.28억원 (신규 30.28억원)

8. 중점 추진사항

- 방사성폐기물 처리를 위한 처분시설 운영·건설 기술 및 다종다양한 방폐물의 인도·인수를 위한 기술개발 추진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 해당사항 없음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 해당사항 없음

11.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환경과 : ☎ 044-203-5708, mjh2898@motie.go.kr (www.motie.go.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청정전력기획실 : ☎ 02-3469-8355, sujui@ketep.re.kr (www.ketep.re.kr)

124. 자원개발기술개발사업

1. 개요

- 자원개발사업 독자운영 역량확보와 고부가가치의 서비스사업 진출을 위한 현장연계 대형상용화 및 서비스 기술개발

2. 지원대상분야

- 석유·가스 등 전통/비전통자원의 탐사·개발 및 금속·비금속 광물자원개발을 위한 탐사·평가·생산 기술개발 분야

3.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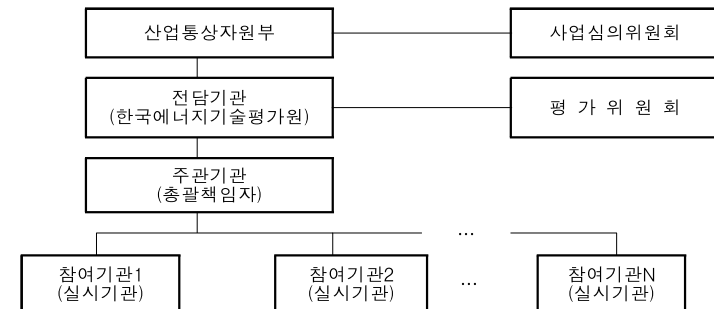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에너지법·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개발 사업 실시기관 등

4. 지원내용

- RFP 등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 단독 또는 산·학·연 간의 공동개발 형태로 수행되며, 출연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형태로 지원
 - 총 수행기간 3~5년 이내, 과제 특성에 따라 차등 지원
 - * 세부유형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등은 사업공고 시 별도 안내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로드맵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그린에너지 전략로드맵, 온실가스감축기술 전략로드맵 등
과제기획	PD/기획위원회	수요조사 (연중상시)
		기획대상주제 및 후보품목 도출
		과제기획
신규지원대상 확정	사업별 심의위원회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 공고
		지정공모 품목지정/자유공모
선정평가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개념계획서 접수 및 평가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 확정
		사업계획서 접수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사업관리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진도점검 · 중간평가
	전담기관(KETEP) 위탁회계법인	최종평가
		사업비 정산
사후관리	전담기관(KETEP)	기술료 징수 * 불성실 수행이 아닌 과제는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전담기관(KETEP)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사후관리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8. 8월 ~ '18. 12월	'19. 1월	'19. 5월	'19. 5월

7. 지원규모 : 196.23억원 (신규 20억원, 계속 176.23억원)

8. 중점 추진사항

- 국내 기업이 해외 유가스 및 광물자원을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 위한 현장연계형 R&D 추진
- 국내 유/가스 및 광물자원 서비스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인 서비스 핵심기술 R&D 추진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경쟁률	2 : 1	2.5 : 1	1.67 : 1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정부출연금	626백만원	962백만원	899백만원

11.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자원개발전략과 : ☎ 044-203-5143, bkpark@motie.go.kr (www.motie.go.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신산업기획실 : ☎ 02-3469-8342, jhkwon@ketep.re.kr (www.ketep.re.kr)

125. 재생에너지 장주기 저장 및 전환을 위한 Power to gas 기술개발사업

1. 개요

- 재생에너지 전력의 부하 안정성 확보 및 미유용 전력의 활용을 위해 전기에너지를 가스 에너지(수소, 메탄)로 전환, 이를 활용한 분산형 에너지 공급시스템 구축

2. 지원대상분야

- 수소·메탄 생산을 위한 핵심기술 및 모듈화, 가스 및 전력망 연계 에너지 믹스 최적화 기술개발 지원

3.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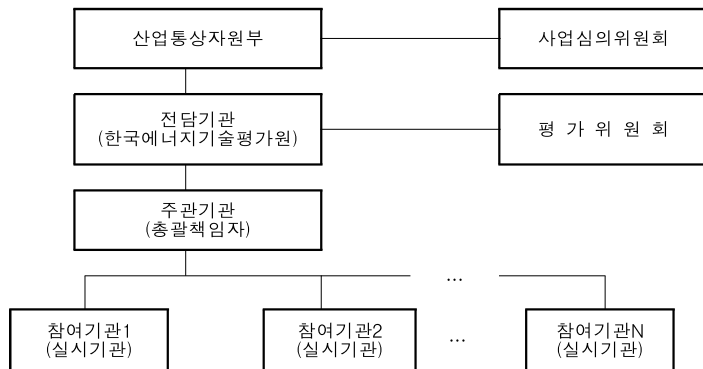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에너지법·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4.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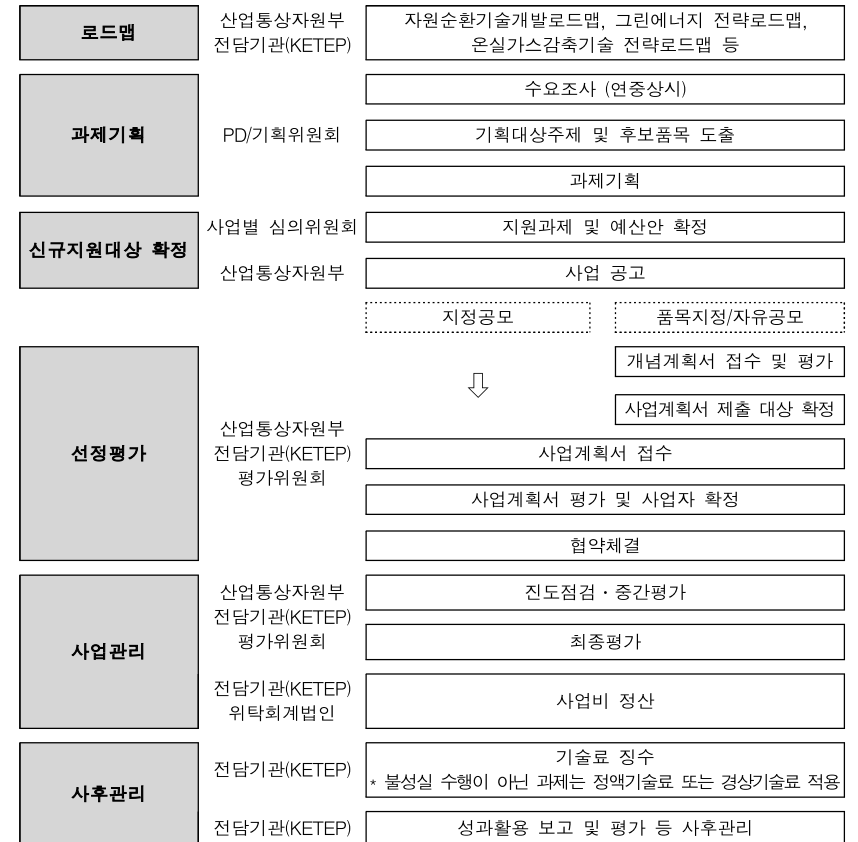
- RFP 등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 단독 또는 산·학·연 간의 공동개발 형태로 수행되며, 출연(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총 사업비의 33~100% 이내 정부매칭)형태로 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8. 8월 ~ '18. 12월	'19. 1월	'19. 5월	'19. 5월

* 위 일정은 매년 사업 추진 세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7. 지원규모 : 54.1억원 (신규 54.1억원)

* 신규 지원규모는 변동 될 수 있음

8. 중점 추진사항

- 재생에너지 연계 수소생산 : 기술성숙도 높고 대용량 수소 생산이 가능한 기술 확보
- 대용량 장기 수소저장시스템 : 대용량·고효율·저가 수소저장/운송 기술 확보
- 열화학적/생물학적 메탄화 시스템 : CO 메탄화 기술을 활용한 열화학적, 미생물을 활용한 생물학적 CO2 메탄화 공정 확보
- 통합설계 및 엔지니어링 : '19년은 플랜트 적용지역 및 환경 분석 등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경쟁률	-	-	-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정부출연금	-	-	-

11.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신산업과 : ☎ 044-203-5391, eclieps@motie.go.kr (www.motie.go.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신산업기획실 : ☎ 02-3469-8345, mj kang@ketep.re.kr (www.ketep.re.kr)

126. 전력정보화 및 정책지원사업

1. 개 요

- 전력산업분야 기술혁신 정보의 생산·관리 및 활용, 기술개발관련 정책연구 지원을 통해 국내 전력산업의 기술기반 조성
-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보급확대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 국내·외 산업현황 조사 분석 등을 통한 정책기반 조성

2. 지원대상분야

- 전력기술기반구축
- 신재생에너지기반구축

3.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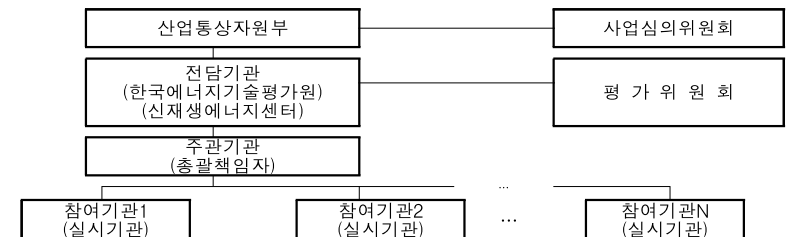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31조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14조(수행기관)에 의거
 - 전기사업자 및 관련기관
 - 전력산업관련 연구기관, 공단, 협회 및 단체
 - 학교 및 부설연구소 등
 - 기타 기반조성사업을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4. 지원내용

- (전력기술기반구축) ①전력산업분야 중소기업을 위한 국·내외 최신 전력기술 정보 및 동향 수집과 공유, ②4차 산업혁명, 전력시장 생태계 변화로 인한 전력 新기술 도입 및 확산에 따른 기술정책 지원
- (신재생에너지기반구축)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을 기조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한 사업비 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해당 사업연도 추진방향 설정	산업통상자원부
수요조사 및 연구기획과제 도출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연구기획 수행	전담기관 [기획위원회]
연구기획과제의 평가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신규 지원대상 과제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사업 시행계획 공고	산업통상자원부(주관기관 공모)
사업계획서 접수	신청기관 → 전담기관
신청과제 평가(신규평가)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통보	전담기관 → 신청기관
이의신청	신청기관 → 전담기관
신규과제 및 사업자 확정	전담기관(평가결과 보고) →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평가결과 확정통보) → 전담기관(평가결과 확정 통보 및 협약체결 안내) → 주관기관
신규과제 협약 체결	전담기관 ↔ 주관기관(참여기관)
연차/단계 평가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 → 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차년도 협약 체결	전담기관 ↔ 주관기관(참여기관)
최종 평가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주관기관 → 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성과활용 관리	주관기관 → 전담기관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8. 12월 ~ '19. 2월	'19. 3월	'19. 5월	'19. 6월

* 사업 추진 세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7. 지원규모 : 32억원 (신규 20.73억원, 계속 11.27억원)

* 신규 지원규모는 변동 될 수 있음

8. 중점 추진사항

-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제2차 지능형전력망기본계획' 등 에너지 분야 중장기 계획의 성공적 이행 및 대내·외 환경변화 적기 대응을 위한 기술 정책기능 강화
-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새로운 투자모델로 패키지 지원방식(기술+산업+제도)을 도입함에 따라 R&D 사업간 연계 확대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내역사업명	2016년	2017년	2018년
신재생에너지기반구축	1.33 : 1	1 : 1	1.44 : 1
전력기술기반구축	2 : 1	1.67 : 1	1.4 : 1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신재생에너지기반구축	84백만원	101백만원	77백만원
전력기술기반구축	374백만원	342백만원	219백만원

11.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과 : ☎ 044-203-5369, lkm0902@motie.go.kr (www.motie.go.kr)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진흥과 : ☎ 044-203-5268, woonjung@motie.go.kr (www.motie.go.kr)
-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육성실 : ☎ 031-260-4805, jscha@energy.or.kr (www.knrec.or.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청정전력기획실 : ☎ 02-3469-8357, cjftn33@ketep.re.kr (www.ketep.re.kr)

127. 전력표준화 및 인증지원사업

1. 개 요

- 전력산업분야 기술혁신과 산업구조 고도화 등을 위해 기술 및 제품의 표준 제·개정 및 적합성 확인을 위한 인증체계 지원

2. 지원대상분야

- 신재생에너지 표준화 및 인증지원
- 전력기술 표준화 및 인증지원
- 산업용 고압직류기기 성능시험 기반구축
- 전력산업 광융복합 표준화 및 인증기반구축

3.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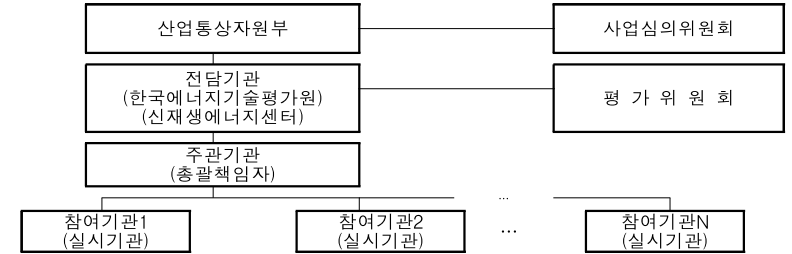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31조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14조(수행기관)에 의거
 - 전기사업자 및 관련기관
 - 전력산업관련 연구기관, 공단, 협회 및 단체
 - 학교 및 부설연구소 등
 - 기타 기반조성사업을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4. 지원내용

- (신재생에너지 표준화 및 인증지원) 신재생에너지 KS인증을 위한 기술기준 마련 및 신재생 설비 분야의 국제표준 선점 및 국제표준의 국내적용을 위한 지원
- (전력기술 표준화 및 인증지원) 전력분야 기술과 제품의 표준화 및 적합성 확인을 위한 인증 체계 지원을 통한 전력기술 기반확충 지원
- (산업용 고압직류기기 성능시험 기반구축) 고압 직류기기 및 요소 부품에 대한 성능, 안전성 및 수명 등 종합적인 시험·평가를 위한 기반구축 지원
- (전력산업 광융복합 표준화 및 인증기반구축) 전력산업 광융복합 제품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융복합 광기술의 표준화와 관련 제품시험을 위한 시험인증 기반구축 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8. 8월 ~ '18. 12월	'19. 1월	'19. 5월	'19. 5월

* 사업 추진 세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7. 지원규모 : 167.56억원 (신규 0.8억원, 계속 166.76억원)

* 신규 지원규모는 변동 될 수 있음

8. 중점 추진사항

- 신재생에너지 분야 국제표준 선점 및 성능, 품질 등 일정 수준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인증을 통해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추진
- 전력분야 표준개발 등을 통한 국제기준 부합화로 기업체의 기술개발 촉진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 및 수출증대 추진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내역사업명	2016년	2017년	2018년
신재생에너지표준화및인증	1.8 : 1	1.3 : 1	1:1
전력기술표준화및인증	1 : 1	1 : 1	-
산업용고압직류기기성능 시험기반구축	1 : 1	-	-
전력산업광용복합기술표준화및인증기반구축	1 : 1	-	-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신재생에너지표준화및인증	296백만원	1,560백만원	166백만원
전력기술표준화및인증	2,974백만원	5,190백만원	-
산업용고압직류기기성능 시험기반구축	4,000백만원	-	-
전력산업광용복합기술표준화및인증기반구축	500백만원	-	-

11.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과 : ☎ 044-203-5374, hit21@motie.go.kr (www.motie.go.kr)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진흥과 : ☎ 044-203-5268, woonjung@motie.go.kr (www.motie.go.kr)
- 산업통상자원부 전자전기과 : ☎ 044-203-4344, maxima99@motie.go.kr (www.motie.go.kr)
-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진흥실 : ☎ 031-260-4654, jarvis@energy.or.kr (www.knrec.or.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청정전력기획실 : ☎ 02-3469-8357, cjftn33@ketep.re.kr (www.ketep.re.kr)

128. 정부-공기업에너지R&D협력사업(R&D)

1. 개요

- 공기업의 투자여력·인프라 활용을 통한 에너지 전환 정책실행 선도 및 중소·중견기업 생태계 육성

2. 지원대상분야

- 공기업 간 융/복합 기술개발 및 공기업에 납품할 수 있는 중소 중견기업의 산업생태계 강화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

3.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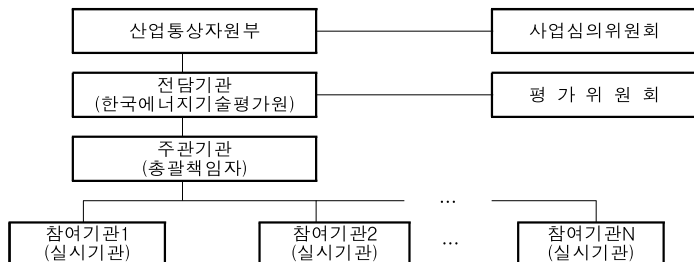
- RFP 등 수행조건에 따라 산·학·연 간의 공동개발 형태로 수행되며, 공기업과 정부가 1:1로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정부 지원금에 대해 일정비율 매칭)형태로 지원

4.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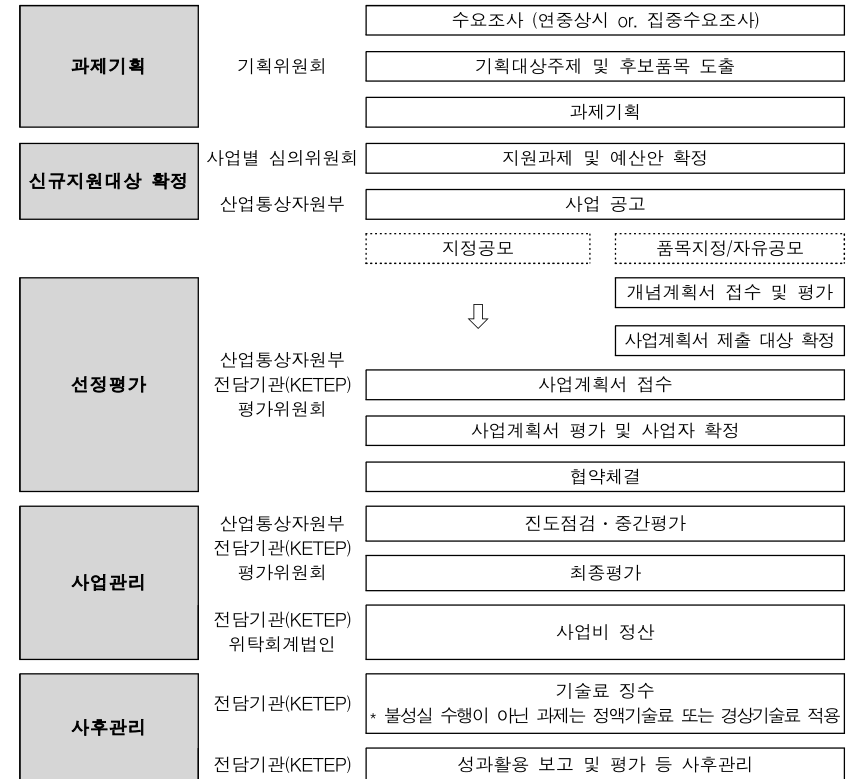
- 융합플래그십 : 공기업 간 융/복합 기술개발로 공기업 주도의 대형 실증프로젝트 추진
- Ex : 에너지공기업 17개 기관간 상호 협력프로젝트로 개발(한전, 한수원, 가스공사 등)
- 산업 생태계 육성 : 공기업에 납품할 수 있는 중소 중견기업들의 산업생태계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 공공기술 사업화 : 공기업 보유 기술을 민간 기업에 기술이전할 수 있는 기술개발 및 해외 기술수출 추진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 기술수요조사(상시) : 해당연도 취합시점은 공고를 통해 안내

* 품목지정형/자유공모형 과제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 접수 전, 개념계획서 접수·평가 실시 예정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8. 6월 ~ '18. 12월	'18. 12월 ~ '19. 2월	'19. 4월	'19. 5월

7. 지원규모 : 36억원 (신규 36억원, 공기업 1:1매칭금액 포함시 72억원)

8. 중점 추진사항

- 개별적이고 분절적 기술개발 대신 에너지 인프라와 연계한 시스템 통합, 융·복합 형태의 대형 프로젝트 추진
 - 에너지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공기업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최종 시스템에 적용 가능한 우수성과 도출
 - 공기업 간 협력(전기가스열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접목으로 에너지원기술 간 융합 → 新 서비스/BM 발굴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 해당사항 없음(신규)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외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 해당사항 없음(신규)

11.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과 : ☎ 044-203-5166, calixchem@korea.kr (www.motie.go.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공공R&D혁신팀 : ☎ 02-3469-8881, kosmic33@ketep.re.kr (www.ketep.re.kr)

129. 지능형 LVDC(저압직류) 핵심기술개발사업

1. 개 요

- 지능형 LVDC(저압직류) 수용가 핵심 기술 개발 및 실증을 통한 글로벌 표준 수립

2. 지원대상분야

- 수용가용 DC마이크로그리드 구축을 위한 IoT 기반 핵심기기 및 통합시스템을 개발 및 실증을 통한 LVDC 규격 표준화 추진
 - DC 전원공급용 및 분산전원 연계 다채널 컨버터 및 안전장치 개발
 - 다중 분산전원 연계형 DC 마이크로그리드 시스템 개발
 - 저압직류 배전시스템 규격 및 표준화

3.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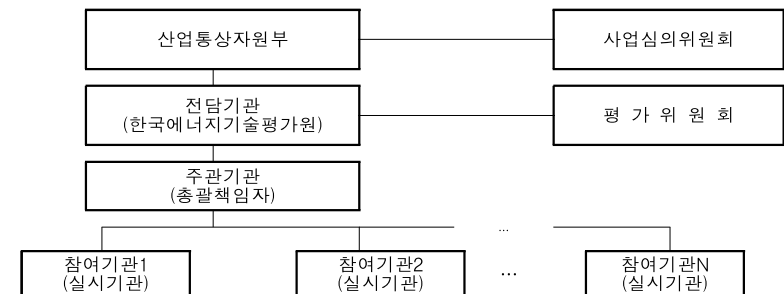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에너지법·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4. 지원내용

- RFP 등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 단독 또는 산·학·연 간의 공동개발 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형태로 지원
- 총 수행기간 3~5년 이내에서 매년 연차평가를 통해 차기년도 지원
 - * 세부유형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등은 사업공고 시 별도 안내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로드맵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청정에너지기술로드맵, R&BD 전략보고서 등
과제기획		수요조사 (연중상시)
	PD/기획위원회	기획대상주제 및 후보품목 도출
		과제기획
신규지원대상 확정	사업별 심의위원회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 공고
		지정공모 품목지정/자유공모
선정평가		↓
		개념계획서 접수 및 평가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사업계획서 접수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자 확정
사업관리		협약체결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진도점검 · 중간평가
		최종평가
사후관리	전담기관(KETEP)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전담기관(KETEP)	기술료 징수 * 불성실 수행이 아닌 과제는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전담기관(KETEP)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사후관리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8. 8월 ~ '18. 12월	'19. 1월	'19. 5월	'19. 5월

* 사업 추진 세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7. 지원규모 : 20억원 (신규 20억원)

* 신규 지원규모는 변동 될 수 있음

8. 중점 추진사항

-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연계한 수용가 중심의 지능형 LVDC 기술개발 및 글로벌 표준 수립 추진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해당없음)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해당없음)

11.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전자전기과 : ☎ 044-203-4344, maxima99@motie.go.kr (www.motie.go.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청정전력기획실 : ☎ 02-3469-8357, cjftn33@ketep.re.kr (www.ketep.re.kr)

130. 첨단제품 전·후방산업의 순환자원 이용기술개발

1. 개요

- 자원순환산업의 4차 산업혁명에서 전후방 산업 역할 제고를 위한 희소금속 고순도화 및 스마트화 제품에 대한 재제조산업 확산

2. 지원대상분야

- 전략희소금속 회수 및 화합물 제조 기술개발
- 자동차 전자화부품 및 제품·서비스 확대를 위한 재제조 기술개발
- 재제조·재활용금속 품질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3.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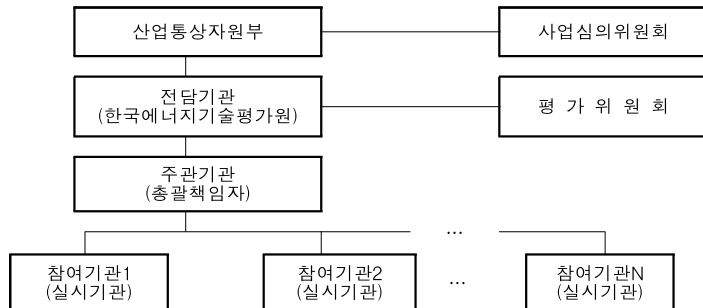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에너지법·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4.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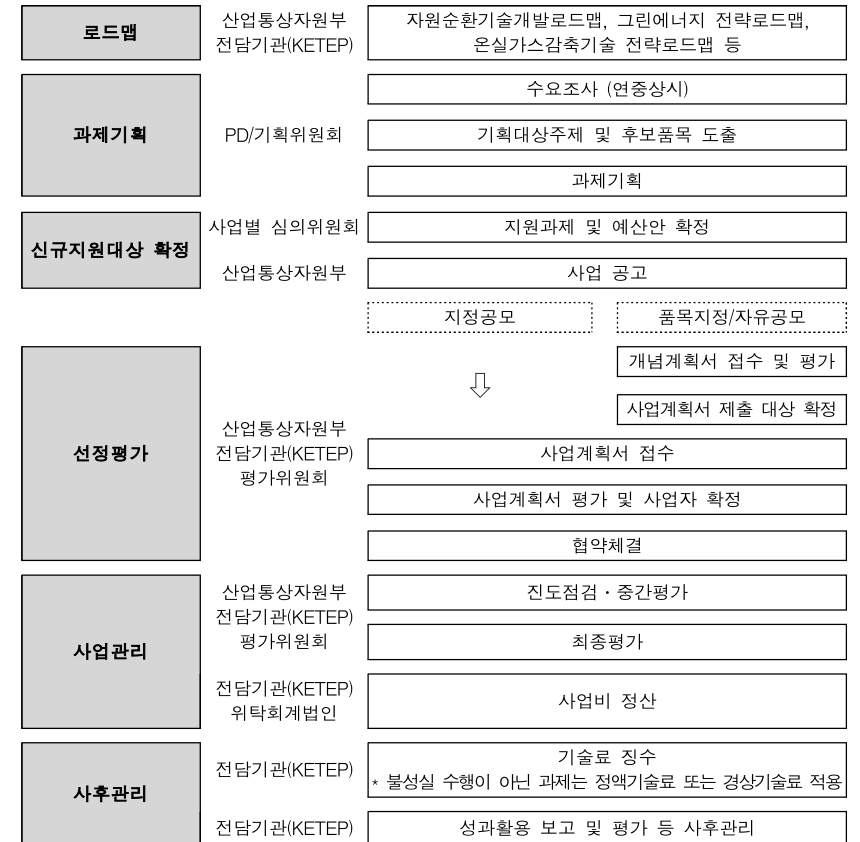
- RFP 등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 단독 또는 산·학·연 간의 공동개발 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형태로 지원
- 총 수행기간 3~5년 이내에서 매년 연차평가 또는 단계평가를 통해 차기년도 지원
 - * 세부유형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등은 사업공고 시 별도 안내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 기술수요조사(상시) : 해당연도 취합시점은 공고를 통해 안내

* 품목지정형/자유공모형 과제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 접수 전, 개념계획서 접수·평가 실시 예정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8. 8월 ~ '18. 12월	'19. 1월	'19. 5월	'19. 5월

* 사업 추진 세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7. 지원규모 : 36.81억원 (신규 10.73억원, 계속 26.08억원)

* 신규 지원규모는 변동 될 수 있음

8. 중점 추진사항

- 전방산업용 순환자원 기술개발
 -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 산업계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략금속(Li, Ta, Ti, 희토류)의 품질 수준을 정부비축 규격까지 향상된 기술수준 확보
- 후방산업용 순환자원 재제조 기술개발
 - 자동차 전자화부품 및 제품·서비스 확대를 위한 재제조기술 확보
- 순환형 산업구조 기반구축
 - 인증기준·인증제품 확산을 목표로 제시하고, 이를 통한 매출증대효과 확인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경쟁률	-	-	2.3:1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정부출연금	-	-	413,750천원

11.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환경과 : ☎ 044-203-4246, ozyui@motie.go.kr (www.motie.go.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신산업기획실 : ☎ 02-3469-8347, dmshin@ketep.go.kr (www.ketep.re.kr)

131. 청정화력핵심기술개발사업

1. 개 요

- 화력발전 설비의 선진화·국산화를 통한 지속적 성장동력 확충 및 수출산업화 달성
 - 기존 화력발전 대비 고효율화 및 CO2 저감을 달성 할 수 있는 친환경·고효율·대용량 차세대 화력발전 분야 핵심 기술개발 강화 및 국내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초미세먼지 (2.5 μm 이하)의 확산에 따른 초미세먼지 저감기술개발
 - 기존 청정화력 발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타분야 기술(NT 및 IT)과의 융합한 혁신기술을 개발하여 화력발전소에 적용 및 화력발전 분야는 설비의 노후화 및 기술 성숙도의 포화로 NT·IT 기술 결합에 따른 새로운 4차 산업혁명 대응 스마트발전산업 핵심기술개발
 - 노후화된 석탄화력 발전소를 실증용 테스트베드로 변경하여 국내 중소·중견 기업개발 부품의 Track Record 확보를 지원 및 新기후체계 대응 및 발전산업 R&D 시장창출을 위한 실증사업

2. 지원대상분야

- 발전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고효율 화력발전 핵심기술
 - 발전효율 향상, 부품/소재 성능 향상 및 CO2,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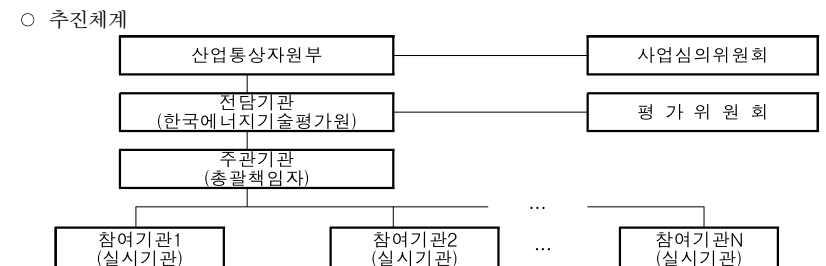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에너지법·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술개발 사업 실시기관 등

4. 지원내용

- 중장기과제 : 핵심응용기술 개발을 통한 Pilot-scale의 시작품 개발, 실증 등을 통한 사업화 (현실적용) 단계 기술개발 등을 목표로 하며, 매년 10~30억원 내외 지원
- 단기과제 : 시장애로기술 확보 및 비즈니스 창출 기술개발을 목표로 하며, 매년 5억원 내외 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절차

로드맵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그린에너지 전략로드맵, 온실가스감축기술 전략로드맵 등
과제기획	기획위원회	수요조사 (연중상시)
		기획대상주제 및 후보품목 도출
		과제기획
신규지원대상 확정	사업별 심의위원회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 공고
		지정공모 품목지정/자유공모
선정평가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
		개념계획서 접수 및 평가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 확정
		사업계획서 접수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자 확정
사업관리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협약체결
		진도점검 · 중간평가
	전담기관(KETEP) 위탁회계법인	최종평가
사후관리	전담기관(KETEP)	사업비 정산
	전담기관(KETEP)	기술료 징수 * 불성실 수행이 아닌 과제는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전담기관(KETEP)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사후관리

6. 추진일정

- '19년 일몰대상 사업으로 신규 공고 추진 미예정

7. 지원규모 : 253.37억원 (계속 253.37억원)

8. 중점 추진사항

- 기술변화 대응기술 개발을 통한 화력발전의 지속적 성장동력 확충과 발전설비의 선진화·국산화를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 및 수출산업화 달성
- 발전부문 친환경/고효율 돌파형 기술(Disruptive Technology) 개발
 - 국내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초미세먼지(2.5 μm 이하)의 확산에 따른 초미세먼지 저감 기술개발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경쟁률	2 : 1	4 : 1	2 : 1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정부출연금	1,068백만원	980백만원	822백만원

11.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 ☎ 044-203-5247, maipang@motie.go.kr (www.motie.go.kr)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청정전력기획실 : ☎ 02-3469-8353, 8356, youninmo@ketep.re.kr (www.ketep.re.kr)

132. 국제핵융합실험로공동개발사업

1. 개 요

- 핵융합에너지의 실용화 가능성을 실증하기 위해 주요 7개국(한국, EU, 일본, 미국, 중국, 인도, 러시아)이 공동으로 대형 초전도핵융합실험로를 건설·운영하는 사업
 - 한국은 선진국이 축적한 핵융합 기술을 추적·확보하기 위해 '03.6월부터 ITER 프로젝트에 참여
 - * 참여국 : 미국·러시아·EU·일본('88.4월), 중국('03.1월), 한국('03.6월), 인도('05.12월)

2. 지원대상분야

- 우리나라 조달품목 장치 개발·제작
 - 7개 참여국 간의 국제조약(ITER 공동이행협정) 및 ITER 건설일정에 따라 우리나라 할당 조달품목별 설계·검증, 제작·운송 일정 등을 고려한 장치 개발·제작
- ITER 우리나라 현금분담금 등
 - ITER 공동이행협정('07.10)에 따라 ITER 국제기구 운영 및 참여를 위해 7개 회원국이 매년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분담금

3.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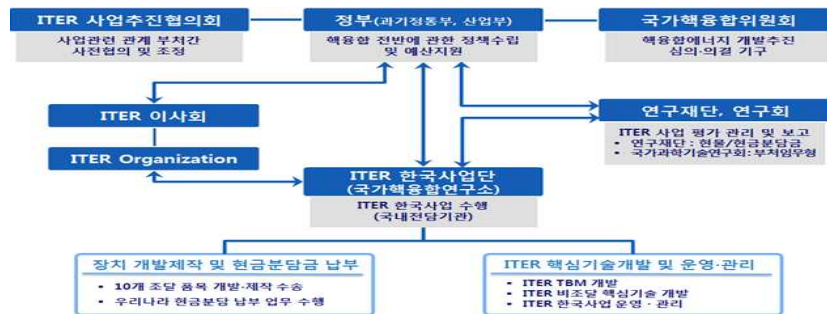
- 「국제핵융합실험로 사업의 공동이행을 위한 국제핵융합에너지 기구 설립에 관한 협정」 제8조제4항에 따라 국제핵융합실험로 공동개발사업 수행을 위해 정부에서 지정한 국내 전담기관(국가핵융합연구소 ITER 한국사업단)

4. 지원내용

- 국제핵융합실험로 공동개발사업 과제제안요구서(RFP) 수행조건에 따라 지정공모를 통해 수행되며, 출연형태로 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체계

구 분	주 요 내 용	주 체
핵융합에너지개발 진흥기본계획 수립	중장기 핵융합연구개발 추진전략 등	정부 (국가핵융합위원회)
연도별, 사업별 시행계획 수립	사업별 목표, 당해연도 추진계획, 사업비 배분 등	정부 (국가핵융합위원회)
연차별 실적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연차별 또는 단계별 실적보고서 및 사업 계획서 작성·제출	ITER 한국사업단
사업평가 (분기별 추진점검)	평가지침에 따라 사업내용, 추진방법, 사업비 등에 대한 평가	정부 및 전문가
평가결과 통보	평가결과 및 신청서 수정·보완사항 통보	전문기관
일괄 협약체결/ 사업계획 승인	(과기정통부)전문기관과의 일괄 협약체결 (산업부)당해연도 사업계획 승인	정부↔전문기관
협약체결 및 사업 착수	평가의견을 반영한 계획서 제출 ITER 한국사업단과 전문가와의 협약체결	전문기관↔ 핵융합(연)
사업비 정산	사업비 집행실적보고서 제출 전문기관 검토 및 관계부처 보고	핵융합(연) ↔전문기관↔정부

6. 추진일정 : 신규지원 없음

7. 지원규모 : 320.46억원 (계속 320.46억원)

* '19년도 국제핵융합실험로 총 예산은 654.00억원으로, 과기정통부(원기금)에서 333.54억원 투자예정

8. 중점 추진사항

- ITER 건설 가속화에 따른 우리나라 할당품목 적기제작·조달 및 ITER 기구 운영 참여 등을 위한 우리나라 현금분담금 납부 등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 해당사항 없음(지정공모)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장치개발제작	-	27,300백만원	23,020백만원
ITER 현금분담금		-	11,314백만원

* 산업부(전력산업기반기금) 기준 작성

11.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 ☎ 044-203-5322, hiandbul@motie.go.kr (www.motie.go.kr)
- 국가핵융합연구소 ITER한국사업단 : ☎ 042-879-5775, jhpark80@nfri.re.kr (www.nfri.re.kr)

133. 공간정보 기반의 실감형 콘텐츠 융복합 및 혼합현실 제공 기술 개발

1. 개 요

- 공간정보와 다른 산업을 융합하는 창조적 협업체계를 구축, 공간정보 기반 실감형 콘텐츠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공간정보 기반 실감형 콘텐츠 융복합 및 혼합현실 제공 기술 개발
- * 다부처공동기획사업(참여부처: 국토교통부(주관부처),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으로 '18년부터 진행 중

※ 부처별 주요 연구내용

- (국토부) 수요처 맞춤형 고정밀 3D 공간정보 갱신 및 활용 지원 기술
- (행안부) 공간정보 기반 실감 재난관리 맞춤형 콘텐츠 제공 기술
- (산업부) 고정밀 3D 공간정보 기반 유무인 이동체 가상훈련 지원 기술
- (문체부) 공간정보 기반 실감형 문화콘텐츠 제작 및 유통 인프라 구축 기술('20년 예정)

2. 지원대상분야

- 공간정보 기반 실감형 콘텐츠 융복합 및 혼합현실 제공 기술 분야 1개 과제 지원
- 1개 과제 : 고정밀 3D 공간정보 기반 유무인 이동체 가상훈련 지원 기술개발

3.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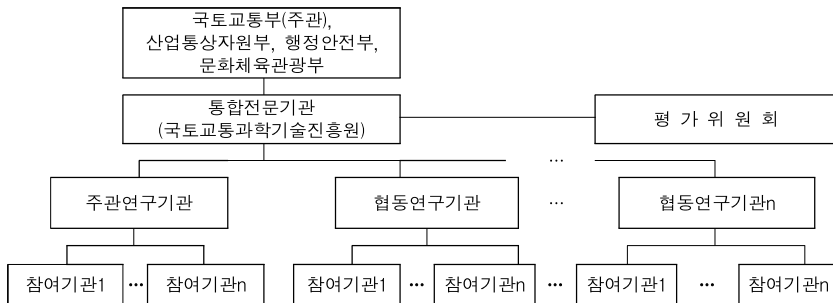
- 대학, 기업, 출연(연) 등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해당하는 기관에 의한 기관

4.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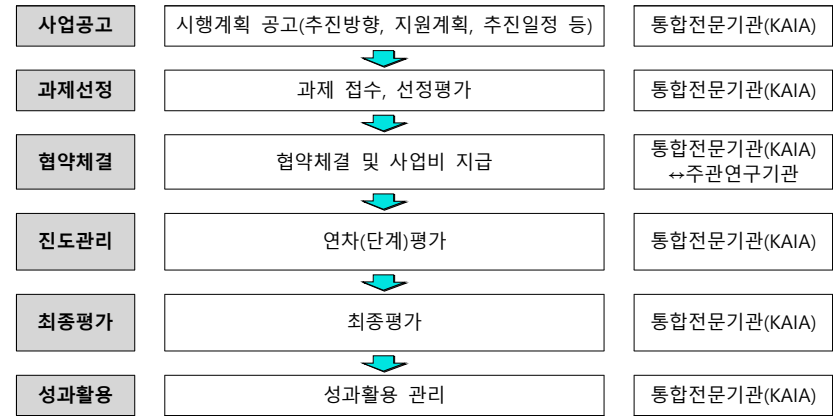
- RFP 수행조건에 따라 수행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으로 지원
- * 총 연구기간 1~5년 이내로 연차별 연구개발비는 총 정부출연금 범위 내에서 편성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6. 추진일정 : 신규지원 예정 없음(본 사업은 2018년에 선정된 계속과제만 사업비를 지원)

7. 지원규모 : 총 86.07억 (계속 86.07억)

- * 상기 예산에는 '19년에 참여하는 부처(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의 '19년도 지원 예산 포함 (산업부 예산은 19.9억원)으로 지원규모는 변동 될 수 있음

8. 중점 추진사항

- 고정밀 3D 공간정보를 변환·가공하여 육상이동체형 가상훈련공동 플랫폼과 비행사고 상황을 조기 감지·예측 대응할 수 있는 가상 비행훈련 시뮬레이터 개발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경쟁률	-	-	2 : 1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정부출연금	-	-	2,000백만원

11.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전자전기과 : ☎ 044-203-4341, kim3933@korea.kr (www.motie.go.kr)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도시건축실 : ☎ 031-389-6340, trirux@kaia.re.kr (www.kaia.re.kr)

134. 공공혁신조달 연계 무인이동체 및 SW플랫폼 개발사업

1. 개 요

- 무인이동체를 활용한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하천관리, 철도점검 등 공공기관 수요를 반영한 무인이동체 및 SW플랫폼을 개발하고 공공혁신조달로 연계

2. 지원대상분야

- 산업축진을 위한 공공수요 기반 무인이동체 핵심기술 개발

3.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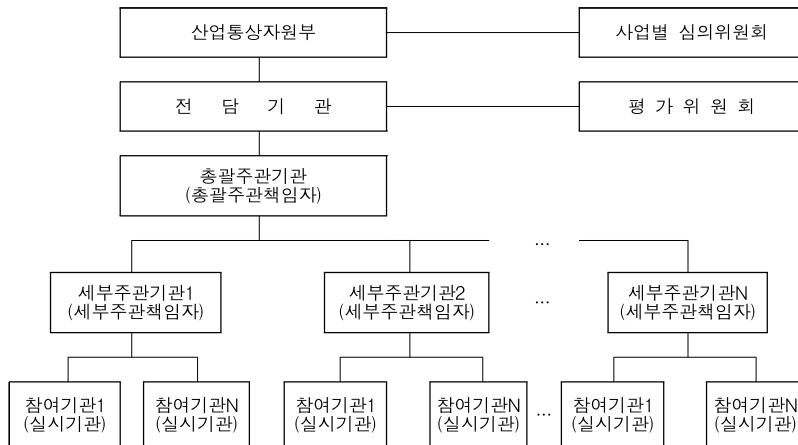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등

4.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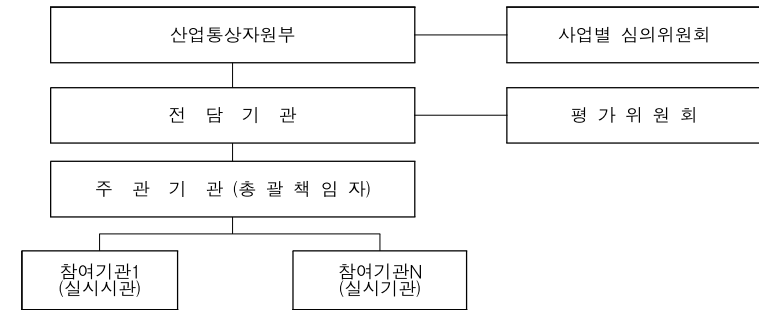
- 출연(기업 또는 지자체가 참여하는 경우 매칭) 형태로 지원
- 지원기간 : 단기(2년 이내) 또는 중장기(총 4년 이내, 단계별 2~3년)
- 지원금액 : 기술개발범위 및 과제성격에 따라 지원
 - ※ 기술개발과제에 따라 지원기간 및 금액 등이 변동될 수 있음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통합형, 병렬형 과제



- 일반형 과제



- 추진절차

과제기획	전담기관(KAIA)	과제기획 후보과제 발굴
		과제기획과제 선정
		과제기획 수행기관 선정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AIA)	사업계획서 접수
		신규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진도관리·중간평가	전담기관(KAIA)	평가위원회/운영위원회
단계·최종평가	전담기관(KAIA)	평가위원회/운영위원회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담기관(KAIA)	성공평가과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징수
추적 평가	전담기관(KAIA)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9. 3월 ~ '19.5월	'19. 1월 ~ 3월	'19. 3월 ~ 4월	'19. 4월 ~ 5월

7. 지원규모 : 15.75억원 (신규 15.75억원)

8. 중점 추진사항

- 공공수요조사를 통한 맞춤형 무인이동체 개발 지원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연 도	2015년	2016년	2017년
경쟁률	-	-	-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15년	2016년	2017년
정부출연금	-	-	-

11.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 : ☎ 044-203-4326, www.twcom@motie.go.kr (www.motie.go.kr)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항공실 : ☎ 031-389-6471, kashim22@kaia.re.kr (www.kaia.re.kr)

135. 스마트 도로조명 플랫폼 개발 및 실증 연구

1. 개 요

- 도로조명에 센서 및 ICT 기술을 접목하여 도로환경 정보를 수집하고 위험상황을 인지·판단하여 디지털 사인(Digital Sign) 및 I2X연계를 통해 이용자에게 위험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교통사고 저감에 기여
- * 다부처공동사업(참여부처: 국토교통부(주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으로 '19년부터 신규로 추진 예정

※ 부처별 주요 연구내용

- (국토부) 스마트 도로조명 통합운영체계 개발 및 실증연구
- (과기부) 스마트 도로조명 통신플랫폼 개발
- (산업부) 스마트안전융합 도로조명 개발
- (행안부) 스마트 도로조명 활용 도시제난 안전관리 시스템 개발

2. 지원대상분야

- 스마트안전융합 도로조명 개발

3.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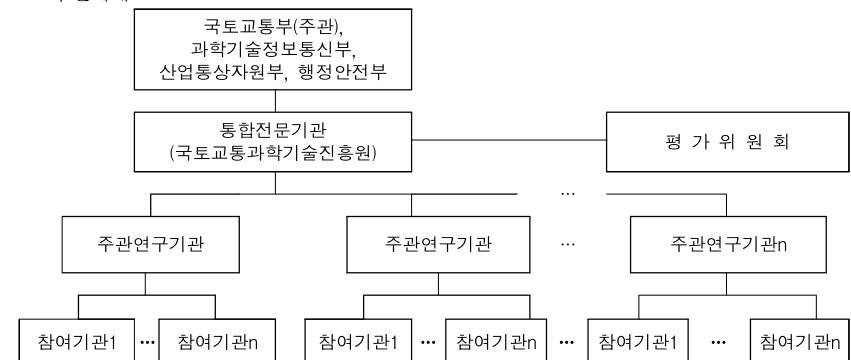
- 대학, 기업, 출연(연) 등

4.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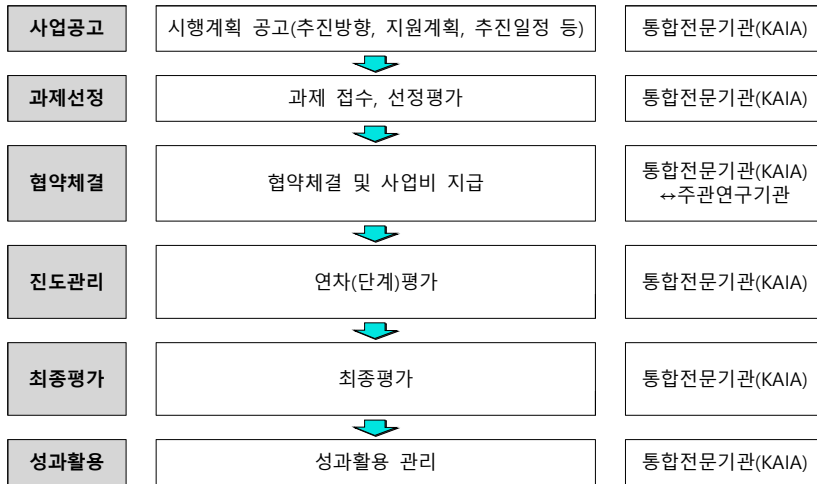
- 지원조건: 출연(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Matching)
- * 상세 내용은 사업공고 시 별도 안내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6. 추진일정

과제기획	공고 및 접수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7. 10월 ~ '18. 3월 (다부처공동기획연구)	'19. 1월 ~ '19. 3월	'19. 3월	'19. 4월

* 상기 추진일정은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7. 지원규모 : 48억원 (신규 48억원)

- 상기 예산에는 참여부처(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의 '19년도 지원예산 포함
* 산업부 예산 10억원 (신규 10억원)

8. 중점 추진사항 : 해당사항 없음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 해당사항 없음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 해당사항 없음

11.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전자전기과 : ☎ 044-203-4347, hongkp@korea.kr (www.motie.go.kr)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교통물류실 : ☎ 031-389-6447, kapac@kaia.re.kr (www.kaia.re.kr)

136. 민군기술협력사업

1. 개요

- 군사 부문과 비군사 부문 간의 기술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규격을 표준화하며 상호간 기술이전을 확대함으로써 산업경쟁력과 국방력을 강화
※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령」 시행('14.2.7)에 따라,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이 “민·군기술협력사업”으로 민·군기술협력사업 범위 및 참여 부처가 확대

2. 지원대상분야

- 민군겸용기술개발(Spin-up) : 국방력·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장규모 확대, 경제성 및 파급효과가 기대되며, 민·군 양 부문에 공통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술
- 민군기술이전(Spin-on/off)
- 민·군기술적용연구 : 연구개발, 해외도입, 절충교역, 기타 방법으로 특정산업 분야에서 기확보된 기술로서, 민수산업 분야에서 군수산업 분야로(Spin-on) 또는 군수산업 분야에서 민수산업 분야로(Spin-off) 이전 가능한 기술에 대한 적용연구

3.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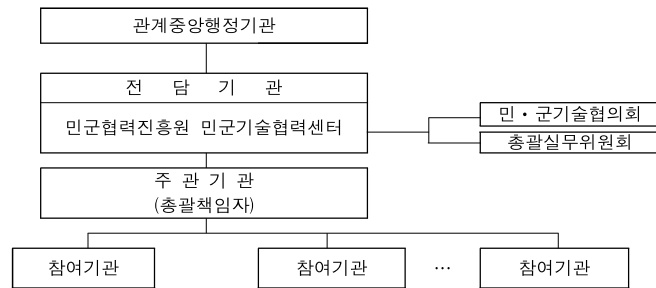
- 정부출연 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 민간생산기술연구소 또는 산업기술연구조합 등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 혹은 단체(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7조 참조)

4.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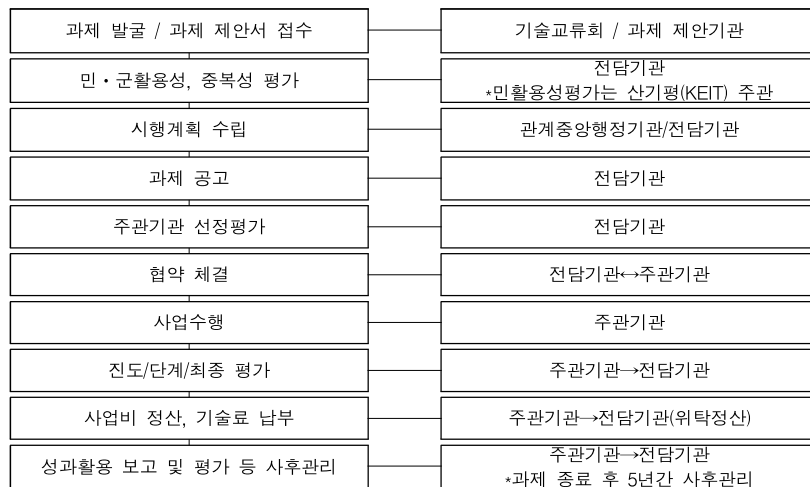
- 출연/민간매칭
※ 기업규모에 따라 연구개발비 지급(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27조 참조)
- 대기업 : 해당 수행기관 연구개발비의 50%이하
- 중견기업 : 해당 수행기관 연구개발비의 60%이하
- 중소기업 : 해당 수행기관 연구개발비의 75%이하
- 그 외 : 해당 수행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시행계획	공고 및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8. 3월 ~ '19. 1월	'19. 3월	'18. 3월 ~ '19. 4월	'19. 5월	'19. 6월

7. 지원규모 : 193.88억원 (신규 26.77억원, 계속 167.11억원)

8. 중점 추진사항

- 제2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에 따른 산업경쟁력 및 국방력 강화 분야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연 도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경쟁률	검용기술개발	6.9:1	5.3:1	4.9:1
	기술적용연구	3.1:1	5.4:1	4.0:1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정부출연금	검용기술개발	208.5백만원	306.1백만원	150백만원
	기술적용연구	74.9백만원	81.7백만원	20.3백만원

11.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과 : ☎ 044-203-4313, bluewave@motie.go.kr (www.motie.go.kr)
- 국방과학연구소 민군협력진흥원 : ☎ 042-607-6082, mok@add.re.kr (www.icmtc.re.kr)

137.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

1. 개요

- 과기정통부·산업부·복지부 3개 부처의 개별적인 신약개발 제품화 R&D 사업을 초월하여 글로벌 신약을 개발하는 범부처 사업

2. 지원대상분야

- 글로벌 신약개발 R&D 지원

3. 신청자격

- 주관연구기관은 기업, 바이오벤처, 대학(의료기관 포함),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소
- ※ 임상개발단계는 주관연구기관을 기업 및 바이오벤처로 제한함

4. 지원내용

- 지원기간 및 규모는 해당과제의 연구개발 단계별 마일스톤에 따라 자율적으로 설정 (기간, 비용에 제한 기준 없음)
- ※ 마일스톤 : 마일스톤이란 보통의 국가연구개발 과제의 연차와 다른 개념으로, 전체 연구개발 과정 중 중요한 연구결과물이 나오는 중간목표를 정하여, 평가를 통해 다음 연구단계로 진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설정된 연구기간을 뜻함. 과제에 따라 복수 마일스톤(연속적으로 다음 연구 단계로 이행될 수 있도록 2개 이상의 마일스톤으로 구성)으로 구성 가능함
- ※ 지원기간 : 마일스톤이 달성되기까지 소요되는 전체 기간
- ※ 지원규모 : 마일스톤 달성을 위해 소요되는 연구비로 연구내용을 기준으로 규모 설정

○ 신약 개발 전주기 지원

- 연구개발 단계별 : 선도물질, 후보물질, 전임상 및 임상 연구개발
- 글로벌 혁신신약 (합성, 바이오, 천연물)

※ 단, 개량 신약, 바이오시밀러, 세포치료제는 제외

※ 신규 타겟을 발굴하는 연구 내용은 제외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글로벌 신약개발 프로젝트의 발굴 투자
- C&D(Connect & Development) 전략으로 신약개발 가속화
- 기초원천에서 임상단계까지 전주기 신약개발 파이프라인 체제
- 기업형 사업단을 구성하여 사업 추진

○ 추진절차



6. 추진일정 : '19년 신규예산 없음

7. 지원규모 : 259.47억원 (계속 259.47억원)

* 산업부 예산: 95.49억원

8. 중점 추진사항

- 국내에서 연구되고 있는 혁신적인 신약 후보들을 발굴하여 R&D부터 사업개발까지 전방위 지원 업무 수행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경쟁률	2.60 : 1	3.42 : 1	6.11 : 1

※ 위 표의 2018년 신규 지원 경쟁률의 경우, 2018년 11월 말 기준으로 산출되었음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정부출연금	674백만원	901.5백만원	1,559백만원

※ 위 표의 2018년 신규 지원 과제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의 경우, 2018년 11월 말 기준으로 산출되었음

11.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나노과 : ☎ 044-203-4399, jyoo@motie.go.kr (www.motie.go.kr)
- (재)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 경영전략팀 : ☎ 02-6379-3062, tori5@kddf.org (www.kddf.org)

138. 중소중견기업 기술경쟁력강화 파트너십사업

1. 개요

- 사업목적
 - 중견기업과 중소·벤처기업간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 신성장아이템 개발을 통해 産-産간 협업문화 조성 및 동반성장 모델확산
 - 대학·출연(연)을 활용한 중소·중견기업 연구환경 조성 및 신성장동력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4~5년 이내 출시하고자 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신제품 개발을 지원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대상) 중소·중견기업

3.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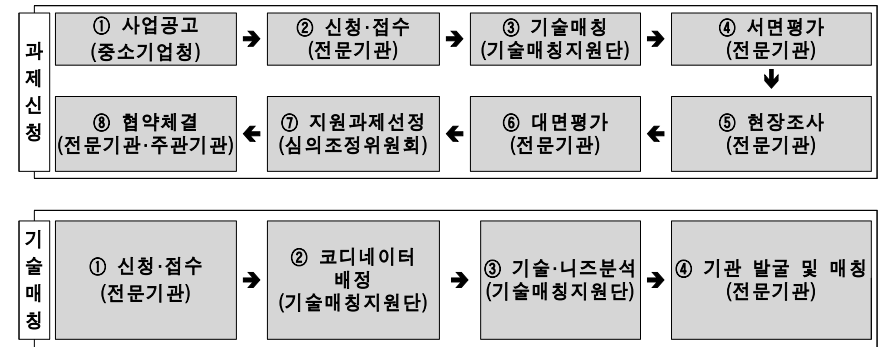
- (주관기관) 중소·중견기업으로 아래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 2015년도 매출액1) 기준 400억원 이상(단, 시스템SW개발공급업 등2)은 100억원 이상)인 중소3)·중견기업4)
 - 1) '15년 결산보고서를 기준으로 참여자격 여부를 증명
 - 2) 표준산업분류상의 시스템 SW개발공급업(산업분류58221), 응용 SW개발공급업(산업분류 58222),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관리업(산업분류 620), 온라인·모바일게임 SW개발 및 공급업(산업분류 58211)
 - 3)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
 - 4)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
 - 단,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은 지원제외 대상임
- (공동개발기관) 기술개발 및 사업관리 역량 등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대학 및 정부출연연 등)으로 공공연구소 협력형 과제에 한함
- (참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 (위탁연구기관) 대학 및 연구소 등으로 주관기관으로부터 기술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 받아 수행(필요 시 참여)

4. 지원내용

- 중소·중견기업간 다각적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기술역량을 강화하여 중소·중견기업의 동반성장 체계 구축
- (기업 협력형 과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간 신성장아이템 발굴 등 사전기획과 공동기술 개발 지원
 - 신성장 아이템 발굴, 제품화 및 시장전망, 향후 사업전략 등 기술성·사업성에 대한 사전 기획과 기술개발을 동시 지원
- (공공연구소 협력형 과제) 기업간 협력체계를 기초로 기업이 필요로하는 원천·기반 지식과 기술의 응용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출연연 등이 공동기술개발 기관으로 참여하는 과제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절차



6. 추진일정(신규 없음)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	-	-

7. 지원규모 : 8.78억원 (계속 8.78억원)

8. 중점 추진사항

- '18년 일몰로 '19년 신규과제 선정없이 계속과제 관리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경쟁률	2.7 : 1	3.25: 1	-

* 신청 과제수 대비 2단계 R&D 연계 실적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정부출연금	181백만원	266백만원	332백만원

11.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혁신과 : ☎ 044-203-4377, kms128@motie.go.kr (www.motie.go.kr)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협력기술기획실 : ☎ 042-388-0194, somang@tipa.or.kr (www.tipa.or.kr)

139.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1. 개 요

- 기존 생산중심의 산업단지를 창조와 혁신이 선순환하는 지식 기반형 혁신클러스터로 육성하여 국가와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추진중인 중소·중견기업 R&D지원 사업

2. 지원대상분야

- 산학연간 R&D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역량을 강화하고, 고부가가치 자생적 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집중 육성이 필요한 산업을 지역별로 선정하여 지원
 - 지역별 집적산업은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에 따라 산업입지방향, 산업집적도, 성장 유망산업을 고려하여 정함
 - * 예) 서울(IT), 반월시화(부품소재), 구미(전자), 천안(바이오), 창원(기계), 광주(광산업), 원주(의료기기) 등

3.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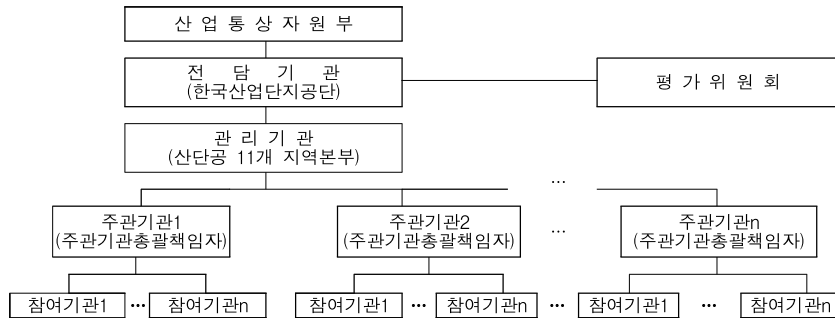
- (주관) 사업 대상단지* 내 주된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산학연협의체(미니클러스터) 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4호에 의한 국가·일반·도시첨단·농공단지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자유무역지역,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제1항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경제자유구역 등
- (참여) 사업 대상단지 내 주된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대학, 연구소 등

4.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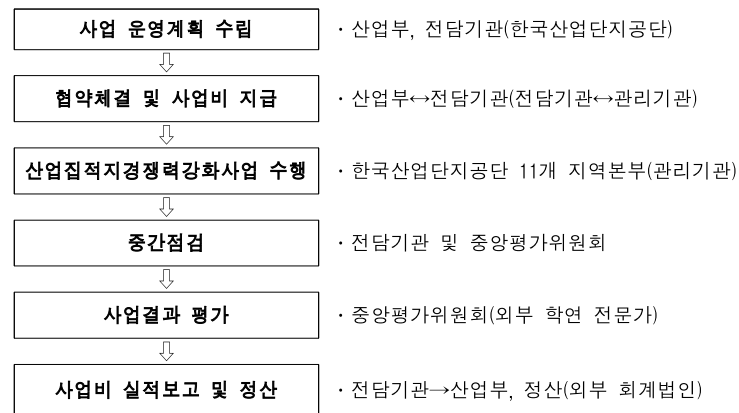
- R&BD 네트워크 구축·운영사업 : 산업단지 중심의 산학연 간 협력과 공동연구개발 지원
 - 단지별 집적산업 관련 산학연협의체(미니클러스터) 운영을 통해 기술개발, 사업화 협업 수요를 발굴하여 공동연구개발과제 수행 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6. 추진일정

연구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연중 수시	연중 수시 (비공모형 사업)	연중 수시(월별)	연중수시(월별)

7. 지원규모 : 622.94억원 (계속 622.94억원)

8. 중점 추진사항

- 산학연간 협력 활성화를 통한 상생협력 네트워크 기반 구축
- 기술개발, 사업화, 시장화 등 기업 활동 전반에 걸친 애로 과제 상시 발굴 및 맞춤형 지원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경쟁률	1.56 : 1	1.45 : 1	1.49:1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정부출연금	174백만원	180백만원	190백만원

11.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 ☎ 044-203-4407, ddoyo@motie.go.kr (www.motie.go.kr)
- 한국산업단지공단 클러스터사업팀 : ☎ 070-8895-7252, lgh6753@kicox.or.kr (www.kicox.or.kr)

140. 다목적실용위성기술개발사업

1. 개 요

- 한반도 지상관측 등 국가영상정보 수요충족을 위한 지구저궤도용 레이더영상 지구관측 위성 다목적실용위성 본체의 국내독자개발을 통한 재난대응 등 공공활용
 - 사업기간 : 2014.12~2020.12
 - 총사업비 : 830억원(당해연도 84억원)
 - 사업규모 : 다목적실용위성 6호 위성본체 1기 개발
 - 지원조건 : 전액 정부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2. 지원대상분야

- 다목적실용위성 6호 위성본체 1기 개발
 - 서브미터급 레이더위성 본체 설계, 해석, 조립 및 시험
 - 국산화 핵심부품 개발 및 비국산화부품 확보

3. 신청자격 : 해당사항 없음

4. 지원내용 : 해당사항 없음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부처예산 확보, 전담기관(한국연구재단)을 통한 관리, 사업시행주체(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개발
- 추진절차 : 2014년부터 2020년까지 계속되는 다년도과제로 전담기관을 통한 진도관리평가(매년) 및 마일스톤평가(시스템설계검토회의, 예비설계검토회의, 상세설계검토회의, 선적검토회의 등) 수행

6. 추진일정 : 신규지원 예정없음

7. 지원규모 : 84억원 (계속 84억원)

8. 중점 추진사항

- 위성체 총 조립 진행 및 시험준비
- 위성체 성능시험 진행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11.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 : ☎ 044-203-4315, neohacky@korea.go.kr (www.motie.go.kr)
- 한국연구재단 우주개발팀 : ☎ 042-869-7805, kimstar100@nrf.re.kr (www.nrf.re.kr)

141. 탄소자원화 범부처 프로젝트

1. 개 요

- 온실가스 내 탄소원을 자원으로 활용하여 복합탄산염, 폐광산채움재 등의 제품을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실증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및 신 시장 창출에 기여

2. 지원대상분야

- (탄소광물화 플러그십)
 - 저농도 CO2와 발전회 등을 활용한 복합 탄산염 안정화(폐광산 채움재 생산) 기술 조기 실증
 - 발전소 및 시멘트·광산 업체가 다수 위치한 강원-충청 지역 각 실증 부지 연계를 통해 패키지 기술 실증 플랜트 구축·운영

3.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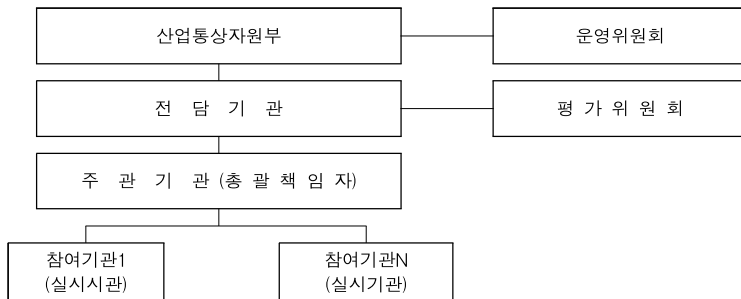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해당하는 기관 및 해당기관 소속 연구자

4.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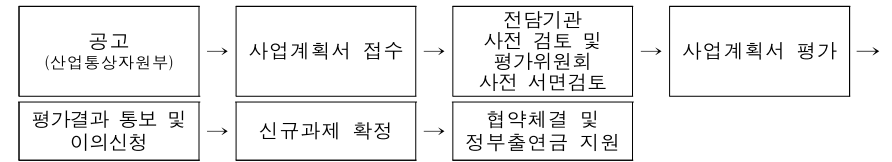
- (탄소광물화 플러그십) 발전소 등 다 에너지/CO2 발생산업의 저농도 CO2를 직접 활용하여 연속식 복합탄산염, 차수성 시멘트 적용 폐광산 차수재 및 채움재 상용화를 위한 실증
- 총 연구개발 6년 ('17년 ~ '23년 / 2+2+2 단계 적용)

4.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6. 추진일정 : 단계평가 및 2단계 협약 ('19년 4~5월)

7. 지원규모 : 4.8억원 (계속 4.8억원)

8. 중점 추진사항

- 탄소광물화 플러그십 실증 : 저농도 CO2를 직접 활용하여 연속식 복합탄산염, 차수성 시멘트 적용 폐광산 차수재 및 채움재 상용화 기술 조기실증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경쟁률	-	1 : 1	-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정부출연금	-	1,800 백만원	-

11.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 : ☎ 044-203-5174, artemis@motie.go.kr (www.motie.go.kr)
- 한국연구재단 원천연구팀 : ☎ 042-869-7739, yjlee17@nrf.re.kr (www.nrf.re.kr)

142. 수상형태양광종합평가센터구축

1. 개요

- 수상형 태양광 시스템의 보급 확대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해 구성제품, 시스템 단위 평가가 가능한 종합 평가 센터 구축 사업

2. 지원대상분야

- 수상형 태양광 실증단지 조성 사업
 - 수상형 태양광 시스템 및 구성품의 성능, 환경성, 내구성 등 종합 평가 검증을 위한 실증 단지 조성 사업
 - 시험기준, 시험방법 설정을 통한 국제규격화 추진 및 산업육성
- 수상형 태양광 평가 센터 구축 사업
 - 수상형 태양광 모듈 및 구성품에 대한 성능·안전성 평가를 위한 센터 건축, 장비 구축 사업

3.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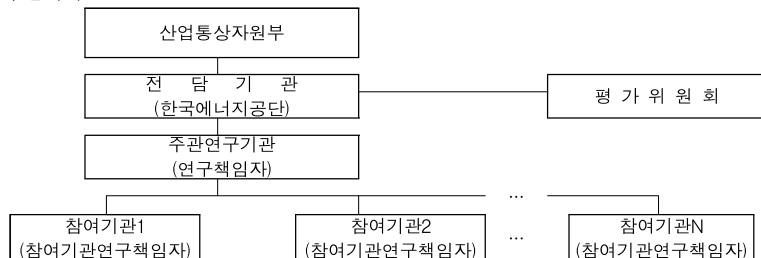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 과제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은 상이할 수 있으며, 상세 내용은 해당사업 신규공고 시 안내 예정

4.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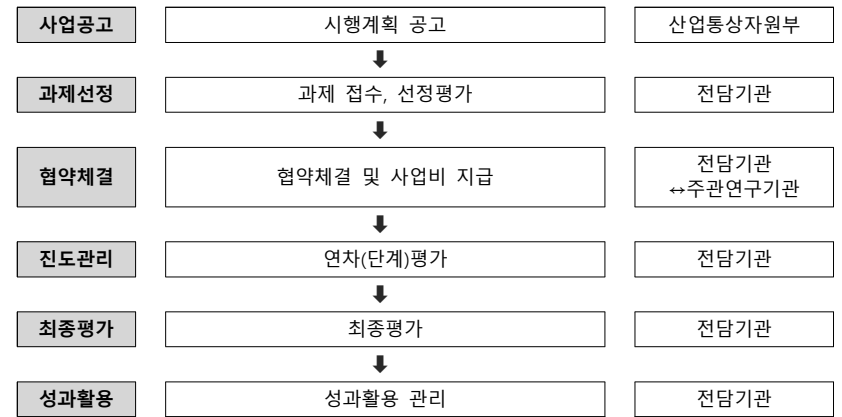
- 공고시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단독 또는 산, 학, 연 간의 공동개발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 또는 지자체가 참여하는 경우 매칭) 형태로 지원
 -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9. 1월 ~ '19. 3월	'19. 4월 ~ '19. 5월	'19. 6월	'19. 7월

※ 상기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7. 지원규모 : 20억원 (신규 20억원)

8. 중점 추진사항

- 수상형 태양광 모듈을 포함한 단위 제품에서 시스템 실증까지 체계적인 평가기반 시설 구축
- 수상형 태양광 시스템 전주기 평가를 통한 장기 신뢰성 검증 및 운영 기술 제고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 해당없음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 해당없음

11.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보급과 : ☎ 044-203-5373, jwyoons57@motie.go.kr (www.motie.go.kr)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진흥실 : ☎ 031-260-4658, kgw@energy.or.kr (www.energy.or.kr)

143. 초소형전기차산업및서비스육성실증지원사업

1. 개 요

- 중소·중견기업의 진출이 용이한 초소형 전기차 기반의 다양한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차량의 성능 및 안전성 향상 기술개발
- 다양한 서비스 모델의 실증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국민들이 수용 가능한 새로운 이동수단으로서의 가능성 검증

2. 지원대상분야

- 대중교통 연계형 초소형 전기차 이동지원 서비스 실증
- 제한 범위형 초소형 전기차 공동활용 서비스 실증
- IoT 기반 초소형 전기차 물류 배달 서비스 실증
- 초소형 전기차 공공 업무지원 실증
- 대중교통 소외지역 이동 서비스 실증
- 초소형 전기차 실증모델 운영 및 분석 인프라 구축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 과제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은 상이할 수 있으며, 상세 내용은 해당사업 신규공고 시 안내 예정

4. 지원내용

- 공고시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단독 또는 산, 학, 연 간의 공동개발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 또는 지자체가 참여하는 경우 매칭) 형태로 지원
-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공고 시 별도 안내

5. 추진체계 및 절차 : 미정

6. 추진일정 : 미정

7. 지원규모 : 50억원 (신규 20억원)

8. 중점 추진사항

- 서비스 모델별 초소형 전기차 개조, 충전 인프라 구축
- 모빌리티 셰어링 등 테마별 실증과제 운영/관리
- 차량 및 운전자 데이터 수집 및 송수신 용 단말기
- 실증 데이터 분석용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 실증 빅데이터 분석 기반 차량/서비스 개선, 대국민 홍보 등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 해당없음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 해당없음

11. 문의처 : 미정